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인간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요인에 관한 연구는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으로 구분되어 왔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유전 또는 환경에 의해서만 행동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곽형식 외, 2000).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고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청소년의 문제행동 연구에서 환경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청소년의 발달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환경이란 “생활체를 둘러싸고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 또는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으로 정의된다(한국청소년개발원편, 2004).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환경은 인간의 성장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 즉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이상섭, 1991).

특히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은 환경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게 되어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의 내적·외적인 환경 변화를 겪으며, 자기와 사회의 관련성을 인식하거나 사회현상에 대한 견해·사고방식 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된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2a).

청소년의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해 제 학자들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 그리고 청소년과 그러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유해한 영향의 결과”에 따라 규정

될 수 있다고 말한다(이명숙외, 1996).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환경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부정적인 환경은 부적응, 비행, 일탈 등 문제행동으로 연계되기 쉽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사회의 주요한 유해환경을 유형화하고 이와 관련된 유흥업소의 출입, 유해매체접촉, 유해물건 및 유해약물 사용 등과 같은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당하고 있음을 안 때는 이를 제지 및 선도하여야 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등의 유통,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안 때, 또는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부터 피해입고 있음을 안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고발 등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유해환경은 2002년 현재 746,217개소로서 청소년인구 1,000명당 약65개소에 이른다. 특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인 유흥주점의 경우는 1995년 16,306개소, 1997년 17,241개소, 2001년 26,539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청소년문제행동은 양적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폭력화·집단화 되고 있으며, 또한 과거 일부 청소년에 국한되었던 문제행동이 현재는 전체 청소년으로 보편화되고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청소년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사회와 청소년 내에서 청소년보호망을 형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법·제도적 차원에서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연구는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와 확산

경로를 추정하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문제 행동 완화를 위한 유해환경 관련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유해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유해환경요인과 문제행동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며, 유해환경요인의 확산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학교차원의 ‘문제행동완화모형’을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의 구체적 요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유해환경의 요인은 청소년문제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셋째, 유해환경요인은 청소년 내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이루며, 확산되고 있는가?

넷째, 청소년유해요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책은 무엇인가?

다섯째,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 유효한 ‘청소년문제행동 완화/억제 모형’은 무엇인가?

여섯째, 외국에서의 청소년유해환경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목적에서 보면, 이 연구의 연구영역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법적 개념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매체, 청소년유해행위,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에 관한 연구는 이미 2004년도에 이루어졌으므로 금년도 연구에서는 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접촉실태는 제외하기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문제행동과 유해환경의
개념 및 실태
2. 청소년문제행동과 유해환경과의
관련성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문제행동과 유해환경의 개념 및 실태

1) 청소년 문제행동

인간 발달단계로서 청소년기에 대한 개념은 스탠리 홀(Stanley Hall)이 1940년에 ‘청소년기’란 책을 통하여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일차대전후 전쟁에서 돌아온 젊은이들이 ‘새 세대(new generation)’로 출현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들은 과거의 행동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성인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성인들이 젊은이들의 유행을 따르게 되었다(이춘재, 1988).

현대의 청소년행동 특성에 대해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청소년위원회, 2001)

첫째, 청소년은 자기표현을 분명히 하고,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등 자신의 삶에 대해 적극적이며, 자신의 삶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신의 개성과 다양성, 유행에 민감하고, 자유분방하며, 외모에 큰 관심을 가진다.

둘째, 감각적이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충동적 행동패턴을 지향하는 경향이 많다.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영상매체나 뉴미디어에 대한 수용의 폭이 넓으며, 욕구충족을 위한 충동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

셋째, 자기행동에 대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하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별관심이 없다.

넷째, 자신의 땀과 노력을 통한 대가를 바라기 보다는 노동을 기피하면서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며, 성에 대한 상품화나 무조건적 동경심 또는 낭만적 사고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사용에 있어서 문제행동이란 타인 또는 자신에게 해를 주거나 재산상에 피해를 야기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행동이 사회적으로 중요시 되는 것은 하나의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규범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규범은 사회를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며, 또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향의 지침이 된다. 그래서 사회구성원들의 규범의 준수는 사회유지와 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김병무, 2005). 문제행동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회규범에는 법률과 도덕 그리고 관습이 있다. 법률은 공적인 기관에 의해 시행되며 불이행시 강제적인 제재를 받는다. 도덕은 자율적 규범으로 양심에 의해 시행되며 관습은 사회적 전통과 반복된 관행이 개인의 생활을 규제하는 규범이다. 청소년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러한 규범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개인적인 인격체로 존재하나 아직까지 사회화가 미흡한 존재로서 규범을 어기게 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사회적 가치를 저버리고 규범을 어기게 되는 행동을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행동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학문적 관점에 따라 문제행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법률적 기준과 사회규범상 문제시 되는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률적 문제 행동은 행위 자체나 행위의 결과를 놓고 행동의 문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사회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적 제재 대상이 되는 행동과 필요시 공권력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대상행동을 말한다. 규범적 문제행동은 법률적 문제행동과는 달리 사회적 가치나 도덕적 기준, 그리고 행위자의 지위나 문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임성택·김혜진, 2001).

이러한 청소년 문제행동은 사회질서유지나 발전을 저해하는 청소년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청소년문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청소년이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이행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과 치료 대책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의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으며 이렇게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를 사회통제라고 한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통제에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공식적 사회통제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규범을 어기고 문제행동을 야기하였을 때에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제기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책마련은 청소년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통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문제행동 실태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회환경’을 말한다. 이에 관해 윤수현(1989)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제요소”, 임형진(1991)은 “환경이 건전하지 못하여 도리어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 내지 침해함으로써 건전 육성을 방해하는 생활환경”, 한준상(1991)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성장에 비교육적이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과 그런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 학자들 간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특성은 첫째, 환경의 유해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즉, 어떤 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판단의 주체나 판단기준, 청소년의 연령, 사회풍토, 사회문화적 맥락, 특정 환경의 운용행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도종수 외, 1990).

절대적인 유해환경이란 특정 환경 접촉 그 자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폭력과 같은 유해행위, 마약과 같은 유해물질, 명백하게 안전하지 않는 장소나 물건 등이 있다. 반면에 상대적인 유해환경은 특정 환경 그 자체가 언제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숙정도, 접촉 상황, 사회적 수용도 등에 따라 그 환경이 청소년 발달을 저해할 개연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환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제한 업소나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높은 유해매체물 등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제한해야할 환경이 있다.

둘째,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미시적 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시적 환경을 포괄한다(이명숙, 1996). 미시적 환경 요소는 청소년이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일차적,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가정, 학교, 또래집단, 교회 등이 있다(한국청소년학회, 1992).

이 연구에서는 유해환경에 대한 개념적인 범위를 구체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개 유해환경으로 한정한다.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심의기관의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로 구분된다.

전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과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말한다.

후자는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매체물로는 ①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②게임물,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③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 정보 및 문자정보, ④방송법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

사진첩·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 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⑥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⑦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이다.

이러한 매체물 중에서 ①방송매체물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약 75%) 대표적인 여가활동 대상이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프로그램은 7.83시간으로 전체방송시간의 3.36%에 불과하다. 반면에 청소년에 유해한 방송장면은 음주 하루 평균 9.6회, 흡연 하루 평균 2.19회 등 청소년시청시간대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정보통신매체물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은 매년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접촉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유해매체접촉 순위는 현황음란사이트 접속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채팅사이트이다. 최근에는 자살사이트, 범죄사이트가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2004년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한 건수가 7,646건으로 2003년의 3,537건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2004년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3%가 게임중독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16.0%가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2004년도 조사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의 총 사이버범죄 건수는 9391건인데 이중 게임관련 범죄건수가 4983건으로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이템 거래 사기 등 사이버범죄 ‘10대 전과자’가 하루에 28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둘째, 유해약물이다.

청소년유해약물로는 ①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②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③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 ④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⑤기타 중추신경에 작

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쳐 판단력장애 등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 ‘청소년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신체발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 ‘습관성, 중독성, 내성, 금단증상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의 유해약물 접촉 경험에서 청소년 음주율은 1999년 60.2%에서 2002년 70.4%로, 2004년에는 74.4%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흡연경험율은 2004년 27%로 미국 18.7%, 독일 21.0%, 프랑스 23.0%, 일본 26.2% 등 선진국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며, 더욱 심각한 현상은 흡연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여고생 흡연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셋째, 유해물건이다.

청소년유해물건이란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사행성을 조장하는 완구류를 의미한다.

현재 유해물건과 관련하여 판매형태가 고정업소(Off-Line)를 벗어나 On-Line까지 확산 유통되고 있으며, 그 분야와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유해업소이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 구분된다.

전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장(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등), 노래연습장(청소년 출입허용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출입은 허용),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등이다.

후자는 숙박업소, 이용업소(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

자청소년은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소, 담배소매점,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소,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점, 음반판매업소, 비디오물판매·대여업소 등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의 출입구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 중 유흥주점은 1997년 17,241개소에서 2003년 56,809개로 늘어났으며, 청소년 출입 실태를 보면, 연평균 약 1만 여건 정도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출입경험도 24.8%로 매년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2년 이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관련 위반사범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청소년고용과 관련된 위반 사범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유해행위이다.

유해행위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접촉·노출·성적접대·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장애인·기형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하는 행위, 학대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금전 또는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으로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 등을 하는 행위이다.

청소년유해행위 위반사범 단속결과(2000)를 보면 주로 청소년에게 풍기 문란한 장소제공행위(44.5%), 성적 퇴폐행위(27.2%), 대가성 성적 교제(21.4%) 등 청소년 성과 관련된 유해행위가 전체의 50% 정도를 점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03년에 7,584건에서 2004년에는 8,493건으로 늘어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위험이 상존해 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된 2000년 7월 이후 2005년 6월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총 8,536명이며, 우

리나라 19세 미만 청소년 인구 1만명당 7.14명의 성범죄자(성폭력+성매수), 12세 이하 아동인구 1만명당 4.21명의 아동 성폭력 범죄자(강간+강제추행)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6월 제8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32명의 신상을 공개하였으며, 2001년 8월 제1차 신상공개 이후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자는 모두 4,112명에 이른다.

2. 청소년문제행동과 유해환경과의 관련성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청소년들 개인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행동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현상이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 요인이 복합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병무, 2005).

먼저, 개인적 특성에서 문제행동을 찾는 이론은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유전적 원인론과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후천적 원인론이 있다. 유전적 원인론에서는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그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결함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후천적 원인론에서는 문제행동이 후천적으로 형성된 개인의 퍼스낼리티에 문제가 있거나 환경에 적응한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관점은 인간의 심리적 또는 정서적 불안정이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본다.

다음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문제행동이 야기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으로 서,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구조지향 이론과 사회과정지향 이론, 그리고 인간발달 생태학적 접근 이론과 맥락주의적 접근 이론 등이 있다.

첫째, 사회구조 지향이론에서는 개인의 행동의 이탈을 환경 및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는 문제행동 행위자들의 행동을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박탈에 대한 반응으로 특징짓는다. 이 논리에서는 사회의 성공적인 목표에 대한 성취 기회의 결

뿔을 중요시 하며, 청소년 문제행동은 하류계층의 사회나 대도시의 빈민층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한다(권이중, 1996).

둘째, 사회과정지향 이론에서는 사회구조 지향이론과 문제행동의 개인적 환경적 이론과의 연계를 설명한다. 대표적인 사회과정지향 이론으로는 차별접촉이론과 통제이론이 있다.

셋째, 인간발달 생태학 이론은 생물학적 유기체와 주변의 환경 간에 존재하는 복잡한 상호의존적인 체계에 대한 연구학문인 생태학에서 출발하고 있다(곽형식 외 2000). 인간발달에 영향을 주는 생태적 환경을 양과점 질과 같이 구조화하고 이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하고 있다(Rogoff, 2003).

인간발달의 생태학적 접근은 청소년발달 측면에서 볼 때 5가지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Betts & Dalla, 1996).

첫 번째 수준은 청소년자신이다. 청소년 자신의 특성들이 청소년의 성장 발달을 위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수준은 청소년을 둘러싼 근접환경이다. 여기에는 청소년이 직접적 또는 청소년들과 함께 일어나는 사람, 사물, 사건을 말하며 청소년들이 부모, 형제, 또래 및 다른 성인들과 형성되는 관계가 중요하다.

세 번째 수준은 연계이다. 청소년이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연계, 그리고 다른 집단들과의 연계의 수와 질을 의미하는데, 강한 연계는 청소년이 발달을 촉진하나 소외되거나 거부되는 연계는 문제에 처할 위험성이 커진다.

네 번째 수준은 권력체계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 체계를 의미하는데, 청소년들의 성장에 간접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은 부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를 청소년이 긍정적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수준은 사회이다.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패턴은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규범을 반영하고, 경제체계나 정치체계는 그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맥락주의적 접근 이론에서 개인의 발달은 사회체계로서의 맥락,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맥락, 맥락 안에서의 진화에 따른 맥락 등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것이며, 시간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청소년이 지닌 개인적인 특성에 대하여 환경적 맥락이 적응상의 요구가 있는데, 만일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청소년개인의 특성이 잘 부합되면 환경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나 반대의 경우는 환경적 맥락으로부터 부정적인 귀환반응을 받게 되고 적응은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발달적 적응은 유기체의 특성자체나 환경적 맥락 어느 한쪽에 의해서 주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윤진, 1993).

이러한 맥락주의에서는 청소년은 환경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그들 자신이 받게 되는 귀환반응을 생성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첫 번째 역할로서 청소년은 각자 지니는 신체적·행동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타인에 대해 자극의 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 역할로서 청소년은 능동적인 환경의 정보처리자로서의 능력을 갖고 활동한다.

세 번째 역할로서 발달 과정상에서 가소성 또는 융통성은 개인이 새로운 맥락적인 요구에 적절히 부합되도록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맥락주의적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은 단일한 사건이나 단일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맥락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것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발달체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하위연구과제
2. 연구의 흐름도
3. 협동연구과제 추진체계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하위연구과제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사회와 청소년 내에서 청소년보호망을 형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법·제도적 차원에서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본과제와 하위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하위과제들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 1) 본 과제의 주제는 “청소년문제행동 종합 대책Ⅲ-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제도적 환경, 외국의 정책을 중심으로-”이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주제에 대한 이론적 개관
 - 하위 연구주제별 연구결과 요약 제시
 - 하위 연구주제별 문제행동 완화/억제 모형 및 대응책 제시
 - 외국의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정책 사례 제시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정책 제안

- 2) 하위과제1의 주제는 “청소년유해업소 개선 대책 연구”이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이론적 논의
 - 청소년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유해업소의 유해요인 제시
 - 유해업소의 유해요인이 청소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유해업소의 유해요인과 청소년과의 관련성 및 청소년들 사이의 확산

(네트워크) 형태 분석

-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문제행동 완화/억제 모형 제시
-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대응책 제시

3) 하위과제2의 주제는 “청소년유해매체 개선 대책 연구-뉴미디어를 중심으로”이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유해매체 관련 이론적 논의
- 청소년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유해매체의 유해요인 제시
- 유해매체의 유해요인이 청소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유해매체의 유해요인과 청소년과의 관련성 및 청소년들 사이의 확산(네트워크) 형태 분석
- 사이버커뮤니티 중심의 청소년문제행동 완화/억제 모형 제시
-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대응책 제시

4) 하위과제3의 주제는 “청소년유해행위 개선 대책 연구”이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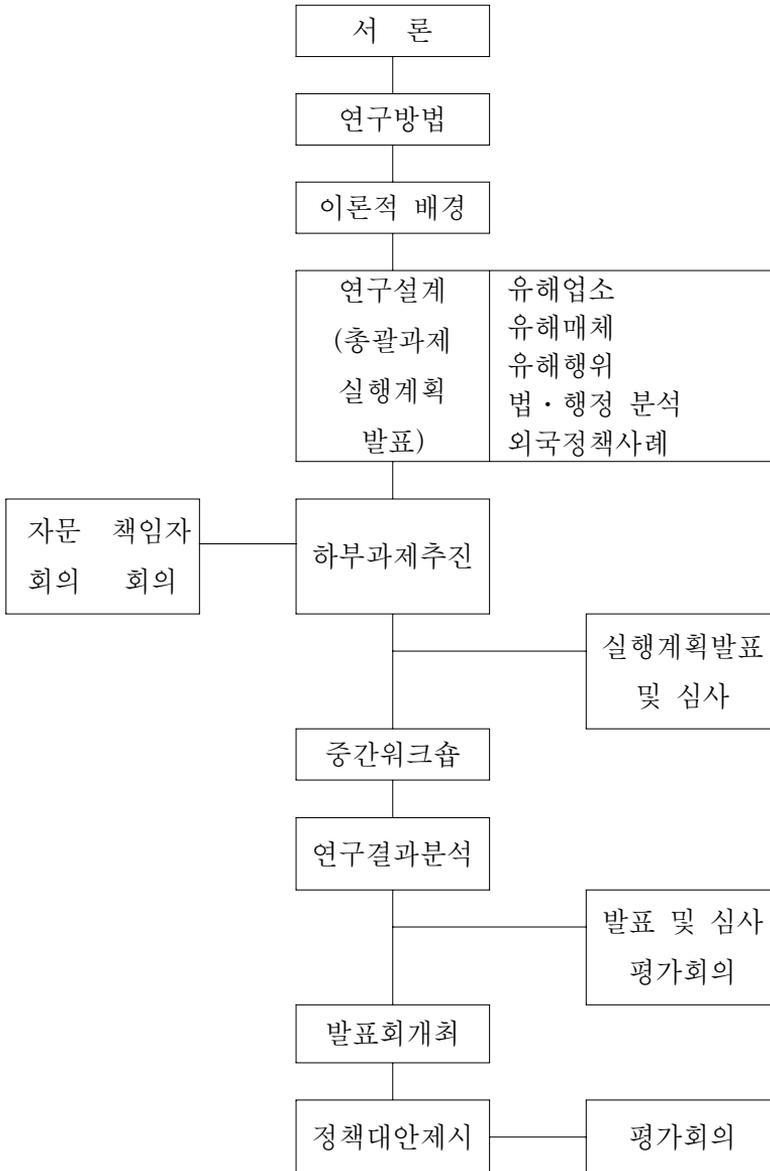
- 청소년유해행위 관련 이론적 논의
- 청소년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유해행위 제시
- 유해행위가 청소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유해행위와 청소년과의 관련성 및 청소년들 사이의 확산(네트워크) 형태 분석
- 청소년유해행위에 따른 청소년문제행동 완화/억제 모형 제시
-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청소년문제행동 개입 전략 제시

5) 하위과제4의 주제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연구”이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령분석 :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법령 분석
- 제도분석 :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 분석

- 정책분석 :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추진 정책(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유해환경 관련 정책위원회 간 업무 및 유지형태 등) 문제점과 대책
- 6) 하위과제5의 연구주제는 “외국의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정책 연구”이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유해환경 유형별 국가적 차원의 사례 조사
 - 청소년유해환경 유형별 민간차원의 사례 조사

2. 연구의 흐름도



[그림 III-1] 연구체계도

3. 협동연구 추진체계

- 1) 연구주제 확정 : 하위연구주제 확정(3월)
- 2) 총괄과제 실행계획발표(3월말)
 - 심의위원 5명
 - 주요내용 : 하위과제의 구성 및 추진사항 결정
- 3) 하위연구과제 공모 : 5개 연구분야 중 4개 분야 공모(4월)
 - 청소년유해업소 개선 대책 분야
 -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 대책 분야
 -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 대책 분야
 - 유해환경 법·제도적 개선 대책 분야
- 4) 연구과제 계약 : 용역계약 체결 및 과업지시 (4월 25일)
- 5) 하위과제 실행계획 발표회 : 심사 및 평가
 - 심사 및 자문위원 각 과제별 3명 배치(총 15명)
 - 심사 후 수정자료 제출
- 6) 과제수행 과정
 - 연구진 전체회의 2회
 - 과제책임자회의 3회
 - 하위과제별 자체세미나 2회 개최
 - 하위과제별 전문가자문 3회 실시
 - 협동연구과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추진방향의 지속적인 수정을 위하여 하위과제에 대한 발표, 자문에 대해서는 총괄연구책임자가 반드시 참여토록 하였음.

7) 중간워크숍

- 일 시 : 9월2일 개최
- 장 소 : 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실
- 참석자 : 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진, 심의위원(8명), 외부청소년위원회 공무원, 청소년단체 및 시설 직원 등
- 중요 심의사항 : 하위연구과제간 중복사항 해결 및 연구내용 수정 보완, 조사 분석방법의 일관성 요구

8) 최종발표회

- 일 시 : 11월 4일
- 장 소 : 리츠칼튼호텔 금강홀
- 참석자 : 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진, 심의위원(8명), 외부청소년위원회 공무원, 청소년단체 및 시설 직원 등
- 중요 심의사항 : 최종 정책 제안시 보완 사항 제안, 과제별 평가 실시, 심의의견에 대한 최종 수정 요구
- 평가기준 : 창의성, 대주제와 세부연구내용의 체계적 연계성, 정책기여가능성, 연구방법의 효과성

9) 하위과제 인쇄본 제출 : 11월

10) 총괄과제 최종보고서 인쇄본 제출 : 12월

IV. 청소년 유해업소 개선 대책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이론적 배경
3. 선행연구 개관
4. 연구방법 및 절차
5. 설문분석결과 및 시사점
6.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
7. 결론

IV. 청소년유해업소 개선 대책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전된다. 환경적 요인은 평생을 거쳐 인간의 인성, 정체성, 생활자세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성장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환경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성과 정체성 등이 고착화되지 않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안정적이고 단혀진 생활모습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정체성을 역동적으로 모색하고 확립해 가는 불안정적이고 개방적인 시기이다. 아동기의 자기중심적인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과의 소통 속에서 자신을 확립해 나가며, 이와 같은 환경적 요소 즉, 주변환경(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에 의해서 인성과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환경이 유익하지 않거나 주변환경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은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거나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청소년의 주변환경이 유익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유해할 경우 이것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 및 사회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흥업소의 출입, 유해매체접촉 등을 특별히 금하고 있으며 청소년교육기관인 학교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유해업소는 2002년도 통계에 따르면 746,217개소로서 청소년인구 1,000명당 약 65개소에 이르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윤추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의 기본구조, 상업주

의문화의 팽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보호의식의 이완 등에 의해서 이러한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은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 실제로 유해업소가 청소년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유해업소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단지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내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발생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 혹은 “유해업소 출입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 는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주장을 통해 유해업소가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유해업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해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해업소에 내재된 유해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유해업소 내부의 어떤 요인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의 영향력은 일종의 'Black Box'로 취급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 중심을 둔 대책들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유해업소가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은 확인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해요인들이 문제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이나 고용 자체를 관리하는 대책을 세웠던 것이다. 그 결과 청소년 유해업소는 내재되어 있는 유해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 결과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를 통해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유해업소의 유해성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 없이 이루어진 기존의 대책들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예방이나 개선에 있어 효과성이나 타

당성을 가지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유해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유해요인들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 유해업소는 어떠한 유해요인들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및 유해요인 접촉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 및 확산 경로는 어떠한가?

넷째,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요인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가?

다섯째,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해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내용을 본 연구에서 모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보다 효율적인 연구의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인정하고, 이를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고용'을 통해 유해업소로부터 유해한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지역(유홍상업지역, 위락지구)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2.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문제행동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청소년은 아동과 어른의 사이에 낀 연령세대로서, 청소년이란 말을 사용하고 청소년기를 아동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정하게 된 시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청소년이나 청소년기는 아동과 어른의 ‘가운데에 낀’ 그리고 그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사이 및 전환기 세대’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발달심리학에서는 이를 전환기(transition period)라고 부르기도 한다(Dusek, 1987).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로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실제로 청소년기에는 신체구조, 외양, 목소리가 바뀌는 2차 성장을 거치게 되며 정신적으로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며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해 사색을 하거나 주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설계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잘 적응하지만 한편 일부 청소년들은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부적응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춘기가 시작되는 12, 13세경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17세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Allen, Moore, & Kupermine, 1997).

과도기로서 청소년기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부적응의 문제는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와 같이 부적응의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행동은 ‘비행’ ‘일탈행동’ ‘범죄’ 등의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용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다른 용어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 ‘일탈행동’ ‘범죄’ 등과 같은 용어 대신 지

난 2001년 청소년 개발원에서 실시한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에서 제시된 ‘청소년 문제행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청소년 문제행동’ 은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혹은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는) 행동들’ 을 의미한다.

지난 2001년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에 따르면 청소년 문제행동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종원 외, 2001).

<표 IV-1> 청소년문제행동 유형

규범적 문제행동	표출형 문제행동
	유혹/풍속형 문제행동
	권위반항형 문제행동
법률적 문제행동	폭력/절도형 문제행동
	성 비행
	도피형 비행
사이버 문제행동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

2)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생물학적 접근은 문제행동의 원인을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생리적 구조에서 찾으려고 하는 입장이다.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문제행동을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사람과는 다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신체적 특성이나 생김새 등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심리학적 접근은 개인적 동기나 성격적, 정서적 특성에서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입장이다. 심리학적 입장에서는 문제행동이 정상인과는 다른 성격이나 정서적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전제하며,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성격검사나 정서적 측면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사회학적 접근은 비행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보려는 접근방법이다.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가정환경, 가족 또는 가족 외의 구성원과의 관계,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등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나타난다고 전제하며,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사회구조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론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3가지 입장 중 생물학적 접근은 너무나 결정론적이기 때문에 최근 연구들에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한번 문제행동을 일으킨 청소년은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재사회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없다. 생물학적 특징이 변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접근과 사회학적 접근이 병행하여 사용된다.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과 사회의 구조적 특징이 상호작용하면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해업소’에 초점을 둔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 접근 보다는 사회학적 접근이 보다 타당하다. 업소 자체가 사회 구조로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유해업소라는 사회적 구조(환경)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들은 유해업소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다시 사회구조 지향이론과 사회과정 지향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사회구조 지향이론

청소년 비행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다양한 개입 전략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비행이 개인적 변인이나 가정 또는 학교라는 미시체계 변인들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포함한 여러 변인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Farrington, 1999; Lipsey & Derzon, 1999).

특히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사회구조 지향이론에서는 개인의 행동의 이탈을 환경 및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 관점에서는 문제행동 행위자들의 행동을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박탈에 대한 반응으로 특징짓는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의 성공적인 목표에 대한 성취 기회의 결핍을 중요시 한다. 여기에 따르면 청소년 문제행동은 하류계층의 사회나 대도시의 빈민층에 많이 나타난다.

사회구조이론은 다시 긴장이론과 문화전달이론으로 나누어진다(권이중, 1996).

첫째, 긴장이론에서는 개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적 성공이나 목표달성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긴장감이나 조절감이 비행을 유발시킨다고 본다. 사람들이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분히 사회 계층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다. 상류계층과 다르게 하류계층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성공은 훨씬 힘들어진다. 여기에서 생기는 긴장과 좌절감으로 인해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은 쉽게 문제행동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이론은 뒤르케임(Durkheim)의 아노미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머튼(Merton)은 아노미 개념을 문제현상에 적용하여 긴장이론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긴장이론은 사회 속에서의 문제행동과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문제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효과적이거나, 개인 내부에서의 문제화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긴장이론의 문제는 중상류층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문제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발생은 중상류층에서 그 발생률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

이론으로는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치가 못하다.

둘째, 문화전달이론에서는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사회적 제도나 지역사회의 통제력 결핍을 꼽는다. 이 관점에서는 도시지역의 하층민들이 중류 문화와 갈등을 이루는 하류 문화에 집착하여 자신들의 문제행동을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

(2) 사회과정 지향이론

사회구조지향이론은 특정의 지역에 존재하는 문제행동의 사회적 원인을 잘 지적하고 있으나 사회적 해체를 강조한 나머지 문화적, 인종적 요소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점, 소위 ‘문제행동 지역’에 존재하는 ‘문제행동을 저지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설명력의 부족, 빈민가가 아닌 지역에서의 높은 비행 발생률에 대한 설명 부족, 그리고 사회 심리적 요소 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지 못한다.

사회과정지향 이론에서는 사회구조 지향이론과 문제행동의 개인적 환경적 이론과의 연계를 설명한다. 대표적인 사회과정지향 이론으로는 차별접촉이론과 통제이론이 있다.

첫째, 차별적 접촉이론은 썬들랜드(Sutherland)가 제안한 것으로 이 이론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보며, 모든 행동을 학습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문제행동도 학습된 것으로 보며, 문제행동의 학습은 초기에는 사소한 비형식적인 집단에서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집단적 경험의 형태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별접촉 이론에서는 문제행동의 학습과정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 문제, 문제행동 발달과정에 있어서의 개인 성격변인에 대한 설명 부족, 실증적 측정에서의 애로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통제이론은 허쉬(Hirschi)에 의해 체계화 된 이론으로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이유가 사회의 통제력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으로 보는 관점이다. 청소년통제 특히 문제행동을 통제해 주는 요인으로는 가정과 학교의 요인을 중요시한다. 통제 체제는 개인적 통제와 사회적 통제로 구분된다. 개인

적 통제에는 심리적 요소 즉,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의 개념이 포함되며, 사회적 통제요소로는 사회적 유대나 애착 즉, 종교, 가정적 요소, 학교경험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유해환경과 청소년

(1) 청소년과 환경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인간의 행위를 결정함에 있어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이 인간의 행위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중립적 요인은 아니다. 환경의 영향은 인간의 자유의지 만큼이나 인간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환경은 성장과정에서 큰 영향을 준다.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 긍정적인 물리적 사회적 환경은 이들이 성숙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환경이 인간의 성장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학문영역이 인간발달생태학(human developmental ecology)이다. 인간발달생태학은 환경적 상호연결성과 그 상호연결성이 심리학적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힘에 관한 하나의 이론적 관점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이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은 대인간 과정들(interpersonal process), 예컨대, 강화, 모델링, 동일시 및 사회학습 등에 대한 이론들이다. 이러한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유전적 요소, 가정의 역사, 사회경제적 수준, 가정 생활의 질, 문화적인 배경과 같은 요인들이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다고 본다. (이명숙, 1996)

대표적인 생태학적 이론가인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는 인간의 발달에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등의 여러 환경적 체계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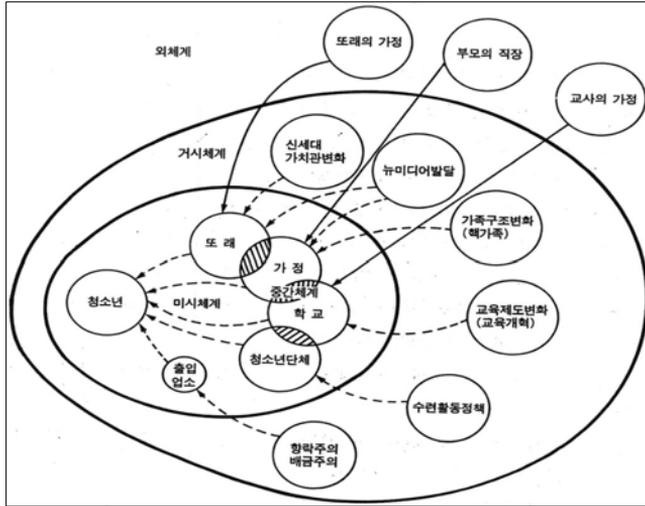
미시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의 독특한 물리적·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환경 내에서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대인관계의 유형이다. 여기서 환경이란 가정, 학교, 청소년 단체 및 각종 업소 등과 같이 사람들이 쉽게 얼굴을 마주 대하는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장소이다. 활동, 역할, 그리고 대인관계의 요인들은 미시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또는 미시체계를 구성하는 건축 자재인 셈이다

중간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간의 상호관계(interaction)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경우는 가정과 학교, 가정과 또래집단, 학교와 청소년 단체 사이의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이다. 중간체계는 발달하는 개인이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할 때마다 형성되거나 확대된다. 이러한 일차적인 연결 이외에도 상호연결성에는 많은 부가적인 형태의 상호연결고리(interconnections)들이 있다.

외체계란 하나 이상의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달해 가는 개인이 그 환경들 속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 환경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환경이다. 외체계의 예를 들면,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장, 순위형제가 다니는 학교 학급, 부모의 친구 조직망, 지방 교육청의 활동 등이 포함될 것이다.

거시체계는 주어진 문화 또는 하위문화내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그리고 외체계의 형태와 내용이 나타내는 일관성을 의미하며, 그런 일관성에 기초가 되는 신념체제 또는 이념을 의미한다.

이처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유해업소는 그 특성상 미시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이명숙, 1996).



[그림 IV-1] 청소년 생태환경 체계

(2) 유해환경의 개념과 특징

환경은 인간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생태학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환경은 인간의 성장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 즉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이상섭, 1991).

일반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 그리고 청소년과 그러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유해한 영향의 결과’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의 특성은 첫째, 환경의 유해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즉, 어떤 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판단의 주체나 판단기준, 청소년의 연령, 사회풍토, 사회문화적 맥락, 특정환경의 운용형태 등 여러 가지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대성은 유해환경의 규제가 청소년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도종수 외, 1990). 둘째,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미시적 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시적 환경요소들을 포괄한다.

(3) 유해환경과 유해요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환경의 관련성은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가 관련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요인(risk factor)과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쾌적요인(resiliency factor) 또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파악되는 유해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IV-2> 청소년 환경별 유해요인

개인/또래집단	반항심
	문제행동을 하는 친구
	문제행동에 대한 호의적 태도
	문제행동을 어릴때 시작함
	개인의 체질적 요인(심리적 생물학적)
가정	문제행동에 대한 가족내력
	가정관리문제
	가족갈등
	문제행동에 호의적이고 휩쓸리게 하는 부모의 태도
학교	어려서 계속되는 반사회적 행동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학구적 실패
	학교에 대한 열의 부족
지역사회	약물의 가용성
	무기의 가용성
	약물사용, 무기, 범죄 등에 대한 우호적인 지

	역사회 법규와 규범
	대중매체의 폭력에 대한 묘사
	전이와 이동성
	낮은 지역사회 친밀도와 지역사회 조직화
	극도의 경제적 궁핍

* Howell and Bilchik, 1995 참조

3. 선행 연구 개관

1)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유형은 접근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해업소 관련 법규정을 중심으로 한 ‘법적접근’ 과 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접근’ 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법적 접근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법적인 접근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항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법적인 접근에서는 유해업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구분하고 있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별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 (5)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 상호간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6)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 대여업과 동법에 의한 비디오물 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4) 삭제 <2004·1·29>
-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판매업 및 취급업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2) 기능적 접근

기능적인 접근은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해성에 근거하여 유해업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문조·김선업(1992)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는 다방, 카페, 룸싸롱, 술집, 당구장, 여관, 카바레, 사창가 등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고 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 업소 및 자체적으로는 유해업소로 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 업소를 모두 포괄한다(김문조·김선업, 1992)

이러한 기능적 접근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형 또한 업소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준호·박정선(1995)은 유해업소를 크게 오락성업소와 성인용업소로 나누고, 각각을 5개의 하위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오락성업소로 분류된 업소는 오락실(성인오락실, 전자오락실), 만화·비디오가게(만화가게, 만화방, 비디오가게, 비디오방), 롤러스케이트, 당구장, 노래방 등의 다섯 유형의 업소이다. 이에 비해 성인용업소에 포함되는 업소들은 술집(스탠드바, 룸싸롱, 생맥주집, 호프집, 단란주점, 소주방 등), 포장마차, 디스코장(디스코 나이트클럽, 락카페, 카바레, 성인디스코), 숙박업소(여관, 여인숙, 호텔), 매춘업소(사창가, 퇴폐이발소) 등의 다섯 유형의 업소들이다.

2)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 문제행동

(1)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청소년 문제행동

많은 연구를 통해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주로 사회해체론에 바탕하여 진행된 연구들이다. Roncek & Maier(1991)의 연구에서는 술집(Bar)가 많은 지역에서 폭력, 강도, 강간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현희(1994)는 유흥업소의 숫자에 따른 지역특성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폭력범죄발생이나 절도범죄발생에 있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기회제공변수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성우(2004)의 연구에서도 따르면 유해업소(풍속대상업소)의 수가 많은 수록 5대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인섭과 진수명(1999)의 연구에 따르면 유흥업소 수와 저소득자의 비율이 폭력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유흥업소의 수가 많고, 저소득주민의 구성비가 적은 지역에서 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거주환경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정문성(1992)에 따르면 유흥업소지역 청소년들이 ‘폭력 및 성적 비행’ 이나 ‘가출비행’ 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거지역에 따라 청소년들의 비행 경험의 차이가 있었으며 나아가 비행유형에도 차이를 보였다.

(2) 유해업소 출입경험과 청소년 문제행동

지역사회에서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지역중심적인(거시적인) 입장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이라는 구체적인 미시적인 행위에 관심을 둔 연구들 또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유해업소 출입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분석방법에 따라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의 성과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① 상관관계분석

선행연구들에서는 업소출입경험과 문제행동경험과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유해업소 출입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도종수, 이광호, 임상숙, 김영아 (1990)에 따르면 유해시설 이용경험과 각종 비행 경험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흥가, 사창가, 카페, 심야만화가게, 디스코장 등의 이용경험은 비행경험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김문조, 윤옥경, 이춘화(2000)에 따르면 유해업소 출입과 비행경험 사이에는 $r = .32$ 의 상당히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유해업소 접촉이 비행의 매개 또는 비행의 한 단면이라고 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호진과 이명선(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음주경험, 흡연경험, 성경험, 음주경험이 있는 집단의 유해환경(유해업소)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회귀분석

업소출입경험과 문제행동경험과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 비해 회귀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은 업소출입경험을 독립변인으로 문제행동경험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Paetsch & Bertrand(1997)는 유흥업소이용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상업/유흥업소 이용경험이 비행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문조, 윤옥경, 이춘화(2000)이 실시한 비행경험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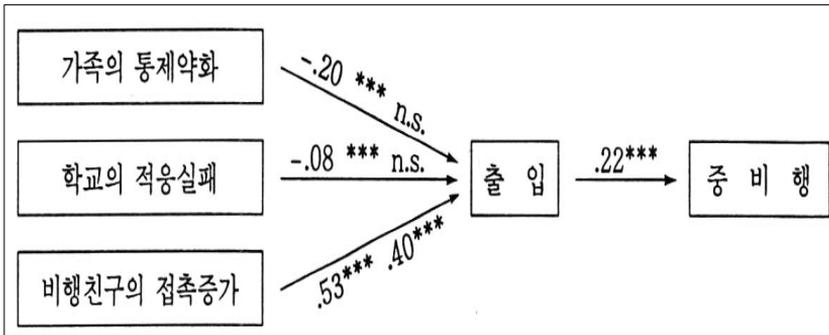
한 회귀분석결과 비행경험에 대한 유해업소출입 변수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 (유해) 업소출입은 비행경험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드러났으며, 여타 변수들이 통제된 후에도 그 영향력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③ 경로분석

기존의 연구에서 진행된 회귀분석의 결과 업소출입경험이 문제행동경험에 주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업소출입경험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변인들과 업소출입경험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업소출입경험을 포함한 여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이 사용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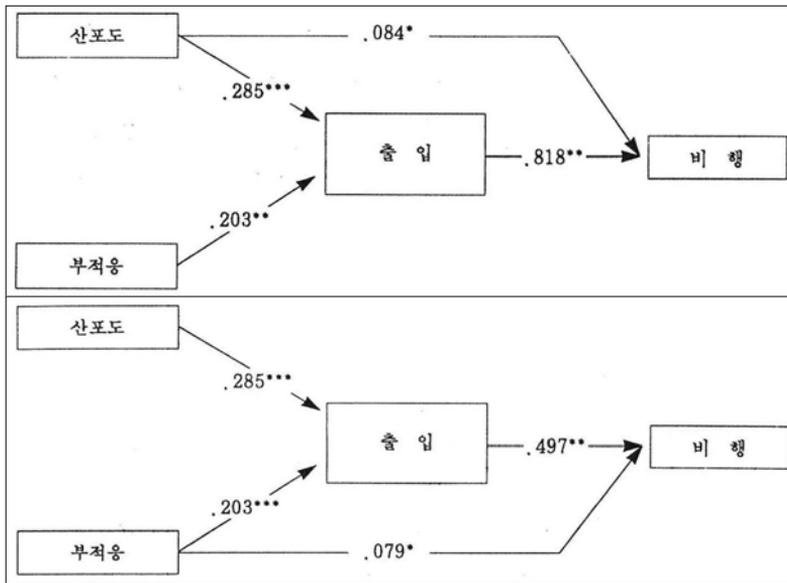
경로분석에는 문제행동(비행)이 종속변인으로 유해업소출입경험, 가정의 통제, 학교생활의 적응도,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의 요인들이 독립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해업소출입은 가정의 통제 부족이나 학교에서의 부적응으로 일어나는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준호와 박정선(1996)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 및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구를 통해 유해환경출입이 비행으로 가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IV-2] 유해환경 출입 경로분석

김문조와 이성식(1994)은 경로분석을 통해 유해환경출입이 청소년 비행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즉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실패한 아이들이 바로 비행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오락실이나 술집 등과 같은 유해환경에 출입함으로써 술이나 담배 등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보다 심한 비행행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IV-3] 부적응청소년 유해환경 출입 경로분석

3) 선행연구의 문제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해업소가 존재하는 것이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해업소 출입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유해업소의 존재’ 혹은 ‘유해업소 출입’ 등이 가지는 유해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유해업소 자체의 특징

이나 유해업소 내부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유해업소가 가지는 유해성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유해업소가 무엇인지?”, “유해업소가 왜 유해한지?” 등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유해업소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유해업소의 개념이나 유해업소의 유형구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어떤 업소가 유해업소인지에 대해 법적인 접근과 기능적인 접근이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연구자에 따라 유해업소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또한 유해업소를 격리하거나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피상적인 대책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해업소가 가진 유해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유해업소가 어떠한 유해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유해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유해요인 도출을 통해 유해업소가 가지는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유해업소의 범주를 구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4.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심층면접,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1) 문헌연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문헌을 수집·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기존의 사회학적 이론들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기존 연구에 대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문헌연구에 바탕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개념, 청소년 유해업소의 유형과 유해성, 유해업소 출입과 문제행동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었다.

(2) 심층면접

유해업소들의 유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Kahn & Cannell(1957)은 면접이란 목적을 가진 대화라고 기술하였다. 질적 심층면접은 미리 설정된 반응 영역을 사용하기보다는 비형식적, 대화 형태를 취한다.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견해를 알기 위해 몇 가지 일반적 주제를 탐색하지만, 참여자의 반응을 기초로 해석의 틀을 세우고 구조화하는 방식을 존중한다(Marshall & Rossman, 1999). 사실 이것이 바로 질적연구의 근본적인 가정이다. 이야기는 참여자가 자신이 보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이다. 깊은 이해는 긴 대화나 심층면접을 통해서 면접자와 참여자가 의미를 상호-구성하면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유해업소에 출입하면서 유해요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이들 청소년들을 주로 지도하는 ‘생활교육부’(학생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유해업소의 개념과 종류를 구체화할 수 있었고 유해업소에 내재하는 유해요인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도 가능하였다. 나아가 설문

응답에 대한 통계분석의 결과의 해석 및 대책 수립과정에서도 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3) 설문조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교육청), 학교급별(중·인문고·실업고), 성별로 학생청소년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및 유해요인 접촉 실태에 대해 확인하였고 유해요인의 접촉 확산 경로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나아가 경로분석을 통해 유해요인들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4)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

유해업소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설문문항의 타당도 검토를 위해 현장 교사들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수립과 관련하여 학계, 연구기관, 학교현장에 계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2) 연구의 절차

(1) 1단계: 문헌연구

2005년 6월말까지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2단계: 전문가 자문 및 자문회의

2005년 7월 중순까지 학회 및 여타 전문가 집단과의 개별접촉 및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구계획을 수정하였다.

(3) 3단계: 청소년과 교사에 대한 심층면접

2005년 7월말부터 8월 초에 걸쳐 청소년과 교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연구문제 1을 검토하였다.

면접대상 청소년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로서 고등학생 9명(남자고등학생 4명, 여자고등학생 5명), 중학생 4명(남자중학생 2명, 여자중학생 2명)이었다. 면접대상 교사는 총 5명으로서 중학교 교사 2명, 고등학교 교사 3명이었다.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해업소가 가지고 있는 유해요인을 도출하였고 이에 바탕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의 개념을 재구성하였다.

(4) 4단계: 설문지 작성 및 설문조사 실시

2005년 8월말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 1개학급을 대상으로 pilot-study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 유해업소 출입실태에 대한 질문
- 유해요인 접촉경험에 대한 질문
- 유해요인 접촉경로에 대한 질문
- 유해요인 확산경로에 대한 질문
- 문제행동 측정을 위한 질문
- 배경 변인에 대한 질문

2005년 9월초 완성된 설문지를 인쇄하여 표집된 학교들에 배부하였다. 표집된 학교들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20개교였다. 표집 방법은 다단계 층화 표집(교육청/학교급)을 사용하였고 통해 다음과 같이 중학교(총 366개교 중) 9개교, 인문계고등학교 6개교(총 295개교), 실업계고등학교(총 80개교) 4개교, 인문계고등학교(특지) 1개교가 대상학교로 선정되었다.

<표 IV-3> 설문조사대상

강서교육청	양천중학교	강서공업고등학교
남부교육청	영원중	경인고등학교
동작교육청	남서울중	인현고등학교
강남교육청	서초중	구정고등학교
강동교육청	송파중	명일여자고등학교
성동교육청	행당중	덕수정보산업고등학교
동부교육청	동원중학교	면목고등학교
북부교육청 (성북교육청포함)	수송중학교	도봉정보산업고등학교
		수락고등학교
중부교육청		경기상업고등학교
서부교육청	연희중	
특지		한광고등학교

(5) 5단계: 설문분석

2005년 9월초 20개 학교에 각각 70부씩 총 1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306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수거율은 93.28%로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처럼 설문지의 수거율이 높은 것은 유해업소 개선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 교사 및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지에 대한 코딩작업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연구문제 (2)에 대한 검토
 -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 실태에 대한 분석
 - 유해요인 접촉 및 확산경로에 대한 분석
- 연구문제 (3), (4)에 대한 검토
 - 유해요인들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 유해요인들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설문조사분석을 통해 얻어진 통계 자료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위해 유해업소와 유해요인 선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던 교사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다시 실시하였다. 이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었다.

(6) 6단계: 대책마련 및 보고서 작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과 교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직접 단속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도경험이 있는 생활교육부 교사들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해업소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다.

5. 설문분석결과 및 시사점

기본적으로 기존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유해업소 출입 자체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해 유해업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대책만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한 출입 제한이 아닌 유해요인 접촉 제한 나아가 유해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유해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해업소에서의 유해요인 접촉 실태에 대한 분석 유해요인 접촉 경로와 확산 경로에 대한 분석 유해요인과 문제행동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유해업소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1) 유해요인 접촉실태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

유해업소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유해업소는 출입경험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가정에서의 불만족이나 또래집단의 부정적 영향력 등이 유해업소 출입을 통해 발현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핵심적인 매개변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유해업소의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즉,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각종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해업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채, 단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인 유해성을 가정하고 이에 바탕하여 각종 논의를 진행해왔다.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유해업소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들은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인 업주들의 이의제기에 부딪혀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청소년들이 실제 출입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유해업소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유해요인에 얼마나 접촉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유해업소들이 가지는 유해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는 새롭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기된 개선대책수립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해업소들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인식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유해업소들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추상적인 개념으로 혹은 유해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인식정도로 간주되던 유해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으로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가지의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분석기법은 유해업소 출입경험자들 중 유해요인 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빈도분석이다. 업소내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유해요인 접촉의 빈도가 높을수록 업소의 유해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유해요인 접촉경험에 대한 빈도분석결과 각각의 업소들이 가지는 유해성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구분되어 있는 성인PC방/비디오/DVD방, 여관 등의 유해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4>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해업소	유해요인접촉비율
도서대여점/비디오 및 DVD대여점	11.7
오락실	25.3
슈퍼/마트/편의점	28.2
PC방	34.0
카페/식당	37.5
노래방	41.9
당구장	43.4
찜질방	49.4
성인PC방/비디오/DVD방	68.4
여관	74.5
술집	78.8

두 번째 분석기법은 유해업소 출입과 유해요인 접촉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상관계수가 클 수록 유해업소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모든 업소에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유해업소에 출입이 유해요인 접촉과 연관되는 것이다.

<표 IV-5> 유해업소 출입경험과 유해요인접촉간의 상관도

유해업소명	출입경험과 유해요인접촉경험간의 상관관계
도서대여점	.143
슈퍼/마트/편의점	.247
PC방	.293
오락실	.303
성인PC방/비디오/DVD방	.304
카페/식당	.371
찜질방	.378
노래방	.380
당구장	.392
여관	.402
술집	.544

이러한 분석을 통해 유해업소 출입이 유해요인 접촉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유해성의 강도가 업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가 가진 유해성에 따라 다른 차원의 대책을 구분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즉, 출입 자체가 유해요인 접촉으로 이어지는 유해성이 강한 업소에 대한 대책과 그렇지 않은 업소들에 대한 대책이 다르게 제시되어야 한다.

유해성이 강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소들에 대해서는 유해요인 접촉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잠재적 유해업소와 실제적 유해업소의 구분

유해업소들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할 점은 유해업소 출입이 즉각적으로 유해요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더라도 유해요인에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해요인을 보유한 ‘잠재적 유해업소’들 중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업소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의 출입이 허용된 업소 대부분은 청소년 유해요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도 함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소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들에게 유해요인 접촉을 발생하는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을 차별화할 것을 제안한다. 즉 모든 업소에 대해 동일한 대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고있는 업소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소를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소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3) 유해요인 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접촉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구분

본 연구를 통해 모든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유해업소에 출입한 모든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출입이 허용된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해업소나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차별화할 것을 제안한다. 즉 모든 청소년에 대해 동일한 대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과 그렇지 못한 청소년을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유해요인의 접촉 및 확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 경험만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과정과 유해요인들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은 기존의 유해업소 연구에서는 유해업소 내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이 접촉이 일어나는 과정이 일종의 블랙박스로서 인식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업소측의 관리소홀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유해요인 접촉노력에 의한 것을 확인되었다. 또한 유해요인 접촉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부모와 또래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유해요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통해 제기된 대책의 방향(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해요인 접촉: 업소와 청소년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유해요인을 보유한 잠재적 유해업소에서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과정인 접촉경로에 대한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유해요인에 접촉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유해요인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업소측에게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을 막기 위해서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기 위해

거짓말, 신분증 변조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도 확인되었다. 그 결과 업주측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출입노력이 업주측의 관리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심층면접을 통해 몇몇 청소년들이 업주에게 자신들의 나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거나, 형이나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아니었지만 유해요인 접촉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에게서는 부분적으로 유해요인 접촉에 있어 업주측의 책임보다 청소년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유해요인 접촉 의지를 가지고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림 IV-4] 잠재적 유해업소에서의 유해요인 접촉 경로모형도

(2) 유해요인 확산: 가정과 또래집단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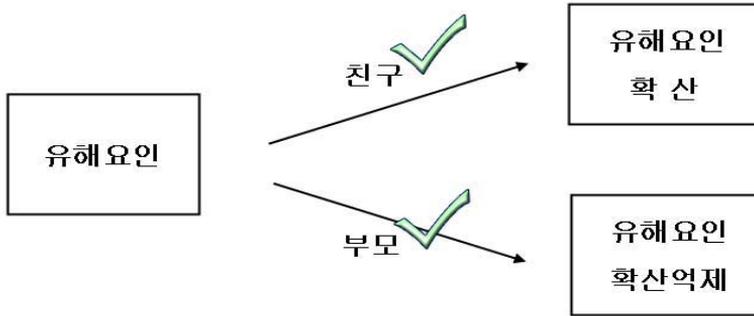
청소년들간에 유해요인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친구와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친구와 부모의 역할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나타냈다. 친구는 유해업소에서의 유해요인 접촉을 확산시키는 특징이 있었으나 부모는 이를 축소(무력화)하는 특징이 있었다.

유해업소에 친구들과 함께 출입한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함께 출입한 청소년들보다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유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은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즉, 친구는 유해요인 접촉의 확산을 가져오는 변인으로,

부모는 유해요인 접촉의 확산을 방지하는 변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해업소 출입시 동반자	친구→유해요인 접촉 확산○
	부모→유해요인 접촉 억제×

따라서 유해업소가 가지는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래 집단과 가정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또래집단과 가정에 대한 대책은 유해업소 개선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보다 추상적인 청소년 문제행동 개선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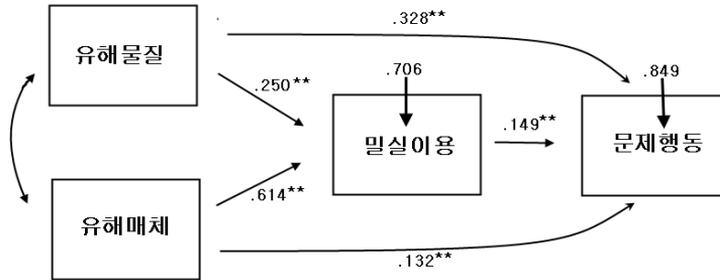
[그림 IV-5] 유해요인 확산 모형도

3) 유해요인과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유해요인들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에 대해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사대상 청소년 중 유해업소 출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접촉과 문제행동간의 경로분석을 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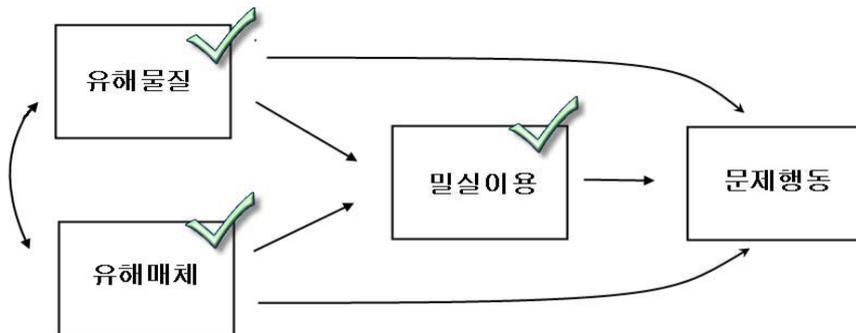
그 결과 유해업소내의 유해요인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과정이 밝혀졌다.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되었던 5가지의 유해요인 중 유해물질, 유해매체, 밀실 등의 유해요인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림 IV-6] 유해요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볼때 유해업소 개선을 위해서는 유해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3가지의 유해요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모든 유해요인에 대해 적절한 관리조치를 하는 것이지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때 모든 유해요인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3가지의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IV-7] 유해요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모형

6.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해업소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위한 몇가지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효과적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청소년 유해업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적 유해요인과 간접적 유해요인을 모두 갖춘 ‘유해업소 유형 1’ 뿐만 아니라 간접적 유해요인이나 직접적 유해요인 중 한 영역만을 갖춘 ‘유해업소 유형 2’와 ‘유해업소 유형 3’을 모두 포함한다.

<표 IV-6> 유해요인중심의 유해업소 분류 유형

구 분	직접적 유해요인○	직접적 유해요인×
간접적 유해요인○	유해업소 유형 1	유해업소 유형 3
간접적 유해요인×	유해업소 유형 2	유해업소×

‘유해업소 유형 1’은 유해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이다. 반면 ‘유해업소 유형 2’와 ‘유해업소 유형 3’은 비록 유해요인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청소년 이용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와는 달리 ‘청소년 이용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

도로는 청소년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

<표 IV-7> 유해요인 중심의 청소년출입 분류 형태

구 분	직접적 유해요인○	직접적 유해요인×
간접적 유해요인○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청소년 이용 가능업소
간접적 유해요인×	청소년 이용 가능업소	청소년 이용 가능업소

따라서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은 이와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 개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 대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는 법적 제도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출입 여부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청소년들이 이들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업소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반면 ‘청소년 이용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출입 제한은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 업소에 대한 대책은 업소내부에서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유해요인들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표 IV-8> 유해업소별 청소년출입관리 체계

유해업소명	청소년 출입여부	대책의 기본방향
성인PC방/비디오/DVD방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청소년출입관리
여관		
술집		
도서대여점	청소년 이용가능 업소	유해요인관리
슈퍼/마트/편의점		
PC방		
오락실		
카페/식당		
찜질방		
노래방		
당구장		

이와 같은 유해업소의 특징을 고려하고 설문분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영역들을 확인하였다. 이들 영역들은 유해업소의 특징과 청소년들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표 IV-9> 유해업소별 청소년대책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청소년 이용가능 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청소년에 대한 개선 대책	출입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
		출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
청소년 이용가능 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청소년 이용가능 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	청소년에 대한 개선 대책	접촉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 출입금지와 같은 포괄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개선대책이 필요한 영역에 따라 구체적이고 적절한 대책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개선대책

(1) 업소에 대한 대책

분석결과 유해업소 중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술집/유흥주점, 여관, 성인PC방/비디오/DVD방 등에서 청소년들의 출입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출입은 일차적으로는 업소측의 관리 소홀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다른 한편으로는 업소 측의 출입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의 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술집/유흥주점, 여관, 성인PC방/비디오/DVD방 등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에서 분리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이다. 이들 업소는 일단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의 업소들이다.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출입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대책들이 주로 요구된다.

둘째, 잠재적 유해업소 중 출입관리가 소홀하여 청소년들의 업소출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이다.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 등의 징벌적 차원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들 업소들에 대한 관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의 핵심은 업소내에서 청소년들의 출입시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유해업소 자체가 청소년들의 출입을 걸러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예방적 차원의 조치들을 대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예방 조치를 통해 이들 업소들을 ‘청소년 선도 모범업소’ 로서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청소년 출입 예방 교육 실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들에 대한 청소년 출입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 업소의 업주나 종업원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업소에 내재해 있는 유해요인들의 유해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자율적인 청소년 출입 예방활동 장려

지역단위로 같은 업종의 업주들끼리 자율협의체를 조직하고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역협의체를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협의체는 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마다 청소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 들로부터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성인 인증 지침의 개발 및 보급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주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업소를 보호하기 위해 ‘성인인증지침’ (가칭)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출입객에 대해 업소측에서 ‘성인인증지침’ 을 잘 준수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업소측의 출입 금지 노력을 인정하고 청소년 출입으로 인한 행정상의 불이익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인인증지침’ 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업소측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신분증 없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출입객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어 있는 출입객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실물이 다른 출입객
--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하여 청소년 출입 근절을 위한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첨단 IT 기술을 활용하여 출입객 자신이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성인임을 인증받는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이 가능할 것이다.

②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대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들 중 일부 업소들에서는 청소년을 출입시켜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해요인에 접촉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가) 단속의 실효성 확보

설문분석을 통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들의 출입이 확인되었다. 법적으로 이와 같은 청소년 출입은 처벌대상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단속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 출입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하여 신고에 의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학부모회, APT 부녀회 등의 지역사회 차원의 학부모 단체들과 연계하여 ‘시민단속반’ (가칭)을 구성할 수도 있다.

(나) 처벌의 강화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 이들 업소들이 받게 되는 기존의 처벌은 영업정지, 과징금 등과 같이 행정적 처분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행정적 처분은 많은 업주들로 하여금 청소년 출입금지를 위한 관리 노력을 하게 하는 효과적인 대책이다.

그러나 몇몇 업주들은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청소년들의 출입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악의적인 영업을 하는 업주들에게는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업주와 종업원이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하고 청소년들의 상습적인 출입을 허용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에 대한 대책

업소에 대한 대책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몇몇 청소년들이 이들 업소에 출입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업소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출입경험 유무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유해업소 출입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예방교육이 효과를 가지겠지만 유해업소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예방교육만으로는 유해업소 출입 및 유해요인 접촉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① 유해업소 출입 경험이 없는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출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방적 조치로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유해업소 출입 예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은 크게 학교교육 차원과 사회교육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학교교육차원의 출입예방 교육 실시

현재의 학교교육과정에서는 교과과정 뿐만 아니라 교과외 과정에서도 이러한 유해업소들의 유해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들의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친구들의 권유로 출입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을 통해 유해업소 출입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업소에 대한 청소년들의 출입이 성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게 되는 고등학교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볼때 중학교에서 부터 예방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유해업소 출입예방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

요하다. 유해업소 출입의 유해성과 그에 따른 책임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수준에서 개발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교육 프로그램에는 실제 예방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유해업소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의 유형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신고 및 고발 요령

또한 유해업소 출입예방 교육은 교과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하여 체육, 사회, 도덕 등의 관련 교과교육을 통해서 시행될 수 있다. 만약 교과교육과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중 일정 부분을 배당하여 예방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나) 사회교육차원의 출입예방 교육 실시

학교교육만으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예방을 위한 충분한 교육이 시행되기 어렵다. 학교교육에서 지도해야할 내용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기 때문이다. 교과 영역이외에도 유해업소 출입예방교육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양한 주제들이 범교과 학습 영역이라는 명칭으로 다음과 같이 학교현장에서 다루어진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 범교과 학습은 재량 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관련되는 교과와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

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이처럼 다양한 영역의 범교과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 유해업소 출입예방교육만을 특별하게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이 아닌 사회교육 차원에서 유해업소 출입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TV나 라디오와 같은 방송매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언론출판매체, 그리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업소 출입예방 캠페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유해업소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해 본적이 없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출입예방교육이 효과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업소에 출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예방교육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미 출입금지업소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서비스(유흥), 즉 만족에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유해업소 출입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한 청소년들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대한 청소년들의 출입이 적발될 경우 대부분 청소년들은 선도 차원에서 훈방조치되고 업주들만 처벌받는다. 업주에게는 법적 제도적 불이익이 돌아가지만 청소년들은 단속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만 15세 이상의 고등학생들이고 이들 업소가 출입금지업소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자신들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 업주만 처벌받는 것을 알고 있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는데 대해 별다른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다 적발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 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청소년 자신이 직접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아가 자율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한 청소년들에게 가능한 교육적 처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될 수 있다.

(가) 사회봉사 처분

청소년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기간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유해업소 출입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시간 동안 이수하도록 처분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유해업소에서 제공하는 성인들의 문화 대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 상담 처분

부모님과 함께 하는 상담 처분이다. 가정이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억제 요인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받음으로써 청소년들은 유해업소 출입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개선대책

유해요인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청소년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업소들의 경우에는 출입금지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이들 업소들은 성인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주요 영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거나

중립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V-10> 청소년 출입가능업소의 환경요인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도서대여점	청소년용 도서 대여 12세/15세 관람가 영상물 대여
	슈퍼/마트/편의점	각종 생활 편의품 판매
	PC방	청소년용 게임, 채팅, 인터넷 서핑
	오락실	청소년용 게임
	카페/식당	식사, 음료 서비스
	찜질방	목욕, 찜질
	노래방	노래부르기
	당구장	스포츠 활동

따라서 이들 업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이들 업소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제한 대책보다는 유해요인 관리대책이 적절한 조치이다. 특히 관리대상이 되어야 할 유해요인은 분석을 통해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물질과 유해매체, 그리고 밀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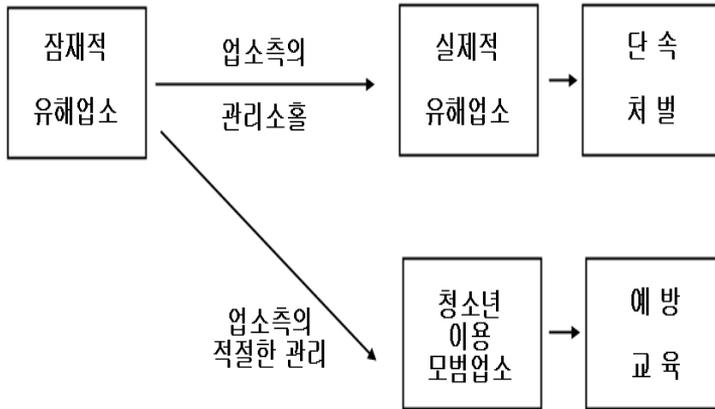
(1) 업소에 대한 대책

분석결과 유해업소 중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업소들에서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의 출입은 일차적으로는 업소측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와는 달리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는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출입가능 유해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유해요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들 업소를 ‘청소년 이용 모범업소’로 만드는 것이 대책의 기본 방향이 된다.

이를 위해 잠재적 유해업소 중 유해요인 관리지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이용 모범업소’ 인증을 실시한다. 청소년 이용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IV-8]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도

①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 대책

청소년 출입가능 유해업소는 청소년들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유해업소들이다. 각각의 업소들이 보유한 유해요인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IV-11> 청소년출입가능업소의 유해요인

구 분	유해물질	유해매체	문제친구	밀실	심야 영업
도서대여점		○			
슈퍼/마트 /편의점	○				
PC방	○	○	○		○
오락실	○	○	○		○
카페/식당	○	○	○	○	○
짬질방	○	○	○		○
노래방	○	○	○	○	○
당구장	○	○	○		○

이처럼 유해물질, 유해매체, 밀실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요인을 보유한 잠재적 유해업소들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해요인들에 대한 업소측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유해업소들에서 업소가 보유한 유해요인들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해준다면 이들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이들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의 핵심은 업소내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유해업소 자체가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통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예방적 차원의 조치들을 대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예방 조치를 통해 이들 업소들을 ‘청소년 이용 모범업소’로서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유해요인 관리 지침’ 보급

각종 청소년 이용모범업소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들 업소의 유해요인 관리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해요인 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

다.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유해요인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통해 업주와 종업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해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나) 유해요인 관리 교육

유해요인의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주 및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업주와 종업원들만이 유해요인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종의 면허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상당수의 업주들이나 종업원들이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혹은 제공하고 있는 유해요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 유해요인 접촉 예방 의무 부여

업소측에 대해 업소내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이나 음주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몇몇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들은 청소년들이 업소내에서 흡연 및 기타 문제행동을 하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출입을 통해 이윤을 얻고자 하는 업소 측에게 지속적인 매장 관리를 통해 자신의 업소내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에 대한 신고권 부여

업소측의 제지에도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신고권을 업소측에 부여한다. 업소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업소내에서 유해

요인에 접촉하고자 한다면 업소측이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담배를 소지한 청소년이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에서 업소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려고 할때 업소측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업소측에서 불이익을 우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들 청소년으로부터 업소측을 보호하기 위해 업소에서 이들 청소년을 각 지역 청소년 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②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잠재적 유해업소 내부에서 청소년들은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된다. 이 경우 잠재적 유해업소는 실제적 유해업소로 변화하게 된다. 유해요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처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단속 및 처벌을 통해 실제적 유해업소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적절한 ‘청소년 이용 모범업소’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가) 단속강화

청소년들이 업소내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할 경우 업소측을 처벌할 수 있도록 단속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한다. 특히 당구장, 찜질방 등과 같이 기존의 법과 제도에서 단속대상이 아니었던 업소들에 대해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활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할 경우 이에 대한 단속 규정이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당구장이나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더라도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업소내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였을 경우 업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단속근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

소년의 출입이 허용된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유해요인 접촉을 예방하기 위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노래방, PC방과 같이 심야영업이 금지된 업소에 대해 단속이 있기는 하지만 제한적이며 그 효과 또한 미미하다. 따라서 이들 업소에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나) 처벌강화

업소내에서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을 조장하거나 방관하는 업소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유해요인 접촉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 관리책임을 물어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 책임을 물어 유해요인의 판매 및 제공을 금지시키는 방법이다.

첫째,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유해업소들 중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을 금지시킨다. 즉 단속에 적발된 PC방, 당구장, 노래방, 찜질방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장기적으로는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청소년 이용 모범업소’에만 청소년들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과 연결된다.

둘째,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에 대한 접촉이 발생할 경우 이 업소에 대해서는 유해요인 자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슈퍼나 담배 소매상에서 술이나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판매할 경우 주류 혹은 담배 판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혹은 도서대여점/비디오 DVD 대여점의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물을 취급할 수 없게 조치할 수 있다.

(2) 청소년에 대한 대책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여가활동 및 또래집단과의 만남을 위해 업소들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업소 대부분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요인을 보유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업소측의 적절한 유해요인 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유해요인에 접촉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① 유해요인 접촉 경험이 없는 청소년

유해요인 접촉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가) 유해요인 접촉 예방교육 실시

현재 청소년들은 유해요인의 유해성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유해요인의 유해성에 대해 알지 못한채 친구들과 함께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상당수의 유해요인들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유해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요인의 유해성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유해요인 접촉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교육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예방교육은 학교교육보다는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청소년 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금연 캠페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반면 학교교육에서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단위학교 차원에서 금연교육계획을 세우고 가정통신문이나 시청각 교육 등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제시하는 등의 제한적인 노력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유해요인 접촉 예방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유해요인의 유해성에 대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해요인 접촉에 대한 예방교육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유

해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술/담배에 노출된 청소년의 문제행동
음란물/폭력물에 노출된 청소년의 문제행동
밀실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나) 유해업소 이용 지침 개발보급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을 보유한 업소들을 이용할 경우 지켜야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급한다.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PC방이나 오락실, 노래방 등이 밤 10시 이후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곳 인줄 모르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할 경우 ‘이용지침’에 대한 고지를 통해 업소내에서 청소년들이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지침을 통해 유해업소내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였을 경우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준다. 나아가 청소년들은 업소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지침을 확인하고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책임 있는 이용객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② 유해요인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방적 차원의 조치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유해물질 및 유해매체 등과 같은 유해요인들은 어느 정도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학생들을 유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속과 함께 교육적 목적의 보호조치들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가) 단속 강화

청소년들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유해업소내에서 흡연등과 같이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될 경우 현재의 법이나 제도로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제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업주나 종업원의 제지나 계도 등이 가능한 방법이지만 이는 청소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조치들이다.

따라서 유해업소내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업주가 직접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회가 나서야 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업소내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속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청소년들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흡연을 금지하거나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소내에서 청소년들이 흡연 등과 같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각종 업소나 심지어는 길에서 흡연을 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법체제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단속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단속활동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단속노력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단속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차원의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정의 학부모, 학교의 교사, 지역 사회의 청소년 지도자 등이 연계하여 경찰이나 공무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시민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신고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신고에 의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 보호 조치 마련

유해요인에 접촉하는 청소년들을 단속하더라도 업소측과는 달리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성인인 업주와는 달리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로서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해요인 접촉으로 단속에 적발된 청소년들은 징벌적 처벌보다는 교육적 처벌이 필요하다.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처벌은 유해요인으로부터 이들 청소년을 보호하는 보호조치의 성격 가진다. 물론 이러한 보호조치는 기본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의 노력에 바탕해야 하지만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유해요인 접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보호조치들이 함께 병행될 수 있다.

첫째, 가정에서의 보호조치이다. 유해업소내에서 유해요인에 접촉하다 단속에 적발된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가정에 인계되어 가정내에서 보호조치를 받게 된다. 이때 청소년의 보호자로서 부모는 청소년들이 유해요인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리해야할 책임을 진다.

둘째, 사회적인 보호조치이다. 가정에서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상습적으로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중독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의 보호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이들 청소년에 대해서는 중독의 정도에 따라 각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며, 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재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이들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7. 결론

청소년 유해업소는 그 속성상 이윤획득을 위해서라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흔들리게 된다. 청소년 유해업소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들은 실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사회적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개선 대책은 우리사회의 끊임 없는 과제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유해업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해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유해업소에 내재된 유해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밝혀내지 못하였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유해업소 내부의 어떤 요인이 문

제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의 영향력은 일종의 'Black Box'로 취급하여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에 바탕한 대책들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유해업소가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은 확인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해요인들이 문제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이나 고용 자체를 관리하는 대책을 세웠던 것이다. 그 결과 청소년 유해업소는 내재되어 있는 유해요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유해업소에 대한 규제를 통해 몇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유해업소의 유해성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없이 이루어진 기존의 대책들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예방이나 개선에 있어 적절성이나 타당성을 가지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내재되어 있는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유해요인들의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청소년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해요인 개념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로부터 유해한 영향을 받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적절한 억제모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유해업소에 내재한 유해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있는 사실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유해업소측의 관리 소홀과 청소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이 발생한다.

둘째, '유해물질접촉', '유해매체접촉', '밀실이용' 등의 유해요인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유해물질접촉’ 와 ‘유해매체접촉’ 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밀실이용’ 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바탕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유해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 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업소측의 자율적인 관리나 청소년들의 자제를 바랄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을 억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해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 를 위해 기존의 출입 금지 대책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대책들은 개별 유해업소들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연구결과들에 의해 보완되고 현실의 행정전문가들에 의해 다듬어져야 하지만, ‘유해요인에 대한 사회적 관리’ 라는 본 연구의 제안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기본 지침으로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V. 청소년 유해매체 개선 대책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인터넷 유해성 감소 및
 긍정적 활용을 위한 노력
4. 연구결과
5. 정책제언

V. 청소년유해매체 개선 대책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고도화된 산업화 사회를 경험함에 따라 한국사회는 경제적, 문화적으로 비약할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사회전반의 산업화, 정보화는 정보의 확산과 사회전반의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산업화, 정보화, 대중화에는 순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역기능적 측면도 도사리고 있다. 고도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황금만능의 소비향락 산업과 무분별한 대중매체의 만연, 정보의 필터링 과정이 거의 생략된 채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각종 유해정보들은 성인들은 물론 사회성과 윤리성의 과도기적 형성단계에 있는(이홍영, 2002) 우리 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보급된 인터넷의 영향력은 다른 어떠한 매체의 영향력보다 크다 하겠다.

인터넷의 영향력에 관한 다양한 청소년 대상 연구(윤분희 등, 2002; 주리에·권석만, 2001; Anderson, 2001)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청소년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과 관련한 청소년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¹⁾을 탐색하고 둘째,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감소

1)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청소년보호위원회, 2004)하는 5개 인터넷 영역(온라인게임, 온라인채팅, P2P 서비스 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포탈 사이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킬 수 있는 보호요소²⁾를 찾아내는 것을 주된 연구 내용으로 삼는다.

2) 연구내용

(1) 문헌자료고찰

선행연구 및 인터넷 자료고찰을 통해 (i) 인터넷 문제행동과 인터넷 접촉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ii)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된 개인·환경적 보호요소의 이론적 근거와 분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iii) 인터넷 유해성 감소 및 긍정적 활용을 위한 국내·외의 법적·제도적 노력과 지역사회단위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2)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i) 인터넷 영역별(온라인게임, 온라인채팅, P2P 서비스 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유해요인을 추출하고 (ii)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된 경로를 파악하였다.

(3) 청소년 설문조사

청소년 설문조사를 통하여 (i) 청소년의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 접촉과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 인터넷 관련 보호요소를 살펴보고 (ii)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iii)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의 인터넷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보호요소를 파악하였다.

청소년 설문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 접촉과 인터넷관련 문제행동, 인터

2)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호요소 분류 중에서도 청소년의 환경적 보호요소를 개인,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설명한 보겐슈나이더(Bogensneider, 1996)의 기준을 따르기로 하겠다.

넷 관련 보호요소는 어떠한가?

1-1. 청소년의 인터넷(온라인 게임, 온라인 채팅, P2P 서비스 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포탈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 경험은 어떠한가?

1-2. 청소년 인터넷관련 문제행동 수준은 어떠한가?

1-3. 청소년의 인터넷 관련 보호요소³⁾(개인,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 유해요인은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인터넷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의 인터넷 문제행동은 개인(자아존중감·도덕성), 가족(가족응집성·부모감독·부모자녀의사소통도), 또래(친구지지도·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 학교(교사지지도·학교생활만족도), 지역사회 보호요소(지역사회내 여가활동시설만족도·지역사회 미디어교육 경험)에 따라 어떻게 조절되는가?

3) 연구방법 및 절차

(1)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인터넷 영역별(온라인게임, 온라인채팅, P2P 서비스 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포탈 사이트)로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해요인을 추출하고 유해요인에 접촉하게 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5일(월)부터 2005년 9월 16일(금)까지 12일간 청소년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남녀 각 10명 씩 총 20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 청소년의 동의하에 심층면접

3)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개인관련 보호요소에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가족 관련 보호요소에 가족응집성, 부모감독, 부모-자녀 의사소통도, 또래관련 보호요소에 친구지지도,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 학교관련 보호요소에 교사지지도, 학교생활만족도, 지역사회관련 보호요소에 지역사회내 여가활동시설만족도, 지역사회 미디어 교육 경험을 설정하였다.

내용을 녹취하였으며 녹취된 내용을 분석하여 인터넷 영역별 유해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청소년상담을 주로 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상담팀장 1명, 상담원 1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심층면접조사지 및 전문가 의견조사지, 심층면접결과 분석 자료는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2) 청소년 설문조사

① 조사대상의 선정 및 표집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국의 중·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표집을 위하여 통계청 교육통계자료(2004)를 기초로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수에 따라 교급별, 지역별(서울시, 6대 광역시, 시·군지역), 성별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층화표집 하였다. 교급별(중학교, 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 지역별(서울시, 6대광역시, 시·군지역), 성별 학생 비율에 따라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시·군 지역별 대상 학교수를 선정하였으며, 학교별로 2학년 학급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10월 4일(화)부터 10월 14일(금)까지이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2.0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1,287부이며 이 중 1,053부가 수거되어 부실기재분을 제외한 1,048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의 전반적인 분포는 기술통계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t-test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변수간의 관계는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위계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② 변인별 조사도구 및 측정방법

(가) 인터넷 문제행동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기존의 중독, 비행위주의 문

제행동과 구별하여 ‘사이버 가해형’ 문제행동과 ‘사이버 비가해형’ 문제행동으로 나누어 구성한 이종원 외(2001)의 인터넷 문제행동 척도를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회귀분석을 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가능하도록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나)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 접촉

온라인 게임, 온라인 채팅, P2P 서비스 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의 유해요인은 청소년 심층면접조사결과와 전문가 자문결과를 기준으로 추출되었다. 각각의 문항별로 ‘전혀 없다,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거의 매일’ 로 측정하였다. 추출된 유해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V -1>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

구분	내용
온라인게임관련유해 요인	1) 게임도중 누군가가 화면에 욕을 하거나 싸움을 걸었다
	2) 게임 아이템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였다
	3)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해킹되었다
	4) 유료아이템을 과잉 충동구매 하였다
	5) 게임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야한 동영상·광고가 뜨거나 바이러스에 감염 되었다
	6) 게임을 하다 보니 지나치게 야하거나 폭력적이었다
온라인 채팅 관련 유해 요인	1) 성적인 내용의 쪽지나 대화 제의를 받았다
	2) 누군가가 첨부파일로 야하거나 무서운 파일을 보냈다
	3) 모르는 사람이 연락처를 요구하였다
	4) 성인사이트 광고가 떴다
	5) 누군가가 나에게 욕이나 폭언을 하였다
P2P 서비스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1) 원래 구매하려던 것과 다른 야하거나 무서운 파일이 첨부되어 들어왔다
	2) 파일을 다운 받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3) 사이트에 성인팝업 광고가 떴다
	4) 키워드를 쳤더니 야하거나 무서운 동영상이 검색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관련 유해요인	1) 방명록·게시판에 성적이거나 험뜯는 글이 남겨져 있었다
	2)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불법·유해사이트가 소개되거나 연결되어 있었다
	3) 성인인증이 필요 없는 유해한 내용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다
인터넷 포탈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1) 인터넷 주소를 잘못 검색해서 유해한 사이트나 팝업창이 떴다
	2) 광고·스팸메일을 열어보니 야하거나 폭력적인 사이트나 내용으로 연결 되었다
	3) 게시판이나 자료의 답 글에 유해 사이트가 광고 되어 있었다

(3) 인터넷 관련 보호요소

인터넷 관련 보호요소를 보겐슈나이더의 분류에 따라 개인(자아존중감·도덕성), 가족(가족응집성·부모감독·부모자녀의사소통도), 또래(친구지지도·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 학교(교사지지도·학교생활만족도), 지역사회(지역사회내 여가활동시설만족도·지역사회 미디어교육 경험)의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각각의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변수를 활용하여 각각 5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Spss Windows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항간 내적일치도를 확인하고 내적일치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변수는 문항에서 제외시켰다. 각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값은 최소 .71에서 최대 .88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변수별 측정도구에 대한 사항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다.

2.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 인터넷 문제행동과 인터넷 접촉

(1) 인터넷 문제행동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인터넷 문제행동에 대한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터넷 비행을 주된 종속변수로 보는 시각(이경남·하연미, 2004; 조남근·양돈규, 2001), 두 번째는 인터넷 중독을 주된 종속변수로 보는 시각(백승문 외, 2004; 조남근·양돈규, 2001; 이숙·남윤주, 2004, 이현아, 2004), 세 번째는 인터넷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포괄적인 문제행동을 주로 보는 시각(이종원, 2001, 주리아·권석만, 2001)이다. 본 연구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문제행동의 세부적이고 심각한 측면을 강조하는 인터넷 비행이나 인터넷 중독 척도를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따라서 인터넷 활용과 관련된 포괄적 개념을 살펴보는 인터넷 문제행동 변수(이종원, 2001)를 활용하였다.

(2) 인터넷 접촉

청소년의 인터넷 접촉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은 관련변수를 활용하고 있다⁴⁾.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관련변수는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이나 유익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을 활용한 시간이나 정도만을 측정하고 있어, 인터넷 유해요인접촉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심층면접조사를 토대로 인터넷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접촉정도를 살펴보았다.

(3) 인터넷 접촉과 인터넷 문제행동

인터넷은 분명 두 가지의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인터넷 접촉과 인터넷 문제행동의 관계를 인터넷의 유익성에 대한 논의와 인터넷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인터넷의 유익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인터넷이 첫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에게 테크놀로지와 기술교육의 좋은 수단이 되며(이경님, 2004)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이나 놀이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얻어지는 분노나 좌절감, 공격성 등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문화관광부, 2001)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타인과의 새로운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다(Proven, 1991).

4) 선행연구에서 활용하는 인터넷 접촉관련변수로는 인터넷 이용여부(박성익 외, 2000; 김혜원 2001), 인터넷 홈페이지 소유여부(박성익 외, 2000), 사이버공간 이용 정도(주당 횟수)(박성익 외, 2000), 인터넷 1회 평균 이용시간(박성익 외, 2000), 인터넷 이용경력·기간(이용해온 기간)(박성익 외, 2000; 권복순, 2002; 김혜원, 2001), PC방 이용정도(기간당 횟수)(박성익 외, 2000),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게임, 정보검색, 채팅, 이메일, 동호회 등)(박성익 외, 2000; 권복순, 2002), 이용장소(권복순, 2002; 김혜원, 2001), 음란사이트·채팅 경험(권복순, 2002), 일주일의 평균 이용시간(김혜원, 2001), 컴퓨터 개인 소유 여부(김혜원, 2001), 각 인터넷 서비스 이용정도(김혜원, 2001), 정보검색·동호회·대화방 이용의 구체적인 내용(김혜원, 2001)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인터넷의 유해성에 관한 논의는 인터넷에 모두 유익한 정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장시간의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중독으로 충동성, 우울, 불안, 강박증 등의 심리적 부적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소영, 2000; 이송선, 2000; 정순자, 2001; Hughes, 1999) 사회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인터넷 이용으로 학업과 일상생활의 작업수행에 지장이나 실패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며 이는 곧 대인관계부적응으로 인한 사회성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경님, 2004; Brady, 1996)을 강조한다.

2) 청소년 문제행동과 개인·환경적 보호요소

(1) 보호요소에 관한 이론적 근거

청소년의 부적응을 일으키는 위험요소에 초점을 두는 위험요소 모델(risk factor model)과 달리 적응유연성 모델(resilience model)은 환경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발휘되는 인간의 긍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변화 가능성의 지평을 넓혀 준다. 이러한 적응유연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곧 보호요소(protect factor)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보호요소를 살펴본 최근 연구들은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보호요소를 범주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여 왔다(유성경·홍세희·최보윤, 2004). 이중 보겐슈나이더(Bogensneider, 1996)는 청소년의 환경적 보호요소를 개인,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로 구분하여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비행여부를 개인차원, 학교차원, 가정차원, 지역사회차원에서 밝히려는 시도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유성경·홍세희·최보윤, 2004).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보겐슈나이더의 분류와 선행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인터넷 유해요소 접촉이 문제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요소로 (i) 개인관련보호요소로는 자아존중감(박성익 외, 2000; 김혜원, 2001; Bogensneider, 1996), 도덕성(Pollard et al, 1999)을 (ii) 가족관련 보호요소로는 가족응집성(정연호, 2004), 부모 감독(김혜원,

2001), 부모-자녀 의사소통도(박성익, 2000; 이경남·하연미, 2004)를 또래관련 보호요소로는 친구지지도(이경남·하연미, 2004),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이숙·남윤주, 2004)를 학교관련 보호요소로는 교사지지도(Bogenschneider, 1996), 학교생활만족도(Bogenschneider, 1996)를 지역사회관련 보호요소로는 지역사회내 여가활동시설만족도와 지역사회에서의 미디어 교육경험을 살펴보도록 한다.

3. 인터넷 유해성 감소 및 긍정적 활용을 위한 노력

1) 국내

(1)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규제

이 부분에서는 청소년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간으로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 10조제1항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5가지 사항⁵⁾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인터넷의 경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해당)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심의기관에서 적법한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관보를 통해 고시되고, 이때부터 청소년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고시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 1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반드시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청소년위원

5)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5가지 사항은 (i) 청소년에게 성적인 충동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ii)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iii)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v)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청소년위원회, 2005).

회. 2005. <http://www.youth.go.kr>).

둘째, 인터넷에 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는 방송위원회가 규제하는 인터넷방송은 물론 모든 인터넷상의 정보를 심의대상으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와 동법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 등의 불온통신에 대해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심의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법시행령 제 16조의4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온통신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와 같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권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기준은 ‘심의세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유해정보에 대한 심의기준은 음란성에 관한 기준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등 2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의 기준이 된다. 각각의 심의기준은 신체노출, 성행위, 기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부록을 참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경우에도 방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 및 제재조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 제 2조에 규정된 심의대상을 보면 정보제공자가 심의를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불건전한 정보라고 인지한 경우, 불건전 정보통신신고센터에 신고된 경우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체심의에서 적발된 경우 또는 인터넷 유해정보를 모두 심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제 외에도 국어, 도덕, 컴퓨터, 사회, 기술·가정 교과목 상에서 정보통신 윤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청소년들이 컴퓨터 특히 인터넷을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지역사회단위 프로그램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공적이

며 포괄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해온 한편(이혜연 외, 2004) 지역사회단위의 사회기관들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세부 인터넷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다.

사당종합사회복지관, 고려대학교 인터넷중독 상담실, 인터넷쉼터학교, 서초·포항YMCA, 전국적인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등이 지역사회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이며 이들 지역사회단위 프로그램에서는 각종 온라인상의 네티넷 교실, 학부모정보감시단,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 해외

(1)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규제

유해매체와 관련하여 각 국의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등의 국가들은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이고, 독일과 프랑스는 자율규제와 함께 정부에 의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유럽 연합국 중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법적 규제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5개국이며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은 사법 활동을 위해 인터넷서비스운영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와의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송금연, 2003).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일본은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를 중시하는 입장인 반면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에 의한 강력한 법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정보통신 정책연구원, 1998).

(2) 지역사회단위 프로그램

미국의 경우 사이버 엔젤(Cyber Angel), 센터 포 미디어리터러시(Center for Media literacy), 칠드런스 파트너십(The Children's Partnership) 등이 인터넷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청소년·가족·학교 인터넷과 관련한 윤리교육,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

료, 각종 캠페인 등이 실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터넷과 관련되는 제과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컨퍼런스, 이벤트 등이 개최되고 있다.

4. 연구결과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가 전체의 51.8%, 여자가 전체의 48.2%였으며 학교별로는 중학생이 전체의 47.0% 인문계고등학생이 32.6%, 실업계 고등학생이 20.4%.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전체의 43.5%로 가장 많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5.5%,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27.1%, 읍·면지역 거주하는 청소년이 24.0%이었다

스스로 생각하는 가족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60.9%로 가장 많았고, 보통보다 높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1.0%, 보통보다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6.5%였다.

청소년들의 한달 용돈평균은 43,946.23원이었으며 5만원미만이 전체의 70.6%를 차지하였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 두 분 모두 친부모님인 경우가 전체의 86.6%였으며 어머님만 계시는 경우가 4.7%, 아버님만 계시는 경우가 3.4%, 두분 중 한분만 친부모님인 경우가 3.0%, 기타가 2.1%로 나타났다.

<표 V-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N)	구분		%(N)
성별	남자	51.8	인터넷 사용가능컴 퓨터(집)	있다	96.0
	여자	48.2		없다	4.0
	계	100.0(1046)		계	100.0(1044)
학교	중학교	47.0	거주지	특별시,광역시	43.5
	인문계고등학교	32.6		대도시	5.5
	실업계고등학교	20.4		중소도시	27.1
	계	100.0(1044)		읍,면지역	24.0
			계	100.0(1035)	
스스로 생각하는 가족의 생활수준	매우낮은편이다	3.5	인터넷 사용가능 컴퓨터 있는집	내방	40.9
	낮은편이다	13.0		형제,자매방	16.9
	보통이다	60.9		거실	29.8
	높은편이다	18.3		부모님방	6.8
	매우높은편이다	4.4		기타	5.7
	계	100.0(1040)		계	100.0(1008)
부모님	두분모두친부모	86.6	한달 평균 용돈	1만원미만	6.2
	두분중한분만친부모	3.0		1만원이상3만원미만	32.9
	어머니만계심	4.7		3만원이상5만원미만	31.5
	아버지만계심	3.4		5만원이상7만원미만	14.6
	두분모두돌아가셨음	.3		7만원이상	14.8
	기타	2.1		계	100.0(904)
	계	100.0(1043)			
아버지 직업	전문기술및관련직	9.2	어머니 직업	전문기술및관련직	4.1
	행정및관리직	7.4		행정및관리직	1.5
	사무및관련직	19.1		사무및관련직	6.4
	자영업	21.4		자영업	8.9
	판매종사자	4.6		판매종사자	5.9

	서비스직종사자	4.1		서비스직종사자	11.4
	농업,어업,임업	6.6		농업,어업,임업	3.8
	생산직 및 단순노무자	12.8		생산직 및 단순노무자	6.1
	가정주부	.5		가정주부	40.1
	무직	1.8		무직	1.6
	기타	12.5		기타	10.1
	계	100.0(983)		계	100.0(988)
아버지 학력	무학	.7	어머니 학력	무학	.5
	초등학교중퇴,졸업	3.1		초등학교중퇴,졸업	4.4
	중학교중퇴, 졸업	8.6		중학교중퇴, 졸업	12.2
	고등학교중퇴,졸업	47.4		고등학교중퇴,졸업	57.6
	대학교중퇴,졸업	28.4		대학교중퇴,졸업	19.0
	대학원중퇴,졸업이상	11.9		대학원중퇴,졸업이상	6.3
	계	100.0(977)		계	100.0(980)

아버지의 직업을 살펴보면, 자영업이 21.4%, 사무 및 관리직이 19.1%, 생산 및 관련 종사자나 운수 및 단순노무자가 12.8%, 전문기술 및 관련직이 9.2%, 행정 및 관리직이 7.4%,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가 6.6%, 판매 종사자가 4.6%, 서비스직 종사자가 4.1%, 무직이 1.8%, 가정주부가 0.5%, 순이었으며 기타가 12.5%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가정주부가 40.1%, 서비스직 종사자가 11.4%, 자영업이 8.9%, 사무 및 관리직 6.4%,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 및 단순 노무자가 6.1%, 판매종사자가 5.9%, 전문기술 및 관련직이 4.1%, 농업, 어업, 임업 종사자가 3.8%, 행정관련직이 1.5%, 무직이 1.6%로 응답했으며 기타가 10.1%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하가 47.4%, 대졸이하가 28.4%, 대학원 이상이 11.9%, 중학교 졸업이하가 8.6%,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3.1%, 무학이 0.7%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하가 57.6%, 대졸이하가 19.0%, 중학교 졸업이하가 12.2%, 대학원 이상이

6.3%,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4.4%, 무학이 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요인 접촉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요인 접촉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을 추출하고 이러한 유해요인의 접촉경로를 파악하였다. 심층면접은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게임, 온라인 채팅, P2P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문제 행동(이중원 외, 2001)과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지는,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이었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 심층면접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21개 유해요인(온라인 게임관련 유해요인 6문항, 온라인 채팅관련 유해요인 5문항, P2P 서비스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4문항,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3문항,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3문항)이 추출⁶⁾되었다.

심층면접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유해사이트 접촉경로도 파악할 수 있었다. 유해사이트 접촉경로는 크게 사람을 통한 접촉과 웹서핑을 통한 접촉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접촉경로를 빈번한 순서대로 살펴보면 포털사이트를 통한 키워드 검색이 1위, 친구나 형 등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한 경우가 2위, 스팸메일을 통한 경우가 3위, 커뮤니티 사이트의 광고나 링크를 통한 경우가 4위로 나타났다.

성인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에 어떻게 접근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결제시 알아낸 가족의 주민번호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 생성기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유해요인 접촉정도를 파

6) 각 인터넷 유형별 차이를 감안하여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경험한 인터넷 유형이 서로 다를 경우 별도의 유해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악하였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온라인게임, 온라인채팅, P2P 서비스 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포탈 사이트를 대상으로 유해요인 접촉빈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게임 관련 유해요인 접촉

온라인게임관련 청소년의 유해요인의 접촉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3> 온라인게임관련 유해요인 접촉

(단위: %)

구분	전혀없다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거의매일	계
게임도중 누군가가 화면에 욕을 하거나 싸움을 건다	29.6	38.2	14.0	7.5	10.7	100.0 (N=1,044)
게임 아이템과 관련 하여 사기를 당함	63.0	27.8	4.2	2.0	3.0	100.0 (N=1,044)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해킹되었다	62.9	31.5	3.1	0.6	1.9	100.0 (N=1,043)
유료아이템을 과잉 충동구매하였다	74.4	20.4	2.9	0.4	1.9	100.0 (N=1,034)
게임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야한 동영상, 광고가 뜨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58.3	29.9	6.5	1.6	3.6	100.0 (N=1,044)
게임을 하다보니 지나치게 아하거나 폭력적이였다	79.5	13.3	2.6	1.3	3.3	100.0 (N=1,040)

게임도중 누군가가 화면에 욕을 하거나 싸움을 걸었던 경험이 있는 청소년

년은 70.4%였으며, 게임 아이템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7%,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해킹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7.1%였다. 유료아이템을 과잉 충동구매한 경험은 25.6%, 게임 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야한 동영상이나 광고가 뜨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는 전체의 41.7%를 차지하였다. 게임을 하다 보니 지나치게 야하거나 폭력적이라고 느낀 경우는 20.5%였다.

인터넷 게임과 관련한 유해요인으로 욕이나 싸움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야한 동영상·광고나 바이러스 감염, 게임아이템관련 사기, 아이디나 비밀번호 해킹, 게임아이템 충동구매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게임 관련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무⁷⁾를 성별, 교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온라인 게임 중 누군가 욕이나 싸움을 걸어왔던 경험은 남학생이 여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교급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게임 아이템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경험 또한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사기를 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온라인 게임중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해킹 당한 경험은 성별,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온라인 게임 중 유료아이템을 과잉 충동구매한 경험은 남학생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파일을 다운 받는 도중 야한 동영상이나 광고가 뜨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험은 남학생의 경우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게임을 하다가 지나치게 야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경험한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유의하게 높았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7) 온라인게임 관련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무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 문항에서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1로 재부호화(recode)하였다.

8) 각각의 변수를 분할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Pearson Chi Square 값과 유의도를 산출하였다. 지면관계상 표는 생략하기로 하였다.

(2) 온라인 채팅 관련 유해요인 접촉

온라인 채팅관련 유해요인 접촉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46.5%가 성적인 내용의 쪽지나 대화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첨부파일로 야하거나 무서운 파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7.2%, 모르는 사람이 연락처를 요구한 경험은 30.0%였다. 온라인 채팅을 하는 도중에 성인사이트 광고가 뜬 경우는 53.8%, 채팅 도중 욕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은 4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채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경험하는 유해요인으로는 성인사이트 광고, 욕이나 폭언, 성적인 내용의 쪽지나 대화 제의 순이었다. 욕이나 폭언의 경우 거의 매일 일어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에 달하였다.

<표 V-4> 온라인 채팅관련 유해요인 접촉

(단위: %)

구분	전혀없다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거의매일	계
성적인 내용의 쪽지나 대화제의를 받았다	53.5	33.6	6.5	2.4	3.9	100.0 (N=1041)
누군가가 첨부파일로 야하거나 무서운 파일을 보냈다	72.8	19.4	4.5	0.7	2.6	100.0 (N=1040)
모르는 사람이 연락처를 요구한다	70.0	22.5	3.2	1.5	2.8	100.0 (N=1040)
성인사이트 광고가 떴다	46.2	34.0	9.6	3.9	6.3	100.0 (N=1038)
누군가가 나에게 욕이나 폭언을 하였다	50.3	29.1	9.9	3.4	7.3	100.0 (N=1039)

온라인채팅 관련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무⁹⁾를 성별,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채팅을 하다가 성적인 내용의 쪽지나 대화 제의를 받은 경험은 성별, 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성적인 내용의 쪽지나 대화 제의를 받은 경험이 유의하게 많았다. 야하거나 무서운 파일을 받은 경험은 성별,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온라인채팅을 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연락처를 요구해 온 경험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인사이트 광고를 본 경험은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경우에 채팅을 하다가 성인사이트 광고를 본 경험이 많았다. 타인으로부터 욕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은 교급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3) P2P 서비스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

P2P서비스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23%가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원래 구매하려던 것과 다른 야하거나 무서운 파일이 첨부되어 들어온 경험이 있었으며 37.1%가 파일을 다운 받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험이 있었다. 44.1%가 P2P 서비스 사용 중 성인팝업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으며 36.3%는 키워드를 쳐서 야하거나 무서운 동영상의 검색된 경우가 있었다. P2P 서비스와 관련한 유해요인은 성인용 팝업광고, 바이러스 감염 위험,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는 유해정보 순으로 경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2P 서비스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무¹⁰⁾를 성별, 교급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9) 온라인채팅 관련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무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 문항에서 ‘전혀 없다’ 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거의 매일’ 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1로 재부호화(recode)하였다.

10) P2P 서비스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무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혀 없다’ 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거의 매일’ 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1로 재부호화(recode)하였다.

<표 V-5> P2P서비스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

(단위: %)

구분	전혀없다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거의매일	계
원래 구매하려던 것과 다른 야하거나 무서운 파일이 첨부되어 들어 왔다	77.0	16.3	3.8	1.6	1.2	100.0 (N=1045)
파일을 다운 받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 다	62.9	28.0	5.5	1.6	2.0	100.0 (N=1044)
사이트 성인팝업 광고 가 떴다	55.9	28.5	7.8	2.7	5.1	100.0 (N=1044)
키워드를 쳤더니 야하 거나 무거운 동영상 검색되었다	63.7	22.8	6.8	2.5	4.2	100.0 (N=1043)

P2P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도중에 원래 구매하려던 것과 다른 야하거나 무서운 파일이 첨부되어 온 경험은 성별,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하게 많은 경험 비율을 나타냈다. 파일을 다운받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험은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파일을 다운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성인팝업 광고가 뜬 경우는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야하거나 무서운 동영상 검색된 경험은 성별,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학생보다 남학생이 키워드를 통해 유해정보에 접근된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4)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

최근에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37.5%가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성적이거나 험뜯는 글이 남겨져 있는 경험을 하였으며 39.2%가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불법 유해사이트가 소개되거나 연결되어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성인인증이 필요 없는 유해한 내용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알게 된 경우는 27.9%를 차지하였다.

<표 V-6>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

(단위: %)

구분	전혀없다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거의매일	계
방명록, 게시판에 성적이거나 험뜯는 글이 남겨져 있다	62.5	24.3	6.4	2.9	3.9	100.0 (N=1042)
방명록이나 게시판 에 불법 유해사이트가 소개되거나 연결되어있다	60.8	23.6	8.0	4.1	3.5	100.0 (N=1043)
성인인증이 필요없는 유해한 내용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다	72.1	16.9	5.6	1.5	3.9	100.0 (N=1042)

온라인커뮤니티 관련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무¹¹⁾를 성별,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1) 온라인커뮤니티 관련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무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 문항에서 ‘전혀 없다’ 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거의 매일’ 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1로 재부호화(recode)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방명록·게시판 등에 성적이거나 자신을 헐뜯는 글이 남겨져 있었던 경험은 성별, 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불법·유해사이트가 소개되거나 연결되었던 경험은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성인인증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유해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알게 된 경험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인터넷 포탈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

인터넷 포탈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62.5%가 인터넷 주소를 잘못 검색하여서 유해한 사이트나 팝업창이 떴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6.6%가 광고, 스팸메일을 통해 야하거나 폭력적인 사이트나 내용을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44.1%는 게시판이나 자료의 답글에 유해사이트가 광고되어 있었다.

<표 V-7> 인터넷 포탈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

(단위: %)

구분	전혀없다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거의매일	계
인터넷 주소를 잘못 검색하면 유해한 사이트나 팝업창이 떴다	37.5	46.0	9.1	3.4	4.0	100.0 (N=1044)
광고,스팸메일을 열 어보니 야하거나 폭 력적인 사이트나 내 용으로 연결되었다	53.4	29.0	8.3	4.0	5.3	100.0 (N=1045)
게시판이나 자료의 답글에 유해사이트가 광고되어 있었다	55.9	24.5	10.7	3.9	5.0	100.0 (N=1041)

온라인 포탈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무¹²⁾를 성별,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주소를 잘못 검색해서 유해한 사이트나 팝업창이 뜬 경우는 성별로는 유의미한 경험차이가 없었으나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경우에 유의미하게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 포탈 사이트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광고·스팸메일을 통해 야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으로 연결된 경험은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경우에 유의미하게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시판이나 자료의 답글에 있는 유해사이트 광고를 본 경험은 성별, 교급별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게시판이나 자료의 답글에 있는 유해사이트 광고를 본 경험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2) 청소년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

청소년 인터넷관련 문제행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8> 청소년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

(단위: %)

구분	전혀없다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거의매일	계
인터넷을 통하여 성인용 음란포른물을 열람한 적이 있다	60.6	26.0	7.8	2.4	3.2	100.0 (N=1035)
채팅, 메일등을 통하여 야한 내용의 대화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	88.9	6.8	1.3	0.5	2.5	100.0 (N=1043)

12) 온라인 포탈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경험 유무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한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거의 매일' 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1로 재부호화(recode)하였다.

야한 내용의 게임을 한 경험이 있다	85.2	10.6	1.6	0.6	2.0	100.0 (N=1038)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의 사이트를 본 경험이 있다	59.8	30.7	5.4	0.9	3.3	100.0 (N=1040)
채팅, 게시판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이나 폭언을 한 경험이 있다	41.1	34.1	9.6	5.1	10.2	100.0 (N=1044)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의 게임을 한 경험이 있다	54.8	23.2	9.3	5.0	7.7	100.0 (N=1042)
인터넷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구해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64.4	18.6	7.3	3.0	70(6.7)	100.0 (N=1041)
인터넷상으로 누군가를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 경험이 있다	86.9	7.2	1.5	1.1	34(3.3)	100.0 (N=1042)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을 몰래 사용한 경험이 있다	71.6	21.8	2.4	0.9	35(3.4)	100.0 (N=1043)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웹 사이트를 일부러 해킹한 경험이 있다	90.2	7.3	1.0	0.6	11(1.1)	100.0 (N=1046)
인터넷을 통하여 고의로 거짓 정보를 퍼트린 경험이 있다	90.4	6.3	1.4	0.6	13(1.2)	100.0 (N=1044)
고의로 바이러스, 스팸메일(폭탄메일)을 발송한 경험이 있다	91.3	5.2	1.9	0.2	1.4	100.0 (N=1045)

자살·폭탄제조 사이트 등 해로운 사이트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다	93.4	4.8	0.6	0.3	1.0	100.0 (N=1043)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인터넷에 몰입한 경험이 있다	65.3	23.0	5.5	2.4	3.8	100.0 (N=1043)

인터넷을 통하여 성인용 음란, 포르노물을 열람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9.4%, 채팅·메일등을 통하여 야한 내용의 대화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1.1%, 야한 내용의 게임을 한 경험은 14.8%,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의 사이트를 본 경험은 40.2%, 채팅,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이나 폭언을 한 경험은 58.9%,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의 게임을 한 경험은 45.2%, 인터넷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구해서 사용해 본 경험은 35.6%, 인터넷상으로 누군가를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힌 경험은 13.1%,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주민등록을 몰래 사용한 경험은 28.4%,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웹 사이트를 일부러 해킹한 경험은 9.8%, 인터넷을 통하여 고의로 거짓 정보를 퍼트린 경험은 9.6%, 고의로 바이러스,스팸메일(폭탄 메일)을 발송한 경험은 8.7%, 자살·폭탄제조 사이트 등 해로운 사이트 경험은 6.6%,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인터넷에 몰입한 경험은 3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채팅,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이나 폭언을 한 경험,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의 게임,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의 사이트 본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¹³⁾을 성별, 교급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3) 본 연구에서는 개인 간의 판단차이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가능한 구체적인 접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넷관련 문제행동의 수준을 ‘전혀 없다,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거의 매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변수를 중간값을 기준으로 정확한 산술비로 계산하면 한 달 평균 0: 1.5: 6: 14가 되지만 각각의 변수를 산술비를 기준으로 부호화 할 경우 변수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전혀 없다=1, 한 달에 1~2번=2, 일주일에 1~2번=3, 일주일에 3~4번=4, 거의 매일=5’로 부호화하더라도 문제행동 정도의 증가추세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

남학생의 인터넷 문제행동 수준은 1.62, 여학생의 인터넷 문제행동 수준은 1.23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 수준이 1.40, 고등학생이 1.46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청소년 인터넷 관련 보호요소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관련 보호요소를 크게 개인관련요소(자아존중감, 도덕성), 가족관련요소(가족응집성, 부모감독, 부모-자녀 의사소통), 또래관련요소(친구지지도,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 학교관련요소(교사지지도, 학교생활만족도), 지역사회관련요소(지역사회내 여가활동시설만족도, 지역사회 미디어 교육 경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¹⁴⁾.

청소년 인터넷관련 보호요소 문항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친구지지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 가족응집성, 자아존중감, 도덕성, 부모자녀의사소통도, 학교생활만족도, 지역사회내여가활동시설만족도, 교사지지도, 부모감독 순이었다. 친구지지도와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 가족응집성, 자아존중감, 도덕성, 부모자녀의사소통도는 보통수준이거나 보통보다 약간 높았으며, 학교생활만족도, 지역사회내여가활동시설만족도, 교사지지도, 지역사회미디어교육정도는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또래관련요소, 가족관련요소, 개인관련요소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학교관련요소와 지역사회관련요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내 여가활동 시설만족도, 교사지지도, 지역사회미디어 교육경험에 대한 응답수준이 낮아 이 부분에 대한 개

단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변수를 최소값 1, 최대값 5의 5점 리커트 척도화 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문제행동 14개 문항을 합산(compute)하여 복합지수화한 후 14로 나누어 전체 문제행동 척도로 활용하였다.

14) 각각의 변수는 내적일치도 검사를 통해 변수의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며, 내적일치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항을 제외한 문항을 가지고 복합지수화(compute)하여 활용하였다. 각각의 복합지수화한 변수는 문항의 수로 나누어 최소값이 1, 최대값이 5가 되어 변수간 비교가 가능토록 하였다. 측정도구 및 문항의 신뢰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 3. 2) 변인별 조사도구 및 측정방법'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표 V-9> 청소년 인터넷관련 보호요소

구분	세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개인관련 요소	자아존중감	1014	1.00	5.00	3.33	.80
	도덕성	1029	1.00	5.00	3.20	.74
가족관련 요소	가족응집성	1026	1.00	5.00	3.47	.93
	부모감독	1038	1.00	5.00	2.19	.77
	부모자녀의사소통도	1037	1.00	5.00	3.08	.74
또래관련 요소	친구지지도	1034	1.00	5.00	3.54	.85
	가장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	1025	1.00	5.60	3.49	.90
학교관련 요소	교사지지도	1026	1.00	5.00	2.77	.87
	학교생활만족도	1029	1.00	5.00	2.93	.86
지역사회 관련요소	지역사회내 여가활동 시설만족도	1018	1.00	5.00	2.78	.82
	지역사회미디어교육정도	1024	1.00	5.00	2.51	.86

다음으로 각각의 변수별로 성별, 교급별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성별,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교급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여학생의 자아존중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교급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에 성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신의 도덕성에 대하여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가족응집성을 성별,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과 교급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 인터넷 사용에 관한 부모감독 정도를 성별,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과 교급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인터넷 관련 부모의 감독을 많이 받고 있었다.

청소년의 가족내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정도를 성별,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교급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학생의 가족내 부모자녀 의사소통도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청소년의 친구지지도를 성별,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에 교급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지지도를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를 성별,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에 교급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가장 친한 친구와 더욱 긴밀한 상호작용을 갖고 있었다.

청소년의 학교내 교사지지도를 성별,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과 교급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교내 교사지지도를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성별,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과 교급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의 지역사회내 여가활동시설 만족도를 성별,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과 교급간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지역사회내 여가활동시설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지역사회내 미디어교육 경험을 성별, 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교급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에 성별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지역사회내 미디어교육 경험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4) 인터넷 문제행동과 유해요인

인터넷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¹⁵⁾을 밝히기 위

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성별, 교급, 스스로 생각하는 가족의 생활수준, 아버지의 학력을 포함시키고 유해요인접촉경험 유무를 더미 변수화 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21개 모든 유해요인이 인터넷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성별, 교급, 스스로 생각하는 가족의 생활수준, 아버지의 학력을 통제변수한 상태에서 21개 유해요인을 독립변수로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을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V-10> 유해요인과 인터넷관련 문제행동

구 분	관련변수		회귀계수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수	1)	성별	.26	.23***
	2)	교급	-.04	-.04
	3)	생활수준	-.04	-.06*
	4)	아버지학력	-.01	-.02
온라인 게임 유해요인	1)	게임도중 누군가가 화면에 욕을 하거나 싸움을 걸었다	.05	.04
	2)	게임 아이템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였다	-.03	-.03
	3)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해킹되었다	.03	.03
	4)	유료아이템을 과잉 충동구매 하였다	.17	.13***
	5)	게임파일을 다운받았는데 야한 동영상·광고가 뜨거나 바	.03	.00

15)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청소년과 전문가가 생각하는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을 5개 영역(온라인게임, 온라인채팅, P2P 서비스 사이트,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포탈 사이트) 21개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유해요인은 청소년들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유해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실에 기반하여 추출된 것으로 실제로 그 요인이 청소년이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유해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즉, 엄밀한 의미로 볼 때 이제까지 우리가 검증한 유해요인은 문자 그대로의 유해요인이 아닌 ‘유해가능요인’, ‘유해위험요인’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추출된 21개 유해(가능)요인 중 실제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의미의 유해요인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유해매체개선을 위한 단서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러스에 감염되었다		
	6)	게임을 하다 보니 지나치게 야하거나 폭력적이었다	.33	.24***
온라인 채팅 유해요인	1)	성적인 내용의 쪽지나 대화 제의를 받았다	.07	.06
	2)	누군가가 첨부파일로 야하거나 무서운 파일을 보냈다	.12	.10**
	3)	모르는 사람이 연락처를 요구하였다	.04	.03
	4)	성인사이트 광고가 떴다	-.04	-.04
	5)	누군가가 나에게 욕이나 폭언을 하였다	.09	.08*
P2P서비스 사이트 유해요인	1)	원래 구매하려던 것과 다른 야하거나 무서운 파일이 첨부되어 들어왔다	.02	.01
	2)	파일을 다운 받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03	.03
	3)	사이트에 성인팝업 광고가 떴다	.05	.00
	4)	키워드를 쳤더니 야하거나 무서운 동영상이 검색되었다	.04	.04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유해요인	1)	방명록·게시판에 성적이거나 헐뜯는 글이 남겨져 있었다	.00	-.00
	2)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불법·유해사이트가 소개되거나 연결되어 있었다	.02	.02
	3)	성인인증이 필요 없는 유해한 내용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었다	.16	.13***
인터넷 포털사이트 유해요인	1)	인터넷 주소를 잘못 검색해서 유해한 사이트나 팝업창이 떴다	-.02	-.00
	2)	광고·스팸메일을 열어보니 야하거나 폭력적인 사이트나 내용으로 연결되었다	.06	.06
	3)	게시판이나 자료의 답 글에 유해 사이트가 광고 되어 있었다	.04	.04
상수항			1.13***	
R ²			.442	
F			27.623***	

회귀분석 결과,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유료 아이템의 과잉충동구매’와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이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채팅과 관련하여서는 ‘채팅 도중의 선정적이고 무서운 내용의 파일 전송’과 ‘채팅 도중의 욕이나 폭언’이 인터넷 문제행동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관련해서는 ‘성인인증이 필요 없는 유해한 내용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이었다.

P2P사이트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유해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인터넷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은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beta=.24, p<.001$), 성인인증이 필요 없는 유해한 커뮤니티 사이트($\beta=.13, p<.001$), 온라인 게임 유료 아이템의 과잉 충동구매($\beta=.13, p<.001$), 온라인 채팅을 통한 선정적이거나 무서운 파일의 전송($\beta=.10, p<.01$), 채팅 중의 욕이나 폭언($\beta=.08, p<.0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영역별로는 온라인 게임과 온라인 채팅, 커뮤니티 사이트가 P2P서비스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보다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에 상대적으로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R2 값은 .442로 이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 접촉이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 분산의 44.2%를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인터넷 문제행동과 보호요소

위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유해요인 접촉은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의 인터넷 문제행동이 개인,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보호요인에 따라 어떻게 조절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인터넷 유해요인 접촉유무¹⁶⁾를 통제한 상태에서 보호요인을 독립변수로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호요인 중 도덕성, 가족응집성, 부모감독, 친구지지도는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상관계수는 모두 .8을

16) 인터넷 유해요인 접촉 유무 변수는 5개 인터넷 관련 영역의 21개 유해요인 문항에 대해 한 번이라도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1, 21개 영역에 대해 한 번도 접촉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0으로 더미변수화한 값이다.

넘지 않아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아 모든 변수를 회귀분석에 투입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다음 회귀분석표는 보호요인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회귀를 실시한 결과이다. [모델1]은 통제변수로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성별, 교급, 생활수준, 아버지 학력과 유해요인접촉경험유무를 투입한 것이다. 설명력은 18.0%이며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 [모델2]에서는 개인 관련 보호요소인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을 추가변수로 투입하였다. 설명력은 18.1%로 [모델1]에 비해 약 0.1%가 증가하였으며 R^2 증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과 도덕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인터넷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의 인터넷 문제행동에 자아존중감과 도덕성이 유의미한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음 [모델3]에서는 가족관련 보호요소인 가족응집성, 부모감독, 부모자녀의사소통도를 추가변수로 투입한 것이다. 설명력은 18.8%로 [모델2]에 비해 0.7%가 증가하였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감독과 부모자녀의사소통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족응집성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미쳐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의 인터넷 문제행동에 가족응집성이 조절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모델4]는 또래관련요소인 친구지지도와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이다. 설명력은 20.3%로 종전에서 1.4% 증가하였으며 R^2 증가량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친구지지도 변수와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 변수 모두 각각 $p < .05$,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친구지지도가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과 부적 관계를 갖는데 반해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는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의 인터넷 문제행동에 친구지지도가 문제를 완화하는 긍정적 조절변수로 작용하는데 반해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을 강화하는 부정적 의미의 조절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는 친구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이 긍정적 역할을 하는 보호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결과이다. 다음 [모델5]는 학교관련요소인 교사지지도와 학교생활만족도를 추가변수로 투입한 결과이다. 설명력은 20.6%로 0.3%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다. 교사지지도와 학교생활만족도 모두 인터넷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특이한 사실은 두 변수를 투입한 후 친구지지도의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는 학교생활만족도가 변수로 투입되면서 친구지지도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모델6]은 지역사회관련요소인 지역사회내 여가활동시설만족도와 지역사회미디어교육경험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이다. 설명력은 21.3%로 0.7% 증가하였으며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지역사회내 여가활동 시설만족도와 지역사회 미디어 교육경험 모두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지역사회내 여가활동 시설만족도가 부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데 반해, 지역사회미디어교육경험정도는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의 인터넷 문제행동에 지역사회내 여가활동 시설만족도가 문제를 완화시키는 긍정적 조절변수로 작용하는데 반해, 지역사회미디어 교육 경험은 문제를 강화하는 부정적 조절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응집성, 친구지지도, 지역사회내 여가활동 시설만족도는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의 인터넷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소로 작용하며,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와 지역사회단위의 미디어교육경험은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의 인터넷 문제행동을 강화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표 V-11> 유해요인접촉경험유무 및 보호요인이 인터넷관련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련변수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B	β										
성별	.40	.03* **	.39	.38* **	.40	.39* **	.42	.41* **	.43	.42* **	.45	.44* **
교급	-.02	.03	-.01	-.01	-.02	-.02	-.03	-.03	-.04	-.04	-.04	-.03
생활수준	-.01	.02	-.10	-.01	-.04	-.01	-.09	.00	-.02	-.00	.03	.00

아버지학력	-.02	-.01	-.03	-.02	-.03	-.02	-.03	-.02	-.03	-.02	-.03	-.03
유해요인접촉경험유무	.34	.16**	.34	.16**	.34	.16	.33	.15**	.33	.15**	.34	.16**
자아존중감			.01	.02	.02	.03	.02	.03	.02	.03	.02	.03
도덕성			-.34	-.05	-.01	-.02	-.02	-.03	-.02	-.03	-.16	-.02
가족응집성					-.07	-.12**	-.06	-.12**	-.06	-.11*	-.06	-.11*
부모감독					.02	.03	.01	.02	.02	.30	.02	.03
부모자녀의사소통도					.04	.05	.03	.05	.03	.05	.03	.04
친구지지도							-.06	-.10*	-.05	-.08	-.04	-.07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							.09	.16**	.09	.16**	.10	.16**
교사지지도									-.02	-.04	-.02	-.04
학교생활만족도									-.02	-.04	-.02	-.04
지역사회내여가활동 시설만족도											-.06	-.10*
지역사회미디어교육경험											.05	.08*
상수항	1.01***	1.07***	1.05***	.99***	1.03***	.98***						
R ²	.180	.181	.188	.203	.206	.213						
R ² 의 변화	.180***	.001	.007	.014***	.003	.007*						
F	34.75***	25.05***	18.31***	16.66***	14.51***	13.24***						

6)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인터넷과 관련한 청소년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소년 심층면접과 전문가 자문조사, 전국단위 청소년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을 탐색하고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소와 문제행동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우리나라 가정 내에서의 인터넷과 관련한 부모감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보호·감독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관련한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두 번째,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파일을 다운받는 행동, 인터넷활용 과정에서 욕이나 폭언을 하는 행동처럼 이제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 그 문제성이 지적되어 온 행동들과 더불어 이제까지 그다지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인터넷 유해 커뮤니티 사이트의 문제,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과잉충동구매 문제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인터넷 유해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이나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으로 일정부분 차단이 가능한 인터넷 유해사이트와 달리 어떠한 제한이나 규제도 없이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인터넷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과잉충동구매 문제도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청소년 소비교육이나 결제상의 다양한 보완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인터넷 문제행동과 관련된 보호요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에서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개인관련 보호요소(자아존중감, 도덕성)와 학교관련요소(교사지지도, 학교생활만족도)가 문제행동의 보호요소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선행연구에서 그 중요성은 강조하였지만 실증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했던 지역사회관련변수(지역사회내 여가활동시설만족도, 지역사

회미디어교육경험)가 문제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문제행동과 관련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있어 지역사회 역할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가족관련 보호요소 중에서는 가족응집성이 인터넷 문제행동과 관련된 보호요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래관련 보호요소(친구지지도,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는 모두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터넷과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특히 또래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선행연구를 통해 문제행동의 보호요소로 지적된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와 지역사회단위의 미디어 교육경험이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의 인터넷 문제행동을 강화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가 보호요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친구와의 상호작용의 정도나 빈도가 아닌, 다른 측면(예: 상호작용의 질)의 상호작용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지역사회 미디어 교육경험이 인터넷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역사회의 미디어 교육내용에 대해 되짚어 보고 청소년들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인식이 인터넷의 긍정적인 활용이 아닌 단순한 인터넷 기술습득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척도의 구성이 청소년들의 이러한 인식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5. 정책제언

1) 인터넷 유해매체 개선대책

(1) 인터넷 유해요인 개선대책

① 인터넷 게임 아이템의 과잉충동구매 방지대책

(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신용 카드결제 시스템 강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과잉충동구매를 막기 위하여 연령별 1일 구매한도치를 설정하고 한도치 이상 아이템 구매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를 소유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허락이나 확인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과잉충동구매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이버 머니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하루에 일정금액 이상의 사이버 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 자율적 규제책으로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 전달 체계 활용

인터넷 게임 서비스 제공자(ISP)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과잉충동구매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한 방편으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 등에 가입할 때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을 권장토록 한다. 청소년 스스로가 일정 금액이상의 게임아이템을 한꺼번에 구매할시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구매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과잉충동구매 욕구를 자제하기 위한 자율규제 기제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자율규제방안은 인터넷 게임뿐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의 아이템 구매와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② 온라인상의 용어사용 순화대책

(가) 온라인 실명제 도입

인터넷상의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온라인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인터넷 채팅방이나 게임 사이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실명제나 실명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완제도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성매매자 신상공개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때, 야한

내용의 쪽지를 보내거나 심한 욕설이나 야한 농담을 하여 신고 되고 심각한 유해성이 인정된 인터넷 사용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직하다. 단, 인터넷 실명제가 보편화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누출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후 현실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유해정보 신고제도의 강화

유해정보 신고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녹색단추’ 제도와 ‘신고포상제도’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가칭) 녹색단추’ 제도는 다양하고 형식적이며 복잡한 인터넷 유해정보 신고제도를 하나의 방법으로 통합하는 형태이다. 사이버경찰청이나 청소년위원회 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화면에 나타난 녹색단추를 누르는 것만으로 유해정보나 유해상황에 처했을 시 화면이 캡춰되어 해당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자와 사이버 유해정보 신고센터로 보내지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잡하고 힘든 신고절차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해정보 제공행위나 욕설·야한 농담 등의 빈도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녹색단추’를 통한 신고제도는 인터넷 채팅방에서의 무분별한 유해파일 전달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고포상제도의 강화’는 유해정보나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행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타당성 있는 유해정보를 신고한 신고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무료 아이템 교환권이나 아이템 구매 할인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다) 불건전 용어 자체소멸·차단 프로그램 개발·보급

대화방이나 게임 도중에 심한 욕설이나 성적 단어를 사용할 경우 자체소멸,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용어를 일정 빈도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자동 로그아웃되는 기능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규제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온라인 에티켓

이나 건전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이 전개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③ 게임내용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 마련: 게임 등급제의 시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등급제의 실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비디오나 영화와 달리 등급제가 부여되지 않은 게임의 폭력성, 선정성은 오래 동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어 왔음에도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의견대립으로 제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미 게임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의 예를 바탕으로 게임의 폭력성, 성, 사용언어 등을 기준으로 적합한 등급과 콘텐츠 기술어를 권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게임업체 자체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예에서와 같은 업체중심의 자율적인 게임소프트웨어 게임등급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④ 커뮤니티 사이트 사전신고제 및 성인인증 의무화 제도 도입

이번 연구를 통해 새로이 지적된 중요한 사실은 성인인증이 법제화된 성인사이트나 폭력·엽기사이트와는 달리 유해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제도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유해내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사전신고제 및 성인인증 의무화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고, 신고와 수시적인 내용 점검을 통해 청소년 혹은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가 심각한 유해성이 인정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폐쇄 혹은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 사이트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O)들은 제 3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함께 유해정보의 유통이 불리일으키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제 3자의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효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제 3자는 물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서비스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이익의 일부를 나누어 갖고 있으므로 이들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설정하는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유해정보를 제거하도록 권유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유해요인 인터넷 접촉 경로의 차단

① 성인인증 절차의 강화

(가) 성인인증 핸드폰 통보제 의무화 및 패스워드 기능 추가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성인인증사이트에 접속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신용카드 사용시 활용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 통보제도를 성인 인증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사용시와 마찬가지로 문자메시지 통보시 성인인증이 이루어진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안을 통해 보호자가 자녀의 유해사이트 접속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핸드폰을 통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성인인증시에도 주민등록번호, 이름은 물론 패스워드를 추가 기입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 주민등록생성기 활용 불가를 위한 대책 마련

청소년들이 성인인증이나 커뮤니티 가입을 위해 활용하는 주민등록생성기에 관한 규제- 적발시 3년 징역 이하 또는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의 과태료,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처벌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생성

기는 파일의 형태로 P2P 서비스나 인터넷 커뮤니티 파일방을 통해 번번히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주민등록생성기’ 등의 단어를 금칙어로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적극적인 근절의지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주민등록생성기 활용에 관한 처벌과 신고체계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 주민등록생성기 사용에 따른 처벌내용을 청소년들에게 홍보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유해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율규제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② 포털 사이트의 유해배너 및 성인광고 규제 강화

청소년이 특별한 제지 없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의 경우 초기화면은 물론, 초기화면을 통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하위 디렉토리에 대해서도 유해배너나 성인광고가 뜨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포털사이트 배너 및 성인광고에 대한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광고 주체는 물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공동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소년의 경우, 실수로 유해배너나 팝업창이 뜨는 배너에 접속했을 경우 전달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백신프로그램이나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유해 키워드폴의 확대·다양화를 통한 검색경로 차단

현재 활용되고 있는 유해키워드 폴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문자조합이나 띄어쓰기를 통해 유해정보가 검색,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검색경로를 확실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 등급제의 도입

영화등급 방식과 같은 온라인 등급제(예시: PG, M, MA, R, X 5등급)를 도입하고 유통금지 등급을 받은 콘텐츠의 유통을 막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X등급이나 R등급을 받은 인터넷 콘텐츠는 청소년 접촉제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다른 국가에서 호스팅되는 인터넷 콘텐츠가 R이나 X로 분류되면 금지 콘텐츠로 구분하여 접촉이 불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⑤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보급 확산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의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가정의 수는 전체 인터넷 활용가능 가정수의 20%에 지나지 않는다. 유해매체 차단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개발된 인터넷 관련정책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인터넷 규제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차단 프로그램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특히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무료 보급 및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한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가정방문설치 및 기초 활용법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2) 개인·환경적 보호요소 개선 대책

(1) 가족응집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청소년들의 가족응집성은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유아기, 아동기였을 때부터 형성된 관계가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과 가족구성원간의 가족응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뿐 아니라 아동기 때부터의 긍정적인 가족상호작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부모자녀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초기가족교육프로그램과 가족공동활동 프로그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사회복지관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2) 또래 관계의 긍정적 역할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청소년기의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심리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친구가 없는 청소년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친구간의 갈등을 줄이고 친구관계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나눌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올바른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또래관계가

청소년이 인터넷 유해정보에 접촉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내 여가활동 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수련관에서 지역사회 거주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지역사회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지역사회 미디어 교육의 활성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인터넷상의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민간차원의 자율 규제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 미디어 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컴퓨터 교육을 단순히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서 ‘정보사회 윤리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으로 심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단순한 기술교육의 차원을 넘어선 컴퓨터 교육, 더 정확하게는 ‘정보사회’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사회에서 네티즌의 의무와 권리는 무엇인지 등을 교육해야 한다. 청소년 스스로가 음란물을 선별하고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미디어 교육을 부모에게까지 확대하여 인터넷에 대한 부모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 상의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관련 전문가로 민간 기구를 구성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미디어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가칭) 청소년 건전 인터넷 활용능력 자격부여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은 종전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교육내용에서 벗어나 ‘건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한 10가지 방법’, ‘대화방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법’,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즐겁고 좋은 정보 탐색하는 법’ 등 세부 활동영역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침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건

전 인터넷 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나 단체를 조직하여, 이 들 스스로가 또래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을 정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봉사활동점수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간차원의 자율 규제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체적인 유해매체 등급제를 시행하거나 ISP 연합체 스스로 사업자윤리강령을 제정, 자율규제를 시행하는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건전활용을 위한 교육, 마케팅, 홍보, 워크숍 및 안내책자를 무료 배포하는 등의 사업을 확대시켜나가야 하며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가칭) 청소년을 위한 푸른 사이트’ 상을 수여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이트를 각종 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는 사업을 확대·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VI. 청소년 유해행위 개선 대책

1. 서론
2. 청소년 유해행위와 성관련 문제행동
3. 유해행위로 인한 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사례
4.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접근
5. 실증적 조사연구
6.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제안

VI. 청소년유해행위 개선 대책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보호법이 1997년 제정·발효된 이후,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의 근본 목적은 현실적으로 각종 업소들의 영업적 이익추구와 경제적 논리에 직면하면서 상당 부분 좌절되거나 수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청소년분야의 전문 연구기관들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개념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예, 한국청소년개발원, 1990; 김문조, 1994; 김준호, 박정선, 1996; 청소년보호위원회, 1999; 2003). 일반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약물, 그리고 유해행위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가운데 유해업소와 유해매체, 유해약물 등은 청소년이란 대상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업소와 매체, 약물로써 그 실체가 비교적 분명하지만, 유해행위는 우리 사회의 일부 성인들이 청소년을 이용하거나 착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일컫는 것으로, 실체가 매우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와 선행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행위는 사회 성인들이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이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유린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청소년 인권(생존권과 성장권, 학습권, 행복권 등)침해사례에 속한다. 이것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

청소년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의 건전한 문화조성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행위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범위와 기준에서 파악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성인들의 특정 행위가 청소년들의 무엇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이다. 청소년 유해행위가 성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유해한 행위를 하는 성인들을 식별해 내고 이들의 승인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당신들이 청소년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을 때, 이들의 반응은 매우 적대적이고 반항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유해성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영업장의 업주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반 성인들 모두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유해한 행위를 하는 성인들의 경우 분명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되어지지만, 이들의 실체와 모집단을 파악하고 표본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가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행동을 야기시키는지론 추론한 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성인 사회의 위험요인(risk factors)을 파악하고, 이런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확인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할 때, 청소년 유해행위는 가출 청소년이나 가정 및 학교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성인들의 유해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행동은 대부분 성적접대 및接客행위와 음란행위, 혼숙행위, 빠끼행위, 티켓다방 등에서의 배달행위 및 성매매 행위 등이다. 결국 성인들이 그들의 영업적 이익과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고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다양한 형태의 성 위험행동에 노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성매매나 성폭력, 부적절한 임신, 성병, 절도와 폭력 등의 문제행동을 야기시키며, 이와 더불어 정신적 장애와 장기적으로 개인의 인격성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한상철 등, 2003). 청소년유해행위 위반사범 단속결과(청

소년보호위원회, 2000)에서도 청소년에게 풍기 문란한 장소제공행위(44.5%), 성적 퇴폐행위(27.2%), 대가성 성적 교제(21.4%) 등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성인들의 유해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청소년들의 성 관련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성인 사회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된 성관련 행동의 보호요인이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비행 청소년들과 일반 청소년들을 판별해 줌으로써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실제 완충시켜 주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모형

(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 유해행위 관련 법적 조항과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유해업소와 유해매체, 유해행위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걸친 통제와 단속의 근거가 되고 있다. 여기서는 유해성에 관한 개념적 논의와 더불어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유해행위의 법률적 규정과 유형 분류, 그리고 법 조항에 의거한 규제 현황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유해행위와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분석하고 연구문제를 구체화한다.

② 유해행위 접촉 실태에 관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개관하고, 주요 결과를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연구는 주로 청소년들의 이용실태에 집중되어 왔다. 고용의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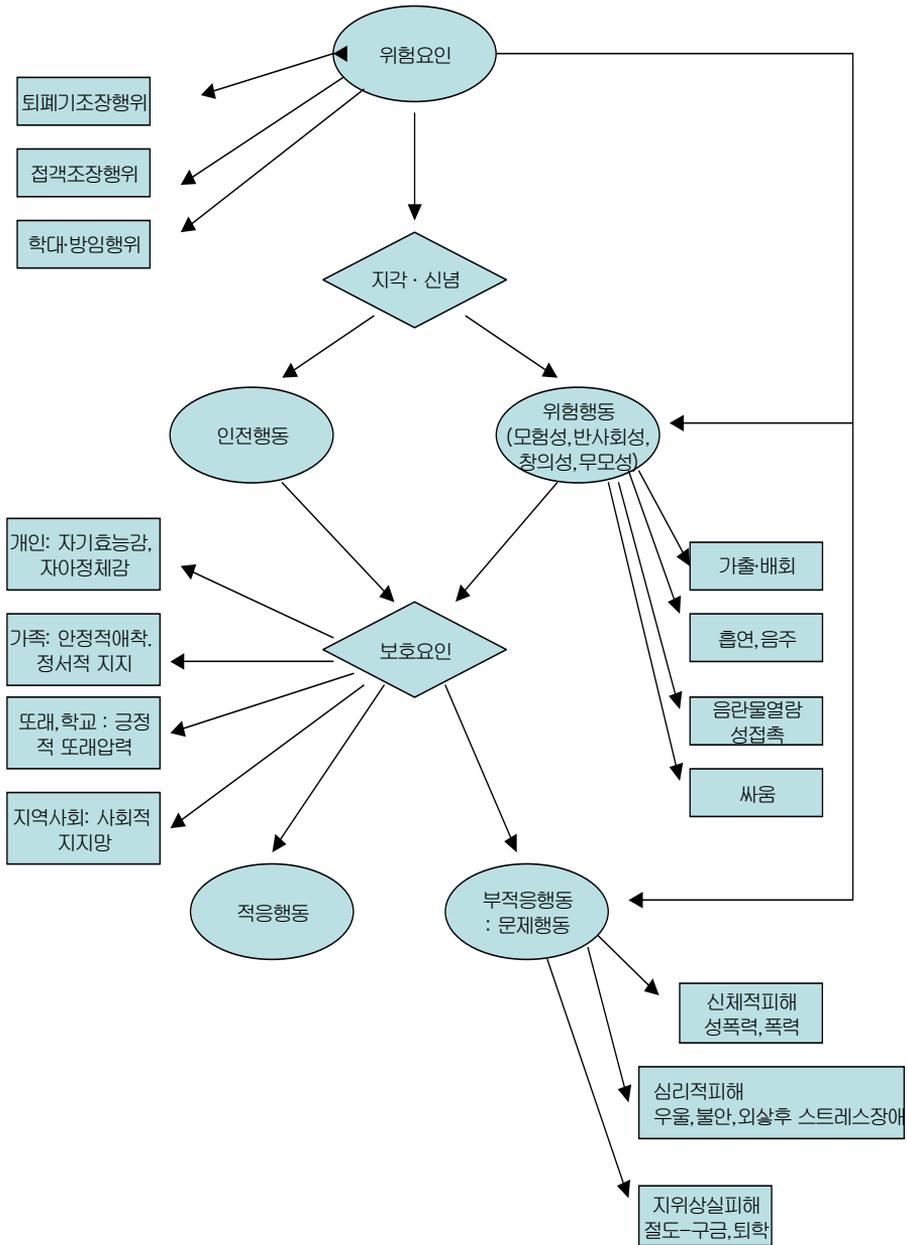
은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제정과 더불어 청소년 고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유해행위 가운데 특히 티켓다방 고용, 유흥업소 고용, 전단지 배부 및 빼끼 고용 등의 실태와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③ 특정 지역(대구시)의 일반 청소년(실업계 여자고등학교)과 특수집단 청소년(소년원, 보호관찰소)을 대상으로 성인들의 유해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성관련 문제행동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며,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대표적인 보호요인(자기 효능감,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스트레스 대처 등)의 상대적 중요성을 검증한다. 성관련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요인은 무수히 많지만, 이 가운데 성인 사회 및 청소년들의 생활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위험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④ 특정집단(여자 가출 청소년)의 소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성인들의 유해행위에 접촉하게 된 경위와 유해행위로부터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경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인사회의 유해행위에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착취 및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성인 사회의 유해행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유해행위 관련 개선책을 강구하고,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종합 모형을 제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유해행위 접촉에 대한 정책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과 문제행동 예방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규제 중심적 정책 대안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성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가 더불어 향유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것의 운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개념모형



[그림 VI-1] 유해행위 연구개념도

2. 청소년 유해행위와 성관련 문제행동

1) 청소년 유해행위의 개념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인 유해환경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회 환경’을 말한다. 이에 대해 윤수현(1989)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저해하는 제요소”, 임형진(1991)은 “환경이 건전하지 못하여 도리어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 내지 침해함으로써 건전 육성을 방해하는 생활환경”, 한준상(1991)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성장에 비교육적이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과 그런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 환경을 의미한다.

청소년유해행위는 ‘청소년을 유해하게 하는 성인 사회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각종 성적퇴폐행위를 시키는 행위(성적 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음란행위), 청소년에 대한 각종 가혹행위(장애기형 등 관람행위, 구걸행위, 학대행위), 호객행위를 시키는 행위, 풍기문란 장소제공 행위, 청소년 이용 다류배달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 법에 따를 경우, 청소년 유해행위는 성인들이 영업적 이익과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것은 명백히 사회법에 따라 처벌받거나 규제되어야 마땅한 행동들이다. 한편, 청소년들에 대한 성인들의 유해행위는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성관련 문제행동 즉, 성적 접대 및接客행위와 성 매매행위, 음란행위, 혼숙행위 등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보호법 관련 내용 해석

청소년유해행위에 대한 규제(법 제26조의 2)

1.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각종 성적퇴폐 행위를 시키는 자 가. 성적접대행위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제1호)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2)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종전에는 단순히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왔으나, 단순 고용에서 나아가 애무,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및 소위 “홀딱쇼”등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각종 성적 유희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거, 중형으로 처벌

○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윤락업소 등 각종 퇴폐향락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퇴폐적 안마, 목욕보조, 알몸접대 및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 등을 시키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

○ 속칭 ‘호스트바’에서 19세 미만 남자 청소년에게 성적접대를 시키는 행위도 처벌 대상

※ 풍속업소의 경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윤락행위 또는 퇴폐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 그 대상이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는 것임

※ 윤락업소의 경우,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거 폭력·협박이나 위계를 사용하여 미성년자로 하여금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제24조 제3항, 제1항) 그 대상이 19세 미만 청소년인 때에는 이 경우에도 폭력·협박이나 위계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됨

- 성적접대행위의 알선, 매개행위도 동일하게 처벌
- 여관,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행위 알선 및 일부 보도방 등의 성행위 알선이 처벌 대상
- 윤락업소에서의 19세 미만 청소년 윤락행위 알선도 이에 포함

※ 윤락업소의 경우, 윤락행위를 알선한 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제25조 제1항), 윤락행위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거 더욱 무겁게 처벌

나. 유흥접객행위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3)

-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하여금 각종 술집에서 옆자리 술시중을 들게 하거나 노래, 춤 등을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도 형사 처벌
-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는 물론 여성 접대부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의 불법변태영업 또는 무허가 영업의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
- 속칭 ‘호스트바’에서 19세 미만 남자 종업원에게 술시중 등을 시키는 행위도 처벌 대상
- 알선·매개행위도 처벌
- 모든 보도방·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의 19세 미만 청소년 접대부 소개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

다. 음란행위금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3호)
⇒ 10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3)

- 극장식 유흥주점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소위 누드쇼, 성행위 묘사춤 등을 시키는 행위 등도 처벌

※ 형법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제245조), 이를 시킨 자는 교사·방조범으로 같은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대상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거 가중 처벌

2. 19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각종 가혹행위 처벌

가. 장애인형등 관람행위 금지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인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제4호) ⇒ 5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4)

- 19세 미만 장애아 공연, 19세 미만 기형아 이용 구걸행위 등 중형 처벌

나. 구걸행위 금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제5호) ⇒ 5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4)

- 속칭 ‘앵벌이’등 19세 미만 청소년을 이용하여 동정심을 자극하는 구걸행위 등 중형처벌

다. 청소년 학대행위 금지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제6호) ⇒ 5년 이하의 징역(법 제49조의4)

- 보호·감독의 관계에 있는 자는 물론 그 외 누구라도 학대행위를 한 자는 모두 처벌
- 학대행위에는 옷을 안 입히거나 굶기거나 잠을 안재우는 등 인간의 의식주 공급을 하지 않는 행위, 정도를 넘어선 징계행위,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 생명·신체의 완전성과 인격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일체의 가혹한 대우 포함

※ 형법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제273조 제1항)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그 대상이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누구라도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

3.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는 자 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제7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4호)

- 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호객행위(속칭 “삐끼행위”)를 시킨 경우 처벌
- 노래방·비디오방 등, 기존에는 호객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던 업소에서 호객행위를 시킨 경우도 처벌 대상

※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자가 “손님을 꺾어서 들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77조 제5항, 제31조), 19세 미만자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거 그 업종을 불문하고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 신설

- 호객행위자(속칭 “삐끼”)는 별도의 처벌 규정으로 처벌
 - 삐끼 행위자는 경범죄처벌법 상의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에 해당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제1조 제10호)
 - 특히, 업주의 불법 퇴폐·변태영업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공범으로 처벌

4.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풍기문란 장소 제공한 자 처벌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제8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4호)

○ 여관,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 비디오방, 만화방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이성 혼숙을 허용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

※ 공중위생법 관련조항 폐지에 따라 신설

3) 청소년 유해행위와 성관련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 유해행위는 가출 청소년이나 가정 및 학교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유흥접대행위와 거리에서의 빠기행위, 티켓다방 등에서의 배달행위 및 성매매 행위 등은 성인들의 유해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행동 또는 문제행동에 속한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동은 대부분 성인들의 영리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성인들의 유해행위 가운데 다양한 위험요인들 즉, 흡연, 술, 금품, 억압, 구금, 회유 등이 청소년들의 성관련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들의 외현적 문제행동 즉, 폭력이나 절도, 부적절한 성행동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또한 정신적 장애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개인의 인격성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한상철 등, 2003). 청소년 유해행위 위반사범 단속결과(청소년보호위원회, 2000)를 보면 주로 청소년에게 풍기문란 장소제공행위(44.5%), 성적 퇴폐행위(27.2%), 대가성 성적 교제(21.4%) 등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해행위는 청소년 스스로 지각할 때 분명 유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인 사회가 청소년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청소년의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퇴폐 및 유흥업소 등에서 청소년들을 이용하거나 고용하여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성인들의 행위가 청소년의 성적 문제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행동을 야기시키고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성인들의 유해행위에 따른 결과로서 청소년들의 성관련 위험행동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행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성관련 문제행동의 위험요인

① 개인 요인

김정만(2001)은 청소년들의 성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성적 충동 및 공격성,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 개방적 성태도, 음주 및 흡연, 낮은 자기 효능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욕의 증가(충동성, 공격성)이다.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인 발달과 함께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들의 성적 성숙을 주관하고 성적 욕구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인은 성 호르몬의 분비이다. 남성의 대표적인 성호르몬은 안드로젠(androgen)과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며, 여성의 성 호르몬은 에스트로젠(estrogen)과 에스트라디올(estradiol)이다. 특히 청소년의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증가는 성충동과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성관련 행동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이다. Zuckerman(1979)은 감각추구성향을 “신기하고 복잡한 자극, 경험에 대한 욕구이며 그러한 경험을 위하여 신체적, 사회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자극추구성향이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외적 자극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자극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화되어진다고 제시했다(한상철, 2004).

셋째,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이다. 이영숙(1993)은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와 성관계 경험률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성교 경험률을 높인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음주 및 흡연이다. 윤가현(1996)은 한국 청소년들의 성행동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의 성경험 여부는 성역할 구분 태도 및 음주행위 등과 매우 높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성 가치관의 혼란이다. 서구 사회의 성 개방 풍조가 도입되면서 우리의 성 도덕관 및 가치관이 자연생식에서 조절생식으로, 임신성교에서

피임성교로 변하게 되고 성교자체는 육체적 쾌락이나 향락의 가치로 변화함으로써 혼전순결에 대한 신화가 깨어지면서 청소년들의 문란한 성 경험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까지 성관련 문제행동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위험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이들 위험요인들 역시 청소년 유해행위를 일으키는 성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생물학적 경향성 즉, 감각추구성향과 성 호르몬 증가 등은 사회 환경적 영향과 거리가 먼 것이지만,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나 성 가치관의 혼란, 음주와 흡연 등은 우리 사회 성인들의 유해행위와 무관하지 않다.

② 가족 요인

가정은 청소년이 태어나 1차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회화를 배우는 곳이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가정환경, 가정 분위기 등과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양육태도 등은 청소년들의 성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첫째, 가족의 구조적인 요인이다. 민병근과 김현수(1992)의 연구에서는 일반중고생 1,440명과 소년원에 재소중인 비행청소년 2,197명(성비행 48명, 기타 비행청소년 709명)을 대상으로 가족구조 및 가정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비행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대가족(혹은 확산가족)에 속한 경우, 가정의 수입원으로 부모가 아닌 친척에게 의존할 때, 또한 부모와의 별거경험이 많을 때 성비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양육방식이다. 민병근과 김현수(1992)의 연구에서 전제적이고 자녀의 자유를 구속하고 어른 중심적이고 처벌위주의 양육방식을 경우 자녀의 성비행 성향이 높았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셋째, 가정의 성교육 부재이다. 많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성문제행동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임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의 유해환경과 경제 일변도의 가치관은 가정의 구조적 결손과 기능적 결함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롯한 가정의 교육적 풍토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 성인들이 청소년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와 무관심, 자녀의 기본 생존권 박탈 등도 중요한 유해행위가 되며 이것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강력하게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③ 또래 요인

청소년기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다. 또래는 청소년기의 적응과 사회적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므로 친구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사회 맥락적 요인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자신과 비슷한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또래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얻으며, 가정 밖의 세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조기은, 2001). 한편, 청소년들의 집단동조압력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을 함께 하도록 압력을 받으며, 그 결과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성인숙, 1999).

특히, 청소년들의 성문제행동은 친구간의 관계나 영향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생 중 또래에 대한 동조경향이 가장 높은 청소년기에는 성행동 뿐 아니라 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또한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성사회화 집단으로서 상호간에 성지식과 성 태도를 교환한다(김혜원, 이종민, 2001; 김혜원, 이해경, 2002; 한상철, 2004).

④ 학교 요인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입시과목을 잘하는 학생은 훌륭하고 문제없는 학생이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문제 있는 학생으로 취

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실 내 친구 관계도 협력과 도움보다는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최충옥, 1992).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학교성적은 비행과 상당히 강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공부에 대한 흥미도 비행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교사들과의 관계는 고등학교의 경우 비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교사에 대한 애착과 비행의 관계는 매우 영향이 깊다고 할 수 있다(김정만, 2001).

⑤ 지역사회 요인

청소년의 성관련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유해환경이며,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 역시 대부분 유해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유해 퇴폐·향락업소의 산재이다. 우리 사회는 주거지, 학교 주변 구분 없이 아무데나 유흥업소들이 산재해 있어 비교육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다. 아무리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도 대문만 나서면 온갖 퇴폐·향락업소들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자극시키고 있으며, 가정과 학교 밖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는 강력한 인자가 되고 있다(한상철, 2001).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들로 PC방(게임방), 비디오방, 노래방, 주점, 나이트클럽, 만화방 등이 있는데, 이들 업소들의 경우 생계형 업소로 출발을 하였지만 점차 영업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변질된 형태의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극과 폭력, 성관련 문제행동을 조장하고 있다.

업소들의 유해요인으로는 음주와 흡연, 음란행위 자극, 싸움, 고성과 법석담, 조직폭력배 등 주변인물의 압력, 향락적 분위기, 이성간의 자극적인 접촉, 성적 호기심 자극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의 성 문제행동을 촉발시킨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해매체를 통한 성의 상품화가 성적인 자극을 유발하고 있다. 최

근 들어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외설적인 음란물은 청소년들의 성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인잡지, 비디오, CD, 인터넷 등의 음란물의 범람이 청소년의 성충동을 자극하고 있으며, 그 속에 담겨있는 폭력성이 극단적인 성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보는 성”은 청소년기의 남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으며, 이것은 실제 성 행위를 유도하기도 한다.

유해매체 가운데 특히 동영상매체는 동적이고 감각적이며 강력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에 대한 그릇된 정보와 환상을 갖도록 유도한다. 이 밖에도 인쇄매체나 외설 등 역시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갖도록 만들며, 끝없이 반복되는 행동과 상상을 통해 음란물 중독을 야기시킨다.

셋째, 성인 사회가 갖고 있는 왜곡된 성문화는 청소년들의 성문제행동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성적 쾌락주의를 부추기는 각종 성관련 산업과 남성적 성을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성문화 등이 청소년 성문제의 사회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 성문화 속에서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로 보고, 여성은 성적 자율권이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며, 여성은 성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간주한다. 또한, 도덕적 기본 개념의 붕괴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와해, 옳고 그름에 대한 모호함과 더불어 냉혹한 경쟁사회가 낳은 비인간성이야말로 성 윤리의 타락을 자초했으며 왜곡된 성문화를 잉태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의 왜곡된 음주문화가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성 행동을 자극하고 있으며, 술을 통해 성 행위를 정당화하고 여성을 상품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을 술자리의 접대부로 고용하고接客행위를 조장하며,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성인들의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이용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술자리에서의 위험요인은 수 없이 많다. 특히 통제력 상실로 인해 야기되는 욕설과 과장된 행동, 시비, 성적 충동, 성적 환상 등은 성 공격행동을 야기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유해행위 관련 선행연구 분석

여기서는 성인 사회의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로 인한 청소년의 문제행동 실태와 그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유해 장소로 인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다.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업소는 본래의 목적인 숙박보다도 각종 탈선 및 율락행위에 이용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일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퇴폐·향락에 사용되는 유해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숙박업소의 유해행위로는 율락녀를 고용하여 율락행위를 알선하는가 하면 음란비디오를 상영하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혼숙행위를 허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약, 환각제 사용 등을 용인 또는 묵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숙박업소 이용경험과 비행경험의 관계를 살펴보면, 숙박업소 이용경험이 많을수록 음주, 흡연, 무단결석, 집단패싸움, 가출, 이성과의 성관계, 폭행, 위협,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흥기소지, 야간배회, 도박, 절도, 성추행, 성폭행, 음란낙서 등 각종 비행의 경험이 높다(도중수, 1990).

둘째, 유해물품과 대중매체로 인한 문제행동이다. 성인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물품들이 청소년에게는 위험 및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담배자판기의 이용경험은 흡연과 가장 관계가 있고, 음주, 패싸움, 이성과의 성관계, 가출, 폭행 등을 일으키며, 히로뽕, 마약, 마리화나 등 약물류나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제의 사용경험은 성폭행, 절도,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패싸움, 성추행, 가출, 이성과의 성관계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셋째, 성인사회의 유해 상황에 따른 문제행동이다. 도중수(1990)의 연구에 따르면, 식구들의 잦은 음주도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영향을 미치고, 어른들의 술주정 또한 청소년의 가출, 성추행 등을 일으킨다. 또한 청소년들은 제반 사회 상황 중에서 황금만능주의 풍조, 과소비 풍조, 유흥가 불량배 등도 청소년의 유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우리 사회의 일부 성인들이 유해매체,

유해물품 등을 이용하여 주로 유해업소 등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이 유해행위가 되며, 이러한 유해행위는 청소년들의 각종 위험행동은 물론이고 성관련 문제행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청소년유해행위 개선대책에 대한 연구

청소년 유해행위는 주로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으며, 청소년 유해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청소년 성매매일 것이다. 최근 청소년의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여성개발원(2002)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 1월-11월 사이 경찰의 단속활동에 따라 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소개·알선하여 검거된 사람(미성년윤락)은 312명,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이를 매개하여 검거된 사람(청소년성매매)은 7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성매매의 개선을 위해 한국여성개발원(2002)은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의를 개선해야 하고,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의 개선방안으로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교행위의 개념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연령인식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의 법제 정비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규제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의 활성화,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적극적 활용,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마련 필요, 건전 성문화 조성사업 전개, 인터넷 상에서 사이버 수사대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종웅(2004)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으로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개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활성화, 성매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성매매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제

안하였다. 이광수(2002)도 또한 비행청소년 대상 청소년의 성매매 실태와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청소년 성매매 대처방안으로 4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가정 환경적 대처방안으로서 가정화목을 통한 자율규제 체계를 조성하고, 청소년 성매매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부모의 컴퓨터 지식습득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둘째, 학교 환경적 대처방안으로서, 열린 학교교육의 실현과 전문상담교사제도 도입 그리고 성상담실 개설을 주장하였다. 셋째, 사회 환경적 대처방안으로서 건전한 놀이문화정착과 청소년의 노동시장 확대, 청소년 교정과 처우 프로그램의 개선,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를 통한 교육기회의 부여, 직업전문학교 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넷째, 국가 정책적 대처방안으로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용은(2004)은 향락업소 등의 ‘공적 매춘’ 보다는 정보통신 발달로 인한 ‘사적 매춘’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개인형 성매매의 실태 분석과 더불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3. 유해행위로 인한 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 사례

1) 청소년유해행위와 성폭력의 관계

청소년 유해행위는 성인들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청소년을 이용하거나 착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비인권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성인들의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하고 부정적인 것이 미성년자에 대한 강압적인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 유해행위는 성인들이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이용하여 성적 접대나接客행위를 일삼고, 흥행을 목적으로 음란행위와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성폭력과 직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만 13세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은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으로 폭력의 사용여부, 저항의 여부, 동의를 여부를 불

문하고 범죄행위로 취급되어 엄하게 처벌 받고 있다. 그러나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강간치상이나 윤간, 흥기를 소지하거나 야간에 침입하거나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을 제외하면 거의 동의된 성관계로 의심을 받게 된다. 이는 요즘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하여 매우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라고 보여 지고, 어느 정도 판단과 방어의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피해가 고소되어 수사 재판과정에서 동의된 성관계를 의심받고 거짓말 탐지기를 하도록 명령받았으며, 부모의 보호도 없이 억압적인 상황에서 진술과 대질심문을 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곤 한다.

성인들에 의한 청소년 유해행위가 청소년 성폭력으로 이어질 때, 피해자인 청소년들은 인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다양한 정신적 장애와 후유증을 겪게 되며, 이것은 사회적 문제행동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사실상 법적 보호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음으로써 사회에 대한 모멸감과 삶의 절망감을 겪게 되고 결국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한편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왜곡된 성의식과 성행동이 교정되지 않은 채 성인기로 진입할 때 이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와 성폭력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은 그들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임을 자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정책은 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치료하는 것이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행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행위를 차단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학교 내 성폭력의 유형과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사회 성인들이 영업적 이익과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성적 접대나 접객행위에 가담시키고 호객과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유해행위도 문제이

지만, 학교 내에서 교육자나 또래(선후배 포함)에 의해 자행되는 성폭력의 문제도 심각한 청소년 유해행위이다. 청소년 성폭력의 가해는 성인 사회에서의 유해행위로 직결되며 그리고 성폭력 피해는 평생에 걸친 후유증으로 장애를 겪게 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높으며, 철저한 교육적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됨을 시사한다.

(1) 교육자(교사, 강사)에 의한 피해

중학교 교장 성추행 사건, 유치원 원장 성추행 사건 등 교육자의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알려져 사회에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었다. 이 두 사건 모두 국가공인 교육시설 내에서 믿고 맡겨진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자에 의하여 교육이란 미명 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학생과 원아를 대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켰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O양 비디오를 보고 소감문쓰기를 시킨 남교사, 도난품을 찾는다 고 여학생의 치마 속과 가슴을 만졌다는 남교사의 사례도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교육자라는 성인들이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분명한 유해행위이다.

교육자에 의한 성폭력 사례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유교적 관념이 아직도 강한 우리 사회에서 교직은 성직과 마찬가지로 윤리 도덕적인 신뢰와 기대를 받고 있다. 더욱이 교육열이 높고 교육에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자는 막대한 영향력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관계에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교육의 모습으로 위장되기 쉽다. 이는 피해자에게 교사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인지 성적인 피해인지 혼란스럽게 하고, 교사와 제자의 위치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무력감으로 드러내기가 힘들고, 용기를 내어 드러내 보아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끌어지기 쉬워서 다른 유형의 성폭력보다도 더 많이 은폐되고 심각한 후유증으로 연결되고 있다.

(2) 성폭력 사례

<학령전 어린이>

유아피해는 학령기 어린이(8세~13세)에 비하여 강간보다는 성추행피해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추행의 경우 신체적인 상해의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며 염증, 충혈, 출혈 등이 있어도 피해경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결국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

1. 5세 여아가 유치원 원장에게 성추행당한 후 자위, 동생에 대한 가해 행위 등 심각한 후유증을 보여 정신과치료 받음. 고소하였으나 가해자가 계속 부인하고 어린 유아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처리. 정신과 의사의 증언까지 있었으나 계속 기각됨. 이 과정에서 유치원교사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대치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이에 상처를 받은 유아와 모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치료하기도 함.

2. 피아노 학원의 플룻선생이 7살 여아의 질안에 손을 넣음. 아이가 밤마다 잠지가 아프다고 하여 산부인과에 가서 치료받고 소견서 받아옴. 원장과 강사가 처음에는 아이말을 듣고 증거없이 모함한다고 펄펄 뛰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함. 이 과정에서 다른 아이의 피해가 드러나 합세하자 싹싹 빌며 돈으로 합의하자고 조름.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인정받고 칭찬받고자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교사가 성적인 접촉을 한 경우 피해아동에게 혼란을 주고 지속적인 피해가 가능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아동들은 부모보다 교사를 더 막강하게 느끼기도 하고, 학교에 와서 항의하면 소란스러워질까봐,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부모들도 분하면서도 아이가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을까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

1.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방과 후 남으라 해서 가슴을 만지고 빠는 등 성추행을 여러 차례 하여 교장에게 담임을 바꾸어 달라고 편지를 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학교를 전학시켜달라고 엄마를 조름. 남자 어른에 대한 공포와 기피 등 후유증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이 사실을 인지한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고 학교에서는 담임만 교체하고 병가로 처리했다가 다시 근무함.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 결국 교사는 사표를 내고 교장은 전출됨. 이 과정에서 교장은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해 급급하고 육성회 등에서 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연대서명하고 피해 학생과 부모를 비난하여 큰 상처를 받았고 중학교에 진학하고서도 이 일을 아는 동창들에 의해 소문이 나서 결국 전학을 함.

2. 6학급의 작은 초등학교 교장이 4,5 학년 여아들을 관사에 오게 하여 성추행을 해옴. 여아들이 양호교사에게 상담하였으나 너희가 조심하고 따라가지 말라고만 함. 상담소에서 사실 확인하니 양호교사는 교장이 간접적으로 사과하였다며 학부형도 좁은 마을이라 문제 삼으려 하지 않는다며 곤란해 함. 교육부와 교육청에 알려 조치를 촉구하자 정년퇴직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아 경고를 하였다고 함.

<중·고등학생>

상습적으로 교사에게 수업 중과 생활지도 중에 성추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항의는 교육행위이라는 미명하에 묵살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강간사건인 경우에는 위계로 유인했지만, 학생이 선생을 사모하여 쫓아 다녔다거나 집으로 찾아왔다며 화간을 주장하는 과립치함을 보인다. 이 경우 미성년자간음,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1. 학교 태권도부에 들어간 중1 여학생이 동계합숙훈련 중 태권도부 사범에게 강간당하여 이를 인지한 부모가 상담, 경찰 연계하여 고소, 2년 징역 선고.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전학하고 운동도 중단함.

2. 작문교사가 고3 여고생에게 특기생으로 대학 추천해 준다면 소설을 쓰려면 성적인 것도 잘 알아야 한다며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하자 저항하고 도망쳐 나와 구조요청하고 고소함.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취하하라는 압력을 받고 동급생들이 항의성명서를 발표함. 피해여학생은 특차 추천시기를 놓쳐 재수를 하게 됨.

<학교 관계자 및 주변인에 의한 피해 사례>

유치원, 학원의 통학버스 기사의 가해사실이 다수 보고 되고 있으나 관리소홀의 책임을 지게 될까봐, 또는 소문이 나서 다른 유아들에게 영향을 줄까봐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통학버스에는 반드시 인솔교사가 끝까지 동승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접하는 직종은 성추행의 우려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력이나 의혹이 가는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원에 놀러온 사람이나 놀이방, 학원원장 남편, 동생, 아들, 친구 등이 가해를 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피해유아가 명확하게 진술을 못하거나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성추행일 경우 강력히 부인하면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1. 학교앞 문방구 주인이 15명의 남자아이들에게 공짜로 만화를 보게 하면서 골방에 데려가 성추행을 1년 이상 지속함. 학교에 소문이 나서 양호교사가 무기명으로 진상을 조사, 학부모에게 알려 고소함. 끝까지 합의안하고 처벌의지를 가졌으나 “고령이고, 초범이고, 피해자가 남아인 고로”라는 이유로 1심에서 8개월 징역이 선고됨. 교장은 고소까지 가서 학교명예가 손상되었다며 양호교사를 비난함.

2. 학기초 아직 전근해온 교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교사를 사칭하며 심부름을 시킨다며 창고로 유인하여 4학년 여아를 강간치상. 이후 학교에서는 학교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8시 전과 4시 후 학교에 머무르지 못하게 했음. 그러나 명부에 있는 교사의 사진을 일일이 확인하였으나 아이는 계속 교사에 대한 공포로 정신과치료를 받았으며 그 지역에서 이사할수 없는 형편인데도 전학을 강요함.

3)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언

위의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과 처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크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학교라는 장소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교사에 의하여 자행되거나, 사후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문제제기를 해도 시정은커녕 결국 더 큰 상처를 입고 무마되고 말아 계속 은폐되고 재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돌출된 몇 사건은 예외적인 개별사건이 아니라 여태 은폐되어 온 학교 내 성폭력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가해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학생 연령에 맞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인간 존중교육, 의사소통훈련을 남녀학생에게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피해를 입었을 때나 그 피해로 인한 후유증으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는 교사의 역할과 태도는 부모만큼이나 중요하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성폭력피해학생을 발견하거나 상담을 통해 인지하여 가장 먼저 접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위기개입이나 적절한 지원을 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하도록 학교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주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가해자 학생에게 무조건 징계와 퇴학 등 범죄자로 낙인찍지 말

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한다. 이미 형성·고착되어 있는 성폭력행위는 처벌만으로는 쉽게 종식되지 않고 재범으로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보다 전문성을 지니고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해자의 성 의식과 문화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올바른 남녀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여성을 성적대상이 아닌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인식하고 여성과 진실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② 자신들의 행동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이 피해여성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가를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감정이 입하는 방법과 비폭력적인 대인관계훈련, 분노조절훈련 등이 필요하다.

③ 또래집단이 주는 쾌락, 남성다움에 대한 욕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놀이문화를 찾도록 하고 또래문화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 방안이 필요하다.

④ 공부와 학교에 흥미가 없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심과 적성에 맞는 일이나 기술에 자신의 능력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족에 대한 유대감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청소년 시기의 성 욕구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임신과 낙태가 여성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인격적이고 책임감있는 성관계에 대한 효율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박현이 1997).

넷째,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일반교사에게는 교직과목 이수 시 성폭력예방교육과 성교육을 필수화하고 정기적으로 일선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자가 가해자가 될 때에는

친족성폭력처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한다.

다섯째, 성교육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성교육프로그램을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을 필수화하여야 하며, 성교육 전담 상담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도 사회교육차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청소년 성매매 사례와 대처방안

(1)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과 유형

성인들이 청소년을 금전으로 매수하여 성 행위를 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청소년 성매매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이는 곧 청소년 유해행위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사치와 쾌락의 이유로 금전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성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며, 이것은 청소년들의 성장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원조교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청소년들의 성을 매매하는 이러한 양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성매매알성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등 법률적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만으로 청소년 성매매 현상에 대처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전시효과만을 가져 올 뿐이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졸속하게 제정된 법은 집행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고, 심지어 문제행동을 예방 또는 차단하기보다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구실을 함으로써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신미식, 2001). 예를 들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공개를 실시한 후 2001년 8월에 55건의 청소년성매매 사건이 보고 되었는데, 9월에는 78건의 사건이 보고 되었다. 물론 법률 시행 이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매매

권수도 증가된 것으로 보고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법 제정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처하겠다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문화에 비추어 볼 때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성매매 과정에서 십대 청소년들은 최첨단 통신기기를 총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비의 소유와 익숙한 사용은 그들의 성 산업을 보장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원래 청소년 성매매의 시작은 전화방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전화방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최근에는 PC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발달로 인해 불특정 다수와 이메일, 채팅이 가능해지고 화상채팅 등이 도입 되면서 PC방은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제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고 화상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만날 장소를 정하는 전 과정은 스파이 작전을 방불케 한다. 청소년들은 다른 형태의 성매매 산업과 달리 최첨단 기기를 사용할 줄만 알면 중간 착취자 없이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자기 몸만 제공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마음껏 쓸 수 있고 떨어지면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처럼 청소년 성매매는 다른 형태의 성매매(예컨대, 유흥업소, 룸싸롱, 가요주점, 집창촌 등)와 달리 핸드폰을 갖고 있고, PC방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항상 돈이 필요한 십대 청소년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수 있는 그들만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실제 청소년 성매매의 확산은 과거에는 도저히 성매매 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만한 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른 성매매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처럼 가출 후 자취방 월세나 생활비가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다른 이유로 인해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스타들의 팬클럽 활동과 그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남들처럼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모자라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의붓아버지의 성폭행 충격으로 인해, 같은 반 친구의 협박을 받아서, 단순히 부모에게 반항하기 위해, 친구 생일선물로 옷을 사 주기 위해 등 너무나 다양한 이유들을 지니고 있

다.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신미식, 2001; 이춘화 등, 2004).

첫째, 청소년 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전체 성매매 청소년 가운데 13세-14세 청소년의 비율이 19%나 되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추세이다.

둘째, 성매매 청소년 가운데 재학생의 비율과 학교 중도탈락자의 비율이 거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재학생이나 중퇴생이나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에 대한 생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학교는 할 수 없이 가는 곳이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곳일 뿐이며, 그들의 삶에 그다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성매매 청소년이 속한 가정형태 역시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거의 절반씩을 차지한다.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양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은 무관심과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 그 밖의 가정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은 편견과 재정적 어려움 등이 성매매에 참여하도록 만든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넷째, 성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99%가 돈 때문에 성매매를 한다. 돈의 용도는 제각기 다르다. 용돈이 필요해서, 핸드폰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 남자 친구의 선물을 사 주기 위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표를 사기 위해, 가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실컷 놀아보기 위해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들은 돈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섯째,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은 성경험을 갖고 있다.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일단 성 경험을 한 상태가 되면 자신들은 더 이상 순결하지 않다는 생각을 의식적이든 무식적이든 하게 되고, 이런 생각은 이들을 쉽게 성매매 현장으로 몰고 간다.

여섯째, 성매매 청소년의 약 50% 정도가 가출 청소년이다. 이춘화 등(2004)이 심층면접한 성매매 청소년 9명 가운데는 1명을 제외한 전원이

가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출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들 가운데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청소년이 많으며, 부모들 역시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장기 가출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무관심은 곧바로 성매매와 직결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성매매 청소년의 90% 이상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으며, 성매매 역시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아르바이트에서 시간당 2,000-3,000원의 급료를 받는 것과 비교할 때, 성매매는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는 매력적인 사업임에 틀림없다. 이들에게 있어 자신의 몸과 성은 돈을 벌게 해 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상대 남성 역시 자신의 고객에 불과하다.

여덟째,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유일한 지지 기반은 친구이다. 청소년기의 발달적 속성상 친구는 매우 중요한 대상이지만, 성매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든지, 이웃, 교사 등의 사회적 지지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친구만이 유일한 지지체가 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을 비롯한 성인들의 정서적 지지와 사회의 지지 체제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아홉째, 성매매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성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인가 하며 매우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성인 남성과의 개방적인 성행위를 경험하면서도 한편으로 순결사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를 미워하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그리워한다. 학교에 대해서도 선생님과 공부하는 것은 싫지만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을 부러워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 성매매는 가출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충격적인 사실은 수업 중에 잠깐 외출해서 성매매를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사례도 보고 되고 있다. 가정형편이 나쁘지 않은 중산층 가정의 청소년이

전체의 45%나 된다는 보도도 있고, 전교 1-2등인 성적 우수 청소년이 성매매에 참여한 사례도 보도되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은 성행위에 그치지 않고 협박과 사기를 동반하는 대담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제 각기 다른 성장 요인을 갖고 있고,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하며,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가출한 경우와 가출하지 않은 경우,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와 중퇴한 경우,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와 향락이나 사치 등을 즐기기 위해 하는 경우, 단순히 성행위만 하는 경우와 협박이나 사기를 동반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의 속성상 그리고 성(sex)이라는 특수한 행위로 인해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대처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성 역시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과의 갈등을 확산시킬 뿐임을 이해해야 한다.

(2) 청소년 성매매 사례

이춘화, 조아미(2004)의 보고에 따르면, 성매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은 대부분 자신이 놀고 싶은 대로 놀지 못하게 하는 부모의 간섭으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게 되고, 가출 후 술을 먹고 놀다가 남자친구와 성경험을 갖게 되고(성폭행 포함), 이후 돈이 떨어지면 잠잘 곳을 마련하기 위해 또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위 ‘물주’를 물색하게 되고, 물주와의 거래를 통해 성매매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 가출 후에 돈이 필요해서 15살 때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 했을 때는 원조교제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인터넷에서 번개팅을 하다가 남자들을 만나서 술 먹고 잘 곳 마련해 주고 그랬거든요. 돈을 받고 관계를 하는

것만 원조라고 생각하고 밥과 술, 잡자리 제공만 받고 현금을 안 받으면 원조교제가 아닌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 버디를 하는데, ‘조건만남 구해요’ 라고 써 있는데, 친구가 이런 게 조건만남이라고 말해서 쪽지를 돌려줬어요. 가출 상태에서는 잘 곳,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하게 되는 거죠.

성매매를 하는 방법은 주로 티켓다방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이다. 티켓다방에서의 성 매매는 주로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고, 낙태비용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성매매가 많지만,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는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해서 용돈이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노래방 도우미나 림살롱 접대부, 보도사기(남자가 여자를 손님에게 알선해 주고 중간에 나타나서 손님을 협박해서 돈을 뺏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조아미 등, 2004).

사례2: 처음에는 아는 동생이 방법을 알려 줬어요. 채팅을 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성매매를 처음 했을 때는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하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혹시 유부남은 안된다든지, 아니면 30살이 넘는 아저씨는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기준이 있니?)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여관에 들어갈 때 그냥 걸어서 들어가는 건 좀 그렇더라구요. 차를 타고 들어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주로 나이가 어느 정도?) 30-40대가 많아요. (네가 미성년자라는 사실 말했니?) 네. (그러면, 네가 미성년자란 걸 알고 그냥 돌아갔다든지, 너보고 집으로 가라든지, 아니면 그냥 돈만 주고 갔다든지 그런 사람 있었니?) 최근에 두명 있었어요. 성관계를 하려고 만난 건 아니었고 피시방비가 없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 어디로 나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사람이 그냥 돈 주고 빨리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두 명 정도 있었어요. 그밖에 모든 사람은 내가 미성년자

란 것을 알고 만나요.

성매매가 이루어질 때의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성매매 청소년들은 아프고 짜증나서 오로지 빨리 끝나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을 한다고 한다. 대화 내용은 성매수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데, 주로 질문하는 내용은 나이와 가출이유, 성관계 경험에 관한 것들이라고 한다. 실제 나이를 말해도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성매매 대상자로서 기피하는 상대는 성기 확대 또는 변형수술을 한 경우, 1시간 이상 성관계를 하는 경우, 구강 또는 항문 성교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은 성매수자들이 16-18세 사이의 청소년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유는 연령이 어리면서도 가장 예쁘고 육체적으로 적절하게 성숙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매매 경험 횟수는 성매매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동일한 기간 동안의 경험 횟수도 일주일에 3회부터 20회까지 다양한데, 업소에서 일한 경우는 비교적 규칙적인 반면 채팅을 통한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편차가 컸다. 성매매 횟수가 증가하면서 처음에는 부끄럽고 무서웠던 것이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아졌다는 응답도 있고, 손님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었다는 청소년도 있었지만, 모든 남자들이 변태처럼 느껴져서 남자를 기피하고 남자와의 신체 접촉을 꺼리게 되었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육체적인 면에서는 질염과 성병에 걸리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한다.

사례 3: 처음에 할 때는요. 사람을 만나서 여관 안에 들어가면 너무 무서워요. 아저씨도 너무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보면, ‘어, 별거 아니네’. 그 다음날도 긴장감이 있는데도 ‘어, 별거 아니네’. 시간이 지나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혼자 옷 벗고 누워있어요. 결국엔 아저씨들한테 일부러 말을 시켜요. 하다보면 외모가 좋은 아저씨는 ‘저 아저씨 어디 잘 생겼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채팅해서 친구 만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게 다 변해요.

육체적인 면에서는 내 몸이 좀 이상한 점을 느껴요. 제 질이 몸에 있는 질이 많이 파손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질이 벌어져서 질염도 쉽게 걸리고 하다 보니까 골반염이란 것도 걸려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거기다 소독약 발라요. 장난 아니에요.

금전적 문제에 대해 성 매매 후 티켓다방은 업주가 미리 받아 놓기 때문에 못받는 경우가 없으나 채팅을 통해 만난 경우는 약 10% 정도 못 받는다고 한다. 성 매매 1회에 받는 금액은 티켓다방의 경우 기본 2시간에 6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 채팅을 통해 만난 경우는 보통 10만원-20만원 정도라고 한다. 성매매를 통해서 번 돈은 주로 옷을 사거나 머리를 하거나 화장품을 사는 등 외모를 꾸미는데 쓰며, 나이트클럽과 술집, 게임방에서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티켓다방의 경우는 시간비 내고 생활비 쓰거나 하면 거의 남는 돈이 없었다고 한다. 한편, 최근에는 일부 청소년의 경우 성형수술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성매매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점 외에 성매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로는 폭행과 상해, 강간, 유사성교,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조직폭력배를 만난 경우 등이다. 폭력은 주로 티켓다방 등에서 2차를 나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맞은 경우이고, 상해는 질에 로션이나 치약 같은 이물질을 발라 질염에 걸리게 한 경우이며, 강간은 칼로 위협하거나 여러 명이 집단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성매매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과 신체상의 질병 등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 이외에도 성인들에 의해 그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3)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제언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설계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 인격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적 대안으로 이춘화 등(2004)의 제언

에 따라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진로·직업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진로상담의 제공과 건전한 직업 가치관의 확립, 일자리와 아르바이트 알선 및 제공, 직업기술 훈련 기회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성매매 청소년 개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의식 확산과 자기 존중감 향상, 사회적 지지망 형성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청소년 성매매 예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실시와 일반 및 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활동의 강화, 빈곤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학교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활성화,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회의 공동 노력 등이 필요하다.

넷째, 성매매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치료활동의 강화와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및 지원센터의 확충,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등이 요청된다.

다섯째, 성매수자와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성매수자 교육확대, 사회의 인식변화와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이 요청된다.

여섯째, 인터넷의 감독 및 통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인터넷 교육의 강화와 청소년 유해사이트 감시, 청소년 유해사이트 자체 정화노력 촉구 등이 필요하다.

4.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접근

1) 보호요인의 개념과 역할

(1) 보호요인의 개념과 특징

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유해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성관련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관련 문제행동의 범위도 모호하지만, 성인 사회의 유해행위가 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약물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이들 유해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견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결국 피상적일 수준에 머물고 말 것이다.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 역시 다양한 문제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으로써 성행동의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것 또한 성인 사회의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회 제도적인 개선책보다 교육적인 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더 가치있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성관련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확인하고, 이를 처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성관련 위험요인은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라고 한다면,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상쇄하거나 완충작용을 해 주는 요인을 의미한다(한상철, 2004). 이것은 단순히 위험요인의 부재 혹은 낮은 위기 수준(보상요인(compensation factors)이라고 함)이 아니라,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요인을 말한다(박현선, 1998; 유성경 외, 2000).

보호요인이 작용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첫째, 위험에 작용함으로써 스트

레스의 영향이나 위협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방법, 둘째, 위협으로부터 야기된 부정적인 반응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셋째, 안정되고 지지적인 개인적 관계를 활용하거나 또는 과업성취나 성공을 통해 자존감과 자기 유능감을 증진시키는 방법,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Hernandez, 1993).

(2) 보호요인의 구분

① 개인 요인

성관련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개인적 요인들은 자기 통제감,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 등이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자기 통제(self-control)이다(김두섭, 민수홍, 1996; 김남성, 1995; Gottfredson & Hirschi, 1990). 부적응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할수록 스트레스 상태를 탈피하고 즉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일탈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성이 강하다. 자기 통제력이 약한 청소년은 충동적이고 일탈 행동적 성향을 지닌 또래친구의 유혹을 거부하기 어렵다(박성수, 1991). 나아가 자기통제력 결핍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응 능력의 미숙,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 등으로 사회생활에 곤란을 겪게 된다(Mischel et al., 1998). 성관련 문제행동을 지닌 청소년들이 감정조절 및 분노통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된 선행연구들(김명화, 1998; 신기숙, 2002)을 통해 볼 때, 청소년의 성적 일탈행동은 대부분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여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 일탈행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특별한 과제를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상황적이고 구체적인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은 청소년기 반사회적 행동의 유혹을 극복하는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며

(Bandura, et al., 2003), 성비행이나 약물사용 등의 문제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dwig & Pittman, 1999).

한편, 자기 존중감(self-esteem)은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일탈 행동과 더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Jang & Thornberry, 1998). 이와 관련하여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아개념을 비교한 연구 결과(김준호, 1992)에 의하면, 비행청소년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해 지니는 감정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일탈행동에 대한 자기 정당화와 집단의 의리를 많이 내세우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가족 요인

가정환경이 성장기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성원으로 부터 안정된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청소년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 생활 적응도가 높으며(Colarossi, 2001), 부적응행동이나 일탈행동에 관여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 1998). 특히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성적 일탈행동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권순, 한건환, 2001; 한인영 등, 2001). 따라서 부모의 안정적인 지지와 친밀한 관계,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권위적 양육태도 등은 가정 내 청소년 문제행동의 주요 보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자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Funk(1999)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 여자 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에서의 학대, 가출경험, 구류경험, 대인범죄 빈도 등 4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특히 가정 내 학대경험은 가장 유의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Chesney-Lind(1989)의 연구에서도 여자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가정에서의 신체적 폭력 경험과 성 학대 경험, 부모와의 갈등, 가출경험 등이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대받은 여자청소년은 학대받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심리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외현적 문제 행동을 표출하는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이성식과 전신

현(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비행친구와의 접촉 요인과 더불어 부모와의 불화로 인한 가출 요인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유성경(2000)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가족 구조적 결손, 가정불화, 부모의 학대 및 무관심 등으로 나타나 가족관련 요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 다양한 일탈행동 가운데서도 성관련 문제행동은 가족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Widom과 Kuhns(1996)는 부모에 의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양육태만도 여자청소년의 성매매 행동의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하였다.

③ 사회 요인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행동에 관련된 청소년일수록 건설적인 대안보다는 언어적, 신체적 공격행동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 또래친구들간의 교우관계가 건전하고 일탈성향의 또래친구가 적을수록 문제행동에 관련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유미, 김득성, 1998). 성관련 문제행동을 지닌 청소년은 자기주장기술과 사회성이 부족하여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정아, 1999; 신기숙, 2002). 따라서 또래와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또래의 사회적 지지, 일탈성향이 없는 또래집단에서의 소속감 등이 청소년문제행동에 작용하는 주요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지역사회 관련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요인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한 유용한 개입도로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란 가족, 또래친구, 교사 등과 같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애정, 수용, 관심의 정도를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선행연구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에는 부적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개인이 가정과 사회에 대해 높은 유대감과 신뢰감을 가질수록 자신의 행동을 잘 통제하는 반면, 유대가 약하거나 손상될 때 일탈행동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Hirschi,

1990). 사회적 지지는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 특히 성관련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Bowen & Chapman, 1996; Marshal & Chassin, 2000; Moore & Chase-Lansdale, 2001). 즉, 개인이 주변 환경 안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안녕감과 적응력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이 낮을수록 정서적·외현적 일탈행동에 취약하다(Helsen & Meeus, 2000).

2) 성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의의 및 운영조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 관련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은 개인적 요인으로 자기 통제(self-control),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자기 존중감(self-esteem) 등과 가정 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갈등해결 전략,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또래와의 친밀감과 사회적 지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사회의 다양한 위험요인들, 예컨대 유해환경과 유흥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등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또는 문제행동 선택 가능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적응적 행동(적응유연성; resilience)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사회는 점차 더 복잡해지고 위험요인 역시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을 때, 청소년 교육에서 중요한 과제는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켜 줌과 동시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높여 줄 수 있는 보호요인을 탐색하여 이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연구자들에 의해 8개 단위(8차시)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의 의미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실행 가능성을 예시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경험적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장 적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몇 가지 조건과 유의점을 충족시킬 경우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형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집단의 크기를 1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며, 집단원의 성격은 이질적일 수록 효과적이다. 즉, 남녀, 연령,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 하되, 이질적으로 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집단상담 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집단상담 지도자는 집단상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집단원들간의 역동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집단원 모두의 협동적인 참여를 조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지도자는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책임 지도를 해야 한다.

셋째, 단위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100분을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한 단위활동을 100분으로 하는 분산적 집단상담 형태로 운영하되, 경우에 따라 집중식(마라톤) 집단상담도 권장해 볼 만하다.

넷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는 가급적 조용하고 안락한 공간이어야 하며, 10명 단위의 소집단이 토론하고 활동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다섯째, 집단원 상호간의 친밀감(rapport)과 신뢰감은 프로그램 전 회기 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한편, 프로그램 활동 중 발표한 내용에 대해 상호 비밀을 보장하고, 집단 활동에 결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미리 작성하고, 지도자와 집단원 상호간에 협약식을 체결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2) 프로그램 내용

<표 VI-1>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의 내용

주 제	목 표	활동 내용
인사나누기	오리엔테이션 및 집단응집력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목적 설명 및 안내 · 별칭짓기를 통한 자기소개 ·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기대 나누기 · 집단참여시 지켜야 할 행동, 비밀유지, 진행 일정 등에 관한 구조화
자기 이해 및 수용	자기이해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장점과 단점 이해하기 ·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적어보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능력에 대한 인식을 통한 자기효능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재능과 소질 파악하기 ·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파악하기 · 집단원 서로의 긍정적인 부분 칭찬해 주기
감정조절하기	감정조절을 통한 자기통제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트레스 유발상황 파악하기 · 자신의 감정목록 적기 · 자동적 사고 규명하기 · 감정과 사고 간의 관계성 인식하기 · '멈추기-생각하기-행동하기' 단계 학습하기
자기주장하기	자기주장적 대인관계기술을 통한 또래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감정 이해하기 · 타협하는 방법 습득하기 · 주장행동과 비주장행동 구분하기 · 주장행동 시연 및 역할놀이
갈등해결 전략	부모와의 갈등해결 전략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사례 분석하기 · 자신과 부모와의 구체적 갈등상황 목록 적기 ·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 및 결과 나누기 · 갈등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전략 모색하기
나의 가치는?	가치명료화를 통한 심리갈등해소 방법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가치관 인식하기 · 역할놀이를 통한 가치갈등상황의 명료화와 대안탐색하기 · 가치 선택하기
마무리하기	종결 및 피드백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변화된 행동 파악하기 · 집단원 상호간에 피드백 주고받기 · 새로운 각오 다짐하기

5. 실증적 조사연구

1)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유해행위로 인한 성관련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으로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와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수용 청소년 총 1,236명을 임의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실업계 여자 고등학생들은 전체 1,020명이다. 이들은 대구지역 5개의 구에서 1개교씩 전체 5개 학교에서 선정된 학생들이며, 학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연구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년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지만, 학년이 높을수록 성관련 행동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3학년울 더 많이 포함시켰다. 5개 학교에서 한 학교당 5개 학급씩 약 200명(학급의 크기 약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1,020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그리고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수용 청소년은 전체 216명으로, 이들 가운데 소년원 수감 청소년들이 150명이고 보호관찰소 보호대상 청소년이 66명이다.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경우 소수의 여자 청소년들(소년원 1명, 보호관찰소 10명)이 있었지만, 자료처리 과정에서 이들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피험자들의 반응은 여자 고등학생과 남자 특수집단 청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집단간 차이가 곧 남녀간 차이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녀 모두 대표성을 갖지 않는 집단인 만큼 남녀간 비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의 경우 접근과 설문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공문을 접수하고 승인이 이루어지고, 정해진 장소에서 직원들의 통제 속에 조사가 수행되었다.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자료처리 과정에서 불성실하거나 전체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많은 수의 피험자들이 제외되었다. 설문대상이 특수집단일 뿐만 아니라 설문 문항이 너무 많음으로서 불성실한 응답을 양산했다고 판단된다. 설문지 클리닝 작업을 통해 최종 자료처리 된 대상은 실업계 고등학생(일반집단으로 처리) 950명과 특수집단

179명(소년원 130명, 보호관찰소 49명)이며, 이들의 각 집단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VI-2> 연구대상 집단의 분포

구 분		표본 집단		자료처리 대상		평균연령
특수집단	소년원	150명	216명	130명	179명	만 18.2세
	보호관찰소	66명	(17.47)	49명	(15.85)	만 17.1세
일반집단 (여자 실업고)	1학년	196명	1,020명 (82.52)	174명	950명 (84.14)	만 16.7세
	2학년	295명		275명		만 17.2세
	3학년	529명		501명		만 18.3세
전체		1,236명(100.0)		1,129명(100.0)		

한편 사례연구(질적 분석)를 위해 대구지역 가톨릭직업기술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10명의 사례를 확보하였다. 이들은 심층면접 분석의 대상으로서 가출과 성문제행동, 가출 후 생활, 요구사항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들의 응답을 기술하는 형식으로 연구자들 가운데 전문 상담자에 의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2)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크게 4가지 측정영역의 8개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4가지 측정영역은 피험자들의 생활현황과 문제행동, 성관련 위험요인, 성관련위험행동, 보호요인이다.

(1) 생활현황과 문제행동 척도

피험자들의 일상생활 수준과 만족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6개)과 일반적인 문제행동(가출, 흡연, 음란물 접촉, 유흥업소 출입, 성관계 등)을 묻는 문항(14개)으로써, 모두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내용은 이중원

등(2001)과 임성택(2001) 등의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를 기초로 연구자들이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 문항선정을 하고,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후 결정되었다.

(2) 성관련 위험요인 및 성행동 척도

성관련 위험요인과 성행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관련 행동에 접촉하게 되는 경위와 원인, 성 경험 및 현황, 학교에서의 성교육, 성매매의 원인 등을 묻는 것으로 전체 31개의 선다형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내용은 이춘화와 조아미(2004) 등의 연구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이 선정하고, 개발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후 결정되었다.

(3) 성관련 위험행동 척도

성관련 위험행동 척도는 기존의 위험행동척도(Arnet, 1998; Gullone et al., 2001; 한상철, 2004) 등에 기초하여 이를 성관련 위험행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전체 21개 문항의 5점 평정적으로 되어 있으며,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관련 위험행동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으로 확인되었으며,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4) 보호요인 척도

본 연구에서 성관련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충해 줄 것으로 가정된 보호요인은 긍정적인 가족기능, 부와 모 각각과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다. 이들 변인은 많은 선행연구에 터하여 선정되었으며, 특히 성관련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으로 확인될 경우 이러한 요인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처치하는데 기초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기능 척도는 전체 20개의 문항으로 된 5점 평정척도이며(Cronbach's alpha = .73),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는 각각 20개의 문

항으로 된 5점 평정척도(Cronbach's alpha= .81, .87) 이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척도는 15개 문항의 5점 평정척(Cronbach's alpha= .87)이고, 자기 효능감 척도는 31개 문항의 5점 평정척도(Cronbach's alpha= .68)이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소집된 자료를 각 집단별로 분류하고, 코딩작업을 실시하였다. 코딩과정에서 응답이 불충실하거나 척도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응답하지 않은 것은 제외시켰다. 그리고 각 측정영역별로 특수집단(소년원, 보호관찰소)과 일반집단(실업계 여자고등학교)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자료처리를 하였다.

먼저, 피험자들의 생활여건과 문제행동 20개 문항별로 특수집단과 일반집단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이원 교차분석(Chisquare)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관련 위험요인과 성행동 31개 문항에 대해서도 각 문항별로 이원교차분석과 카이스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위험행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특수, 일반)과 문제행동(가출, 흡연, 유흥업소출입, 이성친구와의 교제, 성관계)을 투입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적용하였다.

넷째, 보호요인 전체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준판별분석(Discriminat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6.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 제안

1) 조사결과분석

(1) 조사연구결과 요약

(가) 피험자 특성과 문제행동 경향성 분석

① 가정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친부모 두 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이러한 반응이 특수집단은 36.9%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70.4%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수집단은 ‘아버지와 새어머니’ (17.9%), ‘아버지하고만’ (17.3%)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이 일반집단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따라서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된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보다 가정의 구조적인 결함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구조적 결함이 이들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정의 구조적 결함은 비행 성향과 관계가 있다.

② 부모님(보호자)의 본인에 대한 관심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특수집단은 ‘관심이 높다’ (61.5%)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일반집단은 ‘보통 수준이다’ (51.3%)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집단의 경우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거나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시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호자가 관심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해석된다.

③ 자신의 생활수준을 판단해 보도록 했을 때,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중’이 5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하’가 27%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생활수준은 낮은 편이며, 중상류층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집단이라 하더라도 실업계 여자고등학생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예상 가능

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④ 현재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특수집단은 ‘매우만족’ 과 ‘만족’ 이라는 응답이 49.2%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35.3%로 나타났다.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의 수용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 대한 그리움과 수용 이후 부모님의 의도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라고 추측된다. 한편 실업계 여자고등학생들의 경우 생활수준이 낮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가정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⑤ 부모와의 대화시간은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특수집단의 19.6%가 대화시간이 ‘거의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대화 시간이 하루에 10분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 피험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높은 비율이며, 전반적으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피험자들이 부모님 또는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잔소리나 지시, 요구사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모두 대화에 포함시킨 결과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재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⑥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특수집단은 ‘매우만족’ 과 ‘만족’ 이라는 응답이 26.9%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24.4%로 나타나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다소 더 높은 것은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집단의 경우 현재 대부분 학교를 중단한 상태이기 학교생활에 대한 동경심이나 그리움이 만족도 반응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3학년들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불안 등이 작용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반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⑦ 가출경험은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특수집단은 ‘있다’ 라는 응답이 78.8%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18.8%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의 대상 청소년의 경우 비행 개입의 주요 경로가 가출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가출의 원인과 경로는 다양하겠지만, 가출 이후 성인 사회의 유해환경에 접촉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성관련 문제행동과 폭력, 절도 등의 비행에 개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가출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성인들의 유해행위 즉, 영업적 이익을 위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행위로부터의 피해가 성관련 문제행동을 비롯한 청소년 비행의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⑧ 흡연여부에 대해 특수집단은 ‘있다’ 라는 응답이 52.5%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13.8%로 나타났다.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출과 더불어 흡연 역시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가출 후 대부분은 유해환경에 접하게 되고, 이러한 유해업소 및 성인들의 유해행위 상태에서 흡연과 음주는 어쩌면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청소년들의 흡연은 그 자체가 다양한 원인을 지니고 있고 위험행동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비행청소년의 경우 흡연은 비행의 중요한 요인이거나 비행 후 또 다른 비행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⑨ 이성친구(사귀는 사람) 유무에 대해 특수집단은 ‘있다’ 라는 응답이 46.4%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29.2%로 나타나 특수집단이 의미있게 더 높다. 따라서 이성친구는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일탈행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추측되지만, 양 변인간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청소년기에 가출이나 흡연 등의 경험은 유해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성친구 역시 건전한 이성관계라기보다 성욕구나 공격성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⑩ 인터넷이나 잡지 등을 통해 음란물을 관람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특수집단의 경우 78.8%가 ‘있다’ 고 응답한 반면, 일반집단은 51.8%의 반응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음란물 관람은 청소년 비행과 의미있는 관련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음란물이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음란물 관람은 성인 사회가 조장한 유해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것이 청소년들의 성관련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⑪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 채팅을 해 본 경험은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약 78%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집단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여학생들이므로 이들이 익명의 사람들과 인터넷 채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성관련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높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특수집단의 경우 과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그들이 다양한 비행 요인을 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⑫ 아르바이트나 부업 중에 어른들로부터 착취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을 알아 본 결과, 특수집단의 16.2%가 ‘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일반집단은 9.5%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어른들로부터 착취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어른들의 유해행위를 직접 경험했다는 것으로, 이러한 유해행위가 특수집단 청소년들에게 의미있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인들의 유해행위가 청소년 비행에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10.5%의 청소년들이 과거 어른들로부터 착취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유해행위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⑬ 유흥업소 출입경험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수집단의 69.3%가 출입경험이 ‘있다’고 한 반면 일반집단은 29.6%가 동일한 반응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흥업소 출입이 청소년 비행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며, 이러한 업소에서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유해행위가 문제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⑭ 학교에서 싸워 본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다’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78.8%, 일반집단은 42.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특수집단의 모두가 남학생이고, 일반집단은 여학생이기 때문에 싸움행동의 남녀간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소한 싸움이 폭력과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더욱 신뢰로운 결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추측컨대 비행 청소년들의 많은 비율이 폭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에서의 싸움과 폭력은 그들의 현재 지위상실을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일반집단의 대부분이 여자 청소년들인데, 이들의 학교 내 싸움이 42.8%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여학생들의 폭력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⑮ 부모님을 속인 경험에 대해 특수집단은 ‘있다’ 라는 응답이 86.6%, 일반집단은 71.4%로 나타났으며, 양 집단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님을 속인다는 것은 청소년 위험행동의 한 요인으로써 문제행동 발생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볼 수 있다.

⑯ 휴일에 시내를 배회한 경험에 대해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27.4%, 일반집단은 14.7%로 나타났다. 휴일에 시내를 배회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권태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권태가 가출이나 문제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⑰ 특별한 이유없이 어린 후배나 동료들을 골탕먹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은 청소년들의 금품갈취나 집단괴롭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반응은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37.4%, 일반집단은 8.7%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집단의 경우 골목이나 학교 주변, 유흥업소 등지에서 후배나 또래들을 대상으로 금품갈취나 폭행, 괴롭힘 등을 더 많이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고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⑱ 부모님 몰래 용돈을 훔쳐 본 적이 경험에 대해, 훔친 경험이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68.7%, 일반집단은 40.3%로 나타났다. 용돈을 훔친다는 것은 청소년기의 위험행동에 속하겠지만, 용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행동으로 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⑲ 이성친구와의 키스나 포옹 등과 같은 성관계 유무에 대해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73.7%, 일반집단은 32.0%로 나타났다. 특수집단

의 경우 사귀는 이성친구가 특수집단보다 2배 이상 더 많으며, 이성과의 성관계 경험 역시 2배 이상 더 많다. 따라서 이들의 이성관계는 건전한 대인관계 차원으로 해석되기보다 성욕구의 해결이나 유희의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

② 무단결석 유무에 대해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82.1%, 일반집단은 23.2%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수집단의 문제행동 개입은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서의 이탈과 가출, 흡연, 또래나 후배들에 대한 금품갈취와 폭력, 용돈 훔침, 시내배회, 이성친구 만남, 유희업소 출입, 업주들의 착취와 부당대우에 희생, 성관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결국 이들 요인들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청소년 성관련 위험요인과 성행동 분석

① 성충동을 가장 많이 느낀 매체를 조사한 결과, 특수집단은 ‘성인용 비디오’ 라는 응답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집단은 ‘TV 영화’ 라는 응답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성충동 또는 폭력충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매체는 성인용 비디오와 TV영화, 그리고 성인용 만화 등이며, 이들이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의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매체 이용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청소년 모두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특수집단의 경우 ‘자주만 아니면 계속 이용해도 된다’ (17.3%)와 ‘하고 싶을 때 언제나 해도 괜찮다’ (16.2%)라는 응답이 일반집단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 수감 또는 보호대상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유해매체에 대해 더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의 성인용 매체이용에 대한 생각 역시 성관련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③ 성인용 매체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친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성인용 매체를 잘 아는 것과 친구관계는 ‘별로 상관없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특수 80.4%, 일반 83.5%). 그러나 전체적으로 약 17%의 청소년들은 성인용 매체를 잘 알면 인기를 얻을 수 있다거나, 잘 모르면 대화가 통하지 않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성인용 매체가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④ 음란 광고물에 대한 느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아무런 느낌도 없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특수집단(66.5%)이 일반집단(58.5%)보다 더 높다. 그리고 특수집단의 경우 ‘성적 충동이 생긴다’ (10.6%), ‘실제 전화를 해 보고 싶다’ (9.5%)란 반응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한편, 일반집단은 ‘혐오감과 수치심이 생긴다’ 는 응답이 19.4%인 반면 특수집단은 1.1%에 불과함으로써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흥가 뿐만 아니라 학교주변까지 나돌고 있는 음란 전단지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무감각한 반응을 보일 만큼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성적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 전화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이러한 매체가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밤 10시 이후 TV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시청불가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난 후의 느낌을 조사한 결과, ‘아무런 느낌이 없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특수집단의 경우 48.6%인 반면, 일반집단은 58.0%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집단은 ‘강한 호기심이 생긴다’ (33.0%), ‘모방해 보고 싶다’ (7.3%)의 응답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으며, 일반집단은 ‘혐오감과 수치심이 생긴다’ 의 반응이 12.4%로 특수집단보다 더 높다.

⑥ 채팅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7%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채팅을 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집단은 이성친구와의 채팅이 45.3%로 일반집단 19.3%보다 훨씬 더 높으며, 일반집단은 동성친구가 53.1%로서 특수집단 33.0%보다 훨씬 더 높다. 비행경험이 있는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주로 이성친구와 채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밖에 일반집단과 차이가 없지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 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 과 채팅을 하는 청소년도 전체 약 18.5%에 이른다. 인터넷 채팅이 성매매나 원조교제 등의 성관련 문제행동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청소년들의 절반가량은 동성친구와 채팅을 하지만 나머지 약 40% 정도는 이성친구나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 모르는 사람 등과 채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실업계 여자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여학생들의 성 문제행동이 채팅을 통해 시작되거나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⑦ 채팅 시 이야기 주제에 대한 응답은 두 집단 모두 ‘주제 없이 그냥 재미 삼아 한다’ 라는 반응이 전체 72.7%로 가장 높고, ‘취미 분야의 정보교류를 위해’ 가 12.2%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특수집단의 3.9%와 일반집단의 2.9%의 청소년들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채팅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채팅을 통해 건전한 대화를 나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채팅이 성관련 문제행동의 주요 통로임을 재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⑧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채팅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세이클럽’ 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지만, 특수집단은 65.4%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86.1%로 나타나 일반집단의 응답비율이 더 높다. 그리고 특수집단의 경우 ‘기타’ 와 ‘메신저’ 사이트 이용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⑨ 화상채팅 경험에 대해 두 집단 모두 ‘화상채팅 경험 없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이러한 반응은 특수집단(55.9%)보다 일반집단(77.0%)에게 더 높았다. 그러나 특수집단의 경우 화상채팅 경험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19.0%),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17.3%), ‘얼굴 외 특정 신체부위를 서로 보면서’ (3.4%) 대화한 경험이 일반집단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화상채팅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의 채팅과 일탈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

수집단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은 이러한 방식의 채팅이 문제행동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⑩ 채팅 후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없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지만, 이런 반응은 일반집단(72.4%)이 특수집단(48.6%)보다 훨씬 더 높다. 따라서 특수집단의 경우 상대방을 실제로 만난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같은 또래의 이성’ (41.9%)과 ‘이성의 성인’ (2.9%)을 만난 경험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다. 그러므로 채팅이 이성 친구와의 만남과 성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관련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주요 매체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⑪ 음란, 폭력, 엽기 사이트 접속 장소에 대한 응답은 두 집단 모두 ‘자신의 집’ 에서 접속한 경험이 가장 많지만, ‘접속 경험이 없다’ 는 응답은 일반집단에서 38.3%로 특수집단 14.5%보다 더 높다. 특수집단의 경우 이러한 사이트를 ‘자신의 집’ 이외에 ‘친구나 선후배 집’ (23.5%), ‘PC방’ (16.8%)에서 접속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⑫ 음란, 폭력, 엽기 사이트를 언제 처음 접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중학교 1학년’ 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특수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4-6학년’ 과 ‘중학교 1학년’ 비율이 일반집단보다 더 높다. 따라서 음란, 폭력, 엽기 사이트 접속 시기가 사춘기 초기에 시작될수록 비행이나 일탈행동 경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⑬ 인터넷 음란 사이트 접속 경로에 대해 특수집단은 ‘친구나 선후배의 소개’ 라는 응답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집단은 ‘접속한 적 없다’ 라는 응답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수집단의 경우 ‘일부러 음란사이트를 찾아서’ 라는 응답이 17.3%이며, 이는 일반집단 8.9%에 비해 2배 가까이 더 높다. 따라서 비행이나 일탈 경험이 있는 특수집단은 음란, 폭력, 엽기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도 높고,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선후배 집이나 PC방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비율도 높으며,

대체로 사춘기 시기(초등 4-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최초로 접촉하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⑭ 유흥업소 출입 시 업주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특수집단은 ‘대부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라는 응답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집단은 ‘이용해 보지 않아서 모른다’ 라는 응답이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이용해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39.0%의 청소년을 제외한 나머지 약 60%는 어떤 형태로든 미성년자로서 유흥업소를 출입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9.4%만이 출입시 업주들로부터 연령 확인과 출입 체제를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출입은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업주들의 체제는 매우 형식적임을 알 수 있다. 업주들의 이러한 영업 형태는 청소년 문제행동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청소년들의 성장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⑮ 유흥업소 출입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특수집단은 ‘친구들과 함께’ 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가본 적 없음’ 이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친구들의 권유나 선배들의 유혹 등으로 인해 유흥업소 출입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는 친구의 양보다 친구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⑯ 키스나 포옹 등의 성 접촉 경위에 대해 특수집단은 ‘내 자신의 성충동 및 호기심으로’ 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해당 없음’ 이라는 응답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특수집단의 경우 ‘술이 취해서’ (21.2%)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음주 욕구가 성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⑰ 유흥업소나 일터에서 아르바이트(부업)를 하는 중 동료나 업주로부터 성추행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를 조사하였는데, 이 질문은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다. 그 결과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데, 특수집단은 ‘있다’ 는 비율이 6.1%인 반면, 일반집단은 2.4%이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해당 없음’ 과 ‘없다’ 는 반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 결과만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도 법적인 청소년유해행위의 실태와 개선책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먼저, 성인들의 유해행위 실태를 확인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유해행위 유형과 정도, 청소년들의 피해상태와 경로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행위와 피해 사례는 얼핏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으며, 또한 그들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⑱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 사용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 결과, 특수집단은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피임기구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응답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경험이 있는 특수집단의 경우 성에 대한 의식과 피임기구에 대한 생각 또한 그들의 문제행동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⑲ 성에 대한 지식의 습득경로를 묻는 질문에 대해 특수집단은 ‘친구’ 라는 응답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집단은 31.9%가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일반집단 청소년의 경우 ‘학교 성교육’ 을 통해서가 24.1%로 특수집단 13%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의 수용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이나 친구 등을 통해 많이 습득하고 있지만, 일반 청소년들은 친구와 인터넷, 그리고 성교육 등이 주요 매개체임을 알 수 있다.

⑳ 성 교육 받은 횟수에 대해 전체적으로 ‘3-4회’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지만, 일반집단의 경우 5회 이상이 전체적으로 약 32%에 이르고 있는 반면 특수집단은 약 21%에 그침으로써 성 교육 경험 횟수에 있어서 일반집단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교육 횟수는 성관련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④ 성교육을 받은 최초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초등학교’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시기이다. 유치원에서 성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2.8%에 그침으로서 조기 성교육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교육은 청소년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기 동안에도 지속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성교육 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⑤ 학교 성교육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배운다’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33.5%), 특수집단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재미없다’ 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반집단은 ‘윤리 도덕적인 내용으로 흥미가 없다’ 에 응답비율이 더 높다. 그러므로 전체 약 48%의 청소년들은 성교육이 이미 알고 있거나 도덕적인 내용이어서 재미가 없다는 반응을 하였다. 성교육이 흥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청소년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⑥ 성 접촉 경험에 대해 특수집단은 ‘이성친구와 성관계’ 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아무런 경험 없다’ 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수응답이지만, 동성연애 경험(3.1%)과 성매매(1.0%), 성폭력 피해(2.8%), 성폭력가해(0.9%) 등도 확인되고 있다.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특히 성폭력(강간)을 행사한 경우가 2.8%에 이르고, 일반 청소년의 2.9%가 성 피해 경험자라는 것과 전체적으로 원조교제 등의 성 매매도 전체 피해자 가운데 11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청소년의 성행동이 단순히 그들의 자율적인 의지와 선택에 따른 것이라면 위험행동에 속하겠지만, 그것이 성인들의 유해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문제행동으로 해석된다.

⑦ 성관계 경험 대상에 대해 특수집단은 ‘이성친구’ 라는 응답이 45.4%로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의 경우 11.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 ‘성관계 경험 없음’ 이 전체의 77.2%에 이르고 있음으

로써 양 집단간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한편, 특수집단과 일반집단의 1% 가량은 ‘성매수자’ 가 첫 성관계 경험 대상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집단의 2.9%는 ‘우연히 만난사람’ 과 첫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㉔ 임신 경험 여부에 대해 알아 본 결과,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의 경우 16.9%, 일반집단의 경우 3.6%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집단의 반응은 상대방을 임신시킨 것을 나타내는데, 이 결과로 볼 때 청소년 임신의 후유증과 과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㉕ 성매매(원조교제) 제안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있다’ 라는 응답이 특수집단은 5.6%, 일반집단은 10.8%로 나타나 특수집단에 비해 일반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집단의 경우 대다수가 실업계 여고생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여자 청소년들의 성매매와 원조교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㉖ 성매매(원조교제) 제안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게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기타’ 라는 응답을 제외할 때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채팅’ 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팅’ 을 통한 제안의 경우 일반 집단이 16.1%로 특수집단 9.0%보다 더 높으며, 특수집단은 ‘부킹’ 5.1%, ‘전화방’ 3.9%, ‘친구나 선배 소개’ 3.4%, ‘유흥업소 소개’ 2.2% 등으로 일반집단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으로써, 다양한 경로에서 제안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은 성매매가 채팅이 주요 경로라고 한다면, 특수집단 청소년의 경우 채팅과 더불어 부킹, 전화방, 친구나 선배 소개, 유흥업소 등의 다양한 경로에 따라 원조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㉗ 친구가 성매매 제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는지를 질문한 결과, 특수집단의 63.6%와 일반집단의 81.7%가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 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지만 일반집단의 비율이 더 높으며, 특수집단의 경우 ‘상관 않겠다’ 10.8%, ‘대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 8.0%, ‘나도 같이 연결 원함’ 6.3% 등의 다양한 응답도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으며, 특히 성관련 행동의 경우 절대적인 영향

요인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비행 친구와의 관계가 성관련 문제 행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①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발생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집단의 경우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가 55.6%인 반면 특수집단은 42.0%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수집단은 ‘성에 대한 호기심 및 욕구’와 ‘친구의 권유’의 비율이 일반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따라서 성매매를 할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은 원하는 물건과 옷 등을 사고 싶어서가 가장 많지만, 특히 특수집단의 경우 친구의 권유와 성에 대한 욕구도 성매매의 발생 동기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우리 사회에 청소년 성매매가 만연하게 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특수집단은 ‘인터넷 등 음란성 유해매체가 널려 있어서’ (35.4%)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집단은 ‘성인들의 건전한 도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30.2%)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해매체 역시 우리 사회 성인들의 왜곡된 가치관과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성인들의 부도덕성이 가장 심각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가 청소년 성매매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㉔ 성매매 하는 청소년들의 지도 방안과 관련하여 특수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학교나 가정에서 지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성행동의 경향성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성인용 비디오와 성인용 만화, 모르는 사람과의 채팅, 채팅 시 성에 대한 이야기, 채팅 후 실제 만남, 음란 사이트 접속, 피임기구에 대한 인식 부족, 성 지식 습득경로의 불건전성, 성교육 부재, 임신, 일탈 친구와의 관계 등이 청소년 성 문제행동의 주요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행 경험이 있는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청소년들의 경우 성 의식이 부족하고, 성에 대한 충동성과 호기심이 더 높으며, 성관계 경험과 상대방 임신 등의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성관련 위험행동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성관련 문제행동은 성 위험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험행동의 부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위험행동이 곧바로 문제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보호요인의 중재에 의해 적응유연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관련 위험행동의 경우 그것이 특히 열악한 환경과 능력을 지닌 청소년들과 관련되어 질 때, 문제행동을 가장 많이 예언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측정을 통한 수량화가 어려운 성관련 문제행동을 성 위험행동으로 대체하여, 이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① 가출경험 유무와 집단(특수, 일반)을 투입변인으로 하여 성관련 위험행동(21개 문항의 5점 평정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수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 성관련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으며, 가출경험이 있는 집단이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위험행동 득점이 의미있게 더 높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 관련 위험행동 즉, 문제행동은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등의 특수집단 청소년과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의미있게 더 높으며, 이것은 사회 규범의 이탈경험과 가출 경험이 성 문제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흡연경험 유무와 성관련 위험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인 경우 성관련 위험행동 수준이 의미있게 더 높고,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이 흡연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위험행동 득점이 더 높다. 그리고 위험행동의 평균값에 근거하여 집단과 흡연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보면, 특수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전체적으로 위험행동 득점이 더 높지만,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집단차보다 흡연경험이 없거나 흡연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청소년들의 집단차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흡연경험 유무보다 비행 경험이 성관련 위험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③ 이성친구 유무가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성관련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으며,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들이 이성친구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보다 위험행동 특점이 의미 있게 더 높다. 따라서 성관련 위험행동 즉, 성 문제행동은 비행경험과 더불어 이성 친구와 사귀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

④ 유흥업소 출입 유무가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인 경우 성관련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흥업소 출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출입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성관련 위험행동 특점이 의미있게 더 높다. 따라서 유흥업소 출입경험은 성관련 위험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⑤ 청소년기의 키스나 포옹 등 성관계 경험이 성관련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집단에 비해 특수집단의 경우 성관련 위험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에 위험행동 특점이 유의미하게 더 높다. 따라서 성관련 위험행동은 성관계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라) 보호요인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여기서는 성관련 보호요인으로 가정한 5개 요인(가족기능, 부와 모 각각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완충적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특수집단 피험자(소년원, 보호관찰소)와 일반집단 피험자(실업계 고등학교) 별로 보호요인 전체가 가출, 흡연, 이성친구, 유흥업소 출입, 성관계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① 청소년들의 가출여부에 대한 보호요인의 영향을 판별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가출경험이 있는 집단과 가출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한편, 일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은 가출 경험이 있는 집단과 가출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들이 가출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이미 문제행동을 경험한 비행집단에게는 판별적 기능을 갖지 못하는 반면, 문제행동 경

힘이 없는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가출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에게 보호요인이 작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비행에 개입하였고 보호요인의 부재는 가출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문제행동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반집단 청소년들은 보호요인의 작용이 가출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요인 각각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확인해 본 결과, ‘모 의사소통’ (-.878), ‘가족기능’ (-.320), ‘자기효능감’ (-.185), ‘부의사소통’ (-.169), ‘사회적 지지’ (-.155)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청소년들의 가출행동을 중재하고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보호요인으로는 모의 의사소통, 가족의 긍정적 기능, 자기 효능감, 부와의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의 순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흡연 유무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영향 분석한 결과, 특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흡연 경험이 있는 집단과 흡연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한편 일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흡연 경험이 있는 집단과 흡연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들이 흡연 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이미 문제행동을 경험한 비행집단에게는 판별적 기능을 갖지 못하는 반면, 문제행동 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흡연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은 이미 문제행동 경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호요인이 흡연 유무 뿐만 아니라 가출이나 그 밖의 다른 문제행동을 완충 또는 감소시키는데 작용하지 않지만,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는 가출과 더불어 흡연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보호요인 각각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에서 상대적인 중요도는 ‘모 의사소통’ (-.629), ‘부 의사소통’ (-.503), ‘가족기능’ (-.319), ‘자기효능감’ (-.303), ‘사회적 지지’ (-.076)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성관계 경험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특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집단과 성관계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한편, 일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 전체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집단과 성관계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 주는 판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들이 성관계 여부를 판별하는데 있어서 이미 문제행동을 경험한 비행집단에게는 판별적 기능을 갖지 못하는 반면, 문제행동 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는 성관계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은 이미 문제행동 경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호요인이 성관계 유무 뿐만 아니라 가출이나 흡연 등 그 밖의 다른 문제행동을 완충 또는 감소시키는데 작용하지 않지만,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는 다양한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성관련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보호요인 각각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를 산출한 결과, 상대적인 중요도는 ‘가족기능’ (-.736), ‘부 의사소통’ (-.448), ‘사회적 지지’ (-.346), ‘모 의사소통’ (-.172), ‘자기 효능감’ (-.160) 순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면접연구결과 요약

성관련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접촉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용시설에 보호 중인 여자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자유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자의 특성과 문제행동 경로를 요약·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VI-3> 면접조사대상 청소년의 특성과 결과 요약

번호	성별	연령	가정환경	가출 경위 및 경험	성관련 행동 경험	보호기간
1	여	17	부 사망후 모 재혼. 모/계부와 생활.	계부의 폭력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됨. 시설내 동료들의 폭력으로 무단퇴소.	14세 때 티켓다방. 29살의 남자친구와 동거.	3개월
2	여	15	부모이혼. 부와 생활. 모와 연락함.	부의 폭력.	14세 때 가출 후 채팅으로 만난 남자.	2개월
3	여	20	부모이혼. 부와 생활. 재혼한 모와 연락함.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있어 어울리고 무단결석하다 자퇴서 제출.	17세 때 티켓다방. 룸싸롱.	11개월
4	여	17	부모이혼. 부와 생활. 재혼한 모와 연락함.	부를 고소한 후 재혼한 모와 생활했지만 부적응.	9세-15세까지 부모부터 성폭행. 원조교제.	10개월
5	여	14	모 가출. 부와 생활.	부의 알콜중독과 폭력.	13세 때 채팅으로 만난 남자.	9개월
6	여	13	부모별거. 모와 생활	부의 의처증으로 가정폭력.	12세 때 채팅으로 만난 남자.	8개월
7	여	19	부모와 생활.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아서.	16세 때 티켓다방. 단란주점.	8개월
8	여	16	부모별거. 부모 모두 연락두절.	부모 양친의 무관심과 방임.	14세 때 가출 후 채팅으로 만난 남자.	6개월
9	여	17	부모와 생활. 가족 모두 삼촌집에 기거.	부의 알콜중독. 모의 생계부양과 방임.	15세 때 채팅으로 만난 남자.	6개월
10	여	13	부모이혼. 부는 정신병원 입원. 조모와 생활.	해체가정의 방임.	12세 때 옆집 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함.	6개월

면접조사의 결과, 성관련 문제행동의 원인과 경로 및 사후 대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 10명은 모두 성관련 문제행동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6.1세이며, 이들이 성관련 문제행동을 최초로 경험한 평균 연령은 13.6세이다. 이들 가운데 8명의 여자청소년들은 결손가정 혹은 재혼가정 출신이며, 가출 및 성관련 행동의 접촉 경위는 가정폭력, 무관심과 방임, 성폭력, 또래친구들과의 교제, 재혼가정 부적응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 청소년이 성관련 문제행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분석하였다. 직접적인 동기로는 가출 이후 숙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유흥비 마련, 친구의 유혹, 고용업주의 빚 독촉 등이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성관련 문제행동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성관련 문제행동에 이르게 된 경로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성관련 문제행동 경험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여자청소년 가운데 8명은 해체가정과 재혼가정 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혹은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으로 인해 갈등을 겪다가 결국 가출하게 되었고, 가출한 이후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성관련 문제행동에 연루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조사대상 가운데 2명은 친부와 이웃할 아버지로부터 각각 성폭행을 당한 후 사법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가출하여 자포자기 심정으로 성매매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 청소년의 경우 또래친구와 어울려 놀고 싶은 욕구가 강하여 자발적으로 가출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정 내 역기능 상태가 이들 청소년들을 가정 밖으로 밀어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출 남자청소년의 경우와 달리, 가출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출 이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성매매 유혹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일부는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를 하였지만, 몇몇 청소년은 티켓다방, 단란주점, 룸싸롱 등에 고용되어 본의 아니게 고용업주에게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탕감하기 위해 성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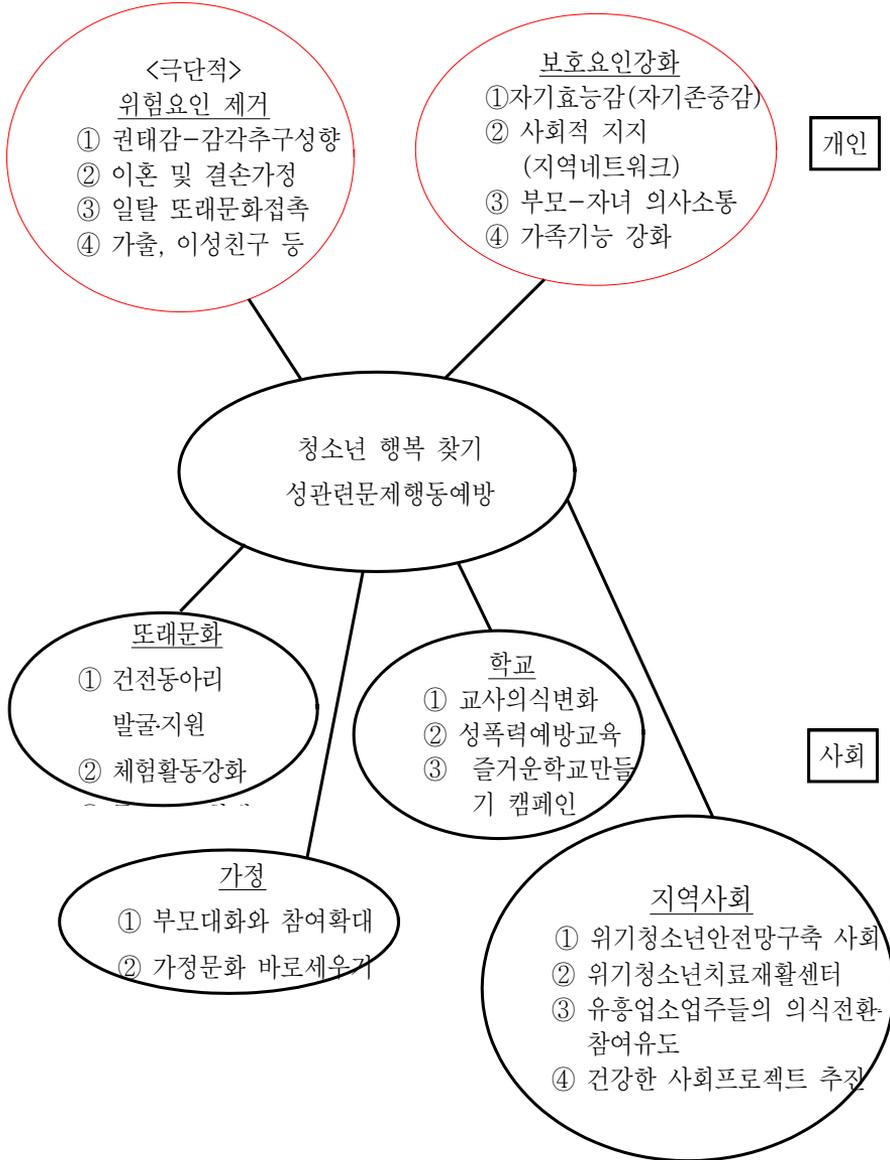
셋째, 이들의 요구를 분석해 보면, 무엇보다 정상적인 학교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고, 예전과 같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이들이 가출 이후 사회의 유해요인으로부터 많은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아 왔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며, 사회적 지원 대책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에서의 욕구불만과 무관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문제행동에 접근했지만 일부는 유흥업소 등에서 폭

력과 인신매매 등 신변상의 위협에 처하면서 성인 사회의 비정함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가정과 학교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가정은 해체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소외의 대상일 뿐이라는 인식 때문에 절망 상태에 놓여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이들이 한 인간으로서 인권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재적응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은 사회의 지원대책 뿐이다. 직업교육과 더불어 자활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소외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2) 정책 제안

(1) 정책제안 모형



[그림 VI-2] 청소년성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정책제안 모형

(2) 정책 제안

이 연구에서는 성인들의 청소년 유해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가운데 성관련 문제행동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선행연구 분석과 조사연구 및 사례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성 문제행동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 극단적 위험요인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책제안 모형에서 밝혔듯이, 청소년들의 성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주는 극단적인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험요인은 위험행동 및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특히 성관련 문제행동과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권태감과 열악한 가정환경 및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 일탈 또래들과의 관계, 가출, 이성친구 사귀, 낯선 사람과의 채팅 등이다.

청소년들은 다른 어떤 발달단계의 개체보다 감각추구성향(sensation seeking)이 더 높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권태감(무료함, 따분함 등)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조금만 무료하고 따분해도 참지 못하고 어디론가 뛰어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으며, 여기에는 쾌락적이고 충동적인 성적 자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감각추구성향이 건전하지 못하고 퇴행적이거나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억제하고, 오히려 생산적이고 건강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들에게 활동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의 감각추구성향이 신기성(novelty)과 창조성, 모험성을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청소년 문화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문제행동의 위험요인으로 결손가정, 부모의 무관심과 학대, 가출, 흡연과 음주, 이성친구, 채팅 등이 두드러지게 확인되고 있다. 한

가지 예로서 가출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출 후 성 폭행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행동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되는 행동일 뿐이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에 대해 무조건 이들을 찾아서 귀가조치하고, 처벌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가출 이후 이들이 문제행동에 접촉하는 과정을 차단하고 완충시켜 줄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흡연과 음주 등도 역시 이들 청소년이 성관련 문제행동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문제행동 접촉과정을 중재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투입하게 된다면 성 문제행동으로 비약될 가능성을 크게 감소시켜 줄 것이다. 흡연과 음주에 대해 그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며, 효과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이를 그만 두도록 한다는 것은 저항은 물론이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흡연과 음주가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즉, 건강하고 사회 기능적인 방식으로 흡연하고 음주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지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② 보호요인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처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로 부터 비롯되는 성 관련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이것의 부작용을 차단 또는 중재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발견하여 이를 처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요인은 매우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것도 있고, 특정 문제행동에 작용하는 구체적인 것도 있다. 물론 구체적이고 특수한 요인의 효과가 더 크며, 직접적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다양한 문제행동의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성 문제행동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된 보호요인들은 자기 통제감,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 사회적 지지, 가족 기능강화, 부모-자녀 의사소통 등이다. 이들 요인들은 특정 문제행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

지만, 전체적으로 위험요인의 작용을 완충시켜 주며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정책은 극단적인 위험요인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특정 문제행동과 관련된 보호요인을 확인한 후, 이를 처치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투입하도록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보호요인들을 중심으로 8차시 동안 진행되는 연속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참조로 청소년관련 단체와 기관, 학교 등에서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호요인은 그것이 개인과 집단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자기 효능감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효과를 지니고 있지만, 지능 수준이 낮거나 가정환경이 매우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에 그것이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회적 지지는 특히 초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정서적 지지는 큰 효과를 지니지만, 물질적 지지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 문제행동과 개인의 특성 그리고 보호요인의 성격에 따라 이를 처치방법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청소년 개인을 둘러싼 사회 맥락적 요인들 역시 청소년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며, 특히 지역사회의 유해환경과 성인들의 유해행위는 성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맥락적 요인 가운데 먼저, 또래집단의 특성 및 이들의 지도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건강한 또래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동아리를 중심으로 창조적인 청소년문화가 생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아리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모임 체이며, 창조적인 활동 공간이 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사회 체험활동을 지원해 주고, 그들의 이성관계가 건강한 사회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의 파티 문화, 만남과 대화 문화, 캠핑과 놀이문화 등을 통해 이들이 자연의 밝은 환경 속에서 이성간의 만남과 상호 부딪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이성에 대한 비합리적 또는 환상적인 사고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각 자치단체별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문화 거리조성과 동아리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유해행위가 성인들의 영리 욕구에 의해 청소년들을 이용하는 가운데 발생하며, 성 문제행동 역시 성인들의 왜곡된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전이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소년 세대의 노력과 역량에 의해 각 지역별 특성에 부합되는 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유지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④ 가정의 심리적 기능적 환경을 개선하고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안정적 애착과 관심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원을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 추진해 온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가정의 구조적 환경은 어찌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하지만, 기능적 환경과 가정의 심리적 풍토를 조성하는 작업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해 나갈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화기법을 개발하고, 활동과 문화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가정의 건전한 문화 세우기’ 사업과 직결된다. 최근 가정이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위기에 봉착하면서 붕괴와 해체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가정의 본질적 기능인 애정과 양육, 교육, 보호, 경제 등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가정 문화 바로 세우기는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며,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개인적으로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사회 적응능력을 발달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⑤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정책과 교육정책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소년 정책과 학교 교육정책이 공존하고, 상호 협력적일 때,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의 예방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청소년들이 사회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간 상호 협력 채널을 구성함과 동시에 학교 내 청소년 전문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의 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직자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부적절한 교사들에 대해 퇴출 방침을 밝힌 바가 있다. 이를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 예컨대, 무자비한 폭행과 과대한 비방 및 욕설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성 교육은 성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과 성 문제 치료를 위한 교육으로 이분화 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외부의 전문가(상담전문가, 의사, 변호사) 팀에 의해 분기별로 의무화 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성 교육이 단순히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성 교육을 통해 성과 인격을 동일시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고, 이성과의 대인관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성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성문제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이들이 성적 이상행동으로부터 장기적인 후유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학교 내 개입은 물론이고 전문치료 및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⑥ 지역사회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성인들의 유해행위 관련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성인들의 유해행위 관련 요소들은 경제적 요인(금전적인 부분; 용돈, 차비, 숙박비, 생활비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잠자리 제공, 식사 제공, 의복제공, 술과 담배 제공, 기타 요인으로의 유혹(연예계 데뷔) 등 매우 많다. 이들 요인들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인하거나 강압적으로 억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을 상품화 또는 매개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의 행위가 성인들에 의한 청소년 유해행위이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성관련 문제행동이다.

우리 사회의 성인들이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환경을 정화하는 일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매스컴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 토론회 및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행위인지,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양심적인 일인지를 깊이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줄이고 자동차 안전띠 착용을 계도함으로써 자동차 사고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었던 것 역시 대국민 홍보와 철저한 단속 때문이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해서도 성인들의 경각심을 유도해야 할 때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 성인들의 유해행위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가출 청소년이고, 경제적 궁핍과 가정에서의 무관심 및 학대가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 가운데 특히 생계형 가출자와 유기된 가출자들의 경우 이들을 귀가시키는 방법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숙박과 생활을 보장 받으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출과 학교 중도 탈락 이후 청소년들의 삶은 궁핍할 수밖에 없으며, 많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다. 이들이 성인 사회의 유해요인에 의해 희생되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의 청소년정책이 추진해야 될 핵심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확대·개선하고 직업자활센터 등 그들의 진로를 도와 줄 수 있는 기관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폭행이나 성매매, 약물, 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들을 치료하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청소년심리치료센터’ (또는 청소년정신건강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와 의사, 변호사 등을 고용·배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성인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 불완전한 정신건

강을 유지한 상태로 그들이 성인기로 진입할 때, 이들이 성인 유해행위를 일삼는 주요 인물이 되며, 유해환경을 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소년정책은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행복을 확대시키는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미래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민들 사회에 만연된 유해환경과 비양심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빈부격차와 상대적인 박탈감에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 미래 사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며, 이것은 사회 환경과 시설의 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하며, 청소년에 대한 투자만이 대안이 될 것이다.

VII.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1. 서론
2. 청소년 유해환경의 법적 고찰
3.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 분석
4.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추진정책의 개선방안
5. 결론 및 정책제언

VII.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1. 서론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이로부터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외적인 요인들의 총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에게는 유해하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들은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미성년자보호법을 폐지하고,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청소년보호법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의의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의하고 총망라하여 일관성 있는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동법은 청소년의 의의, 유해성 심사기준, 청소년 유해환경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준거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동법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준거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양립가능성 및 형평성, 기준의 통일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서는 입법상의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

둘째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행정기관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종래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일개 합의제 행정기관에 불과했고, 그 권한과 책임이 미약하여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2005년 3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로 격상되고 청소년정책의 주무부

처로서의 책임을 수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위원회의 책임만 증대되었을 뿐,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제반 법·제도는 이에 합치하는 수준으로 재정비되지 못하여 오히려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보호업무 수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환경 제재규정들의 구성요건 및 관련 처벌법규들을 살펴보고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그간 청소년보호위원회 수준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제반대책을 청소년위원회 차원에서 다시금 정비해보도록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위원회의 무조건적인 권한 강화보다는 청소년정책의 일관되고 책임 있는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보호법을 어떻게 재정비하는가에 논의의 비중을 두고자 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의 법적 고찰

1) 들어가며

본 장에서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구체적으로 유해환경을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해환경 중에서 특히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행위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 및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의 의의

(1) 개요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법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이 무엇인가라는 의의 및 범위설정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할 때에는 ① 청소년의 의의 및 연령에 관한 문제 ② 유해라는 개념 설정의 문제 ③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할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환경의 범위문제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개념확정이 필요하다.

(2) 청소년 유해환경 의미와 관련된 문제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절대적인 불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에게는 허용될 수도 있지만 19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성장과 육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 예컨대 음란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잔인하거나 사행성이 있는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행위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총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정의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법상 성인과 구별하여 보호해야할 대상을 지시하는 명칭으로는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아동, 소년 등이 사용된다. 이러한 상이한 용어들은 대상연령이 다르거나, 대상연령은 동일하나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상연령을 명시하는 않는 등 개념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용에 있어 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상의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하거나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자로 하는 등 연령과 용어의 통일성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혼인에 의한 성인의체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일 청소년의 보호의 측면에서 혼인한 19세 또는 24세 미만자도 청소년관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배제되는지 해석상 모호하다.

둘째, 유해환경의 범위문제이다. 청소년보호법은 환경의 범위를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그리고 행위로 하고 있고 각각에 속하는 범위에 대하여 제한적 열거방식과 예시적 열거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특히 유해행위에 대하여는 9가지로 한정하고,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규제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열거방식은 자칫 유사유해환경에 대한 법적인 미비점으

로써 지적될 우려가 있다.

셋째, 규정의 모호성이다. 처벌 또는 규제의 종류와 정도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성요건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나마 법률이 제시하는 기준이 그 추상성 또는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규제와 자율의 기본법리의 문제이다. 유해란 성인에게는 적법하지만 성인에 이르지 않는 청소년에게만 유통 또는 접근이 금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은 당연히 규제의 대상이지만, 유해한 것은 이를 규제할 것인가 자율에 맡길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또는 사생활의 자유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다섯째,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하여 청소년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과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가장 이상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완전한 차단은 호기심을 유발하고 충동적인 범위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오히려 적절한 감독과 지도하에 단계적으로 접촉을 허용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청소년 유해환경의 법적 규제

① 유해매체물

(가) 의의

매체물은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제도의 기본취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나 정보의 제작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에 대한 유통은 금지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 매체물은 청소년에게는 제한되지만 성인에게는 허용된다. 즉,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추출하여 규제하고자 할 때에는 각 매체물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일괄적인 유해성 판단이 아닌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내용 검토를 통한 개별판단이기 때문에 현행 법제는 청소년위원회의 고시를 통한 개별적인 판단 및 공고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현행법제는 이와 같은 관리 또는 통제를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방식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유해매체물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위원회의 고시가 요구된다.

(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우선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재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모든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고(동법 제14조)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1조 제1호). 그리고 이를 포장하여야 하며(동법 제15조) 위반한 경우에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1조 제2호).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유해표시나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동법 제16조) 위반시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2조). 그리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며(제17조 제1항),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 제1항).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해야 할 매체물은 그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또는 진열을 해서는 안되며(제17조 제2항, 제3항) 영리의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51조 제3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제37조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않은 채 판매, 대여를 위한 전시 또는 진열을 해서는 안되며(제18조 제1항), 영리의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51조 제4호), 역시 시정명령의 대상이다(제37조 제5호).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되며(제18조 제2항), 영리의 목적으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제51조 제4호)에 해당하고, 시정명령대상이 된다(제37조 제6호).

그밖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임법”이라 칭함)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 동법상 18세 이용가 게임물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출입금지표시를 하여야 한다(제32조 제4호).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폐쇄명령이나 등록취소처분, 6월 이내 영업정지명령(제39조 제5호) 또는 이에 갈음하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부과가 가능하다(제40조 제1항 제2호). 위반시 구분비치·관리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제50조 제4호), 청소년출입금지 불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제53조 제2항 제3호) 처한다.

(다)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외에도 공연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연소자(동법상 18세 미만자) 유해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으며(제5조 제1항),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0조 제1호). 그리고 행정처분으로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제1호). 영화의 경우에는 영화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한상영관 청소년 출입금지위반은 등록취소가 가능하고(제31조의2 제1항 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9조의2 제2호).

(라)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정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특히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을 규정하고 있다(제5장). 영리의 목적으로 19세 미만자 불가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4조 제1호). 정보통신사업법상으로는 시정명령(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제28조 제1항 제7호). 또한 정보통신사업법은 불온통신금지조항을 두고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제53조 제1항 제5호).

(마) 방송프로그램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정은 동일하며 그 외 청소년유해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시간제한규정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19조 및 제51조 제5호). 방송법상으로는 자체 심의 및 자율적 규제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단계로 방송위원회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 또는 유통된 후에 심의하는 사후규제방식이다(제32조).

(바) 신문·도서류 및 전자출판물

청소년보호법 이외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안 됨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항). 외국간행물의 경우에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유해성심사를 한다(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2조 제3항). 그리고 전자출판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규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 간판, 전단, 벽보 등 상업적 광고선전물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제는 동일하다. 그 외에 청소년유해광고선전물 중에서 방송에 의한 광고시간 제한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19조 및 제51조 제5호) 그리고 제20조 제1항, 제51조 제6호, 제37조 제1항 제7호 등도 광고관련 제한규정들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

한 광고나 선전물의 배포 및 게시금지는 음·비·게임법에서, 공연을 선전하는 선전물이나 광고물 또는 초대권과 관련하여서는 공연법에서, 영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관하여는 영화진흥법에서, 방송프로그램상의 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법에서,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등에 게재되는 광고에 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율적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하는 정보통신체제상 전파되는 광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도 청소년 유해광고선전물 규제규정을 두고 있다.

② 유해업소

(가) 의 의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를 고용이 금지된 업소와 고용뿐만 아니라 출입까지도 금지된 업소로 구분한다. 그리고 업소의 구분은 당해 업소가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나 인가, 등록, 신고 등을 실제로 하고 적법하게 영업을 하는 곳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ㄱ)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영업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청소년이 출입 또는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할 의무(제24조 제2항) 및 고용시 연령확인 의무(제24조 제1항)와 벌칙규정(제50조 제2호), 19세 미만 출입·금지업소 표시부착 의무(제24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와 벌칙규정(제51조 제1호) 및 이에 대한 행정처분(제4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출입”과 “이용”의 의미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동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출입”은 청소년이 유해업소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청소년이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 유해업소의 시설에 출입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그 시설을 이용할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출입 자체만으로도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밖에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제31조 제2항 제2호, 제3호), 위반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제58조 제1항 제1호), 이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65조 제1항).

(ㄴ) 비디오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제는 동일하다. 그 외에 음·비·게임법상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이외의 시간대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동법 제32조 제6호 및 8호, 동법시행령 제1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 제5호). 그리고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39조 제1항 제5호).

(ㄷ)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청소년보호법 외에 특별히 무도학원이나 무도장에의 청소년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법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다른 유형의 업소보다 행정적 규제의 정도가 미약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ㄹ) 사행행위영업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제는 동일하다. 그리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은 사행행위영업 중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에 19세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고(제1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조 제5호). 그리고 행정처분이

가능하다(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ㄱ) 전화방

청소년보호법 이외에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2조의2 및 제72조 제7호). 즉, 현재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 전화연결서비스들은 원칙적으로 성인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불법 영업이며, 다만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에는 불법의 정도를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규제규정을 두고 있다.

(ㄴ) 성기구취급업소

청소년위원회고시를 통하여 약사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의료용구로서 성기구를 취급하는 업소를 의미하며,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의료기기법상으로도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ㄷ) 청소년보호법 이외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

a) 게임제공업

청소년보호법은 음·비·게임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음·비·법상으로는 게임제공업에 대한 청소년 출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해야 하며,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4호). 그리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 제3호 및 제4호).

b) 카지노업

청소년보호법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에 대한 규제를 정하고 있으나, 카지노업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고, 관광진흥법상의 규제를 받는다. 동법은 카지노사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27조 제7호),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8조 제7호). 반면 19세 미만자에 대한 고용금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고용금지업소

(ㄱ)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식품접객업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업소의 상호명을 판단기준으로 하게 된다. 판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주류 및 안주류가 판매되는 저녁 9시 경 이후의 시간대에는 동업소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청소년고용금지내용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즉,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4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호). 또한 형사처벌과 양립하여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거나 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1명 1회 고용시마다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소위 티켓다방의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제31조 제2항 제2호), 위반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제58조 제1항 제1호), 이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65조 제1항). 그밖에 고용업

소에 대한 직접 규제는 아니나,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휴게 음식점영업 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에의 소개를 금지한다(제21조의3 제2항 제2호). 또한 동조 제2항 제1호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직업소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7조 제3호).

(ㄴ)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안마실업

여관, 퇴폐이발소, 스포츠마사지, 증기탕, 휴게텔 등은 숙박업이나 이용업 또는 목욕장업 등의 간판을 내걸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또는 이에 대한 알선을 주요 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보호법 이외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및 제2항).

(ㄷ) 비디오물대여업·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

청소년보호법외에 음·비·게임법은 출입금지하는 규정하지만 고용금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는 입법상의 불비라고 볼 수 있다.

(ㄹ) 유독물취급업 및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법 이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으로는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만화대여업에 관하여도 다른 특별규정이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청소년위원회가 고용금지업소를 고시한 바는 없다.

(ㄹ) 기타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의 사용을 금지하고(제63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2조). 여기에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고용금지업소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건설기계 관리법·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정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에의 고용을 금지한다.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에의 고용 역시 금지된다. 또한 갱내에서의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제70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12조).

③ 청소년유해행위

(가) 의 의

일반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이라고 할 때에는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등으로 나누고, 이를 청소년 문제의 주요요인으로 지적한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가지게 되는 권리침해의 제반요인들로부터의 보호를 고려해 볼 때에는 청소년에게 비자발적 또는 경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의 유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와 유해약물 및 유해행위에 대한 내용을 제3장에 담고 있다. 즉, 청소년 유해행위를 청소년유해환경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유해행위들은 청소년에게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알선 또는 매개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거나, 또는 행위자체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함에 따라서 도덕적·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유해행위의 종류

(ㄱ) 성적 접대행위

이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유티업소 등의 단

순고용금지에서 더 나아가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청소년보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매개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49조의2). 다만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형법(제242조)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도 음·비·게임법은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에게 윤락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2조 제7호 및 제50조). 또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조 제1호 및 제10조). 동법의 윤락행위 객체는 다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년을 포함하므로 객체가 청소년인 때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ㄴ) 유흥접객행위

청소년보호법이 이러한 유흥접객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49조의3). 그러나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제31조 제2항 및 제58조).

(ㄷ) 음란행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음란행위에 대하여 청소년위원회는 극장식 유흥주점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누드쇼, 성행위

묘사춤 등을 시키는 행위 등이 동조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음란행위의 개념이 형법과 동일하다고 본다면, 단순히 성기를 노출하거나 유방을 드러내거나 알몸을 노출하는 행위, 누드쇼 등은 음란행위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현재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 행위(제1조 제41호) 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목적범에 해당하며,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49조의3). 그외에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지 않는다.

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245조). 따라서 형법상으로는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자는 공연음란죄의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객체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조 제1호 및 제10조). 동법의 음란행위 객체는 다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년을 포함하므로 객체가 청소년인 때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우선적용된다. 그 밖에도 음·비·게임법은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2조 제7호 및 제50조). 그러나 이 규정 역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객체를 대상으로 한다.

(ㄷ) 장애인행동 관람시키는 행위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인행동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49조의4). 그 외 행정적인 규제

는 할 수 없다. 아동복지법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조 제7호 및 제40조 제2호).

(ㄱ) 구걸행위

속칭 ‘앵벌이’ 라고 하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이용하여 동정심을 유발하는 구걸행위 등을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49조의4). 아동복지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9조 제8호 및 제40조 제2호). 그 밖에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게 아니한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제1조 제23호).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구걸행위를 하는 자에 제한이 없다.

(ㄴ) 학대행위

청소년을 학대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49조의4). 형법상 학대행위가 결과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추상적 위함범이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학대죄 역시 학대로 인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라는 결과발생이 없더라도 본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법상으로도 학대죄 처벌규정(제273조 제1항)이 있다. 그 밖에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29조 제1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제29조 제2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29조 제3호)를 금지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0조 제2호).

(ㄷ) 호객행위

주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방, 디스코클럽 등에서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이른바 “삐끼행위” 라고 불리는 호객행위를 시키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청소년보호법상 영

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 제4호).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호객행위를 한 청소년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 경범죄처벌법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청객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제1조 제10호).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시킨 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제11조). 그리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호프, 카페 등에서의 호객행위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 이성혼숙

이성혼숙의 당사자는 남녀 쌍방이 모두 청소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방만이 청소년이라도 본죄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 제4호). 또한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성혼숙을 금지시키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ㄨ) 다류배달행위

청소년보호법은 다류배달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 제4호). 또한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은 휴게음식점영업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

행규칙 제42조, 별표1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7조 제5호). 그리고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제58조 제1항 제1호).

(㉔) 그 밖의 유해행위

a) 위험한 업무에의 고용행위

형법은 아동학사죄 규정을 두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 인도한 자 및 인도받은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74조).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사업에 18세 미만자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3조 제1항 및 제112조). 또한 18세 미만자에 대한 갱내근로를 금지하며, 위반시 위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70조 및 제112조).

아동복지법상으로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제29조 제9호),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에 처한다(제40조 제4호).

b) 성매매 등 성폭력행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0년 2월에 제정된 법이다.

c) 방임행위 및 양육관련행위

아동복지법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제29조 제4호),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0조 제2호). 물론 형법상 유기죄(제271조 제1항)도 가능하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은 그 밖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18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제29조 제10호) 및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제29조 제11호)를 금지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0조 제3호).

3.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 분석

1) 개요

청소년기본법 제8조는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 즉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에 관한 행정체계도 중앙과 지방으로 2원화되어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된다. 그런데 행정의 효율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을 초월하여 전 국가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고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청소년위원회에 이와 같은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것은 2005년 3월 24일의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촉박한 시간 여건상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법제 정비에 미흡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에 관한 전문성을 명분으로 청소년관련 사무가 청소년위원회로 통합·이관되었지만, 청소년위원회에 그에 걸맞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는 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위원회

(1) 설치근거 및 법적 성격

청소년기본법이 2005. 3. 24.에 개정되면서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확대·개편되게 되었고,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권 역시 청소년위원회에 귀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청소년정책의 집행주무부처가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었다는 것은 개혁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장관과 같은 부령발포권은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일 수도 있다. 청소년이 바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인 점을 직시할 때 청소년에 관한 정책은 결코 경시될 수 없으며, 청소년정책의 집행주무부처가 이를 제대로 수행할 권한과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직무범위

청소년위원회의 직무범위는 “청소년에 관한 사무”이다. 그간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가 전혀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청소년에 관한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가 의문인데, 청소년육성정책의 범위 속에 청소년보호의 분야가 제외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관한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정책을 주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조직 및 구성

청소년위원회의 법률상의 조직으로는 ① 청소년위원회 전원회의 ② 청소년위원회 분과회의 ③ 사무처 ④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 ⑤ 청소년보호센터 ⑥ 청소년재활센터가 있고,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조직으로는 ① 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② 청소년위원회 중앙점검단이 설치되어

있다. 이 중 기타 조직에 대해서는 논의의 필요가 있다.

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설치된 조직인데, 현재 청소년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에 팀 단위로 ① 홍보분과위원회(정책홍보팀) ② 정책분과위원회(정책총괄팀) ③ 활동·문화분과위원회(활동기획팀) ④ 인권·폭력분과위원회(인권폭력대책팀) ⑤ 복지 분과위원회(복지자활팀) ⑥ 매체물분과위원회(매체환경팀) ⑦ 생활환경분과위원회(생활환경팀) ⑧ 문화분과위원회(청소년성보호팀) 등 8개의 분과위원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9~10명씩, 총 8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에 지나치게 많은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존재는 오히려 청소년위원회의 정책수립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상응하여 30인 이내의 인원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년위원회 중앙점검단은 국무총리 지시사항 제98-17호(1998. 7. 1.) 및 대통령 지시사항 제294호(1999. 12. 7.)에 의거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설치되었는데, 중앙점검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조직으로서 청소년위원회와 별도정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6개 부처(청)의 파견공무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유용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중앙점검단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그 법적 성격 및 지휘·감독상의 체계 등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일 청소년위원회에 단속권한이 부여된다면 중앙점검단은 그 존재의의가 상실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권 한

① 개 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① 청소년정책 등의 심의·의결권(제16조의2 제5항) ②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권(제9조) ③ 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운용권(제53조 제2항) ④ 국·공유재산의 대부분

등(제57조 제1항) ⑤ 관계기관 등への 협조요청권(제16조의8) ⑥ 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제19조) ⑦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에 대한 감독권(제59조 제1항) ⑧ 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 대한 권한 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인가권(제40조 제1항) ⑩ 한국청소년상담원에 대한 권한 ⑪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에 대한 권한 ⑫ 권한의 위임·위탁권(제63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보호에 관한 권한으로는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청취권(제42조 제1항)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의뢰권(제42조 제2항)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권(제8조 제1항) ④ 자율규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부착권(제12조 제3항). ⑤ 각 심의기관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등급구분 요청권(제8조 제2항) ⑥ 각 심의기관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내용의 조정요구권(제11조) ⑦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작성·통보 등(제21조) ⑧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제22조 제1항) ⑨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권(제23조 제1항) ⑩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 작성·통보 등(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 ⑪ 민간의 감시·고발단체에 대한 증표교부권(제43조 제1항) ⑫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의 과징금 부과·징수권(제49조 제1항) ⑬ 권한위탁권(제46조 제12조 제1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으로는 ① 청소년위원회의 대표 및 직무통할권(제16조의3 제3항) ②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제16조의3 제10항) ③ 청소년위원회 위원의 추천권(제16조의3 제2항) ④ 공무원 파견요청권(제16조의6) ⑤ 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제66조 제2항)이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보호법에는 이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한편, 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과 관련해서는 행정조사권(청소년기본법 제37조 제3항, 제45조, 제59조 제1항) 및 특별사법경찰권(형사소송법 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9호 및 제6조 제24호)이 규정되어 있다.

② 권한상의 주요 문제점

청소년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등의 권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정된다.

(가) 청소년정책의 심의·의결권과 관련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며, 청소년위원회는 이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않는다.

(나)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조정권과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 제9조의 ‘행정기관’에는 지방 ‘자치단체’는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시책에 대해서는 청소년위원회에 총괄·조정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8의 ‘행정기관’에 지방 ‘행정기관’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사무담당부서에 대해서는 협조요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권과 관련하여 그러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에 이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권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3조 제2항 전단에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결정취소권을 각 심의기관에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심의기관의 결정취소에 대해 청소년위원회는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며, 특히 각 심의기관의 심의사항인 매체물이라도 청소년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8조 제3항의 규정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내용이 상이할 경우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11조의 규정과 대비하여 볼 때 결정취소의 절차에 있어 청소년위원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없도록 규정한 동법 제23조 제2항은 문제가 있다.

3)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중앙행정체계

(1) 분석의 대상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유관기관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1조 제3항의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의 통보대상이 되는 ① “각 심의기관”, ②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③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기관”, ④ 기타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 및 제26조 제2항의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통보대상이 되는 ⑤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있다.

동법 제21조 제3항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각 심의기관” 으로는 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부 소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 ② ‘출판물 및 인쇄진흥법’ (문화관광부 소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③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부 소관)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④ 방송법(방송위원회 소관)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있다.

또한 동법 제21조 제2항의 ‘중앙행정기관’ 으로는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여성부가 이에 해당하며(동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동법 제26조 제2항의 ‘중앙행정기관’ 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에 해당한다(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동법 제21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의 ‘지도·단속기관’ 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경찰청·지방경찰청, 시·도교육청이 이에 해당한다(동 시행규

칙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

한편 동법 제21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로는 ① 한국청소년상담원,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③ 한국청소년개발원 및 ④ 관련 행정기관과 시도·단속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아 청소년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협회 등, ⑤ 청소년보호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여성·종교·문화예술·소비자 관련단체 중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단체 등이 있으며, ⑥ 자율규제단체 등도 이에 포함된다(동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

이 글의 취지상 이 중에서 ‘각 심의기관’에 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로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각 심의기관

① 각 심의기관의 종류 및 구성

(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음·비·게임법 제5조에 의거하여 영상물 등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영상물·청소년·법률·교육 및 언론분야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특히 청소년위원회 등의 기관·단체는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각 2인 이내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통보한다.

(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언론·교육·문화·법률·청소년·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청소년위원회에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한이 없지만,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둔다. 동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단체에 종사하는 자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청소년위원회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의 추천권한이 없으며, 청소년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 역시 동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방송위원회

방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둔다. 대통령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3인은 방송관련 전문성과 시청자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청소년위원회에는 방송위원회 위원의 추천권한이 없으며, 청소년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 역시 동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각 심의기관의 권한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권(제8조 제1항 단서) ② 자율규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부착권(제12조 제3항)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요청권(제22조 제2항) ④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취소·통보권(제23조 제2항) 등의 권한을 공통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각 심의기관의 근거법에 의거하여 각각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및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음·비·게임법 제6조 제1호). 이에 따라 비디오물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며,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및 12세이용가로 분류하며(동법 제20조 제3항), 또한 음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선정적 또는 폭력적이거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거나 음반등 제작업자 또는 음반등 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음반으로 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제1항). 더 나아가 청소년이 관람·이용할 수 없는 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배포 또는 게시 전에 동 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동법 제38조 제3항).

(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정기간행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심의권(출판법 제18조 제3호) 및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권(동법 제19조 제2항 전단)을 가진다. 또한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시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소년위원회에 통보해야 하지만(동법 제19조 제2항 후단),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는 청소년유해간행물에 대한 고시권도 있다(출판법 제19조의2 제1항).

(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제3항).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 중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통신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기통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라) 방송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방송법 제27조에는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동조 제13호는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위원회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하며, 심의규정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조 제2항 제3호) 방송위원회는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규정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청소년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의 관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규제는 ① 어떠한 매체물을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와 ② 규제대상인 매체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누어서 고찰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바로 규제의 대상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결정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청소년 전문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의 소관사항이 되어야 한다. 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는 청소년위원회뿐만 아니라 개별 소관부처에서도 개별 매체물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 등급분류, 유해표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개별 소관부처의 판단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전혀 규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과정도 이처럼

단계적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보호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 단서,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각 심의기관의 소관사항인 매체에 대해서는 청소년위원회가 아니라 각 심의기관에 1차적인 심의·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청소년과 무관한 인사로 구성되어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각 심의기관에서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원칙적인 심의·결정권을 갖는 것은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및 전문성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욱이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 고시를 거부하는 외에는 — 청소년위원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 관한 근거법률을 살펴보면, 음반·비디오물·게임물 및 간행물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1차적 심의·결정권은 청소년위원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송법에는 청소년유해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비디오물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간행물의 경우는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1차적 심의·결정권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있음을 못박고 있다(출판법 제18조 제3호 및 제19조 제2항 전단). 심지어 고시권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동법 제19조의2 제1항). 청소년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정책의 집행주무부처를 청소년위원회로 통합·이관한 이상 간행물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1차적 심의·결정권 역시 청소년위원회로 조속히 이관하여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고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사·학부모, 시민단체(청소년단체 포함), 임·직원 회원 등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각급 학교와 시민단체 단위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시단의 지정은 청소년보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지역 하부조직 및 단속권한이 없는 청소년위원회로서는 감시단 지정이 청소년 전담부서의 지속적 감소에 대한 보완 및 지역단위 정책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게 유용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난점은 점차 보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제는 감시단의 지정 역시 실효성 있는 체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정된 감시단에는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감시단의 지정기준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지방행정체계

(1) 지방행정체계의 개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조직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전담공무원 또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② 청소년육성전담기구 ③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④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⑤ 지방청소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권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권(제14조) ②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권 등(제25조 제5항) ③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제19조) ④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에 대한 감독권(제59조 제1항) ⑤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권(제56조 제1항) ⑥ 공유재산의 대부권 등(제57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통행금지·제한권 등(청소년보호법 제25조)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① 청소년기본법 제66조의 과태료 부과·징수권(제66조 제2항) ②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권(제27조)을 행사할 수 있는 한편,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상 ①

시정명령권(제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② 업주 등에 대한 보고 등 요구권(제34조) ③ 업소 등에 대한 검사조사권 등(제35조) ④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수거·파기권(제36조) ⑤ 청소년보호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권(청소년보호법 제44조 제1항) ⑥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2항의 과징금 부과징수권(제49조 제2항) ⑦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징수권(동조 제3항)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실질적인 단속권한은 모두 시·군·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중앙과 지방의 전달체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와 지방의 청소년 관련 조직은 철저하게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다. 즉, 청소년위원회가 다른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지방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사무소에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시책에 대한 총괄·조정권도 없고,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단속권한도 없다.

단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및 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뿐이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료·정보제공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청소년위원회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에 관한 의견을 구하거나 의무이행에 관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집행권한이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대상도 아니며(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1항), 청소년위원회의 입장에서는 통보하거나 협조요청한 사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유해환경 문제로

국한할 것도 없이 청소년정책 전반에 걸쳐 중앙과 지방의 전달체계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현상을 지방자치(地方自治)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고, 청소년정책의 집행에 관한 한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격이 되므로 국가적인 차원의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으므로 서로 상반되는 지도·감독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앙과 지방의 단절현상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부조직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행정각부의 장의 지휘·감독권의 존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동 규정에 의하면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되는데, 지방행정의 장을 통제할 수 있는 이상 법상의 단절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런데 이 규정은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부령발포권과 달리 헌법사항도 아니고 국무위원회에만 해당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청소년기본법 또는 정부조직법 등의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면 된다.

4.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추진정책의 개선방안

1)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법령의 개선방안

(1) 규제법규의 유기적 통합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환경을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행위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내용에 대하여는 각각 관련된 다른 법률상의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법규해석의 통일성의 원칙상 법률들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은 동일하게 정의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의 원용은 동일매체, 동일업소, 동일행위에 대한 규제법규의 산재라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규제의 중복은 다시 규제법규들 간의 처벌내용의 불일치라는 문제를 수반한다. 더욱이 처벌규정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형사처벌을 두고 용어의 정의규정을 둔 원법률에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의 정도는 동일하면서 행정처분의 경중에는 차이가 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를 위한 형사처벌의 내용을 청소년보호법에 모두 집약하고, 다른 법률상 청소년에 관한 특별규정들을 삭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하여도 청소년보호법이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처벌규정 적용의 우선원칙 확립

청소년보호법은 제6조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 다른 법률보다 경한 경우 그 적용순서가 문제된다. 여기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규제사항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규제사항이 있으나 청소년보호법보다 경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보므로 타법에 동일한 행위에 대한 중한 처벌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한 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결과 제6조는 다른 법률의 처벌내용과 청소년보호법의 처벌내용이 다를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앞선 산재법규의 통일이라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3) 예시적 열거방식의 채택

현재 청소년보호법상 유해환경으로 정의되는 매체물이나 업소 또는 약물, 물건의 범위에 대한 규정의 형태는 예시적 열거방식이다. 즉, 청소년위원회의 고시를 통하여 법률상의 유해환경 이외에 실질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법률상 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

다. 이에 반하여 유해행위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은 제26조의2에서 9가지의 특정행위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9가지의 특정 유형에 속하지 않지만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저해가 되는 행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형법은 특히 국가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모든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유해환경에 대하여는 청소년위원회의 고시를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두면서, 유해행위에 대하여만은 이러한 방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여부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적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매체물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법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하여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결과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이루게 되더라도 법률조항에서 직접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청소년위원회 등)에 위임하여 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어떤 매체물이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확인될지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규칙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행위가 무엇인지는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보다 명확해지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위원회에게 유해환경을 결정하도록 한 법률규정이 형벌법규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처럼 청소년위원회에게 처벌대상이 되는 유해환경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헌이라면, 유해행위에 대하여도 예시적 열거방식을 취하는 것이 청

소년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4) 하위법령의 보완입법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환경의 구체적인 심의기준이나 결정기준, 유해성 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법률상으로는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면서도, 하위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제20조 제3항은 광고선전물의 제한방법, 장소, 기타 광고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통령령이 없다. 또한 제22조 제4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이에 필요한 내용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제33조의2 제4항 역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상 이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상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인 하위법령의 보완이 요구된다.

(5) 청소년유해성 심의·결정기준의 통일성 확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에게 청소년 유해성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여기에서 각 심의기관이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등을 말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공연물 및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심의를 하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상 유포되는 정보들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그리고 방송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한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심의기관에서 중복 심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각 심의기관의 심의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각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다를 경우에도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은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 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1조). 그러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조치에 대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러한 의무규정은 주의규정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심의기관을 통합하거나 심의기관간 내에 세부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청소년보호법이나 하위법령이 유해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해성판단을 할 때에는 이러한 포괄적인 기준만으로는 통일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2)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행정체계의 개선방안

(1) 집행주무부처에 걸맞는 권한의 확보

종래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정책의 집행주무부처는 문화관광부였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행정각부의 장으로서의 부령발포권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한편, 문화관광부는 방대한 산하기관과 지방하부조직, 특별회계·기금 등 예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정책의 집행주무부처인 청소년위원회의 전신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문화관광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한 권한·조직·예산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요정책 중 하나인 청소년정책의 집행주무부처의 소임을 청소년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그 첫 단추로서 청소년정책의 집행주무부처라는 위상에 걸맞는 권한의 부여를 제안한다.

①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국무위원 격상

집행주무부처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최상(最上)의

방안은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국무위원 격상”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 청소년위원회를 설혹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 정부위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제94조에 규정된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인 부령발포권 역시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이나 청소년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령발포권의 확보는 긴요하므로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차관급의 수준에서 장관급 이상의 수준으로 격상하여야 할 것이다.

②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확보

만일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격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면, 차상(次上)의 방안으로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조직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행정각부의 장의 지휘·감독권은 헌법사항도 아니며 국무위원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정부위원인 청소년위원회 위원장도 —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 이러한 권한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만일 위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라도 채택되기 어렵다면 아래의 사항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한 총괄·조정권의 부여

첫 번째 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시책 수립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이다.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시책 수립에 관여하여 그 총괄·조정권이라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청소년시책 수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머리(brain)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통제방안 마련”이다.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휘·감독함으로써 간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지방하부조직의 확보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청소년위원회의 지방하부조직이 절실하다 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사무소 등 어떠한 지방의 행정조직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청소년위원회의 통할·감독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방의 하부조직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된다. 이에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단체감시단 등에 행정·재정상 지원을 함으로써 이를 지방하부조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청소년유해환경단체감시단으로 인증된 단체들이 청소년에 특화된 단체가 아니며 권한이 수권된 바도 없으므로 이를 통한 계도·단속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 제47조 제1항의 지방청소년사무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있는데, 반면 청소년보호업무에 있어 모든 행정처분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업무에 관한 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역할은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행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청소년위원회의 지방하부조직으로 전환하거나, 지방청소년사무소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 소재지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단속권한 부여

청소년보호법상의 실질적인 단속권한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청소년위원회는 어떠한 단속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부 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범

죄행위를 전제로 한 수사권한과 질서위반행위를 전제로 한 단속권한은 엄밀히 보아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선거기간을 앞두고는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청소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청소년위원회는 중앙점검단을 편성하여 그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지만, 청소년위원회와는 전혀 별도의 조직이라는 점에서 제도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에 관한 실질적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부여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의 단속규정을 “청소년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는 …”으로 개정하여 청소년위원회에서도 단속권을 확보할 것이 필요하다.

(2)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원칙적 심의·결정권의 확보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심의·결정권한은 청소년위원회에 전속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심의·결정에 대해서만은” 심의·결정권이 원칙적으로 각 심의기관에 주어져 있다. 청소년위원회는 해당 매체물이 각 심의기관의 심의사항이 아니거나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않거나 또는 각 심의기관에서 청소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심의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이 경우에도 그 결정·취소권은 각 심의기관에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서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원칙적(1차적)인 심의·결정권을 갖는 것은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및 전문성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 규정을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위원회는 당해 기관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을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청소년유해성 결정 과정에 다른 심의기관이 독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3) 조직 개편의 문제

청소년위원회의 위상변화와 관련하여 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청

소년위원회 중앙점검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의 일부 조직에 대한 재편이 불가피하다. 특히 합의제 행정기관의 형태인 청소년위원회의 특성상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범위(30명)를 3배 가까이 초과하여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정수(84명)는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중앙점검단과 감시단의 경우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정부위원 격상 및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확보가 실패할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되, 만일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확보될 경우에는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설립목적 등이 청소년과 동떨어진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단 지정이 있는 경우 이를 철회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2005년 3월 24일에 있었던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정책의 집행주무부처가 되었고, 이제는 청소년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으로서 수많은 현안의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 등을 두루 소관하던 문화관광부가 청소년정책을 이끌고 나가던 시절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지만, 청소년분야에 한정된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정책의 주도자가 된 이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중심의 청소년보호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거시적인 방향으로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청소년위원회로의 통합이 정책의 전문성·일관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개혁을 뒷받침하여야 할 행정체계 개편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청소년위원회로 흡수·통합하고 청소년기본법 등의 청소년 관계법령상의 주무부처를 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한 미미한 수준에서 그침으로써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정책 중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청

소년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나 역량의 강화 없이 책임만 떠안긴 것에 지나지 않는 양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특히 지방행정체계와의 단절, 중앙행정기관 간의 무원칙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청소년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부령발포권’ 과 ‘지방행정의 장애 대한 지휘·감독권’ 도 그 일환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로써는 부족하고 청소년정책의 내일을 위하여 ①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방안 ②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방안 ③ 청소년 관련의무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대응방안 ④ 청소년 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방안 등에 대해서도 새로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VIII. 외국의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사례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4. 영국
5. 독일
6. 스페인
7. 핀란드
8. 스웨덴
9. 호주
- 10.싱가폴

VIII. 외국의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사례

1. 미국

1) Neighborhood Justice: A Community Response to Juvenile Crime

(이웃 정의: 청소년범죄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대응)

미국 뉴욕시에 위치한 도시 미래 연구소(The Center for an Urban Future)는 지역사회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소이다. 특히 이 연구소에서는 지역사회에 중요한 쟁점인 청소년 유해환경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한 이웃 정의라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일방적인 방향이 아닌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즉 아래서 위로의 사고(top-down thinking)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의 사고(bottom-top thinking)도 아닌 융합적인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도 아니고, 지역주민만의 요구도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구성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대응 방식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는 평가에 기인하고 있다. 사실 청소년 범죄나 유해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전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그 동안 뉴욕시는 많은 인력과 조직 그리고 재정적인 투자를 했음에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게다가 복지, 도시 재개발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도 무시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소한 투자로 현실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의 활발한 협조와 연대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의 확대가 필연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주민 그리고 경찰을 비롯한 행정기관의담당자들의 대화와 연구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주민들은 지역의 청소년 문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전달하였고, 행정기관 담당자들은 재정적/조직적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보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① 초범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 법정의 신설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미한 범죄에 저지른 청소년을 정규 교정 체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 법정에 보내는 것이다. 지역 법정은 주로 지역주민과 청소년 문제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범죄에 대한 판결, 범죄자들에 대한 재활계획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은 교정체계와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교감을 강화시킬 것이다.

② 청소년 폭력 범죄자의 재활프로그램 제공

만약 청소년이 폭력행위로 인해 범죄자가 되었으면, 이들이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는 성인 범죄자와는 기본적으로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

③ 판결의 다양성 제공

청소년 범죄자가 초범의 경우는 특히 판결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성인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교도소로 보내는 것은 보다 다양한 범죄 유형을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다. 판사들이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엄격하고 강력한 재활 프로그램을 받도록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역의 청소년 문제 대응 팀 창설

지역사회의 청소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문제 대응 팀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이 팀은 범죄 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범죄자와 희생자 혹은 목격자가 청소년 일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우범지역을 포함한 청소년들을 청소년 교정직으로 흡수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범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출신의 청소년들이 교정 기관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이들이 교정관련 직업선택을 보다 용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2) National Educational Association: Safe School Program

(미국 교육 협회: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

미국교육협회의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해 당사자들은 학교, 가족,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학교는 대부분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지이다. 청소년들은 최소한 6시간 정도 학교에 모여 있다. 따라서 학교가 각종 유해환경으로 안전하지 못하면, 청소년의 안전은 크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많은 인원들이 밀집해 있으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는 강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사회체계가 시작되는 곳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노동시장이나 상급학교에 필요한 기술이나 학습능력을 배운다. 또한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으로 필요한 소양을 습득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저해요소들은 매우 위협적이다.

학교 안전화 문제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함께 활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의 역기능이 학교 안전 문제에 원천이기 때문이다.

만일 범죄 집단과 약물 남용 등이 지역사회에 존재한다면,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학교 속으로 끌어들이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실업율이 높다면, 이러한 문제가 학교 안에서 표출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안전문제는 단순하게 학교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의 문제이기도 한다.

가정도 학교 안전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 담당자들은 학교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가족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거대한 사회체계 안에서 자녀를 첫 번째로 사회화하는 기관이다. 가정과 가족을 통해 자녀들은 사회규범과 행동양식을 배운다. 따라서 한 어린이가 폭력적 가족에서 성장한다면 그들은 가정 이외의 다른 환경에서 역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실제로 가정은 폭력의 악순환에 연루되어 있다. 폭력적인 가족에서 성장한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적 방식으로 그들의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은 폭력적 어린이를 양육하고 이는 학교 안전 문제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쉽다. 이러한 순환과정은 자녀의 학습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가정과 지역 사회도 청소년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도 청소년의 안전에 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의 안전문제를 하나의 체계로 보고, 각각의 영역간에 상호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안전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 학교 안전화 계획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부모, 지역사회 관련자, 종교지도자, 사업가, 정부기관, 보건기구 담당자, 지역사회와 학교 관계자 등 다양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안전화 계획에는 지역사회 대표를 중심으로 부모, 학교 당국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가정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부모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대표와 학교 당국자들이 조언자로서 참여해야 한다.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청소년의 안전에 학교가 왜 중요하고 관련된 사례를 연구한다. 둘째, 어떻게 학교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학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학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 행위와 위기관리 계획의 발전과 제도화, 프로그램의 감시와 평가의 세 가지 하부영역이 존재한다. 셋째, 어떻게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학교폭력과 범죄에 관한 지역사회를 동원하기 위한 활동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주요 지역사회 지도자와의 연계,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조사 활동, 프로그램과 평가 기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다. 넷째, 어떻게 가족을 안전하게 할 것인가를 다룬다. 이 부분에서는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학교에서 폭력과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학생활동, 부모활동, 교육 종사자의 훈련 방법이 다루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 교육 협회의 안전한 학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안은 학교, 지역사회, 가정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어떻게 학교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첫째, 학교안전위원회를 설립한다. 학교안전위원회는 모든 교육 종사자들과 학생대표들 그리고 학교안전에 관심이 있는 각종 단체와 개인 참여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학교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는 학교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지역과 학교의 폭력 및 범죄행위와 범죄자들에 대한 논의, 지역과 학교에 대한 자료 평가 등이 포함된다.

둘째, 행동계획과 위기관리계획을 발전시킨다. 행동계획은 평가로부터 수반된다. 학교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평가 과정에서 파악된 쟁점과 문제를 논의한다. 학교를 안전하기 위하여 세 가지 영역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학교관리, 교과과정, 물리적 환경 영역이 포함된다. 학교관리는 역할, 행동 그리고 기준에 관심을 가진다. 학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당국

은 어떤 유형의 역할이나 행동기준에 대한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관리요소는 학교의 안전화에 대한 학교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에 관한 중요한 사명이나 철학적 표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규율지침은 학교 내에서의 언어, 행동, 옷차림, 약물 및 알콜, 총기류 등에 대한 규율지침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규율지침은 학교에서 어떠한 행동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위기관리계획은 학교 안전 문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필요하다. 이는 이러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언제 누가 누구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사소통, 시설, 상담의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의사소통은 언론매체, 부모, 교직원 등 중요한 구성원들에 대한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시설은 위기가 발생할 때 누가 누구를 어디에서 도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당국에서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어야 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동시켜야 한다. 당국자들이 도착할 때에는 교직원들은 관련된 질문이나 서류작성을 지원해야 한다. 상담지원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필요하다. 위기가 발생한 후 상담은 관련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감독과 자료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폭력이나 범죄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감독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적 위험에 대한 자료와 지표를 모으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는 폭력조직 활동의 구성원의 증가나 지역 공동체에서의 집단 분포의 변화 같은 것을 포함한다.

② 어떻게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미국교육협회의 두 번째 관심은 지역사회와의 협력활동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안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같이 활동할 지역사회 집단, 지역사회안전회의 설립지원, 지역사회 통제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첫째, 주요 지역사회 지도자들과의 연계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참여는 학교 폭력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모든 계획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가입 권유에서 주요 지역 지도자의 가입과 충원이 보장되고,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게 된다.

둘째, 지역사회안전회의의 설립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주요 구성원들과 긴밀한 접촉을 할 필요가 있다. 학교 안전문제는 학교에서 기원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가족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주요 구성원이 포함되는 지역사회안전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지역조사활동

지역사회와의 협력활동에서 세 번째 단계는 지역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조사는 선정된 사회경제적 특성과 범죄 및 폭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넷째, 실적조사와 평가

일정 시점에서 지역사회안전회의는 지역사회나 학교에서의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실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단이 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평가도구를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의 핵심집단이 전문적 입장에서 프로그램 평가를 하지 않을 때까지는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③ 어떻게 가정을 안전하게 할 것인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미국교육협회의 세 번째 관심은 가족에서의 위험요인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가족 폭력 같은 요인이 자녀의 학업 실패, 행동문제, 정서적 불안, 무단결석, 그리고 중퇴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자와 지역사회지도자들은 일반인들이 자녀, 부모나 교직원과 같은 다른 어른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

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교육협회는 각각의 집단이 청소년들과 더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집단들간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 감독 그리고 자녀양육에서의 긍정적인 행동모형

거대한 사회에서 자녀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만일 가족 폭력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것의 양상과 결과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는 폭력을 그들이 사용할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 지역사회와 가족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사용하여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둘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강화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지원이 자녀의 성취에 중요한 지표라는 것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이나 교육에 대한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의 지원이전에, 부모는 먼저 부모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셋째, 자녀교육에서 학교의 협력

교육종사들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집단과의 협력은 지역사회나 학교에 중요한 것이다. 미국교육협회의 입장에서 교육종사자들은 청소년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각종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3) Department of Education, A Safe Guarding Out Children

: An Action Guide (미국 교육부, 우리 아이 지키기)

우리 아이 지키기 행동지침(이하 행동지침)은 학교에서 폭력을 추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자는 미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연방정부가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합동

으로 이 책자를 작성하였다. 최초에는 조기경보, 적시대응: 안전한 학교 지침이라는 명칭으로 출간되었다. 이 후 조기경보지침 반응이 좋아서 2000년에 새롭게 발간되었다.

이 행동지침 크게 네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학교 폭력의 문제와 그것이 학교분위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다룬다. 둘째, 대부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전체 학교 차원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법을 다룬다. 셋째, 초기 경보 신호를 인지하고 보고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넷째, 문제 행동을 일삼는 학생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개발한다. 특히 이러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일종의 행동 모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스쿨와이드 팀이라는 조직이다.

① 스쿨와이드 팀의 활동

스쿨와이드팀은 무엇보다도 학교의 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팀이다. 다시 말해 스쿨와이드팀은 학업 및 행동상의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분위기를 포함하여 학교를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전체 학생들의 교육경험의 질과 학교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는 것인 스쿨와이드팀의 활동 목표이다. 스쿨와이드팀은 학교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학교 전체에서 실행될 각종 프로그램들을 선정한다. 뿐만 아니라 스쿨와이드팀은 이러한 전략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스쿨와이드팀은 학생지원팀의 구성원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교환을 통해 스쿨와이드팀은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욕구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스쿨와이드팀은 학교의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며 유지한다.

아울러 스쿨와이드팀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향에서도 정책과 절차들을 제시한다.

- 일체의 학교 개선 노력과 연계한다.
- 학교 측의 노력을 지역사회와 서비스와 결합시킨다.

- 학교 공동체의 전체 구성원 등으로부터 이해와 지원을 구한다.
- 폭력예방을 위한 3차원의 활동 모두를 망라한다. 즉 학교 단위의 기반조성, 조기개입, 집중개입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 초기경보 징후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반영시킨다.
- 문제해결 의뢰, 문제해결, 자문 그리고 개입을 위한 효과적인 과정을 포괄한다.
- 학교의 구조, 문화, 욕구, 자원을 통합할 뿐 아니라 증거에 바탕을 둔 효과적인 개입을 활용한다.
- 특수교육 요건 그리고 기타 교과 외 활동과 영어학습자를 위한 서비스 등과 같은 일체의 학교 차원의 노력을 통합한다.

② 스쿨와이드팀과 지역사회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학교를 둘러싼 보다 큰 지역사회가 학교의 기능과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지도자들은 이런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런 영향력이 학교에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함으로써 폭력예방 노력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학교 모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도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교는 학교를 둘러싼 외부 사회의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고, 나아가 그 지역사회와 협력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그럴 때 비로써 각종 프로그램과 개입전략들이 지역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럼으로써 학교는 지역의 여러 기관이나 조직들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학교는 지역사회 요인들을 고려하고, 폭력예방과 개입 서비스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다음의 목록들은 학교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는 구성원들을 예시해 놓은 것이다.

- 변호사, 판사
- 기업가
- 성직자
- 대학교수
- 이익집단 대표자와 조직원
- 검찰과 경찰
- 지자체 단체 관계자
- 학교 이사회
- 정신건강과 아동복지 관계자
- 학부모 협의회, 시민단체 지도자
- 의사와 간호사
- 청소년 사업가와 자원봉사자

4)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Improving School-Community Connections (학교-지역사회 연계)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안전문제를 지역사회와 가족과의 연계를 통해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지 않고는 청소년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지역사회는 교육, 지역사회라는 개념, 사회 연결망, 지원체계, 경제적인 지원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아울러 가족 내에서는 청소년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공립학교의 안전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선연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6개 도시 직접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학교, 지역사회, 가족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의 자율성 증가

각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각 학교의 자율성

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획일화된 공립학교 체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걸림돌이 되기 쉽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면제: 각 학교에 주어진 일정부분의 의무사항이나 규제사항을 면제해 준다.
- 축소: 각 공립학교를 통제하는 행정조직을 축소한다.
- 역할 조정: 각 공립학교를 통제하는 행정조직 (예를 들면, 교육청)의 각종 직원들의 역할과 업무 등을 조정한다.
- 민간지원확대: 공립학교 체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문에 대해, 민간 부문의 지원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② 학교의 자율성이 어떻게 학교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각 개별 학교에 학교 수준으로 권위와 책임을 이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와 관련 가족들의 노력을 통합시킬 수 있다. 즉 지역사회와 관련 가족들과의 밀착된 각종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안전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고급 인력을 투입하고 행정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교사들은 좀 더 학생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개별 학교들은 해당 지역사회와 가족과 연계된다. 따라서 보다 책임을 갖고 각종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 학교들은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갖게 됨으로써, 학교 현실에 맞는 기본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성과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개별 학교들은 상황을 개선할 각종 정책들도 고려하게 된다.
- 공립학교에 시장 원리와 경쟁 개념을 도입하여, 관련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 봉사하는 측면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안전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된다.

5) Office of Juvenile Justice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¹⁷⁾)

(1) 기관 소개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OJJDP)은 폭력, 상습범부터 학대나 방임의 피해자인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해 국가에 이의를 제기한다.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은 다양한 훈련에서부터 소년사법정책과 경험 향상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와 함께 협력한다.

미국 교육부의 사법프로그램국의 구성요소로서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은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실시하기 위해 주와 지역사회, 인종 관할(tribal jurisdictions)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 사무국은 소년사법시스템이 공적 안전을 더 보호하고, 위반자에게 책임을 지우며,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집행가의 지도력 하에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은 ① 수많은 연구와 프로그램과 초기 훈련을 후원한다. ② 우선권과 목표를 발전시키고 연방소년사법시스템 문제를 이끌어갈 정책을 세운다. ③ 소년사법문제에 정보를 유포한다. ④ 다섯 개의 조직 구성요소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역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주에 자금을 제공한다.

이 기관은 국가의 리더쉽과 협력, 예방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청소년 비행과 피해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OJJDP)은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예방과 조정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실행하기 위해 그리고, 소년사법시스템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안전을 보호하고, 위반자에게 책임을 지우며,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에게 필요한 치료와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와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의 프로그램은 소년사법에서부터 비행예방프로그램까지 포함한다.

17) www.ojjdp.ncjrs.org/programs

프로그램의 예로는 ① 갱감소 프로그램(Gang Reduction Program), ② 소녀연구집단(Girls Study Group), ③ 아동 인터넷범죄 테스크 포스 프로그램(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Task Force Program), ④ 청소년책임보조금프로그램(Juvenile Accountability Block Grants program), ⑤ 소년사법평가센터(Juvenile Justice Evaluation Center), ⑥ 안전한 출발: 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위한 접근(Safe Start: Promising Approaches for Children Exposed to Violence), ⑦ 부족 청소년프로그램(Tribal Youth Program) 등이 있다.

(2) 프로그램의 유형

①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Task Force Program

(아동 인터넷 범죄 테스크 포스 프로그램)

아동 인터넷 범죄 테스크 포스 프로그램(ICAC 프로그램)은 주와 지역법률 집행기관들이 사이버유혹과 아동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을 돕는다. 이러한 도움은 토론적이고 수사적인 요소, 훈련과 기술적인 원조, 피해 서비스, 공동체 교육을 포함한다. 수많은 수사업무들은 국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ICAC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많은 아동과 10대들의 증가, 포르노그래피의 확산, 고도의 온라인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되었다.

ICAC 프로그램은 주와 지방법률 집행기관들이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기타 다른 컴퓨터 기술을 성적으로 활용하는 위반자를 수사하고 대응한다. 그 프로그램은 최근에 45개 지역수사기관으로 구성되고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에 의해 자금화된다.

훈련과 기술적 원조 프로그램(The Training & Technical Assistance Program)은 이러한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② Gang Reduction Program (갱감소 프로그램)

갱 감소 프로그램은 청소년비행과 갱 활동에 기여하는 개인, 가족, 사회 요인을 언급한 광범위한 연구에 기초한 조정에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갱 활동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활동의 예방, 중재, 억제에 있어서 최첨단의 경험과 협력한 지방과 주, 연방 자원과 사회에서 prosocial 영향을 고양하기 위한 자원을 통합한다. 지도자 사회들은 동일시되고, 사회에서 알려진 위험 요소를 설명하고, 가장 광범위한 가능 연령 범위에서 비행의 위험 요인이라고 부르는 갭을 채우기 위해 큰 자금을 이용하는 현재의 자원과 프로그램들, 서비스들을 통합한다. 이 프로그램 디자인은 갱활동 감소와 억제에 있어서 효율성이 입증된 광범위한 활동영역을 조정하는 구조를 포함한다.

갱 감소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은 지역 청소년 갱 문제를 다루고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모든 사회에 유용한 전략적 계획 수단(a Strategic Planning Tool)을 발전시키고 있다.

③ Girls Study Group (소녀연구집단)

소녀연구집단(the Girls Study Group)은 여성소년위반과 그런 위반을 수반하는 청소년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위험과 보호요인을 인식하고 있는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을 원조한다. 또한 사회가 여성비행과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확인한다.

이 집단은 소년들의 비행과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고, 그렇게 수반된 비행과 폭력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의 발전, 실험, 보급을 이끄는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토대를 세울 것이다. 그 집단은 정책입안자에게 이론적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으로나 발전적으로 적절하며, 경험적 기초를 둔 지침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이 집단은 첫째, 경향, 발달 패턴, 원인과 여성비행·폭력과 그런 비행이 수반하는 문제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한다. 둘째, 여성비행(시작, 지속, 중지를 포함함)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이론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셋째,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접근한다. 넷째, 여성비행의 성질에 대한 비판적인 정보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러한 비행을 차단할 방법들을 알리고 한다. 다섯째, 인터넷과 다른 수단영역과 대화하려고 한다.

이 집단의 임무는 ① 소년사법 위반의 유행과 원인론, 문제에 관한 연구 문헌을 재검토하고, ② 관계된 데이터 세트의 제2차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③ 연방의 비행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③ 위험을 재조사하고, 예방과 중재를 위한 수단을 평가하고 ④ 연구집단의 활동의 영역을 알리기 위해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분야의 보급과 재검토의 결과를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 소녀연구집단은 여성 발달과 비행, 소년사법시스템에 관련된 이론상, 실무상 전문가인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④ **Safe Start: Promising Approaches for Children Exposed to Violence**(안전한 출발: 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위한 접근)

안전한 출발: 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위한 접근(Safe Start: Promising Approaches for Children Exposed to Violence)이라는 프로젝트는 사법 프로그램국과 미국건강·인간서비스부에서 연방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에 의해 만들어졌던, 안전한 출발 시작의 두가지 면이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던 원시적인 안전한 출발 입증 프로젝트는 아동과 그들 가족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폭력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발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전세계 11개의 사이트는 시스템 변화를 실현하고, 그들의 사회에서 보다 더 동일시되고 고양된 정책과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을 요청한다.

안전한 출발 파일럿 프로젝트는 아동의 폭력에의 노출이 가져오는 해로운 효과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실무와 정책에 접근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프로젝트는 2004년 여름에 적용되었고, 그 상은2005년 여름에 만들어졌다. 선정된 사회는 폭력에 노출된 아동에게 제공될 실무와 경험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4년 동안 자금을 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은 안전한 출발 프로젝트의 국가적 평가를 자금화한다. 경쟁적 권유과정을 통해 선출된 평가자에 의해 2005년 여름에 고안되었다.

원시적인 안전한 출발 입증 프로젝트와 안전한 출발 접근 파일럿 프로젝트는 초기 아동기 교육과 발달, 건강, 정신적 건강, 아동복지, 가족원조, 부차적 학대예방과 조정, 가정폭력과 위기 조정, 법 집행, 법원들, 법적 서비스와 같은 주요영역에서 현재 서비스제공자들간의 관계를 확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그 시스템의 초기에 아동과 그의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포괄적인 서비스운영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시스템은 폭력에 노출됐거나 노출의 큰 위험에 있는 청소년에게 제공된 접근성, 전달성, 서비스의 질이 고양되어야만 한다.

⑤ i-SAFE America (미국 인터넷 안전)

i-SAFE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온라인 경험들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통제하도록 청소년 교육과 증진에 공헌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 부모, 기타 사회 구성원에게 인터넷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

i-SAFE는 혁신적이고, 상호교류적이며, 학생중심의 인터넷 안전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모든 수업은 국가교육기술기준(the National Educational Technology Standards)과 유용한 주의 기술기준과 제휴하고 있다. 또한 이 수업은 ‘the No Child Left Behind Act’의 목표와 이행을 용이하게 한다.

i-SAFE의 전문적인 발전 프로그램은 교육가와 법집행가들을 i-SAFE의 프로그램의 지도자와 교사로서 참여하도록 준비한다. 5시간 프로그램은 인터넷안전 개념과 i-SAFE 교육 초기에 실시하는 단계들, I-SAFE 커리큘럼과 i-SAFE 아웃리치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을 설명한다.

청소년 육성과 공동체 아웃리치>Youth Empowerment and Community Outreach)는 i-SAFE의 아웃리치 초기의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

가청소년육성캠페인(the national Youth Empowerment Campaign)과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i-SAFE에 집중하도록 하고, 동료들을 교육하고 권한을 주는 것을 돕는다. 교실 이외로 인터넷 안전 커리큘럼을 확장하는 공동체 아웃리치 요소는 온라인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즉, 부모, 사회 지도자 모임, 사회 활동팀을 포함한 활동들.

⑥ Safe Kids/Safe Streets(안전한 아동, 안전한 거리)

안전한 아동, 안전한 거리 프로그램(Safe Kids/Safe Streets)은 초기에 아동기의 피해와 이후 수반되는 청소년기나 성인 범죄화의 흐름을 깨뜨리고, 아동과 청소년 학대, 방임, 그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발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그의 가족에게 보다 더 포괄적이고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년정의, 범죄정의, 아동복지시스템을 개혁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재정상, 기술상 원조를 제공한다. 또한, 소년사법, 형사사법, 아동복지, 가족서비스, 그와 관계된 시스템 사이에 공유되는 정책과 실무, 정보를 개선시킴으로써 학대와 방임 사건들에 대한 통합된 운영을 장려한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① 시스템 개혁과 책임, ② 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연속적 실행, ③ 데이터수집, 정보 공유와 평가, ④ 예방교육과 공공 정보 캠페인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사용한다.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은 다양하게 실행 후기(유지를 위한 처리와 계획을 포함하여)에 있는 5개의 사이트 장학생을 선발한다. 각각은 넓은 공동체, 공적·사적 협력을 대표하고, 시스템을 제공받은 사업상 파트너, 진실한 사회, 가족을 포함한다. 그 사이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Resources section' 에서 볼 수 있다.

⑦ Safe Schools/Healthy Students Initiative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 주도)

Safe Schools/Healthy Students Initiative 프로그램은 건강한 아동기

발달을 장려하고 폭력과 그에 수반되는 학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활동과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에 연방정부의 자금을 제공한다. 미국의 교육·건강·인간서비스부와 사법부는 1999년 이래로 주도적으로 자금화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⑧ Teens, Crime and the Community (10대, 범죄와 사회)

Teens, Crime and the Community 프로젝트는 10대의 피해 발생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을 그들의 학교와 사회에서의 예방자로서 보려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범죄와 개인과 사회에 대한 범죄의 영향에 관한 지식을 늘리고, 예방을 위한 전력을 가르치며, 비행하기 쉬운 태도들을 줄이고, 윤리적 교육과 법률상 필요에 신념을 가지며, 서비스 학습을 위한 국가기준에 대처한다.

학교와 소년사법시설, 청소년회원기관에서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약물, 왕따, 충돌, 빈곤범죄 등의 문제에 대해 청소년을 교육하고, 청소년이 낙서제거와 같은 문제들을 말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대다수의 주에서 범죄예방과 법에 관련된 교육기술들은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사회를 원조하는데 유용하다. 게다가 국가프로젝트 파트너인 ① 국가범죄예방위원회와 거리법, ② 학교장, ③ 사회활동가, ④ 교사, ⑤법관련 교육전문가, ⑥ 범죄예방과 피해지원변호사와 ⑦ 청소년 자신이 도움을 준다.

⑨ Truancy Reduction Demonstration Program

(무단결석 감소 프로그램)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OJJDP)과 미국 교육부의 교육안전국(Office of Safe and Drug-Free Schools)은 2004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무단결석 예방을 위한 협력: 국가우선권(Partnering to

Prevent Trancy: A National Priority)”이라는 국가무단결석예방회의를 후원했다. 그 회의에 대한 정보는 소년사법 및 비행 예방국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무단결석 감소 프로그램은 1998년에 소년비행예방국과 교육안전국(미국 교육부)과 Weed and Seed 집행국(지금은 사법프로그램국(OJP)의 발전국(Community Capacity Development)의 협력 하에 시작되었다. 다음의 프로그램 사이트들은 공동체 협력, 공공 인식 노력, 가족서비스의 연속체, 성공적인 시스템 개혁이라는 요소로 만들어진 무단결석 감소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선택된다.

- 캘리포니아의 Contra Costa Weed and Seed Office
- 워싱턴의 킹 카운티 대법원
- 텍사스의 시립 안티 갱 사무국(Anti-Gang Office)
- 하와이의 PACT(무단결석을 평가하고 예방하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
- 워싱턴의 안전거리캠페인 무단결석 프로젝트
- 플로리다의 주검찰청(State Attorney's Office)
- 뉴욕의 써폴크 카운티 보호관찰국

각 프로그램 사이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접근을 하고 있을지라도 모두 학교와 소년사법, 학교서비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조직들을 둘러싼 강한 협력관계로 이끌어진다.

⑩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A Guide to Implementing Program in School, Youth-Serving Organizations, Community and Juvenile Justice Settings (갈등해결교육)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OJJDP)에서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안전학교 프로그램과 공동으로 갈등해결교육이라는 명칭으로 지침서(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A Guide to Implementing Program in School, Youth-Serving Organizations, Community and Juvenile Justice Settings)를 개발하였다. 이 지침서는 교사, 행정가, 학교위원회 위원, 학교

사이트 운영팀, 청소년서비스 및 청소년사법기관 전문가들이 그들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지침서의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또래중재접근(Peer Mediation), 과정 커리큘럼접근(Process curriculum), 평화로운 교실접근(Peaceable Classrooms), 평화로운 학교접근(Peaceable Schools) 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기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일상적인 갈등 상황을 비폭력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 교육의 의미와 역할

갈등해결교육은 청소년에게 갈등을 생산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써 폭력행동의 수를 줄이고자 한다. 이 교육은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실시하는 종합적인 폭력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이러한 교육은 논쟁하는 쪽이 그들의 관점을 표현하고 그들의 관심을 이야기하고 상호간에 인정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문제해결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갈등해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섭, 중재 및 합의의 갈등해결을 위한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갈등에 비폭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교육자로 하여금 개인의 책임과 자기 수양을 강조함으로써 강요없이 학생들의 행동을 다룰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의 역할을 학교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유능한 시민으로 확대시키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하여 폭력예방에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 낸다.

(나) 갈등해결 접근을 위한 전략

(ㄱ) 또래중재접근(Peer Mediation)

갈등해결에 청소년을 직접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많은 학교와 지역사회는 또래중재접근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특별히 훈련된 학생 중재자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 또래와 협력한다. 중재 프

로그램은 정확, 방과 후 잡아두기, 제명과 같은 전통적인 징계 사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권장하며, 학생들의 갈등상황에 교사들의 참여를 줄이고 학교환경을 개선한다. 이 프로그램은 해결되지 않는 논쟁이나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교섭 또는 기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략으로 택한다. 예로 전국법률시민교육원(National Institute for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Law)과 전국범죄예방위원회(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에 의해서 개발된 “We Can Work It Out” 프로그램이 있다.

(ㄴ) 과정 커리큘럼 접근(Process curriculum)

별개의 교과과정 혹은 일상수업 등 특정 시간을 갈등해결에 관한 원리, 기초능력 및 문제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은 과정 커리큘럼 접근을 행하고 있다. 학생, 교사, 행정가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 논쟁을 해결하는 교섭 방법을 배운다. 이러한 유형의 교섭은 논쟁자들로 하여금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게 하며 양측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돕는다. 예로는 하버드 교섭사업(Harvard Negotiation Project)에 기초하고 있는 청소년교섭자 프로그램(The Program for Young Negotiators)이 있다.

(ㄷ) 평화로운 교실접근(Peaceable Classrooms)

평화로운 교실 접근은 갈등해결을 교과과정 및 일상적인 교실 운영과 통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접근에서는 협동학습 및 학문적 논쟁의 교수방법을 사용한다. 갈등, 안전, 화해 중,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자 자신이 갈등해결을 위한 접근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ㄹ) 평화로운 학교접근

평화로운 학교접근은 위의 3가지 접근을 구체화한다. 평화로운 학교에서는 청소년 및 성인에게 다양하고 비폭력적인 사회가 실제적인 목적이라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도록 환경개선을 촉진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일리노이주 분쟁해결연구소(Illinois Institute for Dispute Resolution)에서 실시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프로그램(Creating The Peaceable School Program)과 뉴욕시 4개 다인종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창의적 갈등해결 프로그램(Resolution Conflict Creatively Program)이 있다.

(다) 기타 환경에서의 갈등해결교육

갈등해결교육은 학교환경에 국한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폭력없는 청소년 사법시설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의미있다.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기존 정책이나 절차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갈등해결원리 및 전략을 배우고 이를 실행하게 되면 그들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보다 큰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뉴멕시코 분쟁해결센터의 청소년교정중재프로그램(Youth Corrections Mediation Program)이 있다.

(라) 지역사회 중재센터(Community Mediation Centers)

지역사회중재센터는 전국 400개 이상의 지역에 있다. 전형적으로 비영리기관인 지역사회중재센터는 청소년과 성인에게 보다 폭넓은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훈련받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이 센터를 통해 갱, 청소년의 게으름에 대한 기업의 불평, 정학, 무단결석,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과 같이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갈등상황 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법상황에서도 중재가 적용된다. 또한 개인생활 및 직장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갈등해결과정 및 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한다. 전국적인 규모의 지역사회 중재센터에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폭력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집행기관, 학교 및 기타 청소년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한다.

6) The Safe Schools Coalition(안전 학교 연합)

(1) 기관의 소개

① 임무

안전학교연합의 임무는 Gay, Lesbian, Bisexual and Transgender 등의 공·사적 관계 청소년이 비록 성적체성을 갖지 못할지라도, 학교에서 어느 가족이든 속할 수 있고, 어느 교육자든 가르칠 수 있고, 어느 아동이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한다.

② 역할

우리는 워싱턴의 학교안전연합이 되기 위해 이용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전세계 후원자들에게 워싱턴 회원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의 역할은 편견을 바탕으로 한 학교내 왕따와 폭력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학교들이 성적 소수자의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성적 소수청소년의 요구에 응하는 것을 돕는다.

(가) 학교에 자원(포스터와 서적)을 제공한다.

(나) 부모나 보호자, 학생, 교육자, 사회에게 경각심(리스트 제공, 웹사이트, 공공연설, 미디어)을 증가시킨다.

(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교육자(행정가들, 다른 전문직원, 전문보조직원) 훈련을 제공한다.

(라) 조사자들, 정책입안자들, 교육자들, 활동가들, 학생, 부모/보호자, 공동체 구성원에게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마) 연구하고 교육자, 정책입안자, 활동가들에게 연구 내용을 유포한다.

안전학교연합(SSC)은 또한 다음을 통해 워싱턴주에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바) 성적체성에 기초한 학대와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개별 학생들, 교육가들, 가족들을 위하여 개입하고 지지한다.

(사) 입법가들, 교육위원회, 학교 운영자들에게 조직되고, 지역사회 조직과 원칙화된 행동주의를 통해 안전한 학교와 불균형적 괴롭힘, 폭력으로부터 자유를 만드는 데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7)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약물남용과 정신건강 보건국)

(1) 기관의 소개

미국 건강과 인간서비스부의 협회로서,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 보건국(SAMHSA)은 1992년 공공법 제102조~321조하에 국회활동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약물남용과 정신병의 위험에 있는 이들에게 극복하고 회복을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① Families and Schools Together(FAST)

(가) 개요

Families and Schools Together (FAST)는 약물남용과 4세~12세의 아동과 부모와 관계된 문제행동에 관련된 보호요인을 만들어내고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다가정집단개입이다. FAST는 체계적으로 가족스트레스이론, 가족체계이론, 사회생태학적이론, 공동체발달 전략들에 관한 연구를 아래의 4가지 목표 성취에 적용한다.

- 고양된 가족기능
- 대상아동에 의한 학교실패의 예방
- 아동과 다른 가족구성원에 의한 약물남용 예방
- 부모와 아동의 일상생활로부터 스트레스 감소

FAST의 주요전략 중의 하나는 부모 자격-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이 주

요예방행위자가 되는 것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이다. 전체 가정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에서 만들기 위해 고안되고, 가정내 결속을 향상시키고, 가정과 학교의 관계를 고양시키는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한다. FAST의 활동은 부모의 사회자본을 만들고, 양육을 경험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발전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참여아동은 걱정과 공격성이 줄어드는 반면에 사회적 기술과 집중기간이 늘어난다. 연구는 이러한 아동기의 행동성과가 청소년기 약물, 비행, 학교실패의 예방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나) 주요성과

- 집중시간 증가 침해 감소, 걱정과 우울증 감소, 사회적 기술 향상을 포함하여 아동의 교실과 가정 행동들을 향상시킨다.
- 학습 적응과 수행을 향상시킨다.
- 학교와 부모 자신의 충족에 있어서 부모의 개입을 증가시킨다.

(다) 주요 프로그램 전략

- 현장접근
- 다가정 집단 회의
- 매달 다가정 재결합 진행
- 사회적 기술들
- 가정/부모와 아동과의 결속
- 가정/부모와 학교와의 결속

② Across Ages

(가) 개요

Across Ages 프로그램은 성인과 청소년의 결속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사회연루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9-13세의 청소년을 위한 학교와 사회를

기반으로 한 약물예방프로그램이다. Across Ages 프로그램의 특이하고 매우 효과적인 특징은 성인멘터(55세 이상)가 청소년-특히 중학교에서 변화하는 청소년-과 짝을 이룬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자신과 공동체에 대한 개인책임을 지우기 위해 멘터링, 공동체 서비스, 적응 훈련, 가족활동 등에 중사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건강과 약물남용, 양육건강태도, 목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물이 용에 대한 행동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킨다.
- 학교 결속, 학습수행, 학교 출석, 학교에 대한 행동과 태도를 향상시킨다.
- 성인과 동료들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기술을 고양한다.

이 프로그램의 전체 목표는 알콜, 담배, 다른 약물 이용과 그런 이용과 관계된 문제들을 예방하고 줄이고 미루기 위해 고도의 위기학생에 대한 보호요인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나) 주요성과

- 약물이용 감소
- 담배, 알코올 이용 감소
- 문제해결능력 향상
- 학교 출석률 증가
- 학교정학의 감소
- 성인에 대한 태도 향상
- 학교와 미래에 대한 태도 향상

(다) 주요 프로그램 전략

- 성인 멘터링
- 공동체 서비스
- 교내/교외 커리큘럼

- 현장접근
-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
- 기술 발달

③ The Border Binge-Drinking Reduction Program

(Border Binge 음주감소 프로그램)

(가) 개요

The Border Binge(음주감소 프로그램)은 다층적이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알코올과 관련된 미국청소년의 음주장애를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증명된 개입을 제공한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법적 음주연령, 알코올 가격, 알콜판매규정의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불일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구입하기가 21세 이하라고 쉽다. 미국의 수천명의 십대들과 청소년들(24세 이하)은 술을 흥청망청 마시기 위해 이웃국가로 가게 된다. 따라서 미국청소년의 놀라운 수가 술취한 채로 미국으로 돌아오고, 현재 차량충돌사고나 다른 알코올과 관련된 폭력으로 그들 스스로나 공공에게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다.

이 Border Binge 음주프로그램은 환경적 경영과 이러한 무책임적인 음주 현실을 억제하려는 미디어 옹호에 헌신하려고 국가적으로 노력한다.

- 혈중알콜농도 조사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밤새도록 술마시고 돌아오는 청소년에 대한 조사
- 문제를 특성화하고 사회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조사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미디어 옹호 프로그램

(나) 주요성과

- 멕시코에서 술을 마신 후에 불법적인 혈중알콜 농도를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미국청소년의 수를 감소시킨다.

- 미성년 음주자들간에 알콜과 관계된 손상충돌을 감소시킨다.
- 폭력과 다른 문제들로 체포되는 수를 감소시킨다.
- 새로운 시행 프로그램의 경각심을 증가시킨다.

(다) 주요프로그램 전략

- 공동체 연계
- 정보공유
- 미디어 교육
- 기술 개발

④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Child Sexual Abuse
(CBT-CSA : 아동성학대 행동치료)

(가) 개요

아동 성학대에 대한 인식행동 치료(CBT-CSA)는 성학대 경험했던 아동과 청소년이 사후장애스트레스 혼란(PTSD)과 우울증, 다른 행위적·감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치료접근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다음과 같이 되도록 돕는다.

- 건정한 성 만큼이나 아동 성학대에 대해 배우도록
- 장애 기억을 치료하도록
- 문제적 사고와 감정, 행동들을 극복하도록
- 효율적으로 대처와 신체안전기술을 개발하도록

이 프로그램은 비위반부모(nonoffending parent)나 주요 보호자의 지지와 관계를 강조하고, 효과적인 부모와 아동의 대화를 장려한다. 인식행동방법들은 부모가 그들 자신의 고민에 대처하고 그들 자녀의 행위적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배우도록 돕는다. 인식행동치료(CBT) 접근은 모든 임상적이고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정신건강에 적합하고, 개인과 집단 치료형식에 자료를 제공한다.

(나) 주요성과

- 사후장애스트레스(PTSD), 우울증, 의 면에서 커다란 향상
- 아동 성학대에 대한 인식행동 치료(CBT-CSA) 집단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동 성학대와 관련된 감정적 고통과 방해적 사고의 면에서 커다란 향상

(다) 주요 프로그램 전략

- 아동 성학대와 건강한 성에 대한 교육
- 오락, 감정표출, 정신적 대처를 포함한 기술 훈련 강구
- 장애기억과 회상에 대한 점차적 노출과 진행

⑤ All Stars

(가) 개요

All Stars는 중학교 청소년(11-14세)의 약물이용, 폭력, 조기 성활동을 포함하여 고도의 위험행동을 예방하고 유예하기 위해 고안된 학교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고도의 상호작용프로그램인 All Stars는 첫해동안 9-13개의 수업을 하고 두 번째 해 동안에 7-8개의 보조 수업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약물경험을 하고, 다른 고도의 위험행동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비판적인 요소를 확인하게 되는 강력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 세대 청소년의 유형인 긍정적인 특성을 보강하도록 고안되었다. 예방효과를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인 다섯 가지 특별한 특성을 강화하려고 한다.

- 긍정적인 사살과 미래목표를 발전시킨다.
- 긍정적인 규범을 세운다.
- 강한 개인 책임을 지운다.

- 학교와 사회의 결속을 증진한다.
- 긍정적인 부모 관심을 증진한다.

All Stars 프로그램은 규칙적인 교실 수업의 일부로서 학교에서의 인도와 방과 후, 공동체에 기초한 조직과 프로그램들의 체계로 유용하다.

(나) 주요성과

- 고도의 위기행동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킨다.
- 학교와 동료들 간의 결속을 증가시킨다.
- 약물이용과 폭력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

(다) 주요 프로그램 전략

- 방과 후 커리큘럼과 활동들
- 교내 커리큘럼
-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8) Diocese of Harrisburg(해리스버그 주교구) 청소년보호 프로그램¹⁸⁾

해리스 주교구는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으로서 성인 교육비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비디오에서는 성학대의 의의, 경고 조짐, 취해야 할 행동, 법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알린다.

(1) 경고 조짐

아동 성학대는 육체적, 감정적, 심리적, 정신적 방식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조짐(sign)은 신체불만, 무단결석, 접촉에 민감, 가출, 공격적인 행동, pseudomaturity, 생식불만, (거식증 등의) 섭식 장애, 약물과 알코올 이용, 학습능력 저하, 수면장애, 곤란, 난잡한 성행위 경향, 성적 행동과 성적 문제에 대한 편견, 자기파괴적 행동들을 포함한다.

(2) 아동과 청소년 노출의 5가지 방식: 직접, 간접, 부속된 이들, 제3

18) www.hbgdiocese.org/canonical/downloads/YPP%20Video%20Outline.pdf

자, 우연

(3) 취해야할 행동

- 안전한 환경 만들기: 동료체계, 안전한 건물, 전문화, 경계
- 예방: 아동들이 늘 있는 곳을 알기, 차단된 지역 모니터, 부모가 건강에 관심을 보이기, 부모가 아이들에게 개인적인 신체 부분에 대해 가르쳐야만 한다.

(4) 법률과 정책

① 학대 예방

- 강제적 심사 체크
- 범죄경력과 아동학대 기록 체크
- 안수를 위한 성직자들과 지원자들의 완벽한 심리적 평가
- 해리스버그 주교구에 속한 모든 성직자와 종교인들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② 학대를 알았을 때 해야 할 것

- 알리려고 한다.

2. 일 본

1) 국가기관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대책

국가의 시책으로서 강조기간 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통해 국민의 의식함양을 할 것,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정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성적묘사 및 폭력, 잔인한 표현을 포함하는 정보 등이 청소년의 감정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결과의 수집 및 활용을 도모함과 함께, 각 관계업체에 대한 자주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에 의한 조사 등을 지원할 것, 미디어정보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의 추진, 법령에 근거한 단속의 촉진 및 관련업체 등과의 의견교환을 실시할 것 등이 규정되어, 이에 따른 시책이 추진되었다.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된 시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내각부에서는 매년 7월을 ‘청소년의 비행문제에 관한 전국강조의 월간’으로, 11월을 ‘전국청소년건강육성강조월간’으로 지정하였고, 전국의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미디어와의 접촉상황, 휴대전화의 이용상황, 인터넷의 이용상황, 정보관 등에 대한 개별면접조사 및 전문가에 의한 조사 및 분석을 한 ‘정보화사회와 청소년에 관한 조사’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유해환경의 실정에 대한 조사와 관련 정보를 수집한 ‘청소년유해환경대책에 관한 조사’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제공함과 동시에 CD판매점에 대하여 성인물의 구분진열 및 대면판매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한 지도자용 자료와 안내서를 작성하였고,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사범의 단속의 촉진, 아동포르노화상검색시스템(CPASS: Child-Pornography Automatic Searching System)을 개발하여 인터넷 상의 아동포르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지방경찰에서는 ‘소년을 지키는 환경정화중점지구’를 지정하여 주민과 함께 유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을 지키는 환경정화중점지구’란, 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을 정화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주민주도에 의한 종합적인 환경정화활동의 추진과 소년에 대하여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의 정화와 함께 그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발전보급시키기 위한 경찰의 시책이다.

중점지구의 지정은 縣내에서 1곳 이상으로 하며, 중점지구의 선정요건은 주택가와 환락가, 상점가가 접하고 있는 시가지로 환경의 정화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한다. 중점지구지정지역에서는 먼저 ‘소년을 지키는 환경정화추진협의회’가 설치되는데, 환경정화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은 방법협회, PTA, 부인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된 자로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환경정화추진위원회에서는 서점, 잡지자동판매기 등에 대한 유해잡지의 판매상황, 유해광고물,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환경정화에 관한 시책의 요청, 관계업자에 대한 자주규제요청 등을 실시하며,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효과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대책

지침에서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조례의 효과적인 운용과 법률에 근거한 단속의 철저 및 주민 등에 의한 각종환경정화활동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요청사항으로서, 유해도서류의 지정을 받지 않은 도서에 대하여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에 참고로 할 것, 판매점·대여점에 있어서 각 지역의 조례에 근거하여 구분하여 진열하도록 하고, 청소년보호육성조례에 근거한 법률위반의 단속을 철저히 할 것, 주민 등에 의한 각종의 환경정화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것 등을 나열하고 있다.

각 지방공공단체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에는 도서류에 대한 유해지정조항이 있으며, 지사의 지정에 의해 유해도서류를 규정할 수 있다. 지정에 있어서는 심의회의 자문에 의하며, 도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지방공공단체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에서는 조례 또는 규칙이 규정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정한 비율을 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심사 없이 유해도서로 지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현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 제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지사는 도서 등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저하게 성적감정을 자극하고 또는 현저하게 폭력성 잔학성 혹은 범죄를 유발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도서 등을 유해한 도서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항의 지정에 관계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유해한 도서 등으로 한다.

① 도서 또는 잡지로 전라, 반라 혹은 이것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세 또는 성교 혹은 이것에 유사한 성행위를 피사체로 한 사진 또는 묘사한 그림으로 규칙에서 정한 것을 게재한 페이지(표지를 포함)의 수가 해당 서적 또는 잡지의 페이지 총수의 5분에 1이상을 점하는 것 또는 20페이지 이상의 것.

② 비디오테이프 또는 비디오디스크로써 전라, 반라 혹은 이것에 가까운 상태에서의 천박한 자세 또는 성교 혹은 이것에 유사한 성행위의 장면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의 묘사의 시간이 3분을 넘는 것 또는 비디오테이프 혹은 비디오디스크의 제작 혹은 판매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지사가 지정한 자가 심사하여 청소년의 시청이 부적당하다고 한 것.. 또한 지사에 의한 유해지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 등에 의한 유해지정의 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유해물로 지정된 도서류는 다른 도서와 구분하여 진열하여야 하며, 점포 내에서 감시가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유해도서의 청소년에 대한 판매,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유해물 지정은 도서만이 아니라 기구 및 유해물 자판기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沖繩현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유해기구류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13조 지사는 기구류 등의 구조 또는 기능이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

가 있고, 또는 그 형태, 구조 혹은 기능이 현저하게 성적감정을 자극하고 또는 현저하게 폭력성·잔학성 혹은 범죄를 유발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기구류 등을 유해기구류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기구류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받은 기구류 등의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4 누구라도 업무 그 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년에 대하여 유해기구류 등의 판매 등을 하거나 또는 유해기구류 등을 휴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동판매기 등에 의한 판매 등의 금지)

제13조의2 도서 등 또는 기구류 등의 판매 또는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유해도서 또는 유해기구 등을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대출기(이하 자동판매기 등)에 의해 판매 혹은 대여하거나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것을 자동판매기 등에 수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 해당자동판매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외 청소년이 해당자동판매기 등으로부터 유해도서 등 또는 유해기구류 등을 구입하고 또는 대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유해광고물의 제출의 금지)

제14조 지사는 광고물의 형태 또는 내용이 현저하게 성적감정을 자극하고 또는 현저하게 폭력성 혹은 잔학성을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광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해광고물로 지정할 수 있다.

3 광고물의 광고주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광고물을 게시, 표시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판매점 및 대여점에 대한 규제를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은 2002

년 현재 42곳이며, 자동판매기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3) 관련단체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 프로그램

지침에서는 청소년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하여 정보 등의 발신 및 제공, 또는 수신 및 향유의 단계에서 특정의 정보 등의 제한이 곤란한 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에의 영향을 배려한 발신 및 제공에 노력할 것, 정보의 차단, 자주규제 등을 나열하였다. 또한 TV방송, 인터넷, 가정용게임기CD, 비디오테이프, 컴퓨터CD, 출판물, 영화 등의 7종류의 미디어 관계업계단체에 대하여 자주규제추진을 위한 요청을 하였다.

먼저 TV방송부문에서는 일본방송협회(NHK)가 1999년 6월에 (사)일본민간방송연맹(민방연)과 함께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전문가회합정리’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즉 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편성의 충실, ②미디어 정보능력의 향상을 위한 관련방송의 제작,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비디오대출 등, ③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조사 등의 추진, ④제3자 기관의 활용을 위하여 민방연과 공동으로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 신설, ⑤방송시간대의 배려, ⑥방송에 관한 정보제공의 충실 등의 시책을 결정하였다.

그 외 (사)일본민간방송연맹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을 주3시간이상 방송할 것과, 유해환경대책을 위한 새로운 방송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사)위성방송협회에서는 ①위성방송협회방송기준의 제정,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기준 및 가이드라인 책정, ②청소년과 방송을 주제로 하는 연구강연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CS방송 ‘성인방송윤리위원회’에서는 성인방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성인방송시청신청에 있어서 연령증명서의 제출 및 인증번호에 의한 시청연령제한의 실시, ②방송에 경고문 첨부를 실시하였다 또한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TV시청과 청소년의 의식 및 행동과의 관련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5학년생이 중학교 2학년생이 될 때까지의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관련단체에서는 1998년에 (사)텔레콤서비스협회가 유해환경대책으로서 ‘인터넷접속서비스 등에 관계되는 사업자의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사업자가 취해야 할 청소년보호대책을 공표하였다. 또한 (재)뉴미디어개발협회는 2001년 4월에 인터넷 유해사이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개발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속제한 기술을 개발하여 연령에 따른 인터넷접속의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게임소프트업계에서는 (사)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2001년 10월에 회원기업발매의 게임소프트에 대한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윤리위원회에서 ‘폭력표현 및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주의환기가 불필요한 표현(A), 주의환기가 필요한 표현(B), 발매를 금지하는 표현(C) 등의 3단계의 표현 심사를 실시하였다.

비디오제작관련업계에서는 일본비디오윤리협회가 2001년부터 ①성인비디오작품에 대한 자체심사 및 심사에 의한 구분표시, ②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여성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또는 성적학대·능욕 등의 성묘사 및 성표현, 흥기(도물, 총기 등)를 남용하거나 협박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묘사 및 성표현, 복수의 자에 의한 집단적 폭력을 동반하여 이루어지는 성묘사 및 성표현"에 대하여 제작사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영상소프트협회에서는 일반인 대상의 비디오 및 극장미공개영화의 비디오화에 대하여 ‘영상윤리위원회’의 ‘영상윤리협의회심사규정’의 심사 후에 발매하도록 하고, 각 영상물에 대하여 일반인 대상등급과 일반인제한(R)등급으로 구분하여 R등급에 대해서는 중학생 이하의 상영·판매 및 대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컴팩트디스크 및 비디오대여상업협회에서는 성인지정작품의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대여금지, R등급 지정작품의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대여금지 및 아동포르노물의 취급을 금지하도록 결정하였다.

컴퓨터관련업계에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윤리기구가 청소년육성조례에 따른 구분판매와 대면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연령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출판물에서는 출판윤리협회가 1996년부터 성인대상의 잡지에 대한 식별마크를 표시하고 있으며, 서점에 있어서는 계산대 옆에 성인코너를 설치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성인잡지는 청소년이 열람 할 수 없도록 비닐포장을 하도록 하고 있다.

4) 그 외의 민간단체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대책

민간단체에 의한 ‘유해환경’ 대책으로는 먼저 ‘갱생보호부인회 ‘갱생보호여성회’는 태평양전쟁 전 소년보호활동을 목적으로 부인소년보호사 등에 의해 조직된 ‘소년보호부인회’로부터 시작된 단체이다. 이 단체는 1964년에 전국조직인 ‘갱생보호부인협의회’의 결성에 의해 전국적인 활동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갱생보호여성회의 참가자격은 취지에 찬성하는 여성이면 누구든지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조직이다. 회원으로서의 특별히 규정된 자격제한은 없고, 다만 자원봉사자로서 자주성 및 독립성만을 요구함으로 지역사회에 있어서 열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에 의한 활동을 들 수가 있다.

갱생보호부인회는 여성의 입장으로 지역사회의 범죄 및 비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반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비행방지활동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증진시키고 비행소년의 개선갱생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본래 이 단체의 중심적인 활동내용은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대상자의 지원활동 등이 그 중심이지만, 청소년의 범죄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환경정화활동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해도서의 판매규제운동 및 미니집회의 개최는 각지의 지역특성에 기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미니집회의 내용으로는 범죄, 비행, 이지메, 교육, 지역환경 등 광범위한 지역문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보다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유해도서의 판매규제운동은 유해도서자동판매기의 철거 및 유해도서의 판매규제를 목적으로 실시된 운동이다. 이 운동은 각 지역의 갱생보호여성

회가 중심이 되어 유해도서의 판매실태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규제신청 등에 의해 1978년에 일본총리부에 의한 ‘잡지 등 자동판매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한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각 지역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 등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다음으로 학부모들로 구성된 PTA 부모와 교사의 회: 아동의 복지와 교육효과의 향상을 목적으로 부모와 교사가 상호협력하여 학교단위로 조직된 단체이다.에 의한 지역유해환경정화활동을 들 수 있다. 특히 (사)일본PTA 전국협의회에서는 불량매스컴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불량매스컴에 대한 방송중지 및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 등 주로 매스컴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유해도서에 대해서는 1980년에 유해도서자동판매기를 학교주변에 설치하는 것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제정에 관한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한편 각 지역의 소년육성센터에서는 유해도서의 회수를 위한 포스트를 지역에 설치하여 자주적인 회수를 독려하고 있다.

5) 개별 프로그램

(1) 다이얼Q2에 대한 대책

다이얼Q2란 국번 "0990"에 전화번호를 걸면 유료로 다양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NTT NTT는 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의 약자로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를 말한다. 가 정보제공자에게 회선을 유료로 배당하여 정보요금을 통화요금과 합산하여 이용자로부터 대리회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1989년 7월에 동경에서 처음으로 개시된 후 급성장한 사업으로 정보의 약 20%정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라는 점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정보의 내용도 성인비디오와 같은 형태의 음성과 회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음성에 의한 외설"은 현행의 일본형법에서는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고, 텔레폰클럽 텔레폰클럽은 전화기, 교환기, 녹음기 등의 기계를 전화회선에 연결하여, 불특정 이성간의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들 간의 전언(傳言)을 중계하는 영업으로 다이얼Q2와는 달리 점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화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NTT는 다음과 같은 자주규제를 실시하였다. 즉 희망하는 자의 전화로부터는 다이얼Q2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이용규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 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다이얼Q2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협력요청과 함께 엄격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용규제를 선택할 수 없는 전화로부터는 다이얼Q2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전화는 영화 및 비디오와는 달리 미성년자의 입장금지 및 판매·대여의 제한과 같은 규제가 곤란하므로 결국은 각 가정에서 접속을 금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NTT에서는 미성년자에 의한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일정의 요금에 따라 경고방송을 하고 월액요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서비스를 정지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2) 텔레폰클럽에 대한 대책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텔레폰클럽은 남성이 입장료를 내고, 전화가 비치된 방에 들어가 여성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기다리는 형태로 우리나라의 전화방과 유사한 것이다. 텔레폰클럽은 공식적으로는 불특정남녀간의 대화의 기회를 알선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매춘의 알선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90년대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원조교제'가 텔레폰클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으로부터 그 심각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1985년에 처음으로 개점된 텔레폰클럽은 지금은 상당수가 없어졌으나 아직도 '매매춘 목적의 이용'과 '청소년의 이용' 등의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텔레폰클럽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텔레폰클럽규제조례’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즉, 이미 제정되어 있는 청소년보호육성조례를 개정하여 규정하는 형태와 별도의 독립된 텔레폰클럽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들 두 형태의 차이점은 전자가 지사의 소관인데 반하여 후자는 공안위원회의 소관이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찰관이 중지명령을 발하거나 벽보 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정완, 테레크라의 형사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2000, 3면참조.)

전자의 예로는 兵庫현의 청소년애호조례 등의 텔레폰클럽에 대한 규제로 다음과 같다.

① 兵庫현의 청소년애호조례

(정의)

제2조 이 조례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7)텔레폰클럽 등 영업: 전기통신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단말기 설비를 동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전기통신회선설비에 접속하여 이러한 설비를 이용하여 오로지 이성간의 회화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또는 전언을 매개하는 영업을 말한다.

(금지행위)

제17조 텔레폰클럽 등의 영업을 하는 자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청소년을 제2조 제7호의 대화의 상대방이 되거나 또는 동호의 전언의 주체 혹은 받는 자가 되는 업무 그 외 손님에게 접하는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

(2)청소년을 텔레폰클럽 등의 영업소에 손님으로서 출입하게 하는 것.

(3)청소년에게 텔레폰클럽 등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혹은 전화번호 또는 텔레폰클럽 등의 영업에 관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수량에 응하는 대가

를 얻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카드, 그 외의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기재한 문서, 도화 그 외의 물건을 배포하는 것.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텔레폰클럽 등의 영업소의 명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

2 텔레폰클럽 등 영업자는 텔레폰클럽 등의 영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하는 취지를 게재하여야 한다.

(벌칙)

제30조 2 제1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방단체가 청소년보호육성조례를 개정하여 텔레폰클럽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별도의 독립된 조례로 텔레폰클럽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東京 등으로 동경에서는 텔레폰클럽의 영업형태의 변형인 데이트클럽영업에 대하여 1997년의 조례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 이 조례는 데이트클럽영업 및 이용카드판매업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러한 영업에 관계되는 특정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 등에 의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풍속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제1조).

또한 동 조례에는 도정부와 도민 그리고 영업자는 데이트클럽영업 및 이용카드판매업에 관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풍속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행하여야 한다(제3조, 제4조, 제5조).

데이트클럽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10일전까지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청소년이 해당영업소에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를 영업소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제7조).

이러한 데이트클럽은 학교(대학은 제외), 도서관, 의료시설, 아동복지시설의 주위 200미터 및 주거지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제8조). 또한 데이트클럽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혹은 전화번호, 그 외의 해당영업에 관계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문서 및 도화, 그 외의 물품을 배포 또는 표시할 수 없으며(제9조), 청소년에게 이용카드의 판매, 배포, 증여, 교환 혹은 대여, 이용정보의 교시를 할 수 없다(제15조).

데이트클럽의 영업자는 청소년을 손님에 접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제10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조).

경찰관은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해당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제18조),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공안위원회에서 광고물의 제거 및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제19조).

이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텔레폰클럽 및 유사업종에 대하여 기존의 청소년보호육성조례의 개정과 독자적인 조례의 제정에 의해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캐나다

1) Juvenile prostitution prevention program

(청소년매춘 방지 프로그램)

1994년에 Calgary 경찰위원회의 요구로 켈거리의 관심있는 그룹이 아동과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위원회를 조직했다. 1년간의 조사와 심의 끝에 활동의 계획은 켈거리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응하는 활동안내서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의 목표 중 첫째는 청소년과 부모와 학교체계에 관련된 교육자 사이에 경각심을 일으켜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과 아동이 더 쉽게 인식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는 성산업에 있어서 청소년의 이용과 고용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것이다.

1995년에 하위 위원회는 사회에서 청소년 성매매를 알리기 위해 학교 중심의 프리젠테이션을 개최하였다. 이 위원회는 켈거리 교육부, 켈거리 기독교 교육부, 켈거리 성학대 방지 위원회, 켈거리 건강서비스부, 엘버르터 미아찾기 협회, EXIT 사회 아웃리치 프로그램, 적십자사, 거리팀과 Woods Homes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하부 위원회의 협동적인 노력으로서, 9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계획이 발전되었다. 이 프리젠테이션은 성매매와 관계된 태도와 이야기들, 청소년이 어떻게 성매매에 빠져들었는가, 포주와 모집자의 프로필, 위험행동과 경고 사항, 사회 지원 등을 확인한다.

이 수업계획은 1997년에 켈거리 공립학교와 기독교 교육부의 학교에서 지도하였고 허가되었다.

1997년 10월에 캐나다 적십자사와 켈거리 성학대방지위원회, 미아찾기 협회의 자원봉사들과 켈거리 건강서비스부의 직원들은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노력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켈거리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8년 초에 미아찾기 협회는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였다. 몇몇

의 성공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가까운 미래에 정부와 재단의 도움으로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장하기를 바란다.

최근에 우리는 광범위한 지역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와일드 로즈 재단과 자발적 기부로부터 일부 자금을 받았다.

2) Alberta Alcohol and Drug Abuse Commission

(앨버르타 알콜·약물남용위원회)

(1) 기관의 소개

AADAC(앨버르타 알콜·약물남용위원회)는 1951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거주자들에게 알콜, 약물, 갬블링 문제에 관한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ADAC는 정보, 예방, 위기, 치료라는 4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과, 여성, 원주민들을 위한 전문적인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46개 센터에서 약물치료와 쉼터 제공, 상담 서비스, 일일치료프로그램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며, 알콜 및 약물을 중단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3개의 약물 해독 센터와 주거치료서비스, 2개의 청소년 치료센터의 운영을 통해 10대들을 위한 전문적인 집중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프로그램의 내용

① 정보제공 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로는 알콜, 약물, 갬블링, 서비스에 대한 최신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정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 부모, 교사, 전문가들에게 교육과 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출판물, 비디오, 포스터 등을 제공한다,

② 예방서비스

예방서비스는 알콜, 약물, 갬블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이들 전략은 약물과 갬블링 문제에 관한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교육서비스, 외래환자 상담, 일일치료프로그램, 훈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AADAC 지역센터의 네트워크를 통해 주의 42개 지역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 위기서비스

위기서비스는 긴급상황에서의 상담과 위탁, 알콜 및 약물의 심각한 문제로부터 안전한 치료를 위한 대책과 약물해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앨버르타 지역에서 9개의 해독프로그램과 5개의 쉼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주 전체의 무료전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④ 주거치료서비스

주거치료서비스는 중독으로부터 그들의 회복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치료환경을 제공한다. AADAC는 8개의 앨버르타 지역에서 주거지원과 함께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외래환자 상담, 일일치료프로그램, 위기와 중독 치료, 단기 및 장기 주거서비스, 24시간 쉼터서비스를 제공한다.

3) Vancouver Native Health Society

(밴쿠버 원주민건강사회)

(1) 기관의 소개

밴쿠버 원주민 건강사회(VNHS)는 원주민을 위한 건강서비스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허가에 의한 비영리단체이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원주민 지역사회를 위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원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개선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의학, 상담, 사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기관은 처음에 원주민의 건강을 위한 의학 클리닉으로 시작하였으나 건강과 치료를 개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기관과 웹사이트에 방문객을 초대하여 추가된 서비스를 심층있게 조사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한 조사를 통해 의학치료, 성교육, 에이즈 감염 및 예방, 미혼모 등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의학서비스와 아동의 문화적 학습과 약물예방을 위한 교육, 성문제와 관련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프로그램의 내용

① 의학서비스

(가) 의학치료서비스

의학클리닉은 원주민과 일반인에게 의학과 간호치료, 전염병의 전문적인 상담, 안과학, 중독상담, 당뇨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나) 긍정적인 전망(POSITIVE OUTLOOK)

긍정적인 전망은 원주민을 대상으로 빈민가에서 에이즈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 치료,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모델은

병원, 지역사회, 밴쿠버의 전문화된 서비스 중개역할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원주민 문화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여 각 개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요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용성 있게 접근한다.

② 건강서비스

- sheway 지역사회 프로그램

sheway는 빈민가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한 현장파견 프로그램이다. 현재 또는 과거에 약물남용을 경험한 적이 있는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건강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사회서비스

(가) 여성콘돔 프로젝트

여성콘돔 프로젝트는 원주민 여성들에게 여성 콘돔의 무료배포와 교육을 통해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한 의식을 올리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나) 밴쿠버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VAECSP)

a) 어린이 가족지원 프로그램

어린이 가족지원프로그램은 밴쿠버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은 0-6세의 원주민 어린이와 그의 가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다.

b) 청소년가족지원 프로그램

가족 지원팀은 0-6세의 어린이를 가진 29세 이하의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청소년 가족을 지원을 위해 일한다.

c) HIPPY PROGRAM

히피프로그램은 가정에서 3-5세의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부모들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학교와 장래에 그들의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여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다.

④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집 프로젝트(Youth Safe House)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집은 밴쿠버에 위치하는 13-15세의 청소년들에게 단기간의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이다. 부랑아, 성매매, 가출, 위협과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위기중재, 예방과 대처방안, 변화와 안정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고, 특정한 사례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2,3명의 어린이들이 각각 거주할 수 있는 3개의 작은 숙박시설을 제공하며, 일주일에 7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가) 대상

밴쿠버에 있는 모든 인종에 기원한 12-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은 거리생활을 하고 있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약물 남용의 위험에 있는 부랑아이거나 가출청소년이다. 우리의 주거공간의 효율과 청소년의 요구에 기초하여 우리는 12-16세의 청소년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나) 목적

- 청소년들이 거리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
- 거리활동에서 창조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을 제공
- 가정환경 제공
- 청소년들의 자아능력을 지원
-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장기간의 목표를 발견하도록 지원
- 청소년들이 적당한 시기에 가족들과 재결합하도록 지원

(다) 거주기간

Safe House의 거주기간은 처음 유예기간인 24시간 내에 결정된다. 만약 청소년이 치료가 필요하다면 최대 30일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없다면 최대 7일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 거주기간의 일수는 처음 들어온 날부터 적용된다. 미성년의 청소년 안전한 집 프로그램은 머무는 기간 동안 유동성이 있다. 만약 청소년의 안전이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청소년을 위한 장소에서 구체적이고 전통적인 계획이 없다면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을 떠나지 않는다.

4) Urban Native Youth Association

(원주민 청소년 협회)

(1) 기관의 소개

UNYA(원주민 청소년협회)는 1989년에 설립된 캐나다 원주민 자녀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이 기관은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 교육과 알콜 및 약물남용에 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리에서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거 프로그램, 거리의 위험한 성매매와 성착취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집을 운영하고 있다.

(2) 프로그램의 내용

① Aries Project(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이 프로젝트는 13-18세의 원주민 자녀 청소년들을 위한 일일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거리에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 좋은 가족환경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Aries Project는 청소년들이 거리에서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원조하고, 가족환경, 법적문제, 행동문제에 상관없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여행과 수업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화, 외로움, 거절, 권태, 주위압력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학습스타일과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개별적인 치료와 교육을 받는다.

- 교육적 상승

- 학교에서의 점심식사 제공
- 레저와 사회적 프로그램, 소풍
- 미술이나 공예과정
- 원주민의 문화학습 프로그램
- 기본적인 삶의 기술 제공 서비스
- 건강정보서비스

② Safe House(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집)

안전한 집은 16-18세의 청소년들을 위한 자기위탁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을 성매매와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들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곳이고, 청소년들이 그들의 문제, 환경, 상황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 하에 청소년에게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한 집에 들어오기 위한 자격조건은 거리에서 사는 16-18세 청소년, 남자 또는 여자,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자, 자진해서 오는 자. 직원과 다른 청소년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하루 세끼 식사, 개인방, 자료실, 도서관, TV실, 문화공간, 적절한 단체와 문화단체와의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4. 영국

1)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¹⁹⁾

(NSPCC:아동학대방지협회)

(1) 기관의 소개

아동학대 방지협회(NSPCC)는 영국의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 특별한 자선단체이다. 이 협회는 1884년 이래로 아동보호와 그의 이익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주로 아동학대에 관하여 영국 전역에 180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팀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무료로 아동의 안전에 관한 정보, 조언, 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아동보호 상담전화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와 이해를 높이고 조언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부모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교육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밖에도 아동보호훈련과 아동의 치료, 보호, 교육을 하는 기관들을 위한 조언과 아동학대의 특성과 영향에 대한 조사 등을 하고 있다.

(2) 프로그램의 내용

① Young People' s Centres

아동학대방지협회는 현재 8개의 청소년센터를 가지고 있고 청소년의 발달을 도우려고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쉽게 하도록 할 수 있는 회복력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Tim Parry Jonathan Ball 청소년센터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매우 새로운 방식의 좋은 예이다. 지역청소년과의 상담으로 고안된 이 센터는 게임방, 미팅홀, 미술과 음악 스튜디오가 있는 사이버카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잡담과 상담을 위한 개인방이고, 아동방지협회 직원들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활동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용

19) <http://www.nspcc.org.uk/html/Home/Whatwedo/teamsprojects.htm>.

자들은 동료지원그룹, 치료 워크숍, 방과 후 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에 접근할 수 있다.

② There4me.com

There4me.com은 주로 12세에서 16세의 청소년을 위한 상담 웹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청소년들이 자주 걱정하는 주제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신뢰할 수 있고 진실한 아동학대방지협회의 상담자와의 온라인 상담을 접할 수 있다. 또한 Release, Childline, the Terence Higgins Trust와 같은 다른 특별기관으로부터 정보와 상담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이 서비스의 목표는 청소년에게 상황에 대한 통제할 능력을 주는 방식으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③ Assessing risk and helping after abuse

아동학대방지협회가 아동이 위험에 빠졌을 때 대면하면, 일단 아동의 개인적인 상황을 보고, 학대가 일어난 시기에 접근한다. 그렇지 않으면, 즉, 이미 가정에서 학대받았다면, 협회는 다시 일어나고 있는 위험에 접근한다. 그때 접근팀이 아동을 보호할 최선의 방법을 결정한다. 이는 부모와 아동과의 치료활동이거나 일부는 안전한 장소로 아동을 옮기는 활동이기도 하다. 만일 학대가 일어났다면 아이들은 매우 쉽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아이들이 그들이 느끼는 고통, 공포, 혼돈을 표현하기 전에 여러 달 동안 일대일 상담을 받게 된다. 그러면, 상담원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회복하게 될 수 있다.

때때로, 아동학대방지협회의 상담원들은 전체가정, 주로 학대자와 피해자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 활동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대다수는 학대받은 아동에

④ Supporting parents

아동학대방지협회의 가정지원서비스(Family Support Services)는 부모

와 치료자들에게 아이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들의 양육기술을 향상시키며, 아이들에게 해로움을 유발하는 압력들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다. 이 서비스는 태아기 상담, 유아그룹, 일대일 상담 클리닉, 가정과 재산에서의 안전 회의, 아동들의 점심, 방과 후 모임 등이 포함된다. 어떤 활동이더라도 활동적인 참여와 자기만족과 문제해결기술을 익히기 위한 자조를 고양시킨다. 협회는 꾸준히 부모들과 활동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예가 있다. 첫째, 북동부 Lincolnshire의 그림스비에 있는 비디오가정안내프로젝트(Video Home Guidance project)는 비디오 영상 재생을 이용하여 부모들이 그들의 양육방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들은 그들이 직원들의 도움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둘째, 북쪽 Swindon에 있는 가족센터(Family Centre)는 2001년에 305명의 부모를 도왔고, 현재 더 나아가 매우 어린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2) British Youth Council(BYC: 영국청소년위원회)

(1) 기관의 소개

영국청소년위원회(BYC)는 1948년에 설립되었고, 67개의 청소년 및 학생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17개의 협력회원기관이 있다. 이 위원회는 16세에서 25세의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이 운영하는 자립자선단체이다. 이 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청소년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고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더욱 효율적인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전국적인 포럼을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무엇보다 사회에서 청소년의 이익과 의견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영국청소년위원회는 ‘유럽청소년포럼(European Youth Forum)과 유럽청소년·학생협력기구(All European Youth and Student Co-operation Framework), 청소년복지프로그램(Commonwealth Youth

Programme)에 가입되어 있다.

(2) 기관의 정책 내용

영국청소년위원회는 10가지의 정책을 통해 청소년 보호활동을 벌이고 있다.

- 문화, 레저, 스포츠
- 교육, 고용, 훈련
- 환경과 지역 업무
- 정부와 결정수립
- 국제적 업무
- 건강과 웰빙
- 가난과 삶의 질
- 청소년의 목소리
- 청소년과 법
- Transport

3) NAYJ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Youth Justice)²⁰⁾

(1) 기관의 소개

국가청소년사법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Youth Justice)는 국가내부중재치료연맹(The National Intermediate Treatment Federation)과 청소년사법협회(The Association for Youth Justice)의 합병에 따라 1994년에 브리튼에서 설립되었다.

중대한 개혁의 시기였던 지난 2년 동안 이 협회는 그의 기반이 되는 청소년사법체계에 관한 철학과 정책의 검토에 착수해 왔다. 첫번째 단계는 철학적 기초에 바탕을 둔 청소년활동의 정립이다. 이 철학은 입법정책과 현실에 깔려있는 가치와 믿음을 제공한다. 두 번째 단계는 선언이 이러한

20) <http://www.nayj.org.uk/website/index.php>

기초 하에 세워지고, 그 인간과 아동의 권리와 조화하는 것이다.

(2) 기관의 목표

이 협회의 목표는 위험에 있는 아동의 권리와 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NAYJ는 정책과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실무진의 발전과 implementation을 위해 캠페인을 벌인다.

이 기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실시한다. 청소년에게 공동체 속에 있는 동안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차별화, 반억압화, 다이버전, 비범죄화의 원리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는 소년사법시스템을 통해 최고여야 한다는 믿음을 높이기 위하여, 효과적인 정책과 실무의 예를 알리기 위하여, 그들의 권리를 유지하고 그들의 복지를 안전하게 지도하는 문제에 있는 아동과의 활동방식에 기초한 공동체를 장려하여 입법에 영향을 주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하여, 위험에 있는 아동과 활동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 일 목적으로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3) 기관의 활동

NAYJ는 Russell House 출판사와 함께 'Youth Justice'를 출판하고 뉴스레터를 제공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역의 훈련 이벤트를 조직하고, 국가훈련세미나와 AGM, 매년훈련회의를 개최한다. NAYJ는 국내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의 활동적인 캠페인을 벌인다. 또한 청소년정의를 위한 위원회, the Penal Affairs Consortium, 아동권리 연합과 다른 국가부서를 대표한다. NAYJ는 모든 정부에 청소년 사법문제에 관한 상담서류를 보낸다.

(4) 기관의 회원

회원의 자격은 청소년사법절차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회원은 기부금의 형식과 NAYJ의 목적을 위한 지원동의로 운영된다. NAYJ에 대한 기부는 회원의 주변을 둘러싼 청소년사법문제에 대한 정보, 매년

청소년사법잡지의 3가지 사건, 규칙적인 뉴스레터, 매년 회의와 훈련 이벤트, 회원 투표를 포함한다.

4) Childline UK

(1) 기관의 소개

Childline은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연중무휴로 24시간 개방되어 있다.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번호는 0800-1111이며 전화 이외의 편지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청소년 자신의 미래, 학교문제, 약물, 임신, HIV와 AIDS, 육체 및 성적 학대, 방향 및 부모, 가족, 교우문제 등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상담한다.

Childline은 1986년 봄에 BBC TV프로그램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것에서 시작하여, 심각한 학대나 성학대의 실상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아동보호특별팀이 구성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료전화 지원체제가 구축되었다.

Childline은 위기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그 아동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도우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삶과 발전에 대한 정책, 실천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들이 Childline에 전화를 걸면 상담원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데, 반드시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으며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 청소년들은 공중전화 등 모든 전화에서 무료로 전화를 걸 수 있다.

Childline은 자원상담가들이 중심이 되어 고난도의 훈련과정을 거치고 전문가 집단의 지원을 받는다. 상담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아동을 대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도 아동들이 매일 전화상담 요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대략 10000명의 아동들이 매일 전화상

담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Childline에 대한 자세한 소개 및 학대, 괴롭힘, 자살, 시험 스트레스, 건강 문제 등의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부모가 알아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독일

1) Lebenswelt Schule(생활세계학교) 프로그램

생활세계학교사업은 통독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를린시 학교를 위한 폭력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사업의 취지는 학교의 여러 가지 외적인, 설비, 자지적인 학교 설계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 어려움 극복, 학교와의 일체감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세계학교란 ①교육의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잘 구성된 학교(gestaltete Schule), ②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학생들이 항상 활동하는 활기있는 학교(lebendige Schule), ③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짓는 확충된 학교(erweiterte Schule), ④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학교(integrative Schule)를 말한다.

첫째, 다각적으로 잘 구성된 학교는 학교생활을 위한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이 학교는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며 외적이고 공간적인 조건을 주어진 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학교이다. 학교 수업시간을 40분으로 하고 수업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여러 형태의 수업, 프로젝트 수업, 다각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학습활동, 문학·예술·음악 등의 과목으로 폭력문제에 접근, 회사 등 대안적인 교육장소의 활용, 교사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 공간 마련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다.

둘째, 활기 있는 학교는 다양한 사업이나 활동들로 항상 움직이며 학생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공간과 기회의 제공이 가능한 학교이다. 이 학교는 정기적으로 혹은 특정 동기에 의해 개최되는 축제나 특별행사를 주최하여

학생들에게 흥미유발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활동들을 제공한다.

셋째, 확충된 학교는 수업 이외에 학생들의 여가와 지역사회를 잘 연결시킬 수 있는 활동 및 체험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이다. 즉, 학교의 교육범위를 확장하여 복지후생, 진로상담, 학생들의 개인적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학교공간 및 학교 내부 상담 등을 진행한다.

넷째, 통합적 학교는 다양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며, 남녀 학생의 평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이다. 이 학교는 아이들의 각기 다른 요구를 고려하고, 출신이 다른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용, 성적이 부진하고 열등의식을 가진 학생의 중점적 지도, 교육의 고무적 방법 활용 등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해 간다.

2) PETZE(성폭력 예방 프로젝트)

(1) 프로젝트의 소개

독일 Kiel시는 중등교사를 상대로 한 학교 성폭력 예방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중등교사의 재교육을 통해 성폭력 예방 대책을 제시하고,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혁신적 방법의 모색, 교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성폭력 피해의 감소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사업은 12-16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래 “petzen”은 '밀고하다'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실제적인 사건을 발견하여 적시에 구조를 요청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아 이름 지었다.

(2) 프로그램의 내용

이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여학생과 남학생별 동성그룹 및 여학생, 남학생 이성그룹을 만들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성분리적 사회화(남성의 사회화, 여성의 사회화), 교사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중재역할, 학교에서의 성차별, 법적 기준, 학대, 연결망, 구조적 폭력, 원인-정의-결과, 성교육, 피해자-가해자의 모습, 사건장소로의 학교, 위기극복 전략, 예방, 증상 및 피해

등의 주제를 놓고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토론하도록 하였다.

각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세미나를 통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이나 생각을 토론하게 된다. 이 때 교사들은 본인 개개인의 성에 기초한 자신의 경험담이나 생각을 주의깊게 고찰해야 한다.

성폭력 및 성학대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적시에 인식하여 그것에 대처하기에 불충분하다. 스스로의 경험담을 토로하게 하는 방법은 감정과 생각을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시켜 자칫 행동장애로 나타날 수 있는 느낌들을 잘 노출시키게 한다.

6. 스페인

1) The Confederation Don Bosco

(돈보스코 연맹)

Don Bosco 연맹은 자율기구인 스페인 청소년센터 연합이 추진·창설한 청소년단체이다. 2003년 자료에 의하면, 본 연맹은 약 200개의 센터, 약 5,500명의 자원봉사자 및 협력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60,000명이 본 연맹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통한 혜택을 받고 있다.

(1) 주요목적

예방 및 사회교육이라는 검증된 서비스 제공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통한 Don Bosco의 교육시스템 제공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에 필요한 장치 제공
사회적 낙오의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관심 및 보호
다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유럽통합의 촉진

(2) 사회적 변화의 원동력과 같은 청소년 참여

Don Bosco는 연합주의(Associationism)가 사회변화에 있어 작동하는

근본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청소년참가를 장려한다.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은 Don Bosco의 청소년들이며, 이들이 사회에 제공되는 활동과 서비스 전부를 계획, 운영, 개발한다.

3) ACPI (Association action against infantile pornography)

(유아포르노반대합동행동)

(1) 기관의 소개

유아포르노반대행동(ACPI)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 즉 아동 포르노, 아동 매춘 등과 맞서 싸울 목적으로 1998년 9월에 설립된 NGO이다. ACPI의 모든 회원은 자원봉사자이다.

ACPI는 국제기구인 ECPAT(아동매춘, 아동포르노, 성적 목적을 위한 아동매매 근절기구)의 구성단체이며, 미아 및 성적 착취 아동을 위한 유럽 동맹(EUROPEAN FEDERATION FOR MISSING AND SEXUALLY EXPLOITED CHILDREN)의 구성단체이며, EU 전역의 인터넷 아동포르노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설립된 유럽 INHOPE의 구성단체이다.

(2) 기관의 활동 분야

- ① 예방: 학교에서의 아동보호 캠페인.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컴퓨터 필터 배포.
- ② 미아 찾기: 가족 및 국가와의 공조 체제.
- ③ 인터넷 아동포르노 투쟁: 아동포르노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웹페이지, 채팅, 뉴스 고발.
- ④ 미디어를 통한 계몽활동: TV프로그램, 신문, 라디오에 참여. 웹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
- ⑤ 매춘청소년을 위한 원조기구 지원: Maiti Nepal과 공조. 매춘청소년 구조, 직업 알선, 자금 제공.

(3) 기관의 프로그램

① PROJECT "S.O.S. MISSING CHILDREN"²¹⁾

(아동구제임무 프로젝트)

(가) 프로젝트의 목적

- 아동을 잃어버린 가족 원조. 심리적, 정서적 원조 제공
- 시민참여 촉진, 사회적 인식 확대를 통하여, 미아 찾기 공조.
- 異常성욕자를 피하기 위한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예방프로그램 개발.

(나) 프로젝트의 내용

- 미디어의 협조를 요청하여, 미아의 사진을 담은 출판물 발간.
- 제품의 포장지에 미아의 사진 게재.
- 인터넷 웹페이지에 미아 사진 게재.
- 다른 국가의 관련 단체에 미아 사진 및 보충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송.
- 인터넷 및 이메일을 통한 미아 사진 배포.
- 병원, 미성년자센터, 공원 등에 미아 사진 포스터 배포.
- 보유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에 제공
- 전문가 협조를 통해 미아 가정 간의 상호지원 그룹 결성.
- 캠페인 등을 비롯한 예방프로그램 개발: play safely, navigate safely, infantile security

② SURF IN SAFETY²²⁾ (안전 속의 서핑)

“Sulf in Safety” 캠페인은 인터넷 기반 프로젝트의 본질적 요소인 “S.O.S. - Missing Children”의 예방적 단계에 속한다. “Sulf in Safety”는 학교 및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인터넷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세가지 단계를 거친다.

21) <http://www.asociacion-acpi.org/actividadessosingles.htm>.

22) <http://www.asociacion-acpi.org/navegartranquilosingles.htm>

(가) 설치(adaptation)

가정이나 학교의 요구에 따라 어디든지 설치 가능.

(나) 추적(follow-up)

직원이 미성년자가 접속한 모든 웹페이지를 체크하여, 부모 또는 교사에게 분기별 보고서를 제공

(다) 업데이트(updating)

10,000여개의 불량 웹페이지에 대한 접근 차단. 매월 1,000개 이상의 새로운 웹페이지 업데이트 가능. 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되지 않은 새로운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 자동으로 기록이 남게 되고, 매월 업데이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됨.

이 프로그램의 장점:

- 미성년자의 교육 및 성격형성에 해가 되는 수천개의 웹페이지(포르노, 사디즘, 약물 등)에 대한 접근 차단
- 학교의 통제기준으로 활용 가능
- 인증된 사용자(부모, 교사 등)가 제한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워드 존재
- 학생이 접속한 페이지 가운데 의심스러운 성격의 것을 부모 또는 교사에게 분기별 보고서 제공
-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매월 평균 1000페이지.
- 기밀성: 분기별 보고서를 1부만 발간. 제3자가 확보 불가능.
- NGO의 활동에의 참여. 학교의 분담액 가운데 일정비율을 ACPI 프로젝트에 사용.

③ CAMPAIGN AGAINST WRITTEN CHILD PORNOGRAPHY²³⁾

(아동포르노출판물 추방캠페인)

아동포르노출판물 관련 신고를 접수하여, 정기적으로 미성년자보호사무

23) <http://www.asociacion-acpi.org/pornoescritoingles.htm>

국(Office of the Minor Defender)에 발송 → 사무국은 이를 의회에 제출.

④ CAMPAIGN "ANTI-PAEDOPHILIA IN THE INTERNET"²⁴⁾

(인터넷 아동애호증 추방 캠페인)

아동애호증 관련 웹사이트의 존재를 스페인 경찰 및 외국 경찰에 지속적으로 보고.

⑤ CAMPAIGN "VOLUNTEERS IN THE INTERNET"²⁵⁾

(인터넷 자원자 캠페인)

아동포르노 포함 웹사이트 신고.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한 리소스 검색: 15세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스페인어로 된 포탈 사이트 구축 - 레저, 오락, 학습지원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수천 개의 리소스 제공.

7. 핀란드

1) Allianssi (Finnish Youth Cooperation Allianssi)

(핀란드 청소년협회)

(1) 기관의 소개

Allianssi는 핀란드의 청소년 기관의 상부단체이고, 핀란드 청소년과 기관들을 위한 이익단체이며, 지역적으로 청소년들과 활동하는 서비스 단체이며, 청소년을 위한 직접 서비스단체이다. 이 단체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독립한 비정부단체이고 비영리단체이다. 회원은 모든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민주주의 국가의 단체이면 가능하다.

24) <http://www.asociacion-acpi.org/campaantipedofiliaingles.htm>

25) <http://www.asociacion-acpi.org/voluntariosinternetingles.htm>

(2) 기관의 역사

Allianssi는 과거 3개의 국가청소년단체의 기초 하에 설립되었다. 첫째는 모든 청소년 활동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였고, 둘째는 지역청소년 활동가의 서비스와 이익단체였으며, 셋째는 전통적인 청소년단체의 상부단체이자 국가청소년위원회로서 국제 협력에 있어 핀란드를 대표하는 단체였다.

많은 중복된 회원들과 활동 그리고 이익 때문에, 청소년 활동가와 청소년단체들을 위한 하나의 단체로 만들었고, 그 결과 1993년에 핀란드청소년협회(Finnish Youth Cooperation)인 Allianssi가 설립되었다.

(3) 기관의 활동

① 대부분 유럽국가의 청소년위원회와는 달리, Allianssi는 매우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는 합법적인 단체로부터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Allianssi는 회원들을 위한 토론 포럼을 개최하고, 권위자들과 함께 청소년 정책을 시행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지역 청소년 활동가와 단체에게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적 지원은 다각적인 교육을 통한 조직적인 경제부터 거리 활동에 대한 훈련까지 다양하다. 또한 청소년정책도서관(Youth Policy Library)을 운영한다. 이 도서관은 연구문헌과 청소년에 관한 기타 발행물들을 수집하고, 연구자나 청소년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에게 제공된다. 여기에는 13,000여권의 발행물과 200여종의 저널이 있다.

③ 이 단체는 웹서비스인 청소년 정보의 집(Youth Info House)을 운영한다. 이로써 인터넷 기술과 청소년활동가들이나 이 영역에 관심이 있는 자들간의 네트워킹을 증진시키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 연구자료에 접근하기에 용이하도록 한다.

④ Allianssi는 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는 지역청소년정보센터를 위한 독자적인 정보를 만들고, 관련된 교육분야에 배치한다. 이 단체

는 국제적인 영역에서 핀란드청소년정보센터를 대표하고, 유럽청소년정보 상담국인 ERYICA의 회원이다.

⑤ Allianssi는 청소년연구잡지인 Nuorisotutkimus(The Finnish Journal of Youth Research)를 발행한다. 이는 청소년활동가와 교사, 청소년과 활동하는 이들을 위한 포럼이다. 그 주제는 청소년문화와 관련된 분야이다.

⑥ Allianssi는 청소년교류를 행한다. 매년 1000명이상의 청소년이 Allianssi 청소년 교류를 통해 외국으로 간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간의 일과 여름방학기간의 일을 제공하고, 미국과 15개국 유럽국가에서의 기간활동부터 유럽호텔에서의 일까지, 2주간의 캠프에서부터 개발도상국에서의 자원봉사활동까지 포함한다. 더욱이, 이 단체는 EU에 의해서 조직된 유럽의 자원봉사서비스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⑦ Allianssi는 핀란드의 청소년카드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 단체는 유럽청소년카드협회(the European Youth Card Association)의 회원이다.

⑧ 기관들과 자치체를 위해 청소년 활동에 관한 다른 종류의 가이드북을 발행한다. 이 단체는 몇 개의 주제와 기관별 범주에 따른 연간물과 매년 8회 발행되는 청소년활동(Youth Work (Nuorisotyö))이라는 교육잡지를 발행한다. 또한 회원단체들을 위해 매달 2회씩 AllianssiExpress이라는 뉴스레터를 제공한다.

⑨ Allianssi는 청소년정책을 수립한다. 청소년상담위원회(구, 주청소년위원회)와 함께 1995년 이래로 자신의 ‘청소년의회’를 선출하는 15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을 위해 보이는 선거를 추진한다. 청소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에서 Allianssi는 고용에 대한 청소년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적용한다. 또한 초기부터 핀란드 청소년활동전략을 수반해왔다. 이 전략은 청소년의 생활환경을 특별히 고려하여 청소년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⑩ Allianssi는 핀란드에 있는 국제 청소년협회를 관리한다. 이 단체는 모두 유럽청소년포럼의 회원이고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구지역과 가깝게 협력하고 있다.

Allianssi의 국제적 정책과 활동은 국제 하부위원회, 국제세미나와 일반 assembly와 부에서 협력하여 하고 있다. Allianssi를 통하여 전유럽에서 세미나나 연구활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antisemitism), 외국인 차별(xenophobia)와 이민족에 대한 편견에 대한 위원회의 유럽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종주의에 대항한 전유럽의 네트워크 회원단체이다. 현재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4) 기관의 구성

Allianssi는 약 100개의 회원단체를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청소년단체가 회원인 셈이다. 게다가, 회원은 다른 기관과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다.

Allianssi는 매년에 두 번 정기회를 개최한다. 가을 모임은 의장과 부를 선출하고, 다음해의 예산과 활동계획을 승인한다. 봄의 모임은 전년도 회계를 하고, 앞으로의 부의 책임을 지운다. 회원단체는 회원의 수에 따라 투표를 한다.

부는 의장과, 부의장과 14명의 회원, 그들의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대리인은 단지 실제 회원이 결석했을 때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신청으로 부는 다른 위원회를 만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부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다.

Allianssi는 약2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다. 사무소는 일반부서에 의해 직접 운영된다. 관리팀, 국제팀, 청소년교류팀, 정보서비스팀, 발전팀 등 5개의 팀이 활동을 한다. 각 팀은 팀장의 지휘를 받는다. 부와 그 의장은 무보수로 일한다.

8. 스웨덴

1) Clearinghouse (국제 아동, 청소년 미디어센터)

(The International Clearinghouse on Children, Youth and Media)

(1) 기관의 소개

1997년에 스웨덴의 노르디컴 괴테보르그 대학의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조사를 위한 노르딕 정보센터(The Nordic Information Centre for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는 아동, 청소년, 미디어를 위한 국제정보센터(공식적으로는 아동과 스크린상의 폭력에 대한 유네스코국제정보센터)를 설립했고, 스웨덴 정부와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았다. 정보센터가 어린이, 청소년 및 미디어에 대한 노력을 향한 전체적인 출발점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협약이다. 1990년대에 세계에서는 미디어 폭력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과 미디어에 관한 지식에 관한 국제센터의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문제는 995년에 스웨덴의 Lund에서 열린 미디어 폭력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중요한 관심을 끌었다. 스웨덴 정부와 유네스코는 이 문제에 대해 주로 폭넓게 관심을 가졌다. 노르디컴이 정보센터의 설립에 대한 책임을 졌다.

(2) 기관의 목표

정보센터는 관련된 정책수립에 관한 기초를 제공하거나, 건설적인 공공 여론에 기여하며,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의 미디어문학과 미디어 적용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과 아동, 청소년, 미디어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욱이 정보센터의 활동은 아동과 청소년, 미디어에 관한 폭넓은 조사를 할 것이다. 국제 아동, 청소년, 미디어클리닝하우스는 다양한 이용자 집단 즉, 연구자나 정책수립자, 미디어 전문가, 자원봉사 기관, 교사, 학생, 관심을 가진 개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2) Landsrådet för Sveriges Ungdomsorganisationer

(National council of swedish youth organizations:

스웨덴청소년조직위원회)

(1) 기관의 소개

스웨덴 국립 청소년단체 이사회(National Council of Swedish Youth Organisations: LSU)는 1949년, 동유럽과 서유럽의 청소년 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오늘날 LSU는 국가적·국제적 토픽에 관련한 여러 문제에 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LSU 구성기관들은 경험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를 추진,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SU는 약 100개의 스웨덴 청소년단체의 통합기구이다. 구성기관들의 유형은 政黨, 청소년단체, 학생운동단체, 종교단체, 환경단체 등 다양하다. 이 기관은 교류강화, 정보교류, 지식확립, 경험공유, 활동통합, 민주적 개발, 구조를 기본원리로 삼는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매년 12월 소집되는 대표총회이다. 모든 구성단체는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대표총회에서 향후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결정되며, 회장 및 임원단이 선출된다. 임원단은 각기 다른 구성단체의 11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각각에 대해 부임원을 둔다. 회장 및 2명의 부회장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재 LSU 사무국은 17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9명이 여성, 6명이 남성으로서, 모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LSU는 6개의 주요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청소년 정책 분야, 환경 분야, 성 분야, 훈련 및 리더쉽 분야, 유럽 분야, 국제 발전 분야 등 각 주요 분야별로 프로젝트 선임 및 활동대표를 둔다.

(2) 목표

- 청소년기관들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
- 청소년협력에 관련한 국내 및 국제 단체와의 네트워크 제공
- UN 인권선언 및 UN 아동권리 선언에 기반한 활동

(3) 기관의 활동분야

LSU의 국내적 차원의 활동은 구성단체들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아이디어 및 경험을 상호 교환하고, 토론키 되는 주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회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계몽한다. LSU는 외국인혐오, 인종차별에 관한 대형 캠페인을 실시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며, IT의 활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청소년 단체들의 회장, 사무국장 등에 대하여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LSU는 구성단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의회 기타 공식기관에 대하여 로비활동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 분야를 모니터하고 있다.

LSU의 국제협력활동은 제3세계 문제 및 UN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LSU는 세미나 및 문화교류를 통하여, 정보, 지식 및 경험을 통합하고자 노력한다. LSU는 청소년문제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립적인 국제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단체를 지원한다. LSU는 청소년에게 개발도상국 문제에 대하여 공부할 기회를 제공한다.

LSU는 아시아, 동유럽,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새롭게 설립된 민주적인 국가 청소년 단체를 위한 資源이 된다.

LSU는 스웨덴 청소년 사이의 국제 발전 문제에 관한 인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네팔, 잠비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및 발트해 주변 국가의 국내 청소년 이사회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

교류활동(Interaction) 및 발트해 청소년 프로젝트의 목적은 청소년 단체를 강화하고, 청소년 이사회를 통한 청소년 단체 간의 협력 및 통합을 증진하는 것이다.

(4) 기타 NGO와의 관계

LSU는 국제 차원에서의 견고한 협력체제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협력체제는 북유럽회의(Nordic contact meeting: NKM)로

서, 이는 북유럽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SU는 유럽청소년포럼(European Youth Forum)의 구성단체이다. 이를 통해 스페인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다양한 국제 코스 및 세미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LSU는 발트해청소년포럼(Baltic Youth Forum: BYF)의 구성단체이다. BYF는 발트해 주변 청소년이사회들 간의 지역협력기구이다.

(5) 출판 및 정보

LSU는 매주 이메일을 통해 뉴스레터를 배포한다. 뉴스레터는 LSU, 국제기구 등이 앞으로 실시될 이벤트, 과정, 세미나 등에 관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1년에 1회, 북유럽의 국가 이사회들은 Outlook이라는 잡지를 발간한다. 이 잡지는 북유럽 청소년단체, 단체 간의 협력 등에 관련한 화젯거리를 제공한다. LSU는 정기적으로 LSU가 개최하는 국내·국제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LSU는 www.lsu.se라는 웹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회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사용을 위하여 보고서, 서적, 강연자 등에 관련된 4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국제협력, 리더쉽 및 조직 발전, 평등을 위한 수단, 청소년정책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LSU는 사이트상에 LSU의 활동 기타 관련 자료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영어로 제공되는 정보는 아직 없으나, 곧 영어 버전을 출시할 것이다.

9. 호 주

1) CHILD WISE

(1) 기관의 소개

CHILD WISE는 호주에서 국내 또는 국외의 어린아이들의 성적 학대나 착취의 근절을 위해 일하는 단체이다. 주로 직접적인 원조나 도움 제공,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확대, 전문적이고 사회적인 교육, 개인과 조직, 사회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능력 강화와 지지 캠페인, 아동의 권리 주장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학대와 착취를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프로그램의 내용

① Preventing Child Sex Tourism

Child Wise Tourism은 아이들의 섹스관광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는것에서 발전한 프로젝트이다. 이 기관은 2005년과 2006년에 35개의 유명한 아시아 관광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관광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지역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 등의 능력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다. 아동섹스관광(child sex tourism)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여행 지역에서 성행되는 반면에 섹스관광은 지진해일에 의해 불안정한 지역에겐 매력을 느끼게 하는 주된 문제가 된다. Child Wise Tourism Training 프로그램을 통하여, 섹스관광객을 끌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내의 지방경찰, 호텔직원, 여행사 직원과 사진관 직원 등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보고하도록 훈련받게 될 것이다.

② Choose With Care

Choose with Care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자발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인 예방 프로그램이다. 이는 아동안전기관들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사전활동적이고 예방적이며 참여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의 실행예가 되고, 기관들에 속한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들이 되도록 폭넓게 고려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 학대 예방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람들이 아동들과 활동하기 위해 모집되고, 그 사람들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를 알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안전하고 더 투명한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치료훈련과 워크숍, 치료 자료와 비디오, 예방 상담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Child Trauma Counselling Training

Child Wise는 아동을 주로 성학대나 매매 등의 외상으로부터 회복하게 하기 위한 지원을 위해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아동외상상담훈련(Child Trauma Counselling Training)에 관한 워크숍을 하고 있다.

2) Australian Council for Children & Youth Organisations

(오스트리아 아동·청소년기관협의회)

(1) 기관의 소개

호주의 아동과 청소년기관 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가과정의 첫 기관으로 발전되어왔다. 그 과정은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적합성, 포괄적인 아동보호 정책의 발전, 투명한 외부감독을 포함한 기본 토대 하에 이루어졌다.

(2) Accreditation Project²⁶⁾

이 프로그램은 중개기관의 협력과 대화, 직원 교육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 인가과정은 빅토리아에서 pilot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되어 왔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Wellness Promotion 대학과 빅토리아 대학이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CAN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는 예방되어진다. 훈련과 지원의 조화, 투명성과 회계책임에 대한 주지는 어린이 고객을 치료하려고 하는 당신의 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위원회의 인가과정에 참여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10. 싱가포르

1) 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MCYS: 사회발전, 청소년, 스포츠부)

(1) 기관의 소개

사회발전·청소년·스포츠부(MCYS)는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 명확한 태도를 지닌 청소년, 유대가 강하고 안정적인 가족, 보호하고 활동적인 지역사회, 스포츠인을 육성함으로써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사회발전·청소년·스포츠부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전략으로는 사회복지와 보호를 중심으로 한다. 이 기관은 사회복지와 보호에 바탕을 두어 다음의 5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첫째, 보호관찰(Probation)은 소년범죄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지역사회를 기초로 한 중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둘째, MCYS의 청소년의 집(the MCYS Juvenile Homes)은 위기청소년이나 법적으로 문제있는 청소년이지만 사회를 기초로 한 옵션들이 부적당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

26) http://www.accyo.org.au/the_pilot.htm.

년에게 제공한다. 이 집은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고 발전을 주어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가진 개인으로서 재통합될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아동들은 16세 이하의 사람들이고 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들이어서 부모들이 법원에 아이들의 통제를 요청하게 된다. 넷째, 지도 프로그램(Guidance Programme)은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 초범을 위한 법원이전의 견제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더 자기 통제적으로 발달하고, 그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활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달성으로 인해 청소년은 반항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아동학대(Child Abuse)에 있어서 MCYS는 아동학대에 주도적인 기관이고, 효과적인 탐지와 철저한 조사, 가해자의 신속한 처벌을 통해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고 한다.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2) **STEP-UP(School social work To Empower Pupil to Utilise Potential):**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사회활동)

① 프로그램의 개요

사회발전·청소년·스포츠부(MCYS)와 국가사회복지위원회(NCSS: 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는 현재의 학교사회활동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인도에 있어서 자원봉사복지기관들(voluntary welfare organisations)을 원조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위기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 사회적으로, 감정적인 회복력을 갖게 하거나 강화할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학교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범죄위원회(IMCYC: the Inter-Ministry Committee on Youth Crime)가 이미 위기학생(at-risk students)에 대한 정의했다.

연구에 기초한 청소년이 위기상태에 있다고 동일시하는 요인들

- 소외와 가족, 학교, 사회와의 결합 부족
- 초기에 빈번한 반사회적 행위
- 고도의 위험행위를 하는 가족역사
- 빈곤한 가정 경영실체
- 가족 충돌
- 경제적·사회적 박탈
- 학교 잘못
- 교육에 대한 낮은 약속
- 비행동료와의 관계

비판적으로 희망했던 성과는 다음을 포함했다.

a) 반사회적 행동, 학교에 dropping out of , 비행, 부모통제로부터 이탈, 우울, 부적응(maladjustment), 많은 문제를 지닌 가족이라는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한 초기예방과 간섭

- (가) 초기 간섭을 통한 초기 학교이탈을 예방한다.
- (나) 위기학생간의 반사회적 행위를 줄인다.
- (다) 위기학생들이 소년사법시스템을 멀리한다.
- (라) 학생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b) 부모와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지원과 운영을 할 권한을 준다.

(가) 부모와 아이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양육기술

- (나) 가족기능의 고양
- (다)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링크

c) 교사와 학교 운영자에게 학생을 지원하고 운영할 권한을 준다.

더욱더 바라는 성과는 대상그룹 프로파일과 자원봉사복지기관과 학교에서 동의한 프로그램유형에 기초하게 될 수 있다.

자원봉사복지기관들은 필요와 기본데이터를 설정하고, 그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맞추기 위한 평가와 증명을 위해 학교와 활동하기를 바란다.

<부록1> 소년비행의 위험에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간주할 지표목록
Category A: 교사들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개월 이상 반복되었던 행동들

- 상담내용들: (1) 교사들과 다른 학교 개인들의 미개함
(2) 성인들과 동료들에 대한 언어공격
(3) 성인들과 동료들에 대한 신체적 공격
(4) 권위에 대한 다른 반항적인 행동
(5) 동료들을 향한 괴롭힘 행동
(6) 수업결석, 학교결석, 다른 활동 결석
(7) 흡연
(8) 알코올 소비
(9) 반달리즘
(10) 절도

Category B:

- 다른 지표들: (1) 경찰에 의한 체포
(2) 무기 소지
(3) 갱이나 비밀사회구성원과의 협력

경고, A와 B Category 내에서 지표의 존재가 입증되어지고, 하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1) 집에서의 무감독
(2) 한부모가정
(3)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4) 빈곤한 교육수행
(5) 수업에 대한 무심함으로 입증된 연구에 대한 흥미부족, 불충분한

활동 제출, 학교활동과 가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실패

(6) 문신의 존재

자원봉사복지기관들은 학교 상담으로 이러한 지표의 대상을 찾음과 동시에 특별한 성과지표를 열거하려고 한다. 이러한 특별한 성과지표와 대상들은 학교 간에 다양화될 수 있다. 사회발전·청소년·스포츠부(MCYS)와 국가사회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대상을 승인하고 재검토할 각각 자원봉사복지기관과 활동하게 될 것이다.

STEP-UP프로그램의 자금화를 위해 모든 협회들은 지표목록에 기초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표 VIII-1> STEP-UP 프로그램의 평가보고 형태

폭넓게 희망하는 성과	하부성과	지표	출처	기초라인
(A) 반사회적 행위, 학교중퇴, 비행, 부모통제이탈, 우울증, 부적응, 문제가 많은 가족이라는 위기에 처한 학생에 대한 초기 예방과 간섭	1. 성과: 초기간섭을 통한 초기 학교이탈 예방			
	1) 학교에서 초기 학교이탈자의 비율을 줄인다.	초기 학교이탈자(PSL)의 몇%		
	2) 대상그룹 가운데 초기 학교이탈자의 비율을 줄인다.	대상그룹 가운데 초기 학교이탈자의 몇%	학교기록	
	3) 대상그룹의 학교출석률을 늘린다.	학교출석률(%)	기록카드와 서적들	
	2. 성과: 위기학생들간에 반사회적 행위 감소			
1) 대상이 된 반사회적 행위들의 확산을 줄인다.	교사비율형태의	교사비율형태들	NA	

-교사의 평가	결과		
3. 성과: 소년사법시스템 밖의 위기학생 보호			
1) 범죄적 부담하에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줄인다.	부담을 가진 학생의 비율	학교기록	
2) 범죄적 부담하에 있는 대상그룹의 비율을 줄인다.	부담을 가진 대상그룹의 비율	학교기록	NA
4. 성과: 가족기능의 고양			
(B) 부모와 초기 보호자에게 그들의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경영을 하도록 한다.	1) 가족기능을 확대한다.	부모 참여 수	참석 리스트 NA
(C) 교사와 학교 경영자에게 학생을 위한 더 나은 지원과 경영을 하도록 권한을 준다.	5.1) 대상학생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교효율성을 확대한다.	교사비율형태의 결과들	교사 형태 (매년 비율형태) NA
(D)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을 늘린다.	6.1)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을 늘린다.	고객만족조사의 결과	고객만족조사 NA

또한 자원봉사복지기관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자체 평가를 수행하기를 바란다. 이는 기준의 질과 수준을 보증한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의 기준원칙이다.

전체: 예방적이고 발전적이며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혼합을 구성한다.

시스템적 접근: 이 시스템 이론은 현재의 문제가 단지 개인에게 있는 것

이 아니라 개인과 그들의 환경·하위체계(예를 들면 학생의 부모, 학생의 학교, 학생의 사회)사이에 접촉면에 위치되어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접근 하에 프로그램들은 그들의 가족과 학교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 1년 전부터 STEP-UP프로그램 시간의 15%가 부모를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할당되었다는 것을 주목하라.

재설정: 자원봉사복지기관들은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재설정하기 위해 평가의 요구를 일치시킬 학교와 활동하려고 한다.

협력과 유지: 자원봉사복지기관들은 학교들에게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STEP-UP프로그램을 위임하도록 해야만 한다.

자금:

처음 2년간- 제안된 SSW프로그램의 75%는 매년 최고 15,000달러를
다음 2년간- 제안된 SSW프로그램의 50%는 매년 최고 10,000달러를

자금은 5년 연속으로 (매년 각 학교의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기 위해) 프로그램들의 장기간 영향을 보장하기 위해 약속된다. 반대로, 선택된 모든 자원봉사복지기관들은 5년 연속으로 대상이 된 학교와 활동하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자원봉사복지기관들은 양육대화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일부를 제공하는 지원하기 위해 세번째 부분(가족생활교육가나 Resource)을 보충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FY04인 학교의 실행을 위해 자원봉사복지기관으로부터 50개의 제안 가운데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FY2007까지 190개의 학교들에서 STEP-UP 프로그램이 실행될 것을 목표로 삼는다. 매년 재검토되어질 이 프로젝트는 다음에 따른다.

FY 03 = 50개 학교

FY 04 = 100개 학교(50개 이상 새로운 학교들)

FY 05 = 140개 학교(40개 이상 새로운 학교들)

FY 06 = 170개 학교(30개 이상 새로운 학교들)

FY 07 = 190개 학교(20개 이상 새로운 학교들)

처음 5년 이후에 계속된 자금은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성공에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에 달려있고, 정부로부터의 자금의 유용성에 달려있다.

<자금조건>

자금이 충분하기 위해 협회들은 다음 조건들과 일치해야 하고, 적합해야만 한다.

1. 이들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가족교육자금 등과 같은 다른 정부자원과 자금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2. STEP-UP 프로그램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3. STEP-UP 프로그램의 개념과 가이드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4. 연간 4회 데이터와 년2회 보고서와 성과지표와 의도된 성과에 대한 특별한 대상이 매년 말에 일치되었던 범위까지 포함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결과물을 제출해야만 한다.

<표 VIII-2> 데이터와 보고서 제출기한

데이터/보고서의 종류	제출일	제출자
PES데이터 제출	4월 1일(1분기)	NCSS
	7월 1일(2분기)	NCSS
	10월 1일(3분기)	NCSS
	1월 1일(4분기)	NCSS
회계감사 방문	4월 30일	MCYS
년중보고	6월 15일	MCYS
매년보고	11월 15일	MCYS
보고상태	11월 15일	MCYS

5. 프로그램이 만족스럽게 수행되는 것을 보장하는 충분한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하게 하려고 한다. 만일 당신의 기관이 학교를 기초로 한 상담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당신네 직원의 상담 자격에 관한 추가서류를 제출해 달라.

상담자는 다음의 전제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 체계화된 사후전문감독을 1년 동안 받았다.
 - 지속적인 발전과 실제 수준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되고 있다.
 - 적어도 감독실습과목이나 적합한 자격 150시간을 포함하여 300시간을 수반하는 상담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6. 사회발전·청소년·스포츠부(MCYS)와 국가사회복지위원회(NCSS)가 요구했을 때,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프로그램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한다.
 7. 경험들과 프로그램들의 세부적인 설명을 포함한 결과들, 목적과 방법론, 결점과 이익, 사회발전·청소년·스포츠부(MCYS)와 국가사회복지위원회(NCSS)가 요구했던 것처럼 다른 사회서비스기관과의 프로젝트의 평가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8. 매년 말에 STEP-UP 프로그램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9. 5년 동안 특수학교에서 STEP-UP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0. 서비스 한계를 가진 협회들에 있어서 서비스 한계 외부에서 활동하려고 해야 한다.
 11. 시간의 대다수와 제안 프로그램당 사람 1인의 시간비용이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다양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반면에, 국가사회복지위원회의 서적(학교사회활동에 대한 가이드(A Guide to School Social Work))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프로그램들의 비용의 제안범위(Proposed Range of Fees for Individual Programmes)’ 라는 이름의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초본을 만들어낸다.
 12. 국가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13. 사회복지 제공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14. 사회발전·청소년·스포츠부(MCYS)와 국가사회복지위원회(NCSS)에 의해 지정된 공무원들에게 자원봉사복지기관들을 STEP-UP 프로그램과 관계된 문제로 방문하는 것을 허용 해야만 한다.
 15. 자선등록되어야만 한다.
 16. 자원봉사복지기관들을 몇 개의 기업으로 묶고 그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이 리스트화될 사회발전·청소년·스포츠부(MCYS)와 서비스 동의를 하여야 한다.

<선택 조건>

자원봉사복지기관들(VWOs)은 다음에 기초하여 선정되어진다.

1. STEP-UP 프로그램들의 목표, 바라는 성과, 가이드원칙에 대한 이해
2. 내용, 목표, 목적, 대상그룹, 일치하는 성과지표, 운영방법들을 포함한 제안 프로그램들의 장점과 이익
3. 사회복지업무와 학교사회활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경험
4. 재정적 배경과 자금협력에 대한 계획들
5. 사회와의 네트워크 정도
6. 프로그램의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들
7. 지도와 발전적인 프로그램팀에 속하는 개인의 자격과 훈련
8. 운영위원회의 구성

IX. 종합논의 및 정책제안

1. 종합논의
2. 정책제안

IX. 종합논의 및 정책제안

1. 종합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유해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사회와 청소년 내에서 청소년보호망을 형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법·제도적 차원에서 유해환경 개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유해환경의 영향을 전제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해환경을 법적 범위로 한정하여 개념화하였다. 또한 유해환경의 유해요인을 발견하고, 유해요인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유해환경이 내포하고 있는 유해요인에 대한 연구로서 구체적인 유해환경별 유해 요인을 추출하고, 이들과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유해 요인이 청소년 간에 전달되는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모형화 한 것은 청소년문제행동의 예방 전략으로 개입의 시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유해환경 영역별 연구의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유해업소 연구

첫째,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이 즉각적으로 유해요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유해요인을 보유한 ‘잠재적 유해업소’ 들 중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업소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유해 업소를 유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형태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둘째, 유해업소내의 유해요인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과정분

석 결과 5가지의 유해요인 중 유해물질, 유해매체, 밀실 등이 핵심 유해요인으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해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3가지의 유해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 대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② 유해매체 연구

첫째, 우리나라 가정 내에서의 인터넷과 관련한 부모감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가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보호·감독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파일을 다운받는 행동, 인터넷활용 과정에서 욕이나 폭언을 하는 행동등은 이제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 그 문제성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다지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인터넷 유해 커뮤니티 사이트의 문제,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과잉충동구매 문제가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인터넷 유해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유해사이트와 달리 어떠한 제한이나 규제도 없이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셋째, 인터넷 문제행동과 관련된 보호요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관련변수가 문제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련 보호요소 중에서는 가족응집성이 인터넷 문제행동과 관련된 보호요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래관련 보호요소는 모두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선행연구를 통해 문제행동의 보호요소로 지적된 가장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정도와 지역사회단위의 미디어 교육경험이 유해요인 접촉 청소년의 인터넷 문제행동을 강화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한 것이 특이하다.

③ 청소년 유해행위 연구

첫째, 성관련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유해요인으로는 권태감과 열악한

가정환경 및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 일탈 또래들과의 관계, 가출, 이성 친구 사귀, 낯선 사람과의 채팅 등이다.

둘째, 청소년이 성관련 문제행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경위는 가출 이후 숙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유희비 마련, 친구의 유혹, 고용업주의 빚 독촉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성관련 문제행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성관련 문제행동에 이르게 된 경로는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④ 청소년 유해환경 법·제도 연구

연구의 범위는 청소년기본법, 정부조직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으로 확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청소년유해환경 규제법령’과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규제법규의 유기적 통합, 처벌규정 적용의 우선원칙 확립, 예시적 열거방식의 채택, 하위법령의 보완입법,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기준의 통일성 확보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유해환경 관련 행정체계’와 관련해서는 집행주무부처에 걸맞는 권한으로서 ‘부령발포권’ 또는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부여, 청소년유해매체에 관한 원칙적 심의·결정권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⑤ 외국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사례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호주, 싱가포르에서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 프로그램 및 제도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영역별 의의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유해환경에 대한 연구관점을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환경에 영향을 받는 대상 중심의 연구에서 유해환경 자체에 대한

연구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연구접근과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분석방법에서 유해환경과 관련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유해환경 자체에 대한 분석, 유해환경 전달 경로에 대한 분석, 유해환경 보호기반에 대한 분석이 삼위일체로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정책적 개입에서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막연한 프로그램 운영이 유해환경에 따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입 기준에 있어서도 경로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유해환경 영역별 유해요소를 구체화하는데 최소한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유해행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유해행위를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성인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로는 연구대상을 상대자인 유해행위 접촉자로 선정함으로써 분석의 실효성이 낮아졌다.

둘째, 유해환경 전달 경로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유해매체 연구의 경우 인터넷을 개별적인 접촉형태로 한정함으로써 또래간의 전달형태가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

셋째, 외국사례 제시에서 외국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나열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국내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시가 없다.

넷째, 법·제도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기 위해서는 유해환경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른 과제와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현재 청소년위원회가 갖고 있는 법과 행정체계의 문제점 분석과 이에 대한 대안 제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의 의미와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청소년유해환경과 청소년문제행동에 대한 이론 연구가 아니라 경험적 연구이다.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범위를 법적 내용으로 한정함으로써 본질적 측면의 유해환경 개념화를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유해환경 개념을 학문적 측면에서 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해요소 선정에서 어느 정도의 유해 요인을 발견하고 있으나, 연구 대상의 한계로 인하여 구체화 되지 못하였다. 따라 유해환경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유해요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간의 유해요소 전달 경로 파악을 통한 문제행동 예방 개입 전략은 유해환경 영역의 다양성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개별 연구단위로 최소한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모형화를 달성하지 못했다.

2. 종합논의

오늘날 청소년 유해환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도 양적·질적으로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을 분석하고, 보호망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청소년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을 분석하고, 둘째, 유해환경요인과 문제행동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유해 환경요인의 확산경로를 확인 하였으며, 셋째, 이를 통한 청소년보호망 구축 및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 유해환경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 청소년 유해업소 정책

①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의 핵심은 업소 내에서 청소년들의 출입시

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 청소년 출입 예방 교육 실시

㉡ 자율적인 청소년 출입 예방활동 장려 : 지역단위로 같은 업종의 업주들끼리 자율협의체를 조직하고, 지역단위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성인 인증 지침의 개발 및 보급 :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주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업소를 보호하기 위해 ‘성인인증지침’ (가칭)을 개발하여 보급

②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대책 : 청소년들의 유해요인 접촉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 단속의 실효성 확보 :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등을 도입하여 신고에 의한 단속 강화. 학교의 학부모회, APT 부녀회 등 지역사회 차원의 학부모 단체들과 연계하여 ‘시민단속반’ (가칭) 구성.

㉡ 처벌의 강화

악의적인 영업을 하는 업주들에게는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

③ 청소년에 대한 대책

유해업소 출입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출입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 학교교육차원의 출입예방 교육 실시

㉡ 사회교육차원의 출입예방 교육 실시 : TV나 라디오와 같은 방송매체,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언론출판매체, 그리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유해업소 출입예방 캠페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

유해업소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 사회봉사 처분

- ㉔ 교육 프로그램 이수
- ㉕ 상담 처분

② 청소년 유해매체 정책

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신용 카드결제 시스템 강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과잉충동구매를 막기 위하여 연령별 1일 구매한도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자율적 규제책으로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 전달 체계 활용

인터넷 게임 서비스 제공자(ISP)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과잉충동구매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인터넷 게임 사이트 등에 가입할 때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을 권장토록 한다. 또한 청소년 과잉구매시 부모에게 문자메세지로 자신의 구매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한다.

③ 유해정보 신고제도의 강화

유해정보 신고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 녹색단추’ 제도와 ‘신고포상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④ 게임 등급제의 시행 등 게임내용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⑤ 포탈 사이트의 유해배너 및 성인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③ 청소년 유해행위 정책

① 극단적 위험요인 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권태감-감각추구성향, 이혼 및 결손가정, 일탈 또래문화접촉, 가출, 이성친구 등에 대한 올바른 학습 수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사회맥락적 차원의 개입 전략 수립

지역사회에서는 위기청소년안전망구축, 위기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유흥업소업주들의 의식전환 등의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건전동아리 발굴지원, 체험활동강화, 문화zone확대 등 바람직한 또래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④ 법·제도 환경 정책

① 집행주무부처에 걸맞는 권한으로서 ‘부령발포권’ 또는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을 부여해야 한다.

②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방안 : 매체물의 규제에 대해 심의·결정 외에 제3의 방법을 모색 하거나, 다른 유해행위, 유해물건, 유해 “장소” 규제 등에 대해서도 청소년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③ 청소년 관련의무 위반 공공기관에 대한 대응방안

단속권한이 없는 청소년위원회로서는 관련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을 강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청소년 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방안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 관련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 수익을 박탈하거나, 또는 법령위반 혐의가 있는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 제재방안을 모색한다.

참 고 문 헌

- 강태순(1999). 여고생의 이성교제,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 전명기, 박창남, 이희길 (1995). 청소년 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한국청소년개발원
- 고성혜외(1997). 청소년문제행동의 이해와 지도, 한국청소년개발원.
- 곽금주, “아동과 청소년 유해환경(매체, 주변환경)의 영향과 대책에 관한 소고,” 논문집(오산전문대학) 제16집, 1996. 2.
- 국회사무처, 제208회국회 여성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1999. 11. 30.
- 권용철,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대응책 — 간행물을 중심으로,” 관훈저널(관훈클럽) 제73호, 1999. 12.
- 권이중(1996). 청소년학개론, 교육과학사.
- 권이중·남정걸·최충욱·최운실·최윤진(1998), 청소년교육론, 양서원.
- 권태철(2002).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따른 학교적응 유연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 민, “청소년 유해환경 및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인지도 조사연구,” 주성대학 논문집(주성대학) 제8집, 1999. 12.
- 김광목,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공법적 연구, 연구보고 2000-20,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
- 김광수·장승현·조병만·임을미(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전주 : 전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김남성(1995). 교육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대연(2000).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실태와 교육적 과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섭, 민수홍(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두식(2000).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비행성향 및 자살충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화(1998). 청소년 강간 가해자의 심리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문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제3회 청소년보호 토론회(청소년보호위원회), 1997. 10. 30.
- 김문조, 이성식(1994). 유해업소와 청소년비행, 고려대학 민족문화연구, 제27호, p.182-193
- 김문조.이성식(1994.12). “유해업소와 청소년비행”. 고려대 민족문화연구 27.
- 김미애(2001). 청소년 성폭력에 따른 사회복지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개발대학원, 석사
- 김상식(2002). 학생범죄의 동향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조항의 내용과 개선방안, 한국약물상담가협회·한국 청소년학회 공동주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조항의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포럼, 1999.
- 김성천, “인터넷과 청소년 보호,” 인터넷법률(법무부) 제12호, 2002. 5.
- 김영한·이춘화·서정아(2003).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영환, “청소년 유해매체관리,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연구,” 형사정책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9호, 1997. 3.
- 김옥경·양윤선,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 경희행정논총(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2권 제1호, 1999. 2.
- 김정만(2001). 보호관찰 청소년의 성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1999).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1994). 청소년비행의 실태와 원인.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63-94.
- 김준호(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사회과학연구, 1, 153-177.
- 김준호(1996).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 사회과학연구, 제3권.
- 김준호, 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숙(2004).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 실태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방안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호(2003). 성인교육프로그램 참여자의 학습몰입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진화 외(2002). 청소년문제행동론. 학지사.
- 김진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실태 및 평가,” 동의논집(동의대학교) 제40집 인문·사회과학편(I), 2004. 2.
- 김형청,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 풍속영업에 대한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한국공안행정학회) 제7호, 1998. 11.
-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파악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 8권 2호, pp. 91-117.
- 김혜원, 이해경(2002). 고등학생들의 성행동 경험 분석 :성별, 학교별, 거주지별 비교, 청소년학연구, 제9권 제1호, pp.247-272
- 남영옥(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성중독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문제행동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50, pp. 173-207.
- 남영옥(2003).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성태도 및 성행동과 인터넷 성중독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복지행정학회. 제 13권 1호, pp. 65-86.
- 남영옥 · 아성준(2002).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사이버 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 9권 3호, pp. 185-212.
- 노 혁 외,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98-04,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 노승국(1999)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도미향, “청소년 유해업소의 실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한국청소년복지학회) 제4권 제2호, 2002. 4.
- 도중수(1990).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도중수(2003). 정보화시대의 청소년문화 실태와 발전방향. 천안: 나사렛대학교 출판사.
- 도중수·이광호·임상숙·김영아,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한국청소년연구원) 제5호, 1991. 6.
- 류중석, “청소년 유해시설과 도시관리”, 도시정보(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1. 12.
- 마홍철(2001).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 문신용 외, 바람직한 청소년 행정체계 개선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 문용린(1994). 청소년의 정서 문화, 그 현실과 처방, 교육월보 제148호, pp.36-41
- 문화관광부(2004). 청소년백서.
- 민병근, 김현수 (1992). 성비행 청소년의 가족역동, 신경정신의학, 제108권, pp.604-628
- 민주당 심재권 의원실(2003). 청소년관계 법제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

사단법인 교육전략 21.

- 박미숙(2001). 음란물,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표현의 자유. 형사정책소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67호.
- 박병식 외, 청소년문제행동과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 문제청소년 지도를 위한 법률적 이해,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 박선규(2002). 청소년보호법 위법 유형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과 청소년단체의 역할,” 오늘의 청소년(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제158호, 2001. 4.
- 박성수(1991). 가정교육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분석. 한국학술진흥재단.
- 박성익·장정아·신혜숙·신혜정(2002).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행동특성 연구. 서울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박순희(1993).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실태와 대책을 위한 기초 연구 : 서울 시내의 중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200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박정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9호, 1995. 6.
- 박현선(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Resilience) 발달메커니즘,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pp.147-165
- 박현이, 청소년 성폭력법의 왜곡된 여성관과 성폭력과의 관계(1997)
- 방석호(1997). 인터넷 내용물 규제와 청소년보호법.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 1호, pp.57-87.
- 방희정·조아미(2003).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행동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 16, NO. 1, pp.1-22.
- 백승문·황미영·김영희(2003). 사이버공간 중독 유형과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환경. 대한가정학회지. 제 41권 1호, pp. 169-185.
- 백지숙(2005). 인터넷 게임동기 유형에 따른 대학적응과 인터넷 게임중독. 아동학회지. 제 26권 1호, pp. 31-46.
- 서도원(1998). 학생범죄의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YMCA 동대문지회 청소년약물상담실, '98 청소년 유해약물에 관한 연구, 1998.
- 서은경(2003). 우리나라 영상매체와 청소년 비행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 교

-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우 · 권장희 · 이명숙 · 이승정 · 김형모 · 김광웅 · 김용학 · 조수철 · 김계현 · 김영진(1994). 매체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서울 : 청소년보호위원회
- 서정우 · 김용학 · 권장희 · 조명현(1997). 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 및 대책등에 관한 연구. 서울 : 청소년보호위원회.
- 설인자 · 김호영(2002).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실태와 대책. 천안대학교 진단논단. 7호.
- 성윤숙 · 이소희(2003) 게임방 청소년의 사이버일탈 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아동학회지. 제 24권 3호, pp. 109-134.
- 손영환(1997). 청소년 유해매체관리,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연구. 서울 :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 29호, 제 8권 1호.
- 송금연(2003). 인터넷상 음란물 규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찬,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YP) 활동,” 서울교육(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제176호, 2004 가을.
- 신기숙(2002).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기숙(2004). 성폭력 예방교육이 청소년 성폭력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명희(2002). 한국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과 교육적 대책.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일교육문제세미나. pp. 93-148.
- 신미식(2000). 10대 여자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관한 연구, 주성대학 論文集 9, pp.231-243
- 신정희(2001).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 유해환경 접촉을 중심으로, 청주대 대학원, 석사
- 신현숙(2003). 가정환경 역경과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보호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제 11권, pp. 71-84.
- 안권순, 한건환(2001).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변인과의 관계. 상담과 지도, 36, 한국카운슬러협회.
- 안재순(2001). 청소년의 생활문제에 대한 태도와 비행경험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유성경(1998).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한국청소년대화의
광장.
- 유성경(1999). 적응유연성 발달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개입, 청소년상담연구
제7권 제1호, pp.26-40.
- 유성경(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
연구, 제 38권, pp. 81-106.
- 유성경·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 연구.
16, pp. 189-206.
- 유성경·이소래(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분석, 한국심리
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3, 2, 187-205
- 유성경·홍세희·최보운(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 제 18권 1호, pp. 393-408
- 윤나영, “왜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하는가,” 시민시대(목요학술회) 제173호, 1999.
3.
- 윤분희·정문숙·한창현·어윤국(2002). 고등학생들의 음란물 접촉실태 및 관련요
인. 보건복지연구. 제 7권. pp. 45-69.
- 윤영민(2001). 사이버공간의 청소년 행동 : 정책개발을 위한 이론적 탐색. 청소년학
연구. 제 8권 2호, pp. 199-228.
- 윤옥경(2004). 인터넷채팅공간에 나타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현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 제 2호.
- 이강효(2000). 청소년 유해환경과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자기통제가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41권 1호, pp.77-91.
- 이경남(2004). 개인적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게임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 대
한가정학회지. 제42권 4호, pp.99-118.
- 이경남·하연미(2004). 청소년 인터넷관련 비행과 관련변인간의 경로분석모델. 대한
가정학회지. 제 42권 5호, pp. 127-143.
- 이광호(1992). 청소년 유해환경의 이해와 규제, 청소년문화론,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광호(역),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유해환경의 자율규제,” 한국청소년연구(한국청소
년연구원) 제11호, 1992. 12.
- 이기숙(1999). 부산지역 청소년의 유해환경과 비행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여성연
구논집, 제10집, pp. 5-26.

- 이기숙·김수연(1999).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인지수준과 비행과의 관계, 청소년연구 6(1), 49-71.
- 이길홍(1985). 청소년들의 성윤리 정립을 위한 개선책, 청소년,
- 이명선(2001). 건강신념모델을 적용한 청소년 비행과 유해환경과의 관련성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8(3), 37-58.
- 이명숙(1996).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기능 강화,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명숙(1998). 외국의 청소년 유해환경 법제,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명숙·오인선(1998), “폭력적 영상물의 청소년유해성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제2권 제2호.
- 이민희 외 2인 (2004).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Ⅱ.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민희 외 2인(2004).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Ⅱ,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상문(1995). 청소년의 성적 허용성(sexual permissiveness)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주·배경희(2004). 인터넷 과잉이용 학생과 보통이용 학생간의 자존감, 공격성, 우울 비교. 청소년학연구. 제 11권 3호, pp. 299-319.
- 이성식, 전신현(2001). 가부장적 가정과 여자청소년의 비행: 대립되는 두 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5), 173-198.
- 이성조(1997).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연구-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남윤주(2004).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인터넷 사용에 따른 인터넷 중독. 대한가정학회지. 제 42권 3호, pp. 1-16.
- 이영숙 외(1994). 1993 한국의 청소년지표;청소년 생활지표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pp.84-97
- 이윤구, “제3회 청소년보호 토론회 기조연설(요지) —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제3회 청소년보호 토론회(청소년보호위원회), 1997. 10. 30.
- 이은경, 지승희, 이지은, 최수미, 정찬석(2003). 청소년비행 위험요소보호요소 척도의 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2), 57-70.
- 이은주(1998).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8, 115-137.
- 이인섭(1987). 學生青少年과 非行青少年의 性態度에 關한 比較研究,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분·현주·박효정(200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재후(2001). 청소년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안양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
- 이정민(2004). 청소년 성매매의 특성. 성매매 방지대책과 향후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부산광역시.
- 이정옥(2003). 청소년 인터넷 중독현상과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복, “청소년 비행방지를 위한 경찰의 유해환경 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한·독사회과학회) 제11권 제2호, 2001. 12.
- 이종원 · 임성택 · 최원기 · 최종현 · 심진예(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춘재, 성현란, 송길연, 윤혜경, 김혜리, 박혜원, 광금주, 장유경, 박선미, 황상민, 이은희, 이도현, 조정호, 김선아 역 (1998). 발달정신병리학-영아기로부터 청소년기까지, Charles Wenar 저,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춘화, 윤옥경(200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춘화, 조아미 (2004).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택순(1999). “유해환경과 청소년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이해경(2002). 청소년들의 음란물, 음란채팅 중독 경험에 있어서 사회심리적 예측변인들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제 9권 2호, pp. 165-190.
- 이현아(2004).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유형에 따른 특성과 인터넷중독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2권 3호, pp.27-49.
- 이현정(1997).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개인적 변인 및 음란매체 접촉도와 성비행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하(2003). 인터넷 중독정도가 도서지역 청소년의 심리정서, 행동, 학업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 10권 4호, pp. 263-288.
- 이호용, “사이버공간에서의 유해정보와 청소년 보호 — 규제와 자율에 관한 담론,” 인터넷법률 제12호, 2002. 5.
- 임성택·김혜진(2001). 청소년의 규범적 문제행동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심화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진(2003). 애착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관호(1998). 학교환경요인과 청소년비행 행동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경(2004). 청소년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42권 1호, pp. 133-152.
- 전경숙 외 3인(1999).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문제청소년 지도를 위한 법률적 이해,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대향, “음란·폭력물의 시청과 범죄성과의 관계”, 한국공안행정학보 제3호, 한국공안행정학회, 1993. 11.
- 전영표, “출판·잡지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재구축,” 출판잡지연구:출판문화학회보(출판문화학회) 제11권 제1호, 2003. 12.
- 전혁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유해환경 감시,” 수사연구(수사연구사) 제 218호, 2001. 12.
- 정 완, “사이버공간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피해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한국피해자학회) 제12권 제1호, 2004. 4.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3팀(편), “무선인터넷정보 유통·심의 현황 및 대책,” 정보통신윤리(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55호, 2004. 5-6.
- 정성모(1991). 학생범죄에 관한 고찰,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미, 김득성 (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 조 은·원용·잔·정기현, “뉴미디어 시대의 청소년 문화정책,” 정책포럼(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19호, 1996. 9.
- 조경자(2002). 유아의 전자게임 이용과 사회성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40권 9호, pp. 35-46.
- 조기은(2001). 여자청소년의 성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근·양돈규(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Vol. 14, No. 1, pp. 91-111.
- 조만제,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 밝은사회연구(경희대학교 밝은사회연구소) 제20호, 1999. 12.
- 조상락,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 방향,” 부산교육(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제271호, 1994. 10.
- 조성연 외(2000). 청소년의 원조교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 2,

99-116.

- 조아미·방희정(2003).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 10권 1호, pp. 249-275.
- 조아미·방희정(2004). 사이버관련 청소년의 문제행동 - 음란성과 폭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제 2호.
- 조양순 (1999). 비행청소년 정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철·김덕모·함도금(2002). 청소년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주리에·권석만(2001). 인터넷 매개로 나타나는 문제행동과 유형분석 :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Psychological Science*, Vol. 10, No. 1, pp. 93-115.
- 주정음 (2003). 수원시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경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승희, 이혜성 (2001).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 과정 및 변화 요인 연구 :에 착이론적 조망에서, *한국심리학회지*, 13, 3, pp.55-73
- 차광선,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단체의 실천방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제3회 청소년보호 토론회자료(청소년보호위원회), 1997. 10. 30.
- 차이홍(2003). 학교내외 학습환경저해 오염원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훈진(2004).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천정웅 외, 청소년관계 법령 및 제도 보완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 천정웅(2000). 청소년 사이버 일탈이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 7권 2호, pp. 97-116.
- 청소년대화의광장(1998). 청소년문제론,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 중앙점검단 운영성과, 2004. 2.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청소년유해환경 실태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a). 청소년보호백서.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b). 청소년보호법해설
-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 청소년보호위원회(편), 청소년보호법 해설집, 청소년보호 2004-09, 2004. 6.
-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발족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 과제, 2000. 5.
- 체육부, 각국청소년조직(기구)현황, 1989. 8.

- 최중술, “청소년 보호 구실로 정보매체 통제는 곤란,” 한세정책(한세정책연구원) 제 37호, 1997. 7.
- 최충옥, “유해환경과 청소년 문제,” 교육사회학연구(한국교육사회학회) 제7권 제3호, 1997. 9.
- 추병완(2003). 가정에서의 정보윤리교육 방법 개발. 춘천교육연구. Vol. 20. pp. 3-22.
- 표갑수, “청소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학생생활연구(청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12호, 1990. 4.
- 하운금, “텔레비전과 여성: 케이블, 위성방송의 선정적 표현물 문제”, <http://www.sungshin.ac.kr/~kowoin/263.hwp>.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일본 간행물윤리제도 조사 보고서, 1999. 12.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성폭력상담원 교육 자료집: 살맛나는 세상으로 가기 위하여.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 나눔터 19호, 23호, 24호, 28호, 29호, 31호 여기는 상담실
- 한국성폭력상담소(1996). 어린이성폭력예방 세미나자료집: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한국의 청소년정책 통계.
- 한국청소년학회 (1992).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체육청소년부
-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 및 개선방안, 1992년도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1992. 7.
- 한상철 (2004). 중소도시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측요인 분석. 교육심리연구, 18, 3, 193- 210.
- 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미 (2003). 청소년 문제행동 :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한인영, 박인선, 백연옥(2001). 청소년의 성행동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2, 138-148.
- 한준상(1998). 동승동의 아이들: 청소년의 파격문화,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함병수 외, 청소년관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육성체계·법령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 허중렬,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 00-R55,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 허철수(1997). 청소년 유해환경의 문제와 개선방안: 사회의 물리적 유해환경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제 18권 1호, pp. 55-75.
- 황부군(2000). 인터넷 방송에서 유통되는 색정·폭력 정보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법과사회이

- 론학회) 제22호, 2002.
- 황진숙 · 이은희 · 나영주 · 고선주 · 박숙희(2004). 청소년 가족 및 학교 관련 요인에 따른 사이버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제 42권 11호, pp. 223-235.
- 이재규(2005). 학교에서의 집단상담: 실제와 이론. 학지사.
- ‘가상접속 네트워크(FAN) 도입과 기업의 자율 규제’.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icec.or.kr>>
- ‘경상북도 성주교육청의 2004년 정보통신 윤리교육 추진계획’.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www.kbsjed.go.kr>
- ‘고려대학교 인터넷중독 온라인 상담센터’.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psyber119.com>>
- ‘남일초등학교 : 네티켓교실’.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namil-e.es.kr/netiquette/index.html>>
- ‘맑은청소년 지원센터 : 사이버 모티켓’.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www.eduko.org>
-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활동’.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icec.or.kr>>
- ‘사이버문화연구소’.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cyberculture.re.kr>>
- ‘서울시 교육 새물결 운동의 중고등학교 정보통신윤리 관련 교육’.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www.sen.go.kr>
- ‘서울시 교육 새물결 운동의 초등학교 정보통신윤리 관련 교육’.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www.sen.go.kr>
- ‘서울청소년세상’.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www.teenworld.or.kr>
- ‘서초YMCA : 청소년 약물 및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실’.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counsel.yymca.or.kr>>
- ‘싱가포르 국립 인터넷자문위원회(NIAC) 보고서’.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icec.or.kr>>
- ‘어머니 사이버 지킴이’.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www.mom119.org>
- ‘영국의 인터넷 감시단체’.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icec.or.kr>>
- ‘인터넷 사업자 행동강령’.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icec.or.kr>>

- ‘인터넷 핫라인(인터넷 콘텐츠의 평가와 자율-규제)’.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icec.or.kr>>
- ‘인터넷에서 차세대 레이팅/필터링 시스템’.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icec.or.kr>>
- ‘인터넷중독예방’.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busan.koreapost.go.kr/index.jsp>>
- ‘인터넷중독예방’.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jeonbuk.koreapost.go.kr/>>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www.internetaddiction.or.kr>
- ‘일본 인터넷 협회(IAJAPAN)’.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icec.or.kr>>
- ‘주니어 네이버 인터넷 윤리교실’.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jr.naver.com/safe>>
- ‘죽산종합고등학교’.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chuksan.hs.kr/index1.html>>
- ‘청년의사 인터넷 중독치료센터’.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netmentalhealth.fromdoctor.com>>
- ‘캐나다의 미디어의 네트워크 MNet’.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icec.or.kr>>
- ‘통계청’. [Online]. [2005. 6.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stat.go.kr/statcms/main.jsp>>
- ‘포항YMCA : 청소년유해사이트감시단’.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www.phymca.or.kr>
- ‘학부모정보감식단’.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cyberparents.or.kr>>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역기능예방사업’.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www.kado.or.kr>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인터넷 쉼터학교’.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www.kado.or.kr>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www.youth.re.kr>
- ‘e-클린은 내손으로: 저소득·방임가정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인터넷 중독

-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www.sadangwelfare.org>
- ‘호주 방송청(ABA) 의 온라인 서비스 규제’.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icec.or.kr>>
- Masters, J. C., Burish, T. G., Hollon, S. D., & Rimm, D. C.(1987). Behavior therapy(3rd ed.). Florida: Harcourt Brace Jovanovich.
- Abbott-Chapman, J., & Denholm, C.(2001). Adolescent’ Risk Activities, Risk Hierarchies and the Influence of Religiosity,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4, No. 3.
- Allen, J. P., Moore, C. M., & Kupermine, G. P.(1997). Development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adolescent deviance. In S. S. Luthar, J. A. Burack, D., Cicchetti, & J. R. Weisz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548-56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fourth edition (DSM-IV)*. Washington DC: Author.
- Amodei, N. & Scott, A.(2002). Psychologists’ contribution to the prevention of youth violence,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 Vol. 39, pp. 511-526.
- Anderson J. K.(2001).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 50, No. 1, pp. 21-26.
- Arnett, J. (1998). Risk behavior and family role transitions during the twent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3, 301-320.
- Bandura, A. (1997). *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174-177.
- Bandura, A., Caprara, G. V., Barbaranelli, C., Gerbi-no, M., & Pastorelli, C. (2003). Role of affective self-regulatory efficacy in diverse spheres of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4, 769-782.
- Beaver, W.(1997). What To Do About Alcohol Advertising, *Business Horizons*, Vol. 40, pp. 87-91.
- Benjamin, L. P., Rueben, C. W., Sharon, M. W., Richard, D. G., and Bailus, W.(2001). Environmental Health and Antisocial Behavior :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Vol. 63, No. 9.
- Bogenschneider, K.(1996). Family related preven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Vol. 45, pp. 127- 138.
- Bonanno, G. A.(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stand the

-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59, pp. 20-28.
- Bowen, G. L. & Chapman, M. V.(1996). Poverty, neighborhood danger, social support, and the individual adaptation among at-risk youth in urban areas. *Journal of Family Issues*, 19, 641-667.
- Branden, N.(1987). *How to raise your self-esteem*. New York: Bantam.
- Brenner, V.(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V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the internet usagesurvey, *Psychological Reports*, Vol. 80, pp. 879-882.
- Center for Media Education(2001). *A Field Guide to the New Digital Landscape*
- Chesney-Lind, M.(1989). Girls' crime and women's place: toward a feminist mode of female delinquency. *Crime & Delinquency*, 35(1), 5-29.
- Cohen, S. & Hoberman, H. M.(199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 of life changed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ker, K. J., & Borders, D. L.(2002). An Analysis of Environmental and Social Factors Affecting Adolescent Problem Drink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Vol. 79, pp. 200-208.
- Colarossi, L. G. (2001). Adolescent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Structure, function, and provider type. *Social Work Research*, 25, 233-242.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dom.
- Corder, B. E.(1990). A pilot study for a structured, time-limited therapy group for sexually abused pre-adolescent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14, 243-251.
- Davis, M. T.(2002). An Examination of Repeat Pregnancies Using Problem Behavior Theory: Is it Really Problematic?,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5, No. 3.
- Ediger, M.(1995). A study of value. *Clearing House*, 69, 56-58.
- Epstein, J. A., Griffin, K. W., & Botvin, G. J.(2000). Role of general and specific competence skills in protecting inner-city adolescents from alcohol us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1, 379-386.
- Farrington, D. P.(1999). Implications of criminal career research for the prevention of offending. *Journal of Adolescence*, 13, 93-113.
- Funk, S.(1999). Risk assessment for juveniles on probation: A focus on gende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6(1), 44-68.

- Garn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ore, S., & Eckenrode, J.(1996). Context and process in research on risk and resilience
In R. J. Haggerty, L. R. Sherrod, N. Garnezy, M. Rutter,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M.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dord University Press.
- Gullone, E., Moore, S., Moss, S., & Boyd, C. (2000).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 2, 231-250.
- Hernandez, L. P.(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ingson, W. R., & Howland, J.(2002). Comprehensive Community Interventions to Promote Health: Implications for College-Age Drinking Problem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Supplement*, No, 14.
- Holge-Hazelton, B.(2002). The Internet: A New Field for Qualitative Interviews,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Vol. 3, No. 2.
- Howard, E. D., & Wang, Q. M.(2003). Psychosocial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 Boys' Reports of Dating Violence, *ADOLESCENCE*, Vol. 38, No. 151.
- Jang, S. J. & Thornberry, T. R.(1998). Self-esteem, delinquent peers, and delinquency: A test of the self-enhancement 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586-698.
- Janis Wolak, Kimberly J. Mitchell, and David Finkelhor(2003). Escaping or connecting? Characteristics of youth who form close online relationship. *Journal of Adolescence* , Vol. 26, pp. 105-119.
- Jeffrey, I. C., et al. (2001) *The UCLA Internet Report 2001 : Surveying the Digital Future*. Los Angeles: UCLA Center for Communication Policy.
- Jessor, R.(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597-605.
- Keith, J. A.(2001)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 Kennedy-Souza, L. B.(1998). Internet Addiction Disorder, *An Electronic Journal for the 21st Century*, Vol. 6, No.1-2.
- Kimberly J. Mitchell(2003). The Exposure Of Youth To Unwanted Sexual Material On

- The Internet : A National Survey of Risk, Impact, and Prevention. *Youth & Society*, Vol. 34, pp. 330-358.
- Krange, O., & Pedersen, W.(2001). Return of the Marlboro Man? Recreational Smoking among young Norwegian Adults, *Journal of Youh Studies*, Vol. 4, No. 2.
- Lenhart, A.(2005). *Protecting Teens Online*, Washington: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Lenhart, A., Rainie, L., & Lewis, O.(2001). Teenage online: The rise of the instant-message generation and the Internet's impact on friendships and family relationships, Washington: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Livingstone, S.(2003). *Children fo Online. Emerging Opportunities and Dangers*, Report, London School of Economics.
- Lipsey, M. W., & Derzon, J. H.(1999). Predictors of violent or serious delinquency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n R. Loeber & D. P. Farrington (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pp. 86-105). Thousand Oaks, CA: Sage.
- Ludwig, K. B. & Pittman, J. F.(1999). Adolescent prosocial values and self-efficacy in relation to delinquency, risky sexual behavior, and drug use. *Youth & Society*, 30, 461-482.
- Maczewski, M.(1999). *Interplay of online and onground realities: internet research on youth experiences onlin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Victoria, BC, Canada
- Marshal, M. P. & Chassin, L.(2000). Peer influence on adolescent alcohol use: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al support and disciplin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4, 80-89.
- Michell K. J., Finkelhor, D., & Wolak, J.(2003). The Exposure Of Youth to Unwanted Sexual Material On the Internet: A National Survey of Risk, Impact, and Prevention *youth & Society*, 1 March 2003, vol. 34, No. 3, pp. 330-358, Sage Publications.
- Moore, M.R. & Chase-Lansdale, P.L.(2001). Sexual intercourse and pregnancy among african american girls in high-poverty neighborhoods: The role of family and perceived community environment,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3, 1146-1158.
- Myles, S. B., & Simpson, L. R.(1998). *Aggression and Violence By School-Age Children and Youth: Understanding the Aggression Cycle and Prevention/Intervention Strategies*,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Vol. 33, No. 5, p. 259-264.

-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2001). "school violence: an overview". Volume VIII-Number I.
- Pillai, V. K. & Barton, T. R.(1999). Sexual activity among Zambian female teenagers: The role of interpersonal skills. *Adolescence*, 34, 381-387.
- Pollard, J. A., Hawkins, J. D., and Arthur, M. W.(1999). Risk and action: Are they both necessary? *Social Work Research*, Vol. 23, pp. 145-158.
- Rainie, L.(2002). *The Digital Disconnect: The Widening Gap Between Internet-Savvy Students And Their Schools*, Washington: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Rakos, R. M. & Schroeder, H. E.(1980). *Self-directed assertiveness training*. New York: Bio Monitoring Applications.
- Reppucci, N. D., Woolard, L. J., & Fried, S. C.(1999). Social, Community,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0, pp. 387-418.
- Rutter, M.(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E. Rahdert, D.C. & I. Amsel(Eds.) *Adolescent drug abuse: Clinical assessment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pp. 7-38). Rockville, MD: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 Rutter, M.(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s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 (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Smith, S., Wilson, B., Kunkel, D., Linz, D., Potter, W.J., Colvin, C., & Donnerstein, E. (1998). *Violence in television programming overall: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study. National Television Violence Study, Volume 3*.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taff, M.(1999). *Children, Violence, and the Media: A Report for Parents and Policy maker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 Stenverns, K. R., Barron, M. A., Ledbetter A, C., Foarde, M. K., & Menard, W. S.(2002). Legislation, Policy, and Tobacco Use Among Youth: Implications for Health Care Providers, *Journal of School Health*, Vol. 71, Mo. 3, pp. 89-95.
- Strandbu, A., & Skogen, K.(2000). Environmental Norwegian Youth: Different Paths to Attitudes and Action ?, *Jornal of Youth Studies*, Vol. 3, No. 2, pp. 189-209.
- Suler, J.(1998). Adolescents in Cyberspace. Part of the online book: *The Psychology of Cyberspace. Human and Social Implications of ICT*.
- Surette, R.(1994) *YOUTH VIOLENCE AND THE MEDIA: MEDIA, VIOLENCE, YOUTH, AND SOCIETY*.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9, pp. 370.

- Taran L. B., & Ellingsen, T.(2003). On-liners: A report about youth and the Internet. Available from Internet:
- The Great Seal Of The State Of California(2000).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response”.
- Tuner, G. E., Burciaga, C., Sussman, S., & Klein-Selski, E.(1993). Which lesson components mediate refusal assertion skill improvement in school-based adolescent tobacco use pre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8, 749-763.
- UCLA Center for Communication policy(2001). Surveying the digital future-Two reports of ICT’s on society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Netherland: Infodrome.
- Werner, E. E., and Smith, L.(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 Wisdom, C. S. & Kuhns, J. B.(1996). Childhood victimization and subsequent risk for promiscuity, prostitution, and teenage pregnancy: A prospective study.
- Wyman, P. A., Sandler, I., Wolchik, S., and Nelson, K.(2000). *The Promotion of Wellnes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n Press.
- Yoneyama, S., & Naito, A.(2003). Problems with the Paradigm: the school as a factor in understanding bullying(with special reference to Japa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24, No. 3.
- Young, S. D.(1999). *Internet Addiction: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Yuet, W. C.(1997). Family, School, Peer, and Media Predictors of Adolescent Deviant Behavior in Hong Ko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 Vol. 26, NO. 5, pp. 569-596.
- ‘Adolescents in Cyberspace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Online]. [2005. 6. 2 인].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rider.edu/~suler/psycyber/adles.html>>
- ‘Center for Media literacy’. [2005. 10. 2 인]. Available from Internet: <www.medialit.org>
- ‘Childnet International’. [2005. 10. 2 인].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childnet-int.org>>
- ‘Children’s Rights and Child Protecting: What’s that got to do with the internet?’. [Online]. [2005. 5. 18 인]. Available from Internet:<<http://www.norsk-larerlag.no>>
- ‘Cyber Angels’. [2005. 10. 2 인]. Available from Internet: <www.cyberangels.org>
- ‘Cybersmart Kids Online’. [2005. 10. 2 인].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cybersmartkids.com.au>>

-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Professor’. [Online]. [2005. 5. 27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journal.wisc.edu/~hawkins/j565/chaps.htm>>
- ‘Four Step to Success in Media Literacy’. [2005. 5. 27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medialit.org/reading_room/article125.html>
- ‘Fundamental of Media Effects’. [Online]. [2005. 5. 27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highered.mcgraw-hill.com>>
- ‘INHOPE’.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inhope.org/en/index.html>>
- ‘Internet Watch Foundation’.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www.iwf.org.uk>
- ‘Kls, Parents & Media’. [Online]. [2005. 6. 5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thepic.com>>
- ‘Media and the protection of young persons’. [2005. 5. 19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iuscomp.org/gla/literature/media.htm>>
- ‘Media Awareness Network’.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media-awareness.ca>>
- ‘Media Violence Fact and Statistics’. [Online]. [2005. 5. 18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safeyouth.org/scripts/faq/mediaviolstats.asp>>
- ‘Media Violence: Exposure And Content’. [2005. 5. 19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surgeongeneral.gov/library/youthviolence/chaper4/>>
- ‘NetAlert’.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netalert.net.au/>>
- ‘PAGi’.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pagi.org.sg/index.htm>>
- ‘Parental Involvement Key to Positive Youth Development’. [2005. 5. 27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usmayors.org/USCM/>>
- ‘Standards for Media Education’. [Online]. [2005. 5. 30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1.medialiteracy.com/standards.jsp>>
- ‘The Children’s Partnership’.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www.childrenspartnership.org>
- ‘Video Violence’. [2005. 5. 19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videostandards.org.uk/video_violence.htm>
- ‘Wired Kids’. [2005. 10. 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iredkids.org>>
- ‘Youth Protection Act’. [2005. 5. 19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 <<http://www.inscomp.org/gla/statutes/JOeSchG.htm>>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5-16-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 대책연구 III

인 쇄 2005년 12월 3일

발 행 2005년 12월 5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크리홍보(주) 전화 (02) 737-5377 대표 김규만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 (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574-5

경제·인문사회협동연구총서 05-16-01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연구 Ⅲ

- 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행정제도 환경,
외국정책사례를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 김영한

공동연구원 : 이명진

연구보조원 : 이승현

주관연구기관 : 한국청소년개발원

협력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대구한의대부설 청소년문제연구소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II. 이론적 배경	7
1. 청소년 문제행동과 유해환경의 개념 및 실태	9
2. 청소년문제행동과 유해환경과의 관련성	16
III. 연구방법	19
1. 연구의 내용 및 하위연구과제	21
2. 연구의 흐름도	24
3. 협동연구 추진체계	25
IV. 청소년유해업소 개선 대책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2. 이론적 배경	32
3. 선행 연구 개관	41
4. 연구방법 및 절차	48
5. 설문분석결과 및 시사점	53
6. 유해업소 개선을 위한 대책	62
7. 결론	82
V. 청소년유해매체 개선 대책	85
1. 서론	87

2. 선행연구 고찰	93
3. 인터넷 유해성 감소 및 긍정적 활용을 위한 노력	96
4. 연구결과	99
5. 정책제언	123
VI. 청소년유해행위 개선 대책	133
1. 서론	135
2. 청소년 유해행위와 성관련 문제행동	140
3. 유해행위로 인한 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 사례	153
4. 청소년 성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접근	170
5. 실증적 조사연구	177
6. 조사결과 분석 및 정책 제안	181
VII.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	211
1. 서론	213
2. 청소년 유해환경의 법적 고찰	214
3.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행정체계 및 전달체계 분석	231
4.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추진정책의 개선방안	244
5. 결론 및 정책제언	252
VIII. 외국의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사례	255
1. 미국	257
2. 일본	289
3. 캐나다	301
4. 영국	309
5. 독일	315
6. 스페인	317
7. 핀란드	321

8. 스웨덴	325
9. 호주	329
10. 싱가포르	331
IX. 종합논의 및 정책제안	341
1. 종합논의	343
2. 정책제안	347
참고문헌	351

표 목차

<표IV-1> 청소년문제행동 유형	33
<표IV-2> 청소년 환경별 유해요인	40
<표IV-3> 설문조사대상	52
<표IV-4> 유해요인 접촉경험	55
<표IV-5> 유해업소 출입경험과 유해요인접촉간의 상관도	56
<표IV-6> 유해요인중심의 유해업소 분류 유형	62
<표IV-7> 유해요인 중심의 청소년출입 분류 형태	63
<표IV-8> 유해업소별 청소년출입관리 체계	64
<표IV-9> 유해업소별 청소년대책	65
<표IV-10> 청소년 출입가능업소의 환경요인	73
<표IV-11> 청소년출입가능업소의 유해요인	75
<표V-1> 인터넷 관련 유해요인	92
<표V-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00
<표V-3> 온라인게임관련 유해요인 접촉	103
<표V-4> 온라인 채팅관련 유해요인 접촉	105

<표 V-5> P2P서비스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	107
<표 V-6>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	108
<표 V-7> 인터넷 포탈 사이트 관련 유해요인 접촉	109
<표 V-8> 청소년 인터넷 관련 문제행동	110
<표 V-9> 청소년 인터넷관련 보호요소	114
<표 V-10> 유해요인과 인터넷관련 문제행동	116
<표 V-11> 유해요인접촉경험유무 및 보호요인이 인터넷관련 문제행동 에 미치는 영향	120
<표 VI-1>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의 내용	176
<표 VI-2> 연구대상 집단의 분포	178
<표 VI-3> 면접조사대상 청소년의 특성과 결과 요약	199
<표 VIII-1> STEP-UP 프로그램의 평가보고 형태	335
<표 VIII-2> 데이터와 보고서 제출기한	338

그림 목차

<그림Ⅲ-1> 연구체계도	24
<그림Ⅳ-1> 청소년 생태환경 체계	39
<그림Ⅳ-2> 유해환경 출입 경로분석	46
<그림Ⅳ-3> 부적응청소년 유해환경 출입 경로분석	47
<그림Ⅳ-4> 잠재적 유해업소에서 유해요인 접촉 경로모형도	59
<그림Ⅳ-5> 유해요인 확산 모형도	60
<그림Ⅳ-6> 유해요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61
<그림Ⅳ-7> 유해요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모형	61
<그림Ⅳ-8> 잠재적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도	74
<그림Ⅵ-1> 유해행위 연구개념도	139
<그림Ⅵ-2> 청소년성관련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정책제안 모형	202